

研究資料
88-3



家計調査指針書

1988. 6.

調査統計局 社會統計課

033041

일 러 두 기

이 冊字는 當局이 1963年부터 實施하고 있는 都市家計調查와 日本 總務聽統計局에서 1946年부터 實施하고 있는 家計調查와의 內容 比較 및 日本의 家計調查(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와 全國消費實態調查(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와의 差異點을 明確히 把握하고저 日本의 1988年度 家計調查 要領書와 實施要領을 翻譯한 것 입니다.

家計收支調查에 關心이 있으신 분은 參考資料로 活用하시기 바라며, 本 內容에 對한 問議事項이 있으면 社會統計課(720-2785)로 連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 6.

社會統計課長 盧 載 坤

I. 家計調査要領書

家計調査員 여러분에게

家計調査는 家口가 直接 記入한 家計簿에서 나타난 家口의 收入 및 支出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家計面에서 國民生活의 實態를 밝히려고 하는 調査이다. 이 調査는 國家의 基本統計로서 1926年에 처음으로 實施하여 그 이후 1931年에서 1953年까지 每月 實施되어 왔습니다. 第二次大戰 以後인 1946年에는 「消費者價格調查」로서 復活하였고 1953年부터는 名稱도 「家計調查」로 变경하여 每月 계속하여 實施해 왔습니다.

家計調查는 나라의 가장 基本的이며 中요한 統計調查의 하나로서 그 調査의 結果는 國家의 政治 및 行政遂行上 없어서는 안될 자료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調査는 標本調查方法에 의해 全國에서 168個의 調査市町村을 選定하여 그중에서 1,346個의 調査單位區와 8,076個 調査家口를 抽出하여 實施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調査單位區는 每月 12分의 1, 調査家口는 每月 6分의 1정도가 새로운 地域과 家口로서 抽出되며, 選定된 家口는 家計簿를 6個月間 記帳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家計調查員 여러분이 해야할 일은 一般的인 調査活動(調查票의 配付, 收集, 審查 및 面接調查 等)은 물론 調査家口의 選定, 家計簿의 記入依賴 등 重要한 일이 있습니다.

이 「調查指針書」는 調査員 여러분의 遂行事項을 기술한 것으로 調査의 概要·調查員의 할일, 調査票의 記入方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調査員 여러분은 이 指針書의 内容을 정확하게 理解하고 調査業務에 정통함과 아울러 調査技術에 대하여도 研究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1988年 1月

總務廳統計局長

目 次

第1 調査概要	9
1. 調査目的	9
2. 調査方法	9
(1) 調査地域의 選定方法	9
(2) 調査家口의 選定方法	9
(3) 調査期間과 調査事項	9
(4) 調査家口 및 單位區의 交替	10
3. 調査系統	10
4. 調査結果의 集計 및 公表	10
5. 調査結果의 利用	11
6. 調査의 法的根據	11
7. 秘密의 保護	11
第2 調査員이 해야할 일	12
1. 概 要	12
每月의 業務와 그 要點	13
〈單位區 및 調査家口의 擔當方法과 交替方法〉	16
單位區의 更新時와 6個月間의 할일	
2. 單位區 家口名簿의 作成	18
(1) 單位區의 區域確認	18
(2) 單位區 家口名簿의 作成과 提出	19
〈家口의 抽出方法〉	19
3. 家計簿의 記入依賴 및 調査開始時 해야할 일	21
(1) 調査豫定家口의 指示	21
(2) 家計簿의 記入依賴	22
(3) 調査家口番號의 決定과 單位區 家口名簿의 提出	25
(4) 家口票의 作成과 提出	26
(5) 準調查家口票의 作成과 提出	27

(6) 家計簿의 配付	27
(7) 調査用品의 配付	28
4. 調査家口에 대한 記入指導	28
(1) 記入開始前의 指導	28
(2) 記入期間中의 指導	28
5. 家計簿의 收集과 內容審查	29
(1) 收集時의 內容審查	29
(2) 收集後의 內容審查	29
6. 家計簿의 提出	29
(1) 家計簿의 提出	29
(2) 記入未完了 眀 家計簿의 取扱方法	30
(3) 指導員으로 부터 照會가 있을 경우의 再調査	30
7. 年間收入調查方法	30
8. 調査家口의 臨時交替 時의 處理	31
(1) 臨時交替	31
(2) 調査家口의 家口區分 變更	32
(3) 家口票 記入事項의 變更	34
9. 記入期間(6個月) 終了後의 할일	34
名簿補完時와 後半 6個月間의 할일	
10. 單位區 家口名簿의 補完	35
11. 調査豫定家口의 抽出 記入依賴 및 單位區 家口名簿의 提出	35
12. 記入依賴後의 해야 할 일	35
第3 單位區 家口名簿의 作成方法	36
1. 單位區 更新時의 名簿作成	36
〈單位區 家口名簿 記入例(單位區 更新의 경우)〉	41
2. 名簿補完 方法	42
〈單位區 家口名簿 記入例(名簿補完의 경우)〉	44
第4 調査豫定家口의 抽出方法	45

1. 準調査家口가 發生한 경우 交替 代替調査豫定 家口의 抽出	45
2. 名簿補完時의 調査豫定家口 抽出	47
(1)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調査家口數의 割當	47
(2) 調査豫定家口의 抽出	48
第5 家口票 作成方法	51
1. 上部欄外事項	51
〈家口票記入例(上部欄外)〉	51
2. 家口員에 대하여 「(1)~(17)」欄	52
〈家口票記入例「(1)~(17)」欄〉	57
3. 住宅에 대하여 「(18)~(25)」欄	57
〈家口票記入例「(18)~(25)」欄〉	64
4. 口座自動對替등에 대하여 「(26)~(30)」欄	64
〈家口票記入例「(26)~(28)」欄〉	65
〈家口票記入例「(29), (30)」欄〉	66
5. 下部欄外事項	66
〈家口票記入例(下部欄)〉	67
〈家口票記入例(全欄)〉	68
第6 準調査家口票의 作成方法	69
〈準調査家口票記入例〉	71
第7 家計簿 記入方法	72
1. 「表紙」를 쓰는법	72
〈家計簿記入例(表紙)〉	74
2. 「口座自動 對替에 의한 支拂」 페이지의 記入方法	75
〈家口簿記入例(口座自動 對替에 의한 支拂)〉	77
3. 每日의 收入 · 支出을 記入하는 페이지를 쓰는 方法	78
4. 「通信欄」을 쓰는 법	99
第8 年間收入調查票 記入方法	100
〈年間收入調查票記入例〉	103

參 考

1. 年金의 種類	105
2. 損害保險의 種類	106

別 表

1. 勤勞者 家口·一般家口別 割當早見表	109
2. 家計簿 內容 審查의 要點과 그 處理	110
3. 調査用品類의 受領(配付)과 提出	113
4. 產業分類表	115
5. 家計調查 職業分類表	117
6. 家計收支 項目分類 總括表	119
7. 消費支出品目的 項目 및 數量單位 一覽表	120

附 錄 家口와 面接時의 參考

1. 머리말	131
2. 調査豫定 家口와의 接觸	131
3. 調査趣旨 및 內容의 說明	132
4. 調査結果 利用의 說明	134
5. 記入 承諾 및 最初의 記入指導	134
6. 記入을 承諾하지 않는 境遇의 面接例	136
7. 標本調査方法이란	139

第1. 調査概要

1. 調査目的

家計調査는 家計의 收支를 家計簿에 記入하도록 하게 함으로서, 國民生活에 있어서 家計收支의 實態를 每月 밝히는데 그 目的이 있습니다. 그리고 收入 및 支出의 수준과 구조를 소비자家口 전체로서, 또 家口主의 年令과 職業等 家口의 性向을 밝혀줌으로서, 經濟政策 또는 社會政策을 수립하는데 利用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 國民所得의 대부분 차지하는 個人消費動向의 把握과 個別商品의 需要分析에 없어서는 안될 資料를 提供해 주는 것입니다.

2. 調査方法

이 調査의 對象이 되는 家口는 全國의 家口중에서 農漁家를 除外한 約 2,733 萬 家口 (1985 年 國勢調查)입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수의 家口를 全部 調査한다는 것은 經費·勞力·時間上 거의 不可能하므로 이중에서 一部의 家口 (全國 8,076 家口)만을 選定 調査하여 그 結果로서 全國 家口의 家計收支를 推定하는 標本調查의 方法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段階로 實施되고 있습니다.

(1) 調査地域의 選定方法

첫째로 國勢調查의 結果를 사용하여 全國 市町村의 地理的位置, 人口의 크기, 產業등 해당 地域의 特성을 고려하여, 層別로 구성하고 각層으로 부터 1市町村씩 모두 168의 調査 市町村을 抽出합니다. 다음은抽出된 市町村 内에 設定되어 있는 國勢調查의 調査區에 근거하여 調査單位區 (以下 單位區라고 함)을 設定하여 全國에서 모두 1,346의 單位區를 任意로 選定하게 됩니다.

(2) 調査家口의 選定方法

抽出된 各 單位區마다 그곳에 居住하는 모든 家口를 記入한 名簿 (單位區家口名簿)를 作成하여 이 名簿에서 亂數表를 使用하여 任意로 6家口를 選定하게 됩니다. 한 調査員은 2 單位區를 담당하여, 1 單位區 6家口씩 合計 12家口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하여 抽出된 家口 (調查豫定家口)에 調査의 協力を 依頼합니다.

(3) 調査期間과 調査事項

選定된 調査家口에는 6個月間 「家計簿」를 記入하게 합니다. 또 「家計簿」의 每月記入은 1日에서 15日까지를 1期分으로 하여 1卷에 또 16日에서 月末까지를

2期分으로 하여 1卷에 각각 나누어서記入하게 합니다.

年間收入에 관해서는 家計簿記入開始後 2個月째의 前半에 모든 調査家口에 「年間收入調査票」를 配付하여 記入하게 합니다. 그 외에 「家口票」에 의해서 家計簿記入開始時에 家口·家口員 및 住居에 관한 事項을 調査員이 面接調査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事情으로 記入을 거절하는 家口는 準調査家口로서 記入依賴時에 「準調査家口票」에 의해 家口에 關한 事項을 調査員이 面接調査하게 됩니다.

調查票의 種類	調査事項	調査時期	記入者
家計簿	收入과支出(勤勞者家口 및 無職家口) 支 出(全 家 口)	每 月	調査家口
年間收入調査票	年 間 收 入 (全家口)	記入開始後 2個 月째의 前 半	調査家口
家 口 票	家口, 家口員 및 住居에 관한 事項	記入開始時	調査員

(準調査家口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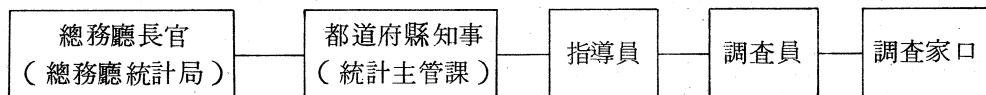
準調査家口票	家口에 관한 事項	記入依頼時	調査員
--------	-----------	-------	-----

(4) 調査家口 및 單位區의 交替

記入期間이 6個月로 終了된 調査家口는 그 單位區에 대하여 前에 作成하였던 單位區家口名簿를 補完하여, 이것에 의거 새로이 選定된 家口로 交替합니다. 또 單位區의 地域은 每年 更新합니다만, 이 때 新單位區에는 「單位區家口名簿」를 새로이 作成하며, 이것에 의거 調査家口를 選定하여 舊單位區의 調査家口를 交替합니다.

3. 調査의 系統

調査市町村에는 調査에 從事하는 家計調査員(全國 673명)을 두고, 都道府縣에는 調査員을 지도하는 家計調査指導員(全國 114명)을 두어 다음과 같은 系統에 의하여 調査가 實施하게 됩니다.



4. 調査結果의 集計 및 公表

記入이 完了된 「家計簿」등의 調査票는 調査員에서 指導員을 통해 都道府縣에 提出되

어 또한 總務廳統計센타에 보내져서 電子計算機에 의해 여러가지 統計表로 作成됩니다.

調查結果중 중요한 것은 總務廳統計局이 「家計調查報告(速報)」로서 調查月의 다음달의 中旬에 公表하여 그 結果를 新聞, TV를 통해서 報道하게 됩니다
또 그 상세한 것은 「家計調查報告(月報)」나 「家計調查年報」 등에 印刷刊行하게 됩니다.

5. 調査結果의 利用

調查結果는 國民生活實態를 把握하는 것으로 政府·地方公共團體뿐만 아니라, 民間의 會社, 研究所 또는 勞動組合 等에 廣範圍하게 利用되므로 이 調査는 政府가 實施하는 統計調查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調査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調査結果가 어떻게 活用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經濟動向 또는 景氣動向을 살피는 하나의 指標로서 使用되고 있음.
- (2) 經濟政策 또는 社會政策을 수립하는 資料로써 또 그 實施結果를 評價하기 위한 資料로서 利用됨.
- (3) 新로운 行政施策을 實施하는 경우, 從來 實施해온 施策을 變更할 경우, 미리 國民生活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資料로서 利用됨.
- (4) 國·地方公共團體 또는 企業 等의 賃金策定을 위한 資料로서 利用됨.
- (5) 消費者가 購入하는 商品 또는 써비스의 需要豫測 또는 商品의 生產計劃을 위한豫測資料로서 利用됨.
- (6) 消費者物價指數의 作成을 위한 指數品目的 選定 및 Weight 算定을 위한 資料로서 利用됨.
- (7) 家計收支, 消費者行動 等을 計量經濟學的으로 分析하기 위한 資料로서 利用되고 있음.

6. 調査의 法的根據

家計調查는 國家가 행하는 重要한 統計調查로서 統計法에 의한 指定統計(指定統計 제 56 호)로 指定되어 統計法에 의거하여 公布된 家計調查規則(1985年 11月 12日 總理府令제 71호)에 따라 實施되고 있습니다.

7. 秘密의 保護

이 調査는 各個 家口의 家計上의 收入·支出을 調査하는 것이므로, 調査家口와 접촉하여 알게된 事項을 누설하거나 統計를 作成하는 目的 以外에 調査票를 使用하는 것은 統計法에 의하여 嚴禁되고 있습니다.

第2. 調査員이 해야 할 일

1. 概 要

調査員의 할일은 大略 다음과 같습니다.

▶ 單位區更新時와 前半 6個月間의 할일

- (1) 單位區家口名簿의 作成
- (2) 家計簿의 記入依賴, 家口票等의 作成에 관한 業務
- (3) 調査家口에 對한 記入 指導
- (4) 家計簿의 收集・內容審查・提出
- (5) 年間收入 調査票의 記入依賴・收集・提出
- (6) 調査家口의 臨時交替等에 關한 業務
- (7) 謝禮狀等의 配付

▶ 名簿補完과 後半 6個月間의 할일

- (8) 單位區家口名簿의 補完
- (9) 調査豫定家口의 選定
- (10) 上記 (2)~(7)의 業務

이러한 事業에 關한 상세한 内容은 「2 單位區家口名簿의 作成」(18페이지) 以下에 서술한 것과 같다. 調査員指導會 等에서 이러한 할일의 實施方法 等에 대하여 指導員으로부터 說明을 받게 되고 동시에 必要한 調査用品類를 「別表3 調査用品類의 受領(配付)과 提出」(113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時期	일의種類	일의要點
記入開始의前月	每月의業務와 그要點	(單位區更新時)
	單位區의區域確認	指導員으로부터指示된擔當單位區의區域을國勢調查調查區關係資料에 의해現地에서確認함.
	單位區家口名簿의作成과提出	單位區를 實地로巡回하여 「家計調查에協力하여 주십시오」를配付하고, 그區域내에居住하고 있는 全家口에 대하여 「單位區家口名簿」를作成하여 指導員에提出함.
	調查豫定家口의指示	指導員으로부터 調查豫定家口 6家口를指示하여 單位區 家口名簿를受領함.
	家計簿의記入依賴	付錄 「家口와 접촉시의 참고」(121페이지)를參考하여 調查豫定家口에記入依賴함.
	家口票의作成과提出	記入을 승인한 家口에는 「家口票」를 3部作成하여 2部를提出함.
	家計簿의配付 및記入指導	家計簿 1卷(1期分)을配付하여 記入指導함.
	調查用品의配付	調査家口에 「저울」, 「전자계산기」, 「샤프펜」등을配付함.
	代替家口의抽出	記入을 거절하는 家口에 대하여는 代替家口를 추출하여 記入依賴함.
1個月째	準調查家口票의作成과提出	記入을 거절하는 家口에는 「準調查家口票」를作成하여提出함.
	單位區家口名簿의提出	調查家口의選定을 끝마친 경우에는 單位區家口名簿를提出하고 寫本을受領함.
記入開始直後의記人指導	家計簿의配付	5日마다各調查家口를訪問하여 家計簿記入上의疑問點을 묻고 記入指導함.
		1개월째 2期分의 「家計簿」를配付함.

時期	일의種類	일의要點
1 個 月 째	家計簿의收集·審查·提出 家計簿의配付	1個月째 1期分의 「家計簿」를 15日直後에 收集하여 内容審查하여 정해진 期日까지 提出함. 2個月째의 1期分의 「家計簿」를 配付함.
2 個 月 째	家計簿의收集·審查·提出 (1個月째 2期分) 年間收入調查票等의配付 家計簿의配付 (2個月째 2期分)	「家計簿」(1個月째 2期分)을 2個月째 들어간 直後에 收集하여 内容審查한 후에 提出함. 1個月째 2期分 收集時에 「年間收入調查票」「年間收入調查에 관한 依賴狀」및 「年間收入調查票用 봉투」를 配付하여 記入依賴함. 1個月째의 作業과 同一하게 함.
月 째	家計簿의收集·審查·提出 (2個月째 1期分) 年間收入調查票의收集·提出 家計簿의配付 (3個月째 1期分) 家計簿의記入指導	2個月째의 1期分의 家計簿와 年間收入調查票를 收集하고 内容審查하여 提出함. 1個月째의 作業과 同一하게 함. 每月 될 수 있는 한 家口를 訪問하여 家計簿의 内容審查를 하여 記入指導함.
3 5 個 個 月 月 째 째	3個月째부터 6個月째까지의 期間은 2個月째의 作業(年間收入調查는 除外함)과 同一하게 家計簿의 配付·收集·內容審查·提出 및 配付指 導를 함. 前半의 6個月 經過後 記入終了家口에 謝禮狀을 配付함.	
6 個 月 째	後半 6個月의 일 單位區家口名簿의補完	「後半 6個月의 記入開始前의 作業」을 前半 6個月의 6個月째에 行함. 單位區內를 實地로 巡回하여 單位區家口名簿를 補完함.

時期	일의種類	일의要點
(後半 6個月의 記入開始 前月)	調査豫定家口의抽出 家計簿의記入依賴 單位區家口名簿의提出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로 調査家口를 割當하여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의해 調査豫定家口 6家口를 抽出함. 調査豫定家口에 대한 記入依賴 이후의 作業은 「前半 6個月째의 作業」의 「記入開始의 前月」과 同一하게 행함. 調査家口의 選定이 끝난 單位區家口名簿를 提出하고 寫本을 受領함.
後半 16個 月月 째	後半 6個月째의期間을 前半 6個月間(單位區更新時)의 作業과 同一하게 行함.	
調查終了後	謝禮狀의配付 家口票, 單位區家口名簿의提出	後半 6個月間의 記入期間을 終了한 家口에는 謝禮狀을 配付함. 使用의 끝난 家口票, 單位區家口名簿를 提出함.
必要時에 따른 일		調査期間中(6個月間)에 調査家口가 臨時로 交替되는 경우에는 代替家口를 抽出하여 記入依賴함. 이때 「家口票」를 3部作成하여 2部를 提出함.
調査家口의 家口區分變更에 따른處理等		調査家口의 家口區分(勤勞·一般)이 變更된 경우에는 家計簿와 記入事項의 變更을 家口에 指示하여 調査家口番號를 고치게 됩니다. 家口票의 記入事項에 變更이 발생한 경우에 變更事項을 記入한 家口票를 1部作成하여 提出함.
調查員指導會에出席		調查員指導會等에 出席하여 指導員으로 부터 作業의 指導를 받음.

〈單位區 및 調查家口의 擔當方法과 交替方法〉

調査員은 2 單位區를 담당하여 1 單位區에 6 家口 合計 12 家口를 擔當하게 된다. 單位區에는 單位區符號 2 자리수가 01 …… 12 의 12 種類가 있고, 調査員은 이것을 2 單位區씩 組合한 01·04, 02·05, 03·06, 07·10, 08·11, 09·12의 6 組 가운데 어느 한 組를 指導員으로 부터 指定받게 됩니다. 單位區는 1 年마다 更新하고, 調査家口는 6 個月마다 交替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擔當하는 單位區에서 調査가 始作되어 6 個月이 經過하게 되면 그의 單位區의 「單位區家口名簿」를 補完(名簿補完이라고 함)하여 이것에 의거하여 새로 6 家口를 選定하여 처음의 家口와 交替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시 6 個月이 經過하면 指導員으로부터 指定된 單位區를 更新(單位區更新이라고 함)하며, 이때 「單位區家口名簿」를 새로 作成하여, 그것에 의거하여 選定한 家口와 交替합니다.

名簿補完에 의한 家口의 交替와 單位區更新時의 家口의 交替를 定期交替라고 하고 調査家口의 定期交替는 單位區更新時 및 名簿補完時에 行하게 됩니다만 調査員이 擔當하는 2 單位區를 同時に 實施하지 않고 다음의 圖表에 표시된 것과 같이 가령 單位區符號 01·04의 單位區를 擔當하는 調査員은 01의 單位區에 대하여는 1月에 單位區更新 및 家口의 定期交替를 7月에는 名簿補完에 의한 家口의 定期交替를 實施하고 또한 04의 單位區에 대하여는同一한 交替를 4月 및 10月에 實施하게 됩니다. 따라서 調査員이 담당한 그 單位區를 통해서 보면 3個月마다 家口의 定期交替(6 家口)를 實施하게 됩니다.

単位家口 및 調査家口의 交替方法

月 単位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0 1) (0 4)	○						X						○	
(0 2) (0 5)		○					X						○	
(0 3) (0 6)			○				X						○	
(0 7) (1 0)	*			X			○			○			*	
(0 8) (1 1)		*			X		○			○			*	
(0 9) (1 2)		*				X	○				○			*

○印…単位区更新 및 調査家口의 定期交替를 표시함.

×印…名簿補完에 의한 調査家口의 定期交替를 표시함.

家計調査에 있어서는 1 調査員은 2 単位區를 담당함.

〔参考〕 単位區符号

0	1	1
---	---	---

→市町村内の 単位區更新月마다 1에서 시작하는 一連番號를 나타냄.

→単位區更新을 實施하는 月을 나타냄.

市町村番號

2	7	3	2	1
---	---	---	---	---

100 } 都의 特別區域 및 指定都市番號
130 }

101~129 } 都의 特別區 및 指定都市의 區番號
131~139 }

201~299 指定都市以外의 市番號

301~799 町村番號

→都道府縣別 番號

2. 單位區家口名簿의 作成

(1) 單位區의 地域 確認

擔當하는 單位區는 指導員으로 부터 指示를 받게되며 그 單位區의 區域은 1985年 國勢調查의 調查區關係資料(調査區一覽表·調査地圖 및 調査區要圖)等에 의해 표시되어 짐으로 單位區의 位置나 境界는 誤認하지 않도록 確認해야 한다. 또 現地에가서 實地로 區域을 確認하게 됩니다. 區劃整理나 團地建設等으로 單位區의 位置나 境界에 대한 疑問이 생겼을 경우에는 任意로 決定하지 말고 반드시 指導員에 連絡하여 指示를 받아야 합니다.

調査區의 境界가
分明하지 아니 할
경우

問1 區劃整理를 위해 1985年 國勢調查調查區設定當時와 事情이
달라 調査區의 境界가 分明하지 아니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
까?

(答) 1985年 國勢調查調查區關係資料와 現地를 對照하여 變化한
部分을 確認하고隣接調查區와의 位置關係를 考慮하여 前記
調查區資料에 가장 가까운 境界線을 設定합니다. 이 處理를
취할 경우는 반드시 指導員에 連絡하여 指示를 받도록 하십시오.

單位區의 抽出方
法

問2 單位區가 되는 調査地域은 어떤 方法으로 選定됩니까?

(答) 單位區는 대략 다음 方法에 의해 選定됩니다.

各市町村의 全區域을 調査對象家口數가 거의 均等하게 되도록 미리
정해진 調査員數와 같은 數의 地域으로 分割하여 그것을 國
勢調查調查區地圖의 地域을 單位로 하여 調査對象家口數가
1,500以上이 되면 일괄하여 그 全體의 地域을 1블록으로 합니
다. 또 그 블록안에 國勢調查調查區를 單位로 하여 調査對象家
口가 75以上이 되면 일괄하여 地域(單位區)를 設定합니다.
다음은 設定된 블록안에서 任意로 1블록을 抽出하는 동시에 單位
區를 指定하는 方向(順番대로 또는 그 逆으로)을 정하여 그
것에 따라 調査地域을 系統的으로 抽出하여 各調查員이 담당
한 2個單位區가 選定되어집니다.

(2) 單位區家口名簿의 作成과 提出

指導員으로 부터 새로 調査하는 單位區의 指示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單位區家口名簿」를 作成하여 指導員이 指定하는 날까지 提出한다.

擔當한 單位區內를 빠짐없이 차례로 實地로 巡回하여 居住하는 全家口(農漁家口・單身者家口등의 調査對象外의 家口도 포함됨)에 대하여 「單位區家口名簿」에 家口마다 家口主의 姓名・住所・勤勞・一般家口區分, 職業 등을 記入합니다.

또 名簿作成을 위해 巡回할 경우 各家口에 「家計調查에 協力해 주십시오」를 配付하여 理解를 구하도록 합니다. 名簿作成의 詳細한 內容은 다음에 記述한 〈家口의 選定方法〉 및 「제 3 單位區 家口名簿의 記入方法」(36 페이지)를 參照하여 틀리지 않도록 注意해야 합니다.

〈家口의 抽出方法〉

家口란 住居와 生計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集團을 말하는 것으로 1人1家口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貰房살이를 하면서 혼자서 살고있는 사람도 각각 하나의 家口(單身者家口)로 합니다. 또 寄宿舍・合宿所・下宿집 등에 살고 있는 單身者는 합쳐서 한 家口(單身者家口)로 취급합니다.

家口主란 名目上의 家口主가 아니라 그 家口의 家計上의 主要한 收入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調査對象外家口〉

다음의 家口는 家計調查對象에서 除外됩니다.

單位區의 地域	問3 交通이 不便한 地域이 選定되어지면 交通費의 不足과 家口와의 連絡困難等 여러가지 問題가 생기게 됨으로 될 수 있는 한 그 都市의 中心部를 選定하면 어떻겠습니까? (答) 家計調查는 標本調查임으로 交通의 便利로 調査하기 쉬운 中心都만 選定하게 되면 結果的으로 偏重되어 참된 國民生活의 實態를 反映할 수 없게 됩니다. 質問한 것과 같은 경우라도 調査에서 除外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저히 調査가 困難하여 不可能할 경우는 指導員에 連絡하여 주십시오.
---------	--

① 農林漁家口

- 耕地 10 헥타르 以上을 耕作하는 家口. 단, 耕地面積이 10 헥타르未滿의 家口 및 耕地를 耕作하지 않는 家口라도 農業粗收益이 前記規模와 同等以上の 家口는 취급합니다. (※ 5年 10萬円以上)
- 林業을 經營하는 家口
- 漁船을 使用하여 海面 또는 內水面에서 漁業을 經營하는 家口, 단 漁船을 使用하지 않더라도 定置網漁業・水產養殖業・海面養殖業 등을 經營하는 家口는 漁業家口의 對象이 됩니다.

② 單身者家口

〈便宜上 調查對象에서 除外하는 家口〉

다음 아래와 같은 特殊한 家口도 便宜上, 家計調查對象에서 除外됩니다.

- 料食店, 旅館 또는 下宿집 (寄宿舍를 포함함)
- 常住하지 않는 同居人이 있는 家口
- 營業上 使用人이 4人以上 있는 家口
- 家口主가 長期間 (3個月以上) 不在中인 家口
- 外國人家口

適格家口라는 것은 家計調查의 對象家口를 말하며 不適格家口란 調查對象外의 家口 및 便宜上 調查對象에서 除外하는 家口를 말합니다. 適格家口를 勤勞者家口, 一般家口로 區分하나 一般家口中에서는 無職家口를 別途의 調查對象으로 합니다.

勤勞者家口란 家口主가 會社, 官公署, 學校, 工場, 商店 등에 고용되어 勤務하는 家口를 말하며 또 家口主가 社長, 常務理事, 理事 등 會社 (株式, 合名, 有限을 포함함) 團體의 任員등, 使用者の 立場에 있는 家口는 一般家口에 포함시킵니다.

貰房家口 또는 아파트에 居住하는 家口의 取得方法

問 4 「單位區家口名簿」는 貰房家口나 아파트에 居住하는 家口에 대해서도 그 家口主와 면접하여 作成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 家口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가령 집主人이나 管理人에게 물어서 作成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까?

(答) 그 家口의 家口主 또는 家口員에게 물어서 作成합니다. 不可能할 경우는 집주인이나 管理人에게 물어서 作成합니다.

一般家口란 上記의 勤勞者家口 以外의 家口 가령 自營業者, 個人經營者 또는 上記의 使用者側에 속하는 家口를 말합니다.

無職家口란 一般家口中 家口主가 無職인 家口를 말하며 가령 年金·恩給·送金·保險金·財產收入 등에 의해 家計를 운영하는 家口를 말합니다.

[參照 「別表5 家計調査職業分類表」(117 p)]

3. 家計簿의 記入依賴 및 調査開始時 해야 할 일

(1) 調査豫定家口의 指示

單位區更新時의 調査豫定家口의 抽出은 調査員이 提出한 「單位區家口名簿」에 근거하여 指導員이 行하게 됩니다. 調査豫定家口는 「單位區家口名簿」의 「7單位區更新」欄의 「一連家口番號」에 ○으로 표시하여 指導員으로 부터 指示되어집니다. (이番號

家計簿의 記入內容과 家口의 抽出	問5 「最初에 抽出된 家口」라도 家計簿의 記入內容이 좋지 않 는 家口가 있고 역으로 「그 以外의 家口」로 家計簿의 記入內容이 대단히 좋은 家口가 있음니다만, 統計的으로 어느쪽의 家口에 依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答) 家計調查는 標本調查임으로 언제나 「最初에 抽出된 家口」에 記入依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記入이 좋다고 해서 「그以外의 家口에 依賴하는 것은 意圖의인 것임으로 「最初에 抽出된 家口」에 맡아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위에 記入指導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記入期間終了後의 繼續	問6 家計簿記入期間이 6個月 경과하더 라도 계속 記入해도 좋 다는 家口의 경우 이 家口에 다시 依賴해도 좋습니까? (答) 記入期間은 6個月이 原則임으로 이러한 家口는再次 調査 家口로 할 수 없습니다.
準調查家口로 한後의 調査	問7 記入依賴時 2~3個月이 경과하면 家計簿를 記入할 수 있게 되나 지금은 할 수 없다는 家口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2~3個月 후 記入 依賴할 수 없습니까? (答) 이런 家口가 부득이 準調查家口가 된 경우라도 일단 準調查 家口로 한 以上은 標本管理의 原則에 의해 後에 記入 依賴할 수 없습니다.

는 下部欄外 「最初에 抽出된 一連家口番號」欄에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로 变경하여 記入되어 있습니다.

(2) 家計簿의 記入依賴

指導員으로 부터 指示된 調査算定家口를 訪問하여 家計簿를 記入하도록 依賴합니다.

i) 調査豫定家口는 標本調査理論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것임으로, 만약에 그 家口가

農業兼用家口 등	問8 不適格家口의 條件(調査對象外家口)으로 「耕地面積이 10 헥타르 未滿의 家口 및 耕地를 耕作하지 않는 가구라도 農業粗收益이 前記規模에서 얻는 결과 同等以上의 家口는 農業을 경영하는 家口로 취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그 경우 同等以上의 基準이란 무엇입니까?
(答) 이 調査에서는 年間 農業粗收益이 10 萬円以上인 경우는 不適格家口로 취급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農業粗收益」이란 農產物의 賣上高(現物收入도 포함)는 家計에서 消費한 分의 見積額을 合算한 것을 말합니다.	
養鷄業을 하는 家口	問9 養鷄業을 하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취급합니까? (答) 養鷄業의 收益이 年間 10 萬円以上이면 不適格家口로 취급합니다.
耕 地 面 積	問10 「耕地面積」에는 牧草地가 포함됩니까? (答) 씨를 뿌리고 肥培管理를 하면 포함시킵니다.
水產會社가 雇傭 되어 있는 家口	問11 水產會社에 고용되어 있는 家口는 適格家口가 됩니까? (答) 適格家口(勤勞者家口)로 취급합니다.
家口員이 漁業을 하고 있는 家口	問12 家口員이 農業, 漁業 또는 林業을 하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취급합니까? (答) 家口員이 漁業 또는 林業을 하면 不適格家口가 됩니다. 또 農業을 경영하는 경우는 農業規模가 不適格家의 條件에 합당하면 不適格家口가 됩니다.

調查되어지지 않으면 結果數字가 偏向되게 되므로, 全國 또는 地方別의 所得과 消費를 正確하게 反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不適格家口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家計簿」의 記入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 調查의 趣旨와 이 調查豫定家口로 選定된 理由를 충분히 說明하여 꼭 記入해 주도록 說得을 해야 합니다.

家計簿 記入依賴는 附錄 「家口와 面接時의 參考」를 131페이지를 參考하여 다음과 같이 實施하여 주십시오.

ㄱ. 調查豫定家口에는 미리 「依賴狀」 및 「家計調査에 대하여」가 送附되어 있으

內水面에서 養殖業을 경영하는 家口	問 13 內水面에서 漁船을 使用하지 않고 잉어나 뱌장어등의 養殖業을 하는 家口는 適格家口입니까? (答) 不適格家口입니다.
飲食店을 兼營하는 住宅의 家口	問 14 飲食店을 경영하는 家口 가운데 住宅과 商店을 併用있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서 취급됩니다만, 同一 대지내에 店과 住宅이 別途로 되어 있을 경우는 適格家口로 취급합니까? (答) 食料品의 消費가 商店과 家計로 나뉘지지 않은 경우는 不適格家口로 취급합니다.
長期間 不在의 基準	問 15 不適格家口의 條件으로 「家口主가 長期間 不在의 家口」라고 되어 있습니다. 長期間이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말합니까? (答) 이 調査에는 6個月間의 太半(3個月)을 계속해서 不在하는 家口는 不適格 家口로 합니다.
家賃, 電氣料 등이 모두 無償의 家口	問 16 家賃, 電氣料金, 가스料金, 水道料金이 모두 無償의 家口가 있는데 不適格 家口가 아닙니까? (答) 適格家口입니다. 그 記入의 方法에 관하여는 問 42(64페이지)를 參照해 주십시오. 또 家口票의 備考欄에도 그 사설을 記入해 주십시오.
送金에 의해서 生活하는 老夫婦 家口	問 17 家口主가 無職으로 送金에 의하여 生活하고 있는 老夫婦家口는 適格家口가 됩니까? (答) 適格家口입니다.

므로 最初에 調査豫定家口를 訪問할때는 먼저 「家計調査員證」을 相對方에게 提示하여 不信感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ㄴ. 調査의 趣旨와 調査豫定家口로서 선정된 理由를 잘 說明하여 協力を 구해야 합니다.

ㄷ. 記入依頼途中 그 家口가 不適格家口라고 判明되었을 경우나, 勤勞者家口로서 指定된 調査豫定家口가 一般家口라든지 또는 一般家口로 指定된 家口가 勤勞者家口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家口에 事情을 잘 說明하여 記入依頼를 中斷해야 합니다. 그리고 「6 備考」欄에 그 事情을 記入하여 調査員이 代替家口를 選定하여 記入依

家族全員이 約 1 個月 不在하는 경 우	問18 記入開始最初의 1個月間에 家族全員이 不在한다는 사실을 記入開始前에 미리 알고 있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答) 適格家口로서 취급합니다만 調査開始月의 記入이 不可能할 경우 不在家口로서 準調查家口票를 作成하여 다른 家口와 代 替합니다.
家口主가 出他勞 務를 할 경우	問19 家口主가 長期間不在하는 家口는 不適格家口가 됩니다만, 調査 期間의 途中에 出他勞務豫定의 경우도 不適格 家口로 취급합 니까? (答) 그 사실이 사전에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不適 格 家口가 됩니다.
家口主가 1週間 마다 歸家할 경우	問20 單身 부임하고 있는 家口主가 每週土曜日, 日曜일에 歸家하 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취급합니까? (答) 이 와같은 家口는 適格家口로 취급합니다.
併用住宅의 家口	問21 飲食店, 旅館 또는 下宿집을 경영하는 家口中 併用住宅의 家 口만을 不適格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答) 家計費中 가장 主要한 支出項目인 食料費가 營業上의 經費 와 分離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營業場所가 住居와 떨어져 있는 家口에서는 通常, 食料費의 支出이 營業上의 經 費와 分離되어 있다고 보고 適格家口로 취급한 것입니다.

賴를 해야 합니다.

參照 「第4. 調査豫定家口의 抽出方法」

己. 불가피한 理由로 도저히 記入을 맡아주지 않는 家口가 있을 경우 「單位區家口名簿」의 「6 備考」欄에 그 理由를 記入하고 代替家口를 선정하여 記入 依賴를 합니다. 이때 記入을 허락하지 않았던 家口를 準調查家口로서 반드시 「準調查家口票」에 의해 所定事項을 面接하여 調査토록 합니다.

〔參照 「第4. 調査豫定家口의 選定方法(45 페이지)」〕

〔(5) 準調查家口票의 作成과 提出(27 페이지)〕

(3) 調査家口番號의 決定과 單位區 家口名簿의 提出

記入을 승낙한 家口를 調査家口로 하고 그 調査家口에 대해서 單位區마다에 「單位區家口名簿」의 記載順으로 勤勞者家口는 01에서 시작하는 番號를 一般家口에는 11

식사를 제공받는 同居인이 있는 家 口	問22 식사를 제공받는 同居人이 있는 家口(素人下宿)는 不適格 家口로 합니까? 제공받는 식사가 한끼씩이라도 不適格입니까? (答) 不適格 家口로 취급합니다.
單身의 雇傭主와 함께 居住하는 營 業上의 使用人만 있는 家口	問23 合宿하는 營業上의 使用人이 3人以下의 家口는 適格家口가 됩니까? 이 경우 單身의 고용주와 함께사는 營業上의 使用 人 3人以下의 家口도 適格으로 봅니까? (答) 雇傭主가 單身者의 경우는 不適格 家口로 봅니다.
獨身 兄弟의 家口	問24 獨身의 兄弟의 家口는 適格家口로 취급합니까? (答) 家計를 함께하고 있으면 適格家口로 취급합니다.
歸化한 者의 家口	問25 外國人 家口는 不適格 家口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경우 日本 에 归化한 者의 家口는 適格家口로 합니까? (答) 日本에 归化한 者의 家口는 適格家口가 됩니다만 家計簿의 記入能力이 없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취급합니다.
再 調 查 家 口	問26 以前에 調査한 家口를 다시 調査家口로 지정해도 관계 없음 니까? (答) 以前에 調査한 家口라도 調査家口로서 選定해도 좋습니다.

에서 시작하는 番號를 각각 「單位區家口名簿」의 「7. 單位區更新」欄의 「調査家口番號」欄에 記入합니다. 이 「單位區家口名簿」는 指導員이 指示하는 日字까지 提出합니다. 더욱이 指導員이 檢查한 후에 넘겨받은 「單位區家口名簿」는 臨時交替時에 补完訂正하는데 利用합니다.

參照 「單位區家口名簿 記入例 (單位區更新의 경우)」

(4) 家口票의 作成과 提出

調査家口에 대하여 記入開始 전에 早速히 「家口票」를 作成합니다.

「家口票」는 調査員이 家口主 또는 그 家口員으로 부터 직접 불어서 作成하되 1家口에 3部씩 作成합니다.

1部는 「調査員用」으로 남겨두고 2部는 指導員에게 提出합니다. 더욱이 後에 作成하는 臨時交替의 경우에 새롭게 調査하는 家口에 대하여 「家口票」를 作成합니다.

「家口票」 作成후에는 「家口票」의 記入事項에 變更이 發生한 경우는 그 變更된 項目에 대하여 調査員이 保管하고 있는 「家口票」를 訂正하는 同時に 別途로 調査員用의 用紙를 使用하여 上部欄外事項 및 變更事項을 記入한 「家口票」 1部를 作成하여 指導員에서 提出합니다. 이 「家口票」를 「訂正家口票」라고 말합니다.

參照 「第5. 家口票의 記入方法 (51 페이지)」

〔8. 調査家口의 臨時交替 時의 處理 (1) 臨時交替 (31 페이지)〕

〔(3) 家口票의 記入事項 變更〕

〔参考〕 家口票를 作成하는 理由

家口票를 作成하는 것은 다음 세가지의 理由가 있습니다.

1. 1家口當의 收入・支出를 項目別로 集計하는 경우에는 家口의 屬性(人員數・類型・家口主의 職業・年令등) 別로 分類하여, 어떤 差異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 家口 및 家口員의 屬性을 把握하는것.
2. 上記 1과 같은 結果集計에 直接使用하지 않으나, 家計簿의 記入內容을 家計收支項目 分類에 따라 分類할 때 補助的인 事項을 把握하는것.
3. 家口의 異動狀況等을 把握하여 調査家口로서 適格한지 아닌지를 判斷하거나, 家計簿의 記入內容을 審查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事項을 把握하는것.

(5) 準調査家口票의 作成과 提出

「準調査家口票」는 調査豫定家口로서 抽出되었으나 부득이한 理由로 記入을 승낙 받지 못한 家口의 全部에 대하여 家口主 또는 家口員과 面接하여 作成합니다. 記入 依賴時의 確認으로 家口區分에 錯誤가 생겼거나 不適格家口라는 것이 判明되어 調査家口가 되지 못한 家口에 대해서는 作成할 必要가 없습니다. 作成된 「準調査家口票」는 調査家口에 대해 作成하는 「家口票」와 함께 指導員에게 提出해야 합니다.

參照 「第6. 準調査家口票를 쓰는 방법」

〔参考〕 ○ 準調査家口票를 作成하는 理由

家計調査는 標本調査임으로, 調査豫定家口가 調査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結果에 偏向이 發生하게 됩니다. 이 偏向을 알기 위해, 記入拒否 家口가 어떤 職業에 많은가 또 生活水準이 높은 家口가 높은가, 낮은 家口가 많은지를 調査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準調査家口票의 利用

「準調査家口票」에는 2 가지의 使用方法이 있습니다. 그중하나는 「最初에 抽出된 家口」 全體가 全國의 縮圖가 되어 있다는 點에서 「最初에 抽出된 家口」가 準調査家口가 되었으므로 어느 程度의 最初集計結果에 偏向이 생기는가를 알기위해서 입니다. 또하나는 準調査家口 全體가 어떤 屬性의 家口 인가를 파악하여 調査의 企劃・結果의 分析 등의 參考資料로 하기위해서 입니다.

(6) 家計簿의 配付

調査家口에 「家計簿」를 配付하기 전에 미리 表紙의 「家口區分」, 「市町村番號」, 「單位區符號」, 「調査家口番號」, 「一連家口番號」 및 「記入開始 부터의 月數」를 記入하고서, 調査家口에 「家計簿」를 配付하여 勤勞者家口 및 無職者家口에는 家計上의 收入과 支出을, 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에는 家計上의 支出만을 每日 記入하게 합니다.

더욱이 「家計簿」에는 每月 1日부터 15日까지 (1期)의 分量을 1卷에, 16日부터 月末까지 (2期)의 分量을 1卷으로 각각 나누어 記入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最初에 「家計簿」를 配付할때 「家計簿保管봉투」를 함께 配付하게 됩니다.

[參照 「家計簿을 쓰는 방법 」(72 페이지)]

(7) 調査用品의 配付

調査家口에는 記入에 必要한 「電子計算器」, 「샤프펜」과 함께 「家計簿」의 「數量」欄의 記入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 「저울」도 配付하게 됩니다.

4. 調査家口에 對한 記入 指導

(1) 記入開始 前의 指導

처음으로 說明하는 것임으로 세세한점 등을 언급하지 않고 그 家口에 알맞는例를 들어, 「家計簿」에 있는 記入例 등을 利用하여 記入方法을 說明합니다. 특히 다음의 要點은 반드시 說明해 주셔야 합니다.

① 그날의 收入과 支出은 반드시 그날중에 「家計簿」에 記入한다.

② 支出이 없는 날도 1페이지를 使用하여 날자와 曜日을 記入하고 가령 「支出 없음」과 같은 記入을 해야할것

③ 收入은 그 種類의 하나하나를 記入하고 支出은 1品目마다 記入할것

④ 品名은 가령 「양파」, 「저린삼치」 등의 個個의 名稱을 具體的으로 記入하며 「野菜」, 「고기」등 처럼 묶어서 記入하지 말것

⑤ 購入數量을 記入할것, 특히 食料品, 燃料 등에 대해서는 「kg」, 「ℓ」 등의 計量單位로 記入할것. 또한 電氣料金 가스料金 등도 使用數量을 記入할것.

[參照 「別表7 消費支出의品目 項目 및 數量單位의 一覽表 」]

⑥ 口座自動對替를 利用하여 支拂하는 境遇에는 「口座自動對替」欄을 잊지 않고 記入할 것

⑦ 外上 또는 月賦購入 또는 크레디트카드에 의한 購入도 代金을 支拂했을때 뿐만 아니라 物品을 손에 넣었을 때도 그때마다 記入할것.

(2) 記入期間中の 指導

1. 세로記入을 시작한 家口에 내한 指導

記入指導는 記入開始直後가 가장 重要함으로 記入을 始作한 月의 5日까지는 반드시 擔當하는 調査家口를 모두 訪問하여, 實際로 쓰는 方法에 대한 疑問點의 有無를 물어보고 만약에 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說明해 주도록 하고, 또 最初에 指導한 方法과 같이 記入하고 있는지 如否를 「家計簿」의 內容을 보고

審査하여 틀린 곳이나 不備한 點이 있으면 즉시 指導하여 調査家口에서 修正하도록 하게 합니다.

記入開始前에 說明에서 빠진 點이 없도록 하고,例外의인 것에 대한 說明은 可及的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家口의 狀況에 따라 判斷하여, 比較의 빈도수가 높은 例를 順次的으로 거론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합니다.

۷. 그후의 指導

그후의 指導는 每月 적어도 4회(「家計簿」의 收集과 그 以外 2회)는 調査家口를 訪問하여 「家計簿」의 內容을 審査하고 正確히 記入할 수 있도록 指導합니다. 內容 審査를 할때는 「別表2 家計簿의 內容 審査要領과 그 處理」를 參照하도록 하십시오.

[參照 「제7 家計簿을 쓰는 방법(72 페이지)」]

5. 家計簿의 收集과 內容 審査

每月終了後 調査家口를 訪問하여 「家計簿」를 收集합니다.

(1) 收集時의 內容 審査

그 現場에서 「別表2 家計簿의 內容 審査要領과 그 處理(110 페이지)」를 參考로 「家計簿」의 記入內容을 審査하여 誤記가 있으면 調査家口에 물어서 修正합니다.

이때 每期의 末日(15日 또는 月末)에 家口人員數 및 就業人員數를 물어서 「家計簿」表紙의 所定欄에 記入합니다.

家口人員 또는 就業人員의 變更가 있으면 訂正家口票를 作成합니다.

[參照 (3) 家口票의 記入事項變更(34 페이지)]

(2) 收集後의 內容 審査

1. 家計簿의 「금일의 現金殘高」를 中心으로 收支바ランス를 審査를 하고 記入이 누락되었거나 誤記된 곳이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2. 購入數量의 어떤 品名에 대해서는 單價에 의한 支出金額의 妥當性을 審査합니다.

6. 家計簿의 提出

(1) 家計簿의 提出

內容 審査를 마친 「家計簿」는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로 각각 單位區符號 · 調査家口番號의 順으로 每期에 定하여진 期日까지 指導員에 提出합니다.

이때 臨時交替에 의한 새로 調査家口가 된 家口의 「家計簿」에는 表紙右上部에 ×표로 朱書하여 그 事情을 「家計簿」의 「通信欄」에 記入하고 「調查員」

欄에 捤印하여 提出합니다.

[參照 「8調査家口의 臨時交替時の 處理」 (31페이지)]

(2) 記入未 完了된 家計簿의 取扱方法

提出日字까지 記入完了하지 못한 調査家口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完了된 家口分만을 提出하고, 提出이 늦어지는 家口分에 대해서는 提出豫定日을 指導員에 通報하고 그날까지는 반드시 提出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때까지도 記入을 完了하지 못한 調査家口가 있을 時에는 그 家口의 家計簿에 있는 通信欄에 그 事情을 記入하여 提出합니다.

(3) 指導員으로 부터 照會가 있을 경우의 再調査

「家計簿」・「家口票」 등의 提出後 指導員으로 부터 그 記入內容등에 대한 疑問點을 照會할 때가 있음으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調査家口를 訪問하여 再調査한 뒤에 回答하도록 합니다.

7. 年間收入調查 方法

各調査家口에 대하여 記入開始後 2個月째의 前半에 「年間收入調查票」에 의해 記入開始月을 포함한 過去 1年間의 收入을 調査합니다.

「年間收入調查票」는 記入開始 2個月째의 前半 (1個月째의 2期의 「家計簿」收集時)에 「年間收入調查에 관한 依頼狀」과 함께 配付하여 여기에 調査家口가 記入하여 同時に 配付한 年間收入調查用봉투에 넣어 密封하도록 依頼합니다. 이 密封된 調査票는 2個月째의 1期의 「家計簿」와 함께 調査員이 收集합니다.

年間收入調查는 家口全體의 年間所得을 調査하는 것임으로 家口員各者에 대한 年間收入의 記入을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指導해야 합니다.

더욱이 臨時交替로 새로 記入을 始作한 家口에 대해서도 記入期間이 2個月 以上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年間收入을 調査합니다.

[參照 「제 8. 年間收入調查票를 쓰는 방법」 (100페이지)]

[8. 調査家口의 臨時交替 時의 處理] (31페이지)]

〔参考〕 年間收入調査를 實施하는 理由

各家庭에서의 生活設計는 보너스 등을 포함한 1年間의 收入을 基準으로 1年單位로 행하여 집니다. 따라서 國民生活實態를 알기 위해서 每月의 家計費의 動向, 貯蓄動向을 年間收入額과의 關係에 의해 파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家計調查의 各家口는 6個月間 밖에 繼續調查하지 아니함으로, 別途로 年間收入調査를 行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年間收入別의 結果는 所得階級別의 統計表로서 가장 重要한 統計表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8. 調査家口의 臨時交替時 處理

(1) 臨時交替

1. 調査家口가 定期交替되기 전에 다음에 列舉하는 事情이 發生 했을 때는 指導員의 指示를 받고 調査員이 代替家口를 抽出하여 記入依賴하게 됩니다.

1. 家口가 單位區外로 轉出했을 경우 단 轉出한 곳이 同一市町村이고 調査可查可能한 경우는 그 輸出된 곳에서 調査합니다.

2. 家口가 不適格家口인 경우

3. 其他 交替가 必要할 경우

이와같이 定期交替하기 前의 家口의 交替를 臨時交替라고 합니다. 또 月의 中間에 交替하는 것은 될수있는한 피해야 합니다.

二. 交替家口의 抽出 및 單位區家口名簿의 記入

調査員이 「제 4 調査豫定家口의 抽出方法」(45페이지)에 서술된 要領에 따라 交替家口를 抽出합니다.

臨時交替에 의해 調査를 中止한 家口에 대하여는 「單位區家口名簿」의 「6備考」欄에 交替한 理由를 記入하고 새로 記入을 始作한 家口에 대해서는 「調査家口番號」欄에 調査家口番號를 記入합니다. 調査家口番號는 交替前의 家口에 調査家口番號와 同一한 番號를 使用합니다.

三. 家計簿의 記入依賴

定期交替와 同一한 要領으로 記入依賴를 합니다.

〔參照 「3. 家計簿의 記入依賴 및 調査開始時의 할일」(21페이지)〕

四. 家口票·準調查家口票의 作成과 提出

定期交替時와 同一하게 調査를 승낙한 家口에 대하여 「家口票」를 作成하여

指導員에게指出합니다. 또 家口票作成時 家口票下段의 「※ 臨時交替의 경우에 前調査家口에 관해 記入합니다」欄에 該當事項을 記入합니다.

부득이한 理由로 記入을 승낙하지 않았던 家口에 대해서는 「準調查家口票」를作成하여 指導員에게指出합니다.

이러한 「家口票」, 「準調查家口票」의 抽出區分은 모두 「其他家口」가 됨으로 注意해야 합니다.

參照 「제5 家口票를 쓰는 방법」(51 페이지)

「제6 準調查家口票를 쓰는 방법」(69 페이지)

口. 家計簿의 提出

臨時交替로 記入을 中止한 家口에 대하여는 그 家口의 「家計簿」의 「通信欄」에 그 理由를 具體的으로 記入하여 指導員에 提出합니다. 한편 새로 調査家口가 된 家口에 관해서는 「家計簿」의 表地右上部에 ×표로 朱書하여 그 事情을 「家計簿」의 「通信欄」에 記入합니다.

日. 年間收入調查

臨時交替로 새로 記入을 시작한 家口에 관해서도 記入期間이 2個月以上的 경우는 반드시 年間收入調查를 합니다.

[參照 「7 年間收入調查方法」(30 페이지)]

(2) 調査家口의 家口區分 變更

調査家口에 있어서 調査期間中에 家口主가 바뀌어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調査事項을 變更하여 調査를 繼續합니다.

ㄱ. 一般家口(無職家口는 例外)에서 勤勞者家口 또는 無職家口로 變更되었을 경우는 「家計簿」의 收入에 관한 事項을 添加합니다. 또 勤勞者家口 또는 無職家口에서 一般家口(無職家口는 例外)로 바뀌어졌을 경우에는 「家計簿」의 收入에 관한 事項을 除外합니다.

또한 月의 中間에 家口區分이 變更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變更합니다.

臨時交替家口에 대한 年間收入調查의 時期	問 27 月의 中間에 臨時交替하여 새로 調査家口가 된 家口의 年間收入調查는 언제 實施합니까? (答) 家計簿의 表紙 「記入開始부터의 月數」欄에 「2」에 記入한月初에 調査합니다.
-----------------------	--

ㄴ. 調査家口番號를 다음 페이지의 「調査家口番號를 붙이는 방법」에 의해 새로 다시 붙이게 됩니다. 또한 調査員이 保管하고 있는 「單位區家口名簿」의 「6 備考」欄에 區分變更의 理由를 記入하여 「調査家口番號」欄의 番號를 修正합니다.

ㄷ. 家口區分에 變更이 있었던 期의 「家計簿」表紙 「家口區分」欄은 變更 後의 家口區分에 의해 該當하는 文字를 ◎표로 표시합니다.

ㄹ. 修正家口票를 作成합니다.

[參照 「(3) 家口票의 記入事項의 變更」(34 페이지)]

〈調査家口番號를 붙이는 方法〉

① 調査家口가 調査期間中에 勤勞者家口에서 一般家口로 또는 一般家口에서 勤勞者家口로 바뀌어졌을 때 그 調査家口番號(定期交替時に 붙인 番號)에 「50」를 더합니다.

〈例〉 調査家口番號 03의 勤勞家口가 一般家口로 變更되었을 때

勤勞者家口 一般家口

03 → 53

調査家口番號 12의 一般家口가 勤勞者家口로 變更되었을 때

一般家口 勤勞者家口

12 → 62

② 同一 調査家口가 調査期間中에 家口區分의 變更이 2回 發生했을 경우는, 最初의 家口區分의 變更時에 더한 50을 뺍니다. 3回 以上일 경우에는 順次의 으로 「50」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여 新調査家口番號로 합니다.

〈例〉 調査家口番號가 03의 勤勞者家口가 一般家口로 變更되고 또한 勤勞者家口로 變更되었을 경우

勤勞者家口 一般家口 勤勞者家口

03 → 53 → 03

③ 月의 中間에 家口區分이 變更되었을 때는 그 時期에 調査家口番號를 다시 고쳐 붙입니다.

④ 家口區分이 變更된 調査家口가 轉出等의 理由로 臨時交替된 경우는 새로 選定한 調査家口의 調査家口番號는 定期交替時に 붙인 것과 調査番號를 이어 붙이게 됩니다.

(3) 家口票 記入事項 變更

「家口票」의 記入事項에 變更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變更된 것은 調查員保管用의 「家口票」를 訂正하는 同時に 下記의 要領에 의해 處理됩니다. 또한 「家口票」의 變更事項에는 誤記의 訂正 및 記入누락의 補完도 포함됨으로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1. 變更하는 경우의 處理方法

1. 變更事項의 下記의 경우는 반드시 「訂正家口票」를 作成합니다.

- ① 上部欄外 「勤・一・無」
- ② 家口主에 關한 記入欄 (「(1)~(13)」欄)
- ③ 家口主 以外의 家口員의 記入欄 (「(1)~(17)」)에 相互에 關聯하여 2欄以上을 變更할 경우 (가령 學校를 卒業하고 就職한 關係로 變更이 생겼을 경우)
- ④ 住居에 關한 記入欄 (「(18)~(25)」欄)에 「住居의 所有關係」가 變更된 경우

2. 變更事項이 下記의 경우는 家計簿의 「通信欄」에 記入합니다.

- ① 家口主 以外의 家口員記入欄 (「(1)~(15)」欄) 으로 1欄 만의 變更의 경우 및 相互關連하지 않고 2欄以上變更이 있을 경우
- ② 住居에 關하는 記入欄 (「(18)~(25)」欄으로 「住居의 所有關係」를 變更하는 理由以外 것으로 訂正할 경우
- ③ 「(16), (17), (26)~」欄 및 欄外 事項

2. 訂正家口票의 作成方法

「訂正家口票」는 調査員用의 用紙를 使用하여 一部作成하고, 그때마다 指導員에게 提出합니다. 「訂正家口票」에는 上部 欄外事項 및 變更事項을 記入하여 變更한 事項의 테두리만을 붉은 색펜으로 테두리를 치고 右上부여백에 「訂正」이라는 朱書를 합니다.

또한 家口員事項 「(1)~(17)」欄에 關한 變更은 반드시 元來의 家口票에 記載된 家口員番號에 對應하는 欄에 變更事項을 記入합니다.

9. 記入期間 (6個月) 終了後의 할일

- (1) 記入期間終了後 各 調査家口에 「謝禮狀」을 配付하여 調査의 協力에 대한 謝意를 표합니다.

(2) 指導員의 指示에 따라 保管하고 있는 使用이 끝난 「家口票」를 提出합니다.

名簿補完時와 後半 6個月間의 할일

10. 單位區家口名簿의 補完

6個月間 調査한 家口는 7個月 째에 그 單位區內에서 다른 家口에 定期交替합니다. 이 定期交替합니다. 이 定期交替를 하기 전에 單位區內를 한번 더 實地踏査하여 調査員이 保管하고 있는 「單位區家口名簿」를 「제 3 單位區家口 名簿를 쓰는 方法」(36 페이지)를 參照하여 補完합니다.

11. 調査豫定家口의 抽出·記入依賴 및 單位區家口名簿의 提出

補完한 「單位區家口名簿」에 의거하여 調査員自身이 定期交替하는 6家口를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로 割當하고, 그다음에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를 使用하여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합니다. 抽出에 끝나면 抽出된 家口의 一連家口番號를 「單位區家口名簿」의 下段에 잊지 않고 記入합니다. 이 調査豫定家口에 記入依賴하고, 記入을 승낙한 家口를 調査家口로서 選定하게 됩니다. 選定이 끝나면, 「單位區 家口名簿」를 指導員에 提出하고 寫本을 受領하게 됩니다.

[參照 「제 4 調査豫定家口의 抽出方法」(45 페이지)]

12. 記入依賴 後 해야할 일

調查家口番號를 붙이는 方法, 「家口票」의 作成方法, 「家計簿」의 配付·記入指導, 收集·內容審查·提出 및 年間收入調查 등의 할일은 單位區更新時와 前半 6個月의 할일 과 同一하게 행하여집니다. 또한 後半 6個月의 調査終了後 調査員이 保管하여 남겨놓은 「單位區家口名簿」 또 「家口票」를 指導員의 指示에 따라 提出합니다.

第3 單位區家口名簿의 作成方法

「單位區家口名簿」의 作成은 調査家口를 正確히 選定하기 위한 가장 重要한 일입니다. 아래의 說明과 單位區家口名簿 記入例 (41, 44 페이지)를 參照하여 錯誤가 없도록 注意를 要합니다.

「單位區家口名簿」에 관한 일

〈單位區更新時〉

- 單位區更新時에 名簿를 새로 作成하여 指導員에 提出합니다.
- 指導員으로 부터 調査豫定家口가 名簿에 의해 指示되어 집니다.
- 記入依賴를 하고, 調査家口가 決定되면 名簿에 所定事項을 記入하여 指導員에게 提出하고, 指導員이 檢討한 後 「單位區家口名簿」의 寫本을 受領합니다.

〈名簿補完時〉

- 單位區更新時부터 6個月째달에 名簿를 補完합니다.
- 補完한 名簿에 의해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합니다.
- 記入依賴를 하고 調査家口가 決定되면 名簿에 所定事項을 記入하여, 指導員에게 提出한 後 寫本을 받습니다.
- 指導員이 檢討한 「單位區家口名簿」를 指導員으로 부터 받아 臨時交替時 補筆訂正에 利用하고, 調査終了後에는 指導員의 指示에 따라 提出합니다.

1. 單位區更新時의 名簿作成

「單位區家口名簿」의 作成 時에는 「單位區家口名簿 記入例 (單位區更新의 경우)」 (41 페이지) 및 〈家口의 決定方法〉 (19 페이지)를 參照하면서, 다음 점에 注意하여 記入합니다.

上部欄外事項

「市町村名」

市町村名을 記入합니다.

「市町村番號」, 「單位區符號」, 「85年國勢調查調查區番號」

指導員의 指示에 따라 市町村番號, 單位區更新의 當該年度 및 所定의 符號를 記入하여 그 單位區에 포함되는 1985年 國勢調查調查區番號를 記入합니다.

[參照 「單位區符號에 관하여」, 「市町村番號에 관하여」, (17
페이지)]

「抽出番號의 整理」

調査家口 抽出을 하기위해 「調査家口 抽出番號表(亂數表)」
의 整理番號는 指導員이 記入합니다.

「單位區更新(枚中 몇번째)」

名簿의 枚數에 의해 몇枚중 몇장째를 記入합니다.

「1 家口主의 姓名」

家口主의 姓名을 記入합니다. 家口主는 名目上の 家口主가 아닌 家計上 主된 收入을 올리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寄宿舍, 合宿所, 下宿집 등에 살고 있는 單身者 家口는 일괄하여 「代表者○○○」라고 記入합니다.

「2 住 所」

家口의 所在地에 관해 洞名, 番地 등을 記入합니다.

貰房家口나 아파트에 사는 家口에 관하여 「○○房」, 「○○ 아파트○○號室」과 같이 付記합니다.

「3 同一住宅內의 別途 家口의 有無」

同一 住宅內에 貰房家口 등 別途家口가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別途家口가 살고 있는 경우는 貰房을 빌려주고 있는 家口뿐만 아니라, 貰房살이를 하고 있는 家口에 대해서도 「有」를 ○표로 하고, 만약에 別途 家口가 살고 있으면 그 家口도 面接하여 所定事項을 記入합니다.

「4 家口主의 職業」

職業은 調査의 對象이 되는 適格家口인지 여부와 또는 適格家口인 경우에는, 그 家口가 勤勞者 家口인지의 區別이 될 수 있 (例: 會社事務員, 會社社長, 市議員, 市廳公務員, 小賣店主人, 學校教員, 無職)도록 記入합니다.

「5 勤勞・一般・不適格別」

名簿를 作成할때는 勤勞者家口, 一般家口別 家口區分 및 適格不適格家口를 判定하는 것이 이 調査의 重要한 事項의 하나가 됨으로, 別表 5 「家計調查職業分類表」(117 페이지) 및 「不適格家口」(20 페이지)를 參照하고, 家口를 區分하여 家口主의 職業에 의해 각각 該當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6 備 考」

이 調査에는 不適格家口로 調査對象에서 除外됨으로 각 簿作成 때는 不適格家口라고 判明되면 그 理由(農家, 單獨家口등)을 記入합니다.

또 「家計簿」를 記入依賴할 때는 準調查家口가 생긴다든지 不適格家口가 잘못하여 調査豫定家口가 되거나, 世帶區分이 틀린 경우 또는 調査期間中에 家口가 臨時交替되거나 家口區分이 變更되는 경우도, 그 理由를 記入합니다. (31, 32 페이지 參照)

「7 單位區更新」

○一連家口番號

「5 勤勞・一般 不適格의 區別」欄의 不適格에 ○으로 표시된 家口에 관해서는 「7 單位區更新」欄에 斜線을 긋고 나머지의 適格家口 全部에 대하여 勤勞者家口, 一般家口別로 「一連家口番號」欄에 1에서 시작하는 番號를 불입니다.

〈記入依賴의 要點〉

單位區家口名簿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勤勞者家口와 一般家口의 區別이며, 家口主의 職業에 의해 判斷합니다. 이때 「別表 5 家計調查職業分類表」(117 페이지)를 머리에 기억하면서 質問하면 區別이 分明하게 됩니다. 또 會社나 官公署에 근무하고 있다해서 勤勞者家口라고 미리 判斷하지 말고, 幹部職員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幹部職員이면 一般家口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調査家口番號

• 定期交替의 경우

記入을 승낙한 家口를 調査家口로 하여, 單位區마다 그 調査家口에 대하여 名簿記載의順에 勤勞者家口는 01에서 시작되는 番號를, 一般家口에는 11에서 시작되는 番號를 記入합니다. 그 番號가, 그 調査家口의 調査家口番號가 됩니다.

• 臨時交替의 경우

臨時交替한 家口의 調査家口番號는 交替前의 家口의 調査家口番號를 使用합니다.

• 家口區分의 變更의 경우

調査家口가 調査期間中에 勤勞者家口에서 一般家口로, 또는 一般家口에서 勤勞者家口로 變更되었을 경우에는, 「第2, 8, (2) 調査家口 家口區分의 變更」〈調査家口番號를 붙이는 方法〉(25 페이지)에서 서술한 要領에 의해 調査家口番號를 變更하여 「調査家口番號」欄의 番號를 斜線으로 긋고 말소하여, 새 調査家口番號를 그 上部에 記入하여 調査를 계속합니다.

木工手의 家口區分

問 28 木工手, 美粧은 , 職業分類表上 勤勞者家口·一般家口의 양쪽에 內容 例示에 있읍니다만, 家口 区分은 어떻게 합니까?

(答) 木工手, 美粧이 工事場 등에 雇用되어 있어 工事場에서 紹料를 받고 있을 경우는 勤勞者家口로 취급합니다만, 獨自의 으로 請負맡아 하는 경우는 一般家口로 합니다.

家口主가 勤勞者로서 休職中인 경우

問 29 家口主가 勤勞者로서 休職中인 경우, 家口區分은 어떻게 됩니까?

(答) 休職中이라도 勤務處에서 紹料를 받고 있으면 勤勞者로 하고, 勤務處에서 紹料를 전혀 받지 않고 別個機關(健康保險等)으로 부터 治療費 등을 받고 있을 경우는 一般家口로 취급합니다.

「※8 名簿補完」

名簿補完時に記入합니다.

下部欄外事項

「単位區更新」

合計家口数 및 適格家口數를 記入합니다.

割當 調査家口数 및 最初에 抽出한 一連家口番號는 指導員이 記入합니다.

「※ 名簿補完」

名簿補完時に記入합니다.

「作成月日」

単位區更新 및 名簿補完時 作成完了月日을 각각 記入합니다.

〈単位區家口名簿記入例(単位區更新의 경우)〉

市町村名	市町村番號	単位區符號	60年國勢調査 調査番號	抽出番號表 の略号番號
○○市	○○○○○	○○年011	50 51	3

家計調査
単位區家口名簿

總務廳統計局
単位區更新 4枚中1枚
※名簿補正 一枚中一枚

1 家口主 氏 名	2 住 所 (字、略名 番地等)	3 同一住 宅内の 別途家 口有無	4 家口上職業 (就業 状況?)	5 勤労・一般 不適格別	6 備 考 (不適格・ 不採用理由)	7 単位區更 新		8 ※ 名 簿 補 正	
						勤労者家口	一般家口	勤労者家口	一般家口
酒井進	北川町95-1-3	有(無)	會社事務員	勤・一 不適格		1			
高橋勝利	〃 95-2-2	有(無)	保險外交員	勤・一 不適格		4			
土井雄二	〃 95-2-1	有(無)	小賣店主	勤・(一) 不適格			3		
伊藤正一	〃 95-2-5	有(無)	大學教授	勤・一 不適格		5			
鈴木正和	城東町1-10	有(無)	會社營業事務	勤・一 不適格		09 01			
川名敬三	〃 1-8	有(無)	小賣店主	勤・(一) 不適格			7		
倉澤裕二	〃 1-1	有(無)	印刷業業主	勤・(一) 不適格			8		
益子英雄	城北町2-2	有(無)	會社社長	勤・(一) 不適格			20 11		
前原信夫	〃 2-3	有(無)	辦護士	勤・(一) 不適格			22		
岩渕弘	〃 2-4	有(無)	豆腐店主	勤・(一) 不適格			23		
代表者太田誠	〃 20-3 ○○佛寺町原	⑦無		勤・一 不適格	單身者家口				
今川裕之	門前町19-5	有(無)	小賣店店員	勤・一 不適格		20 02			
佐藤昭吉	〃 19-6	有(無)	自動車修理工 工場修理工	勤・一 不適格		31			
平原豊	〃 19-8	有(無)	運送店 運轉手	勤・一 不適格		32			
宮崎作雄	仲町3-2-9	有(無)	小賣店主	勤・(一) 不適格			44		
弓野敏男	〃 3-3-1	有(無)	新聞記者	勤・一 不適格		49			
小川建二	〃 3-3-2	有(無)	郵便局員	勤・一 不適格		50			
宮本隆夫	〃 3-3-3	有(無)	左官(個人)	勤・一 不適格	家口主長期入院				
清水貴志	〃 3-3-4	有(無)	鐵道乘務員	勤・一 不適格		50 04			
齋藤一	城西町1-9	有(無)	會社事務員	勤・一 不適格	5月1日より 調査開始	50 03			
石原富夫	〃 1-10	有(無)	卸賣店店員	勤・一 不適格		59			
高島康雄	〃 2-3	有(無)	小賣店店員	勤・一 不適格		62			
		合計家口數		通 格 家 口 數		最初 抽出 1連 家口番號			
		總 數		勤労者家口		勤労者家口 15 48 16 30			
単位區更新		112	106	62	44	勤労者家口	15	48	16 30
割當調査家口數			6	4	2	一般家口	21	35	
※名簿補正						勤労者家口			
割當調査家口數			6			一般家口			

←
作業調査
引込
家
庭
票
替

←
準調在家
口에
의한
補充
←
臨時
交替
에
대한
補充

- [作成方法]……名簿는 単位區別로用紙에 作成합니다. 또한 ※ 표시된 欄은 名簿補充時 使用됩니다.
- 5欄은 適格家口가 不適格家口로 別別되거나, 適格家口에 대하여 勤労者家口인가, 一般家口인가를 確認하여, 故當하는 것에 ○표를 한다.
 - 不適格家口에 대해서는 7欄(單位區更新의 標記)에 斜線을 친다.
 - 6欄에는 不適格의 理由 및 不採用의 理由와 轉出, 轉入等에 관해서 記入한다.
 - 般下段의 家口數欄은 最後의 1枚에 대해서만 記入한다.
 - 單位區更新의 標記 「不適格家口의 勤勞, 一般別の 家口數」는 각各 1連家口番號의 最終番號를 記入하고, 名簿補充의 標記은 각각 最終番號에서 計數의 數量를 記入한다.

	指道員	調査員	作成月日
更新	御	御	12月10日
※補充	御	御	月 日

2. 名簿補完方法

「單位區家口名簿」를 補完할때는 「單位區家口名簿記入例(名簿補完의 경우)」(44페이지)를 參照하면서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加除訂正합니다.

家口에 變動이 없을 경우

單位區更新時 名簿의 一連家口番號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家口에 變動이 있을 경우

轉入・轉出.....轉出한 家口는 名簿에서 削除하여 「6 備考」欄 및 「7 単位區更新」欄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二重線을 그어 一連家口番號는 缺番으로 합니다) 새로 轉入한 家口는 名簿의 末尾에 所定의 事項을 追加 記入합니다.

家口主의 變更家口主의 姓名이 變更되었을 경우는 訂正합니다.

適格・不適格의 變更不適格家口에서 適格家口로 變更되었을 경우는 轉出의 경우와 同一하게 名簿에서 削除하여 새 名簿의 末尾에 다시 追加로 記入합니다.

適格家口에서 不適格家口로 變更되었을 경우는 「※8 名簿修正」欄에 斜線을 긋습니다.(一連家口番號는 缺番으로 합니다)

家口區分의 變更勤勞者家口에서 一般家口로 變更되었을 경우, 또는 一般家口에서 勤勞者家口로 變更되었을 경우는 轉出의 경우와 同一하게 名簿에서 削除하고 새名簿의 末尾에 바꿔 씁니다.

「6 備 考」

以上과 같이 名簿의 修正을 마친 家口에 대해서는 그 理由를 記入합니다.

「※8 名簿改補」

◦ 一連家口番號

一連家口番號는 単位區更新時의 番號를 그대로 使用하게 됩니다. 새 名簿의 末尾에 追加한 家口中의 不適格 家口에 대해서는, 「※8 名簿修正」欄에 斜線긋고 나머지의 適格家口는 이미 붙여진 一連世家口號를 계속해서 勤勞者家口別로 番號로 붙입니다.

○ 調査家口番號

修正後의 名簿에 의해 새 調査家口를 振出하여 單位區更新時 와 同一하게 調査家口番號를 記入합니다.

上部欄外事項

名簿上部欄外의 「※ 名簿修正(몇매중 몇매)」欄에는 名簿修正에 使用한 枚數에 의해 몇매중 몇매째인가를 기입합니다.

下部欄外事項 「※名簿修正」

「單位區更新時」와 同一하게 하여, 名簿修正後의 合計家口 및 適格家口數를 記入합니다. 이 家口數는 一連家口番號의 最終番號와 반드시 一致하지 않으니 注意해야 합니다.

割當調查家口數 및 最初에 抽出한 一連家口番號는 調査員이 調査豫定家口의 抽出을 한後 記入합니다. 또 最初에 抽出한 一連家口番號는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로 記入합니다.

[參照 「第4 調査豫定家口의 抽出方法」(45 페이지)]

單位區를 擴張한 경우의 家口抽出方法

問 30 名簿修正時에 부득이 單位區의 地域을 擴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單位區家口名簿의 作成, 勤勞者家口·一般家口를 割當하면, 調査豫定家口의 抽出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答) 單位區家口名簿에는 擴張하기 전에 地域의 家口에 관하여 修正을 한후, 그의 末尾에 계속해 새로 追加된 地域의 家口에 관해 順次記入합니다. 이 경우 合計家口數, 適格家口數는 擴張하기전의 地域의 家口에 관하여 記入합니다.

勤勞者家口·一般家口의 割當에는 上記의 合計家口數, 適格家口數 즉, 追加된 地域의 家口를 添加한 것에 의거 행하게 됩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새로 指定된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의해 調査豫定家口의 抽出을 합니다만, 이 경우 追加 前에 사용한 整理番號로 이미 사용한 番號(準調査家口가된 番號를 포함)에 대해서는 새로 指示된 調査家口抽出番號表上에는 미리 削除(×印)하여 抽出하고, 이미 抽出된 家口는 다시 抽出되지 않도록 합니다.

家口數가 過大하게 된 경우

問 31 家口의 抽出에 使用되는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는 160番 까지만 있으므로 新設 集團住宅地域등에서 適格家口數가 161以上 있는 單位區의 경우는 160을 넘는 番號의 家口는 抽出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答) 그러한 경우는 調査區를 分割하는 措置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指導員에게 連絡하여 주십시오.

〈単位區家口名簿記入例(名簿改補의 경우)〉

市町村名	市町村番號	單位區符號	60年國勢調査 調査區番號	抽出番號表 의整理番號
○○市	○○○○○	○○年011	50	51
				3

家計調査
単位區家口名簿

總務廳統計局
単位區更新 4枚中1枚
※名簿補正 4枚中1枚

1 家口主 氏 名	2 住 所 (字・略名 番地 등)	3 同一住 宅内別 室有無	4 家口主職業 (下り 있는 9)	5 勤労・一般 (不適格 不採用理由)	6 備 考 (不適格 不採用理由)	7 単位區更 新		8 名 簿 補 正	
						勤労者家口 一連家口番號	一般家口 一連家口番號	勤労者家口 一連家口番號	一般家口 一連家口番號
酒井進	北川町 95-1-3	有無	會社事務員	勤・一	不適格	1		1	
高橋勝利	〃 95-2-2	有無	保險外交員	勤・一	不適格	4			
土井雄二	〃 95-2-1	有無	小賣店主	勤・一	不適格		3		③ 11
伊藤正一	〃 95-2-5	有無	大學教授	勤・一	不適格	5		(5) 01	
鈴木正和	城東町 1-10	有無	會社營業事務	勤・一	不適格	09 01		15	
川名敬三	〃 1-8	有無	小賣店主	勤・一	不適格		7		⑦ 12
倉澤裕二	〃 1-1	有無	印刷業業主	勤・一	不適格		8		8
益子英雄	城北町 2-2	有無	會社社長	勤・一	不適格		20 11		21
前原信夫	〃 2-3	有無	辯護士	勤・一	不適格		22		22
岩渕弘	〃 2-4	有無	豆腐店主	勤・一	不適格		23		23
代表者太田誠	〃 20-3 ○○佛寺町原	①無		勤・一	不適格	单身者家口			
今川裕之	門前町 19-5	有無	小賣店主	勤・一	不適格	60 02		30	
佐藤照吉	〃 19-6	有無	自動車修理工	勤・一	不適格	31		31	
平原豊	〃 19-8	有無	運送店 運轉手	勤・一	不適格	32		32	
宮崎伴雄	仲町 3-2-9	有無	小賣店主	勤・一	不適格		44		44
弓野敏男	〃 3-3-1	有無	新聞記者	勤・一	不適格	49		49	
小川建二	〃 3-3-2	有無	郵便局員	勤・一	不適格	50		50	
宮本隆夫	〃 3-3-3	有無	左官(個人)	勤・一	不適格	家口主長期入院			
清水貴志	〃 3-3-4	有無	鐵道乘務員	勤・一	不適格	50 04		51	
齋藤一	城西町 1-9	有無	會社事務員	勤・一	不適格	5月 1 日부터 調査開始	50 03	58	
石原富夫	〃 1-10	有無	卸賣店店員	勤・一	不適格		59		59
高島康雄	〃 2-3	有無	小賣店主	勤・一	不適格		62		

	合計家口數	通 格 家 口 數			最 初 豆 抽 出 된 一 連 家 口 番 號		
		總 數	勤 勞 者 家 口	一 般 家 口	勤 勞 者 家 口	一 般 家 口	
単位區更新	112	106	62	44	勤勞者家口	15 48	16 30
割當調査家口數		6	4	2	一般家口	21 35	
※名簿補正	110	105	59	46	勤勞者家口	26 5	36
割當調査家口數		6	3	3	一般家口	3 7	27

[作成方法]……名簿는 単位區別로 用紙에 作成합니다. 또한 ※표시된 欄은 名簿補完時 使用합니다.

1. 5欄은 適格家口가 不適格家口로 別り되거나, 適格家口에 대하여 勤労者家口인가, 一般家口인가를 確認하여, 許可하는 것에 ○표를 합니다.

2. 不適格家口에 대해서는 7欄(單位區 更新의 境遇)에 斜線을 칩니다.

3. 6欄에는 不適格의 理由 및 不採用의 理由와 原因와 轉出·轉入等에 관해서 記入합니다.

4. 最下段의 家口數欄은 最後의 1枚에 대해서만 記入합니다.

5. 単位區 更新의 境遇 「適格家口의 勤労, 一般別의 家口數」는 각각 一連家口番號의 最終番號를 記入하고, 名簿補完의 境遇는 각각 最終番號에서 缺號의 數量 뿐 数量를 記入합니다.

指道員	調査員	作成日
更新	調査員	12月10日
※補完	調査員	6月10日

(37 | B 4 列)

第4 調査豫定家口의 抽出方法

單位區 更新時에 「最初의 調査豫定家口(6家口)」의 抽出은 指導員이 합니다만 各簿補完後의 「最初의 調査豫定家口(6家口)」가 準調查家口가된 경우 잘못하여 不適格家口로 되었을 때, 家口區分(勤勞者家口, 一般家口別)에 錯誤가 생겼을 때 및 調査期間中에 臨時交替가된 경우는 調査員이 代替家口의 抽出을하게 됩니다.

1. 準調查家口가 發生한 경우의 代替調查豫定家口의 抽出

準調查家口가 發生한 경우에는 「單位區家口名簿」 上部欄外中 「抽出番號表의 整理番號」欄의 數字와 同一한 整理番號인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를 使用하여 그 要領에 의해 代理의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합니다.

例：

- o 一連家口番號의 最終番號가 勤勞者家口 62, 一般家口 44
- o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割當調查家口가, 勤勞者家口 4, 一般家口 2
- o 指導員으로부터 指示된 最初의 調査豫定家口 一連家口番號가

勤勞者家口	15	48	16	30		
一般家口	21	35				

되었다고 하면, 一連家口番號 16의 勤勞者家口가 準調查家口로 되었다. 합니다.

- ①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勤勞」를 使用하여 勤勞者家口인 最初의 調査豫定家口 一連番號 15, 48, 16, 30 4개數字를 最初의 첫째例 左側에서 右側順으로 ○표를 합니다.
- ② 最後에 ○표를 한 數字 30의 다음 數字에서 차례로 115, 51, 99,로 거슬러 가서 最初에 나타나는 62(最初一連家口番號)以下の 數字 「51」를 취해서 ○표를 합니다.
- ③ 이 數字와 同一한 一連家口番號의 家口가 代替 調査豫定家口가 됨으로 「單位區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에 ○표를 합니다.
 - o [參照 「單位區家口名簿 記入例 (單位區更新의 경우)」 (41페이지)]

(勤 労)										
→ ⑯	⑰	95	131	⑯	123	70	96	113	⑰	
→ 여기부터 使用함										
115	51	99	71	80	58	159	140	26	88	
65	5	36	29	33	74	146	101	40	103	
(一 般)										
→ ⑯	⑰	97	21	105	63	35	3	7	27	34
48	24	56	155	89	61	84	29	75	44	
152	156	98	57	72	14	77	99	71	131	

一般家口의 代替家口를 抽出할 경우는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一般」을 使用합니다.

또한 上記의 例에서 다시 一般家口番號 48인 勤勞者家口가 輸出등으로 臨時交替가 된 경우는 앞서 使用한 나머지의 數字 99, 71, 80, 58…… 중에서 最初로 나타나는 62 (最終一連番號) 以下의 數字 「58」를 취해서 ○표를 합니다. 이 數字와 同一한 一連番號인 家口가 代替調查豫定家口가 되므로 「單位區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에 ○표를 합니다.

(勤 劳)										
→ ⑯	⑰	95	131	⑯	123	70	96	113	⑰	
→ 여기부터 사용함										
115	51	99	71	80	58	159	140	26	88	
65	5	36	29	33	74	146	101	40	103	
(一 般)										
→ ⑯	⑰	97	21	105	63	35	3	7	27	34
48	24	56	155	89	61	84	29	75	44	
152	156	98	57	72	14	77	99	71	131	

또한 調査家口의 家口區分이 「調査期間中에 變更되어 다시 臨時交替되는 경우는 定期交替의 境遇에는 家口區分에 의하여 代替家口를 抽出합니다. 가령 勤勞者 家口가 調査期間中에 家口主의 退職등의 理由에 의해 一般 家口로 變更되고 다시 이 家口가 輸出하는 등의 理由로 臨時交替되는 경우는 勤勞者 家口를 代替家口로서 抽出하게 됩니다.

2. 名簿補完時의 調査豫定家口 抽出

補完된 「單位區家口名簿」에 의하여 調査員 自身이 定期交替하는 6家口를 勤勞者 家口 · 一般家口別로 割當하고, 그 다음에 「調査家口抽出表(亂數表)」을 使用하여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합니다. 抽出이 끝나면 抽出된 家口의 一連家口番號를 「單位區家口名簿」의 下段에 잊지않고 記入합니다.

(1)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調査家口數의 割當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割當은 그 單位區內에 있는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適格家口數에 比例하여 割當합니다.

이 割當은 다음과 같은 計算에 의해 하게되나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割當早見表」를 使用하여 割當해도 무방합니다.

1. 計算에 의한 割當方法

가령 「單位區家口名簿」에 記入된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適格家口數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

總 數	勤勞者家口	一般家口
105	59	46

$$\begin{array}{ccccccc}
 (\text{算式}) & \text{適格家口數} & \text{調査家口數} & \text{合計適格家口數} \\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text{勤勞者家口} & 59 & \times & 6 & \div & 105 & = 3.3\dots \\
 & & & & & & (\text{小數點以下第1位4捨5入}) \rightarrow 3
 \end{array}$$

$$\begin{array}{ccccccc}
 \text{一般家口} & 46 & \times & 6 & \div & 105 & = 2.6\dots \\
 & & & & & & (\text{小數點以下第1位4捨5入}) \rightarrow 3
 \end{array}$$

上記의 計算에 의하여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割當家口數는 勤勞者家口 3, 一般家口 3이 됩니다.

(단, 勤勞者家口 3.5, 一般家口 2.5와 같은 小數點以下 第1位에서 나누어져서 5가되었을 경우는 큰쪽의 數를 切上하고 적은數는 버리게 되므로 3.5와 2.5는 각각 4와 2로 합니다.)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早見表」를 使用하여 割當하는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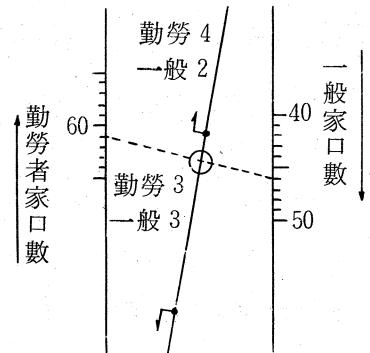
早見表(参照「別表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早見表」109 페이지)의 좌축의 勤勞者家口數의 눈금표(밑에서 위로)에 單位區內 勤勞者家口 適格家口數를 취하고 우측 一般家口數의 눈금표(위에서 아래로)에는 單位區內 一般家口의 適格家口數를 취합니다. 이것을 連結한 線과 勤勞者家口・一般家口의 割當을 표시하는 斜線과의 交點이 勤勞者家口 및 一般家口의 割當數가 됩니다.

[例 1]……一般的인 경우

勤勞者家口數가 59 고, 一般家口數가 46 인 경우의 割當數

(說明)

- ① 左側의 勤勞者家口數의 눈금표를 59 에, 右側의 一般家口數의 눈금을 46 으로 합니다.
- ② 이것을 둑은 線과 斜線의 交點 (○印와곳) 을 구합니다.
- ③ 이 交點은 勤勞 3, 一般 3 의 눈금中에 있음으로 割當數는 勤勞者家口 3, 一般家口 3 이 됩니다.



[例 2]……交點이 「・」위에 있을 경우

勤勞者家口數가 63 이고 一般家口數가 45 의 경우의 割當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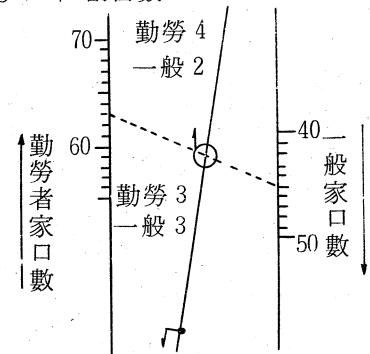
(說明)

例 1 과 同一한 方法에 의해 交點을 구하면 그 交點 (○印와곳) 이 간혹 「・」 위에 온 경우는 화살표쪽의 割當數를 취합니다. 따라서 勤勞者加口 4, 一般家口 2 가 됩니다.

(2) 調査豫定家口의 抽出

다음에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를 使用하여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로 각각 割當調査家口數分만의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합니다.

例를 들자면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調査家口의 割當數 및 「單位區家口名簿」



의 最終一連家口番號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면

	總 數	勤勞者家口	一般家口
適格家口數	105	59	46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割當家口數	6	3	3
「※8 名簿補完」欄의 最終一連家口番號	-	63	46

또한 다음 表와 같이 單位區更新時에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勤勞」는 15, 48, 95, 35 까지 모두 使用했다고 하면

(勤 労)									
→	⑯	⑭	95	131 71	⑯	123	70	96	113 ⑩
115	⑮	⑯	99	71	80	⑯	159	140	⑯ 88
65	⑮	⑯	29	33	74	146	101	40	103
(一 般)									
→	78	97	⑯	105	63	⑯	⑯ ③	⑦	⑯ 34
48	24	56	155	89	61	84	29	75	44
152	156	98	57	72	14	77	99	71	131

먼저 勤勞者家口에서는 最終一連家口番號가 63, 割當家口數가 3이므로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勤勞」편의 나머지 數字 159, 140, 26 중에서 63以下の 數字를 차례로 26, 5, 36의 3個數字를 取하여 ◎표를 합니다.

또한 轉出등으로 缺番이 된 一連家口番號가 抽出된 경우에는 같은 方法으로 再抽出합니다.

다음 一般家口에서는 最終一連番號가 46, 割當番號가 3이 되므로 같은 方法에 의하여 「一般」쪽의 나머지 數字 3, 7, 27 중에서 46以下の 數字를 차례로 3, 7, 27인 3個를 취하여 ◎표를 합니다.

이와 같이하여 ◎표를 한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數字와 同一하게 一連家口 番號의 家口가 調査豫定家口가 되므로 「單位區家口名簿」中 「※8 名簿補完」欄의 一連家口番號에 ○표를 합니다.

또한 「單位區家口名簿」의 「最初에抽出한 一連家口番號」에 「勤勞者家口」欄에 26, 5, 36, 「一般家口」欄에 3, 7, 27 을 記入합니다.

[參照 (單位區家口名簿記入例(名簿補完의경우)) (44 페이지)]

第5 家口票 作成方法

1. 上部欄外事項

「勤・一・無」

勤労者家口의 경우는 「勤」을 一般家口(無職家口를除外)의 경우는 「一」을 無職家口의 경우는 「無」에 ○표를 합니다.

「市町村番號」「單位區符號」

指導員으로부터 指示된 市町村番號 및 單位區符號를 記入합니다.

「調査家口番號」

「單位區家口名簿」에서 각각 該當事項을 轉記합니다. 또한 家口主姓名이 「單位區家口名簿」에 記入되어 있는 家口主姓名이 變更되었을 경우는 (父退職으로 長男이 家口主가 된 경우 등) 새로운 家口主의姓名을 記入하여 變更된 理由를 「備考」欄에 반드시 記入합니다. 또한 家口主는 名目上의 家口主가 아닌 家計上의 主要한 收入을 擔當하고 있는 사람을 家口主로 합니다.

「抽出區分」

그家口가 最初에 抽出된 家口이면 「1」을, 其他의 家口이면 「2」에 ○표를 합니다.

最初에 抽出된 家口……單位區更新時에 指導員으로부터 最初에 指示된 6家口 및 名簿補完時에 最初에 調査家口抽出番號表에 의해 選定된 6家口를 말합니다.

또한 最初에 抽出된 調査豫定家口가 記入依頼時의 確認에 의하여 不適格家口로 判定되거나 家口區分의 錯誤로 採擇되지 못한 경우는 그 代理로 抽出된 家口와 「最初에 抽出된 家口」로 區分합니다.

其他의 家口……最初에 抽出된 家口가 準調査家口로된 경우에 代理로 抽出된 家口를 말합니다. 또한 臨時交替로 調査對象이 되었던 家口는 모두 「其他의 家口」에 區分되어 집니다.

〈家口票記入例(上部欄外)〉

家計調査 勤	家口票 一 無	市町村番號 單位區番號 調査家口番號 一連家口番號				抽出區分 ① 2	調査員印 申印	指導員印 印
		○○○○○	011	01	15			
		住所 市 郡 村	1丁目 10番地		最初家口 에 抽出	其他地區 기타지구	記入開始 00年1月1日	
		家口主姓名 鈴木正和	電話 (○○○○)	3745番			記入終止 年月日	

2. 家口員에 대하여 「(1)~(17)」欄

이 欄은 調査家口의 全家口員에 관해 記入합니다.

家口員……家口主 및 其他의 家族 外에 家計를 함께하고 있는 同居人을 말하며 家族과 같은 親戚의子息(이경우 送金有無와는 關係없음) 入住하고 있는 家事使用人, 入住하고 있는 營業上의 使用人등도 家口員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家族이라도 3個月以上 長期入院中인 사람, 遊學中인 사람, 勤務處의 關係로 單身赴任하고 있는 사람등과 같은 別居하고 있는 사람, 家計가 전혀 别途로 되어 있는 貴房入住人등은 家口人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别居하고 있는 家族에 관해서는 「(30) 家族이 同居하지 않는 者의 數」欄에 그의 數를 記入합니다. (「家計簿」의 「通信欄」에도 歸鄉, 上京때 마다 그 사실을 記入해 둡니다.)

寄食 同居인이 있는 家口나 營業上 入住하고 있는 使用人이 4人以上 있는 家口등은 不適格家口가 되므로 注意 합니다.

[參照 제 2, 2 <家口를 規定하는 方法> (19페이지)]

- 「入住하고 있는 家事使用人」이란 雇傭主 및 그의 家族과 食事와 居住를 함께 하고 주로 家事에 從事하는 사람 즉 家事補助人이나 書生등을 말합니다.
- 「入住하고 있는 營業上의 使用人」이란 고용주 및 그 家族과 食事, 居住를 함께하며 주로 營業上의 일에 從事하는 사람 가령 店員, 配達員등을 말합니다.

「(1) 姓名 및 家口主와의 關係」	家口主를 最初에 記入하고 다음에 家口主를 中心으로 妻, 長男, 長女, 次男, 母, 弟의 順으로 그다음은 家族에 準하는 사람, 入住家事使用人, 入住營業上의 使用人の 順으로 그 家口의 全員에 관하여 그姓名과 家口主와의 關係를 記入합니다. 또 下部의 「家口人員」欄에 그 合計 人員數를 記入합니다. 또 調査期間中에 家口에 대한 出生, 또는 輸入, 輸出等에 의해 家口票記入事項에 變更이 發生하였을 境遇와 家計簿收集時에 家口人員, 就業人員等, 家口票의 記入事項에 變更이 없었는지를 반드시 確認해야 합니다. 符號欄은 調査員이 記入할 必要는 없습니다.
「(2) 性 別」	각각의 該當하는 番號에 ○표를 합니다.
「(3) 滿 年 齡」	「家計簿」記入開始時 滿年齡을 記入합니다. 특히 1세미

만의 乳兒는 예를들어 「2個月」과 같이 月數를 記入합니다.
〔本業의 勤務處또는
自營事業〕

職場에 勤務하고 있는 사람이 勤務處가 2個以上일 경우는
그중 勤務時間이 많은쪽을 本業으로 記入합니다. 職場勤務를
하면서 한편으로 自己事業을 經營하고 있는 사람이 2개以上
의 事業을 經營하고 있을경우 勤務處의 職場을 記入합니다.

또 自營事業을 經營하고 있는 사람이 2개以上의 事業을 經
營하고 있는 경우는 主된 事業에 대하여 記入합니다.

또한 「事業內容」 및 「本人이 하고있는 事業內容」의 記
入는 「別表4 產業分類表」(115 페이지) 및 「別表5 家
計調查職業分類表」(117 페이지)를 參照합니다.

「(4) 名稱」 勤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勤務處의 名稱을 될수
될수 있는한 具體的으로 工場, 支社, 支店名 까지 記入하고 官
公署도 (例를들어 營林署, 郵便國, 市廳水道課등) 그 内容을 알
수 있도록 部課(係)名까지 記入합니다. 수시로 勤務處가 變
更되는 境遇는 「勤務處 一定하지 않음」이라고 記入합니다.

自營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商店」「××屋」과 같
이 商店名이나 屋號를 記入하고 特別한 名稱이 없으면 業主
名을 記入합니다. 또한 無職 및 家族從業者에 대해서는 이欄
에 記入할 必要是 없읍니다만 「(6) 本人이 하고있는 일의 内
容」欄에 記入합니다.

「(5) 事業內容」 勤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現在勤務하고 있는 工場,
事業處등의 事業處單位의 事業內容을 例를들면 「玩具製造業」
「銀行業」, 「택시業」등과 같이 具體的으로 記入합니다.

自營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經業內用을 例를들어 「菓
子製造小賣(自營)', 「洋服봉재 및 既成服販賣(自營)」, 「크
리닝業(自營)」, 「豆腐製造小賣(自營)」등과 같이 記入
합니다.

無職 및 家族從業者에 대해서는 이欄에 記入할 必要是 없읍
니다만 「(6) 本人이 하고있는 일의 内容」欄에는 반드시 記入
해야 합니다.

「(6) 本人이 하고 있는 일의 내용」

勤務處가 있는 自營事業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具體적으로 記入합니다.

例를들면 勤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旋盤工」, 「販賣員」, 「守衛」, 「會社事務員」, 「列車車掌」, 「配達員」, 「타이피스트」, 「設計技師」, 「國民學校 教師」, 「人事課長」, 「總務部長」등과 같이 記入합니다.

또 自營業을 하는경우는 家口主 및 家族從事者에 대해서 「業主」, 「家事에 從事」등과 같이 記入합니다.

營業上의 使用人이나 家事使用人은 「販賣員」, 「配達員」, 「 심부름」등 하고 있는 일의 内容을 記入합니다.

專業主婦, 學生, 兒童, 年金生活者 등의 職業이 없는 無職인 사람은 「없음」이라고 記入합니다.

「(7) 雇傭者數 또는 使用人數」

勤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民間會社, 團體, 組合, 個人商店 등에 勤務하고 있는 사람은 「民營」에 ○표를 하고 그 勤務處企業全體의 常用의 雇傭者數를 記入합니다.

官公署나 國營, 公營의 事業所에 勤務하고 있는 사람은 「官公」에 ○표를 하고 雇傭者數는 記入하지 않습니다. 또한 公團, 公庫나 在日外國政府施設에 勤務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官公」에 포함되지 않고 「民營」에 속합니다.

또 法人經營者の 경우도 「民營」이라고 합니다.

自營을 經營하고 있는 사람의 境遇

自營을 經營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自營」에 ○표를 하고 그 營業上의 使用人數(通勤, 入住者를 包含)를 記入합니다. 이 경우 家族從事者 및 家事使用人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勤務處의 雇傭者數의 把握方法

問32 「(7) 雇傭者數 또는 使用人數」欄은 企業單位로 쓰게되어 있읍니다만 主婦들이 알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事業體單位로 記入해서 안됩니까?

(答) 賃金은 事業體單位가 아니고 企業單位로 決定됨으로 企業單位로 記入하도록 해주십시오. 도저히 알 수 없는경우는 勤務處의 名稱등을 확실히 쓰도록 해주십시오.

	雇傭者數 및 使用人數
	<p>雇傭者數 및 使用人數는 「1~4人」, 「5~9人」, 「10~29人」, 「30~99人」, 「100~299人」, 「300~499人」 「500~999人」 및 「1000人以上」의 區分이 알 수 있을 程度의 개략적인 수라도 관계 없으니 반드시 記入해야 합니다.</p> <p>이 레이블은 調査員은 記入할 必要가 없습니다.</p>
「(8) 符號欄」	
「(9) 給與支給豫定日」	<p>이 레이블에는 勤務處에 勤務하는 사람만이 記入합니다.</p> <p>1個月마다 支拂되는 경우는 「25日」, 「最終金曜日」등과 같이 週마다 支給되는 경우는 「每週金曜日」등으로 또 每日 支拂되는 경우는 「毎日」이라고 記入합니다.</p>
「(10) 產業」 「(11) 職業」	<p>이 레이블에는 「(4)~(6)」 레이블에 記入되어 있는 内容에 의해 「別表4 產業分類表」 (115 페이지) 및 「別表5 家計調査職業分類表」 (117 페이지)에 표시된 基準에 따라 指導員이 記入함으로 調査員은 記入할 必要가 없습니다.</p>
「(12)副業의勤務處와事業內容」	<p>勤務處가 두곳 以上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就業時間이 本業 다음으로 많은 勤務處名을 가령 「○○學院」등과 같이 記入하여 「(12)」 레이블에 「1 副業」의 番號에 ○표를 합니다.</p> <p>勤務하는 한편 事業을 經營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事業內容을 가령 「담배小賣店」등과 같이 記入하고 「(12)」 레이블의 「2</p>

PART-TIME로 일하고 있는 경우	問33 PART-TIME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内職者로 합니까?
	(答) 家事, 通學을 하는 한편에 PART-TIME(一定한 勤務形態, 가령 月曜일에서 金曜일의 午前 10時에서 午後 4時까지 등 一定하게 정하여져 있어 賃金이 週拂 또는 月拂)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内職者로 하지 않고 勤務로 취급합니다.
妻가韓服을縫裁하고 있을 경우	問34 主婦가 知人の 依賴를 받고 韓服봉재를 할 경우는 内職者로 합니까?
	(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는 内職者로 합니다만 臨時적으로 하는 경우는 内職者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收入이 있을 때는 家計簿에 收入의 種類와 金額을 記入합니다.

事業」의 番號에 ○표를 합니다. 2개以上의 事業을 經營하는 사람의 경우는 本業 다음의 主된 事業의 内容을 記入합니다. 家計補助를 위한 內職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内容을 例를 들면 「玩具組立」등과 같이 記入하고 「(12)」欄의 「3 內職」의 番號에 ○표를 합니다.

副業……本業以外의 다른 勤務處가 있는 경우

事業……本業以外의 別途事業을 經營하는 경우

內職……家計補助를 위해 家事, 通學을 하는 한편에 별도로 하는 일 가령 韓服縫製, 家庭教師, 新聞配達, 牛乳配達 等과 같은 일을 通常的으로 하고 있는 경우 및 勤務하고 있는 한편 가령 翻譯, 原稿執筆, 生花教授 등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만 店舗 또는 事務所를 가지고 經營하고 있을 경우는 事業이 됩니다.

「(13) 就・非 別」

勤務處에 雇傭된 사람, 自營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 및 家族從業者는 就業者로서 「1 就」의 番號에 ○표를 하고 그以外의 사람(無職, 入住家事使用人, 入住營業上의 使用人等)은 非就業者로 하여 「2 非」의 番號에 ○표를 합니다. 이 「1 就」에 分類된 사람의 數를 下部의 「就業人員」欄에 각각 記入합니다.

入住家事使用人 및 入住營業使用人은 一般的으로 就業者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이 調査에서는 그 家口의 家計를 維持하기 위하여 그 家口에 收入이 있는 사람만을 就業者로 간주합니다. 또한 內職을 通常的으로 하고 있으면 就業者로 간주합니다.

「在學生의 學校種別 (14), (15)」

「(14)」欄은 在學中의 家口員에 관하여 그 在學學校가 「1 國公立」, 「2 私立」의 어느쪽인가에 따라 該當하는 番號에 ○표를 합니다.

「(15)」欄은 在學學校의 種別에 따라 該當하는 番號에 ○표를 합니다.

이경우 畫間部(一部), 夜間部(二部)는 區別하지 않습니다. 또한 「1 幼稚園」에는 兒童福祉法에 의거하여 保育園(民營의 託兒所는 除外됩니다)도 포함됩니다.

「(16) 專修學校」

「○○電子專門學校」, 「○○法律專門學校」, 「○○디자인專門學校」등 學校教育法의 規定에 의거하여 專修학교로서 監督官廳의 認可를 받고 있는 學校를 말합니다.
專修學校에 다니고 있는 境遇는 「8」에 ○표를 합니다.

「(17)各種學校・學院等」

珠算學院, 茶道, 生花校室, 豫備校, 自動車敎習所등에 다니는 경우는 「9」에 ○표를 합니다.

自宅에서 個人敎授를 받고 있는 경우 樂器店의 音樂教室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家口票 記入例 「(1)~(17) 欄」 관하여

※ 參照 58 p

3. 住宅에 대하여 「(18)~(25)」欄

住宅에 관해서는 현재 그 家口가 거주하고 있는 住居 및 土地에 관한것 만을 記入합니다. 따라서 自己의 것 이라도 他人에게 賃貸하고 있는 土地, 住宅이나 二重賃貸하고 있는 住宅등에 관해서는 記入할 必要가 없습니다.

住居……住宅과住宅以外의 建物을 합쳐서 呼稱한 것입니다.

住宅……보통 1戶의 住宅이나 아파트와 같이 完全히 區劃된 建物의 一部로 한 家口가 獨立하여 家庭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한 建築 또는 改造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家口가 獨立하여 家庭生活을 營爲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의 4 가지의 設備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o 1개 以上의 房

〈家口票記入例「(1)～(17)」欄〉

(1) 姓名	家口主의 性別	滿年齡 (2) (歲)	(3)	本業勤務處					自營事業					在學生의學校의種別			(17) 各級學校 學生等										
				(4) 名稱		(5) 事業內容			(6) 本人이 있는 일의 내용		(7) 雇傭者數 王는		(8) 與給 支號		(9) 產業 類定日		(10) 職業		(11) 副業		(12) 事業의內容 王는						
				符號欄	關係	本人	女	電話事業	營業課長	民營·自營·官公 1,000人以上人	25	民營·自營·官公 5人	每週 金曜日	民營·自營·官公 5人	1	2	3	1	2	3	4	5	6				
1 家口主	男	1	1	2	47	NTT												①	2	1	2	3	4	5	6	9	
2 鈴木基子	妻	1	2	45	廣尾Bakery	菓子販賣業	販賣員											①	2	1	2	3	4	5	6	9	
3 慶子	長女	1	2	17														②	1	2	1	2	3	4	5	9	
4 謙	次男	1	2	14														1	2	3	1	2	1	2	3	9	
5	母	1	2	69														③	1	2	1	2	3	4	5	6	8
6				1	2													1	2	3	1	2	1	2	3	6	9

- 専用의 炊事用 排水設備 共用이라도 他의 家口의 居住部分을
通過하지 않고 언제나 使用할 수 있으
면 됩니다.
- 専用의 出入口 屋外에 面하고 있는 出入口 또는 居住
者나 其他家口의 訪問者가 언제던
지 지나갈수 있는 복도에 面하고 있는
出入口.

또한 「完全히 區劃된」이란 同一建物의 他部分과 土壁이나 板壁 등으
로 完全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住宅以外의 建物.....住宅以外로 사람이 居住하고 있는 建物 가령 住宅으로서 改造되
어 있지 아니한 學校, 工場의 一部, 板小屋, 作業場 등을 말합니다.

- 「(18) 住居形態」 住居의 建築方式에 의해서 해당하는 番號에 ○표를 합니다.
- 戸健 1 建物 1 住宅의 경우를 말합니다.
 - 長家屋 2 個 以上의 住宅을 1 棟으로 연결하여 建築한 것
으로 각 住宅의 壁이 공통으로 되어있어, 각각 별
도의 외부出入口를 갖추고 있을 경우.
 - 共同住宅 1 棟中에 2 個以上의 住宅이 있고 복도 및 계단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2 個以上의 주
택을 쏟아올려진 맨션이나, 아파트등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아파트와 같은 것입니다.
 - 其 他 上記以外의 것으로, 가령 工場이나 事務室의 일부
에 住宅이 있는 경우입니다.

住居가 木造와 鐵筋
의 경우 住居構造

問 35 住居의 一部가 木造이며 一部는 鐵筋콘크리트의 경우 「(19)
住居構造」欄은 어떻게 記入합니까?

(答) 延面積이 많은 쪽을 記入합니다.

프래하프住宅

問 36 프래하프住宅은 「(19) 住居構造」의 어느 쪽에 속합니까?

(答) 主된 재료에 의해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단하기 어려울 경
우는 「5 其他」로 하고 () 내에 「프래하프」라고 記入합니다.

「(19)住居의 構造」 住居의 主된 구성부분에 따라 해당하는 番號에 ○표를 합니다.

木 造……住居의 主된 구조부분이 木造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防 火 木 造……기둥, 석가래 등의 骨組가 木造이고 外壁은 물루타일, 합석등의 防火性能을 가진 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부 로 크……骨組의 재료와는 관계없이 外壁이 콘크리트, 부로크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鐵筋·鐵骨·……鐵筋콘크리트나 鐵骨造를 말합니다.
콘크리트造

其 他 …上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내에 그 구조를 가령 「石造」, 「벽돌造」 등으로 記入합니다.

「(20)住居의 所有關係」 居住하고 있는 住居의 所有關係에 따라 해당하는 番號에 ○ 표를 합니다.

自 己 家 屋……居住하고 있는 家口가 그 住宅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未登記 또는 未支拂의 경우나 分讓住宅의 경우도 「自己家屋」으로 취급합니다.

民營賃貸住宅……居住하고 있는 家口가 그 住宅을 賃貸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公營賃貸家屋 및 公團, 會社 等의 分割給住宅등을 말합니다.

이 中에 設備專用이란 炊事用下水口나 便所 가 專用으로 되어 있는 住宅을 말합니다.

公 營 住 宅 …都道府縣, 市町村의 賃貸住宅으로, 分割支給 이 아닌 住宅을 말합니다.

父親名義의 家屋 問37 賃貸料를 支拂하지 않고 父親名儀의 家屋에 居住하고 있는 家口의 住居는 그 所有關係가 어느것에 該當합니까?

(答) 「自己家屋」에 속합니다.

公團·公事등의……住宅, 都市整備團, 住宅供給公社, 住宅協會
賃貸住宅 또는 住宅公社 등의 賃貸住宅으로서 分割支
給이 아닌 住宅을 말합니다.

給與住宅……社宅, 公務員住宅과 같은 會社, 團體, 官公
署등이 所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職員의 紿與의 一部로서 그 住宅에 居住하
게하는 住宅을 말합니다. 會社 또는 雇傭主
가 賃貸하고 있는 住宅에 그 從業員을 居住
케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貰房……다른 家口가 居住하고 있는 住宅의 一部를
賃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住宅以外의 建物」에 居住하는 경우는 그 所有關係에 의해
上記의 어느것에 區分하게 됩니다.

〔21〕面積」

「(1) 住居의 延面積(賃貸除外)」은 住居의 所有關係가 賃
貸以外의 家口에 대해서는 그 住居의 延面積을 記入합니다.
併用住宅의 家口에 대해서는 業務用分도 합쳐 記入합니다.

併用住宅……業務에 使用하기 위해 設備된 部分과 居住用의
部分이 結合되어 있는 住宅, 가령 商店, 理髮館,
病院 등 業務에 使用하기 위해 設備된 部分이
있는 住宅입니다.

「(2) 業務用面積」은 併用住宅의 경우에 한해서 (1)의 延面積
은 業務에 使用하기 위해 設備된 部分(例를들면 商店의 店舗
部分, 開業醫의 住宅診療室등)의 面積을 記入합니다.

「(3) 敷地面積(自己家屋만)」은 自己家屋家口의 경우만 그
住宅의 敷地面積을 記入합니다. 共同住宅의 경우는 記入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22〕住居房數·坪 數」

「(1) 居住房數」 및 「(2) 居住房의 坪數」는 그 家口가 살
고 있는 住宅에 있어서 房數와 坪數를 각각 記入합니다.
貰房은 그 部分 만을 記入합니다.

貰房家口에 대해서는 貰房數와坪數를 記入합니다.

居住房……居室, 寢室, 客室, 應接室, 書齋, 食當房등을 말합니다. 浴室, 倉庫, 복도, 베란다등은 居住房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3) 貰房分」은 (2)중 貸貸하고 있는部分이 있으면 그坪數를 記入합니다.

「(23)建築時期(自己家屋)」

自己家屋에 한해서 그住居가 建築된 時期에 따라 該當하는番號에 ○표를 합니다. 1976年 이후에 建築된 경우는 그年을記入합니다. 增, 改築의 규모가 新築된 것과 같을 때는 新築으로취급합니다. 또한 아울러 增改築의 時期도 記入해야 합니다.

「(24)設備」

그家口에 해당하는 設備가 있으면 「1」에, 없으면 「2」에 ○표를 합니다.

또한 「都市가스」, 「프로판가스」는 他家口와 共同使用하고 있을 경우도 「1 有」로 합니다.

都市가스……가스탱크로 부터 導管에 의해 一定의 地域集團에供給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판가스……여기서 말하는 프로판가스는 가스통에 充填하여 各家口에 配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以外 가스통을 여러 家口가 共用하고 있을 경우(아파트등으로 家主가 管理하여 各家口에 導管에 의해 供給하고 있는 경우등)도 포함합니다.

프로판가스라도 가스통에 의해 供給되지 않는 경우는 都市가스로 취급합니다.

土地・住居의坪數換算

問38 土地나 住居의 面積은 m^2 單位로 記入하게 되어 있읍니다만坪을 m^2 로 换算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答)坪을 m^2 (平方m)로 换算하는 경우는 3.3을 곱하여 小數點以下를 四捨五入 합니다.

業務와住居를併用하는房

問39 書間은 業務로 使用하고, 夜間에는 寢室로 使用되는 房은 「(21)居住數,坪數」에 포함시킵니까?

(答) 「(22)居住房數,坪數」에 포함시킵니다.

「(25)賃貸料・地代」

賃貸料・地代를 支拂할 境遇

- 賃貸料 또는 房費를 支拂하는 경우 自己家屋 以外의 家口로서 賃貸料 또는 房費를 支拂하고 있는 경우는 「(1) 賃貸料」欄의 「1 有」에 ○표를 하고 月間支拂額을 記入합니다.
- 地代를 支拂하고 있는 경우

自己家屋의 家口로서 그 住宅의 敷地를 賃貸하여 地代를 支拂하고 있는 경우는 「(2) 地代」欄에 「1 有」에 ○표를 하고 1個月當의 金額을 記入합니다.

賃貸料, 地代가 時價에 比하여 顯低하게 痠 痘遇는 賃貸料, 地代가 時價에 比하여 顯低하게 痠 痘遇는 그 理由를 例를 들면 「親戚으로 부터 싸게 賃貸해 있어서」「管理를 하므로, 維持費만 支拂함」과 같이 「備考」欄에 記入합니다.

賃貸家屋・地代의 一部를 他人이 支拂하고 있는 경우

賃貸家屋・地代의 一部를 會社 또는 他人이 支拂하고 있는 경우 그 負擔額을 각각 「2 無」의 「見積」에 記入하여 그 理由를 例를 들면 「會社가 一部 負擔」등과 같이 「備考」欄에 記入합니다.

賃貸料・地代를 합쳐 支拂하고 있는 境遇

賃貸・地代의 半年分 또는 1年分을 합쳐서 支拂하고 있는 경우는 1個月當으로 換算하여 記入합니다.

賃貸料에 各種料金이 포함되고 있는 境遇 無償의 境遇

賃貸料 또 房費에 電氣, 가스, 水道 등의 料金이 포함되고 있는 경우는 그 料金을 控除한 金額을 記入합니다.

만약에 分割이 되지 않으면 「備考」欄에 그것을 注記해야 합니다.

賃貸料, 地代가 無償의 境遇는 各 欄의 「2 無」에 ○표를 하고 「見積」欄에는 時價로 見積된 金額을 각각 記入합니다.
無償의 경우

賃貸・地代가 無償일 경우는 勤務하고 있는 會社, 團體, 官公署 등에 支拂하고 있는 賃貸料을 記入하고 見積額은 記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金額을 會社 등이 負擔하고 있을 경우는 「2 無」에 ○표를 하고 「見積」에 時價로 見積된 金額을 記入합니다.

〈家口票記入例「(18)～(25)」欄〉

(18)住居形態	(19)住居의構造	(20)住居의所有關係	(21)面積	(22)住居面數·坪數	(23)建築時期(自己家屋만)	(25)賃貸料·地代
① 一戸建	1. 木造	①自己家屋	(1)住居의延面積 (貢房은除外) _____ 90 m ²	(1)住居面數 5房	1. 1965年以前	(1)賃貸料 1有 円
2. 長家屋	②. 防火木造	2民營賃貸(設備専用)	(2)自己家屋業務用面積 _____ m ²	(2)住居面數 29.0	2. 1966年～75年	(2)地代 1有 円
3. 共同住宅	3. 土豆工	3民營賃貸(設備共用)	(3)換率面積() _____ 250 m ²	(3)貢房分	3. 1976年以後 年	
4. 其他	4. 鐵筋·鋼骨·コンクリート造	4公營賃貸住宅 5公團·公社等賃貸住宅 6給與住宅 7賃房			(4)設備 1有·2無 (1)都市가스 ①. 2 (2)프로판가스…… 1. ②	(1)賃貸料 2無 見積 円 (2)地代 2無 見積 円

4. 口座自動對替등에 대하여 「(26)～(30)」欄

「(26)口座自動對替」

調査家口가 電氣, 가스, 水道, 電話, T.V등의 料金을 口座自動對替에 의해 支拂할 경우는 해당하는 項目에 ○표를 하고 또한 이以外의 料金등의 支拂(例를들면 學校授業料, 保險料 등)이 口座自動對替를 이용하여 支拂할 경우는 「(11)其他」欄의 「1」에 ○표를 합니다.

賃貸料에 共益費를 포함시키는가

問 40 公營賃貸家屋의 賃貸金에는 月別의 公益費(例를들면 청소비, 외등비등)를 포함시킵니까?

(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車庫를 賃貸하고 있는 경우

問 41 車庫를 賃貸하고 있는 경우는 車庫代金을 家屋賃貸料에 포함시킵니까?

(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車庫가 붙어있는 住宅의 경우는 分割할 수 있을 경우는 分割하고 分割할 수 없을 경우는 家屋賃貸料에 車庫代가 포함되는 理由를 「備考」欄에 記入합니다.

家屋賃貸料, 電氣料, 가스料가 無償인 경우

問 42 家屋賃貸料, 電氣料, 가스料가 無償일 경우는 어떻게 記入합니까?

(答) 「(24)家屋賃貸料, 地代」中 「(1)家屋賃貸料」欄에 「2無」의 「見積」에 電氣料, 가스料등을 除外한 賃貸料를 見積하여 記入합니다. 또한 電氣料, 가스料등은 家計簿의 「Ⅱ外上, 月賦購入 또는 現物(얻은物件, 自家生產, 商店의商品)」欄에 각각 見積額을 記入합니다.

「(27) 口座自動生入金」	家口主의 給料가 本人의 손을 거치지 않고 勤務處에서 直接 銀行등의 口座에 入金되거나 年金, 恩給등이 銀行, 郵遞局등의 口座에 入金되는 경우는 該當하는 項目에 ○표를하고 또 한 이것 以外의 家屋賃貸料등의 受領에 口座自動入金을 利用하고 있는경우는 「(3) 其他」의 欄의 「1」에 ○표를합니다.
「(28) 크레디트카드의 有無」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代金의 支拂이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고 있을경우는 「2 無」에 ○표를 합니다.

〈家口票記入例 「(26) ~ (28)」欄〉

(26) 口座自動對替 1 有, 2 無 (1) 電氣料金 ①.2 (2) 都市ガス料金 ①.2 (3) プロパンガス料金 1.② (4) 水道料金 ①.2 (5) 電話料金 ①.2 (6) NHK放送受信料 ①.2 (7) 學校給食費 ①.2 (8) 家屋賃貸料 1.② (9) 住宅賃貸金返済 ①.2 (10) 가소린 ①.2 (11) 其他 ①.2	(27) 口座自動對替 1 有, 2 無 (1) 給料 ①.2 (2) 年金・恩給 ①.2 (3) 其他 1.② (28) 크레디트카드의 有無 ① 有 · 2 無	(29) 無職家口의 主된 收入源 1. 年金・恩給 () 2. 家屋賃貸金 3. 送金 4. 其他 ()	家族이 同居하지 않은 人員數 1. 長期不在 (1) 學業때문에 1人 (2) 일때문에 人 2. 入院中 人 3. 其他 人
--	---	---	---

(註)

坪을 m^2 로 換算하는 경우에는

3.3倍를 한다.

「(29) 無職家口의 主要收入源」 無職家口에 대하여 그 家口의 家計를 維持하는 收入中 主된 것에 하나만 ○표를 합니다.

「1 年金, 恩給」의 家口는 그 種類를 具體的으로 例를 들면 「厚生年金」등 「國民年金」, 「軍人年金」등과 같이 ()안에 記入합니다.

「(30) 家族中 同居하지 않는 人員數」

遊學中인 사람, 勤務處關係로 혼자 다른곳에 있는 사람, 長期間 (3個月以上) 入院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家口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하는 項目에 ○표를 하고 그 人員數를 記入합니다.

〈家口票記入例「(29), (30)」欄〉

家口人員數 人	備考(특히 説明을 要하는 事項 가령 無償住宅 의 事情등을 記入합 니다.)
就業人員數	
人	

* 臨時交替의 경우 前調查家口에 관해 記入합니다.

調査家 口番號	一連家 口番號	交替의 理由
家口主 의姓名		
記入終 了月日	年 月 日	

5. 下部欄外事項

「家口人員」 및 「就業人員」

調査家口의 家口人員 및 就業人員의 合計를 각각 해당하는
欄에 記入합니다.

「備 考」

이 欄에는 다음의경우 以外 特히 說明을 必要로하는 경우에
그것을 記入합니다.

- ① 家口主의 姓名 (單位區家口名簿) 이 變更되었을 경우
- ② 遊學中の 家族이 歸家했을 경우
- ③ 家屋賃貸料, 賃房賃貸料등에 電氣, 가스, 水道料金등이 포
함되어 있으나 分割이 어려울 경우
- ④ 家屋賃貸料나 地代가 時價에 比해 현저하게 叵싼경우

賞與金만口座入金
할경우

問 43 每月의 紙與를 現金으로 받으나 賞與金만을 口座入金할 경
우는 어떻게 記入합니다?

(答) 賞與金만 口座入金할 경우에는 口座入金「有」가 됩니다.
단, 그사실을 「備考」欄에 記入합니다.

「※臨時交替의 경우
에 前調查家口에 대하
여記入합니다.」

이 欄에는 所定의 記入期間中(6個月間)에 調査家口가 交
替(臨時交替)한경우 새로選定된 家口의 「家口票」를 作成
했을때 前調查家口의 家口票에 의해 각각 해당欄에 所定事項
을 轉記합니다.

定期交替에 의해 家口를 交替한경우는 轉記할 必要가 없읍니
다.

〈家口票記入例(下部欄)〉

家口人員數	
人	
就業人員數	
人	

備考(특히 說明을 要하는 事項 가령 無償住宅 의 事情을 記入 합 니다.)

調査家 口番號	一連家 口番號	交替의理由
家口主 의姓名		
記入終 了月日	年 月 日	



指定統計
第 56 號

家 計 調 査 票
口 家

總務廳統計局

市町村番號		單位區符號	調查家口番號	一連家口番號
○○○○○		011	01	15
住 所		○ ○ 首都 東 町 村	1 丁目 10番地	
		家 口 主 姓 名	鈴木 正 和	電話 (0000) 3745番
無				

抽出區分	① 抽出尾 其他 口 家	② 調查員印	指揮員印
最初期 記入開始	00年 1月 1日	記入終止	年 月 日

(1) 姓名 및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本業의 動務處王는 自營事業				(11) 副業의 動務處	(12) 独・非別	(13) 在學者の學校種別	(14) 基本各學科等		
			(2) 符號	(3) 例名	(4) 名稱	(5) 事業內容						
1. 家口主 本人	男	1 2 (歲)	47 NTT	電話事業	营业課長	营业員	雇用者數 正社員 支給業 欄	1 2 3 1 2 國立事業 企業	1 2 3 1 2 私立國 立	1 2 3 1 2 幼稚園 中學校	1 2 3 4 5 6 高大學校 大學校	
2. 鈴木基子	妻	1 2 45	廣尾 Bakery	菓子販賣業	販賣員	民營自營官營	使用者人數 正社員 支給業 欄	25	25	2 1 2 3 1 2 國立事業 企業	1 2 3 4 5 6 高大學校 大學校	
3. 慶子 長女	1 2 17					民營自營官營	金額			1 2 3 1 2 3 國立事業 企業	1 2 3 4 5 6 高大學校 大學校	
4. 謙 次男	1 2 14					民營自營官營	金額			1 2 3 1 2 3 國立事業 企業	1 2 3 4 5 6 高大學校 大學校	
5. 사미 母	1 2 69					民營自營官營	金額			1 2 3 1 2 3 國立事業 企業	1 2 3 4 5 6 高大學校 大學校	
6.	1 2					民營自營官營	金額			1 2 3 1 2 3 國立事業 企業	1 2 3 4 5 6 高大學校 大學校	
(14) 生居形態												
① 一戸建	1. 木造	①. 自己家屋 (1) 居住面積 (實住面積) 90 m ²	1. 1965年以前	(1) 實資料	(2) 地代	(15) 口座自動移替 1. 有 2. 無						
2. 長屋建	2. 防水木造	5 室	2. 1966年~75年	1. 有	1. 有	(1) 電氣料金 ① 2						
3. 共同住宅	3. 木造	(2) 業務用面積 m ²	3. 1976年以後	1個月當	1個月當	(2) 都市料金 ① 2						
4. 其他	4. 鋼筋・磚骨 5. 公團・公社等 6. 施設居住生 7. 賃 房	(3) 實房分 (自己家屋面積) 250 m ²	29.0坪	④ 敷備 1. 有 2. 無	円	(3) 道路料金 ① 2						
				(1) 都市가스... ①·2 (2) 三逕가스... 1·2	円	(4) 電話料金 ① 2						
				見積	円	(5) NHK放送費 ① 2						
				2. 無	円	(6) 學校給食費 ① 2						
				①. 有 2. 無	円	(7) 屋賃 ① 2						
				②. 三逕가스... 1·2	円	(8) 賃料 ① 2						
				見積	円	(9) 住七付金料 ① 2						
				2. 無	円	(10) 全 ① 2						
				①. 有 2. 無	円	(11) 其他 ① 2						
(15) 無職家口의 主任收入原												
1. 年金・恩給()	1. 長期不在	5 人	備考: (※) 說明을 要하는 사항(예를 들면 無職家庭實質 等의 사항을 記入 합니다.)						※ 離時交替의 경우 調査家口에 관하여 記入합니다.			
2. 家屋賃料・地代	(1) 學業때문에 (2) 일때문에	人										
3. 送金	2. 入院中 3. 其他	人										
4. 其他		人										
(注)坪을 m ² 로 算算할 때는 3.3倍 할.												

第6 準調査家口票의 作成方法

「準調査家口票」는 調査豫定家口로서 抽出되었으나 부득히 한 理由로 記入을 승낙하지 않은 全家口의 全部에 대하여 作成합니다. 記入依賴時의 確認으로 家口區分에 錯誤가 있거나, 不適格家口라는 것이 判明되었기 때문에 調査家口가 되지 못한 家口에 대하여는 作成할 必要가 없습니다.

欄 外 事 項 「都道府縣名」, 「市町村番號」, 「單位區符號」, 「一連家口番號」號」欄 각각 該當事項을 「單位區家口名簿」에서 轉記합니다.

(西紀 年 月 期) 「家計簿」의 記入 開始를豫定한時期를 記入합니다.

「(1) 家口區分」 勤勞者家口의 경우는 「1」에, 一般家口(無職家口除外)의 경우 「2」에, 無職家口의 경우는 「3」에 ○표를 합니다.

「(2) 交替의 種類」 準調査家口였으나 定期交替이나 臨時交替이 되었을 경우는 該當하는 番號에 ○표 합니다.

「(3) 抽出區分」 「最初에 抽出된 家口」이면 「1」에 「其他家口」이면 「2」에 ○표를 합니다.
또한 「第5家口票의 記入方法」의 5의 「抽出區分」(51페이지)를 參照하십시오.

(家口에 관하여) 「(4) 滿年令」은 家口主에 대해 記入하고, 「(5) 家口人員數」 및 「(6) 就業人員」에 대해서는 家口主를 포함한 人員을 記入합니다.
「(7) 家口主가 하고 있는 일의 内容」에 대해서는 「家口票」의 記入에 準해서 記入합니다. 「符號欄」은 指導員이 記入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調査員은 記入할 必要가 없습니다.

(住居에 관하여) 「第5 家口票의 記入方法」의 「(20) 住居의 所有關係」에 準해

서 해당의 番號에 ○를 합니다.

(家計費에 관하여)

「(a) 1個月의 家計費總額」欄은 그 家口에서 通常 1個月間 지출하는 生活費의 大略的인 金額을 記入합니다. 도저히 答辯을 받지 못할 경우는 調査員이 推定하여도 關係없으나 그 경우 「推定」이라고 付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家計費는 食料費, 被服費, 光熱費, 住居費, 教育費, 教養樂費 등, 밀하자면 生活費를 말하며 稅金, 賖蓄金, 借用金 支拂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記入을 承諾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記入을 承諾하지 않는 理由를 其體的으로 자세히 記入합니다.

(準調查家口票의 記入要點)

準調查家口票의 記入에 관해서는 家口의 協力を 얻기 어려울 경우 家計簿를 記入하지 않겠습니다만 家計調査의 結果를 分析하는 데는 必要하므로 될 수 있는限 完全히 記入합니다.

○ 특히 最初에 抽出된 調査豫定家口의 경우는 調査事項의 全 項目을 記入할 수 있도록 努力하시고, 記入承諾을 받지 못할 경우는 그 事由에 대해서도 具體的으로 記入합니다.

○ 上記의 家口가 代理로 抽出된 家口(抽出區分의 「2 具地家口」의 경우라도 協力を 얻을 수 있는限 全 項目에 걸쳐 記入하도록 합니다. 欄外事項과 不採用理由以外에도 「家口에 관하여」의 事項을 記入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7) 家口主가 하고 있는 일의 内容」의 回答을 얻을 수 없을 때는 民間職員・個人營業者 등의 職業名(「別表5 家計簿職業分類表」에 의한 「種類」를 (117 페이지) 記入해도 무방합니다.

「準調查家口票」의
作成範圍

問 44 「準調查家口票」는 不適格家口에 대해서도 作成합니까?

(答) 不適格家口에 대해서는 作成하지 않습니다. 且 記入依賴時에 家口區分이 錯誤가 있을때도 作成하지 않습니다.

〈準調査家口票記入例〉

(秘)

家計調査

總務廳統計局

都道府縣名	○○道
市町村番號	○○○○○○
単位區符號	0 1 1
一連家口番號	1 6

指定統計
號 56 號

準調査家口票

指導員印	印
調査員印	印

(19○○年 ○月 ○期)

(1) 家口区分			(2) 交替の種類			(3) 抽出区分		
① 勤勞者 家口	2 一般 家口	3 無職 家口	① 定期 交替	2 臨時 交替	① 最初에 축 出된 가구	2 其他 家口		

(家口에 관하여)

家口主 의姓名	湯田 登	(4) 満年齢	51歳	(5) 家口人員數	4人	(6) 就業人員數	1人
住所	○○	市 區 郡	町 城東 村	1 丁目	11 番地		
(7) 家口主가 하고 있는 일의 内 容(職業)	○○ 銀行의 管理職						符號欄

(住居에 관하여)

(8) 所育關係	1 自己家屋	2 民營賃貸住宅	3 民營賃貸住宅	4 公營賃貸住宅	5 公園・公社	6 給與住宅	7 貯房 等賃貸住宅
				(設備專用)	(設備共用)		

(家計費에 관하여)

(9) 1個月間의 家計費 總額	稅金, 貯金, 借入金 등은 포함하지 않는 生活費	約	30 萬圓
------------------	-------------------------------	---	-------

(不採用理由에 관하여)

10日後에 轉勤하기 때문에	(10) 符號欄
----------------	----------

第7 家計簿 記入方法

「家計簿」는 表紙, 記入方法, 記入例,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을 記入하는 페이저, 每月의 收入·支出을 記入하는 페이지 및 通信欄으로 되어 있습니다.

「家計簿」에는 勤勞家口 및 無職家口는 收入과 支出을, 一般家口(無職家口除外)는 支出만을 記入합니다. 또한 每日每日의 收入, 支出을 記入하는 페이지는 「I.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欄과 「II. 外상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일은物品 自家生產·商店의 商品)」欄의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表紙」를 쓰는 법

「表紙」의 各欄은 家計簿를 配付할 때, 調査員이 미리 記入해 둡니다. 단, 「家口人員數」 및 「就業人員數」欄은 家計簿를 收集할 때 調査員이 面接하여 記入합니다.

「西紀 年 月 期分」	調査하는 年月 및 期를 記入합니다.
「家口區分」	勤勞者家口의 경우는 「勤」을, 一般家口(無職家口는除外)의 경우는 「一」에, 無職家口의 경우는 「無」에 ○표를 합니다.
「市町村番號」「單位 區番號」「調査家口 番號」「一連家口番 號」	「市町村番號」「單位區符號」「調査家口番號」 및 「一連家口番號」欄은 家口票에서 각각 該當事項을 轉記합니다.
「記入開始부터의 月數」	調査家口의 家計簿記入開始부터 月數를 記入합니다. 臨時交替에 의해 새로 調査家口가 된 家口에는 그 家口의 家計簿記入開始부터 月數를 記入합니다. 또한 臨時交替가 月의 途中인 경우는 새로 調査家口가 된 家口에는 그 달의 「記入開始부터의 月數」에 「0」를 하고 그후는 上記와 같이 합니다. 예를들자면 어떤 家口가 9月中間에 臨時交替된 경우는 그 家口의 9月分에는 「0」, 10月分에는 「1」를 記入합니다.

「家口人員數」,
「就業人員數」

每期의 末日(15日 또는月末)에 家口人員數 및 就業人員數를
家口에 確認하여 記入합니다. 「家口人員」 및 「就業人員」의
決定方法은 「第5 家口票의 記入方法」(51페이지)를 參照합니
다.

〈家計簿記入例（表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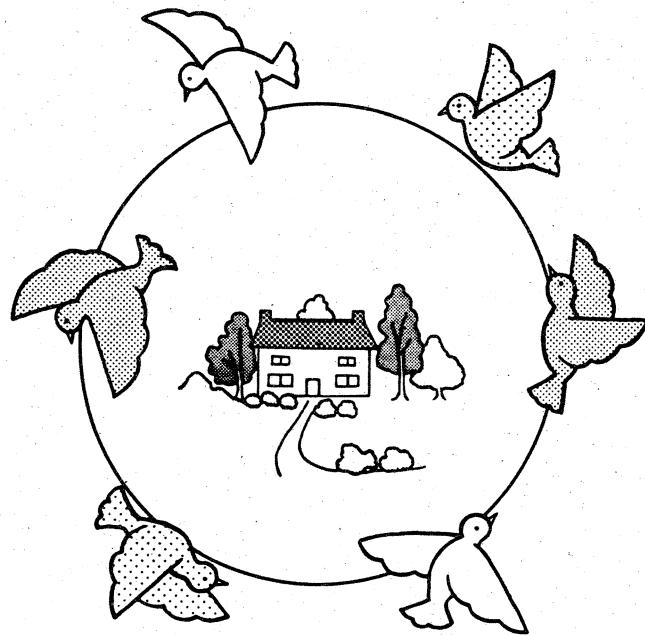


指定統計第56号

家計調査

家計簿

総務庁統計局



- 이 가계부의 내용은 통계以外의 目的, 가령 徵稅의 資料 등에는 絶對로 使用하지 않습니다.

19〇〇年 2月 1期分
(1期 1日 ~ 15日)
(2期 16日 ~ 月末)

家口区分	市町村番號	単位區 符 號	調査 家口番號	一連 家口番號	記入開始 月數	家 口 人員數	就 業 人員數
勤 一 無							

(ヨリ B 5判)

2.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페이지의 記入方法

調査家口가 銀行 또는 其他金融機關의 「口座自動對替制度」를 利用하여 公共料金이나 購入한 物品의 代金등을 自動的으로 支拂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일괄 記入합니다. 口座自動對替의 種類에는 電氣料金, 都市ガス料金·學校授業料, 保險의 拂入金·地方稅등과 같은 定期的으로 支拂하는 것이 있읍니다.

「電氣料金」, 「都市ガス料金」, 「프로판가스料金」, 「水道料金」, 「電話料金」, 「TV受信料」, 「學校給食費」, 「家屋賃貸料」, 「住宅貸付拂入金」 및 「ガソリン料金」은 각각 「1」 ~ 「10」의 所定欄에 그 以外의 것은 「Ⅱ」 以下の 自由記入欄에 記入합니다.

또한 그 家口가 이 制度를 利用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미 家口票作成時에 確認되었음으로 이것을 利用하는 家口에 대해서는 다음의 事項에 대해서 특히 說明을 해야 합니다.

「電氣料金」, 「都市ガス料金」
「ガソリン」 및 「프로판ガ스料金」의 使用料金에 관하여

公共料金에 使用料以外의 代金이 포함되고 있는 경우

「1. 電氣料」 ~ 「10. 가소린」以外

口座自動對替를 利用하는 경우

「電氣料金」, 「都市ガス料金」, 「ガソリン」 및 「프로판가스料金」에 대해서는 使用料金 以外에 使用量도 領收證(口座對替通知票)에 의해 記入합니다.

「都市ガス料金」, 「電話料金」등에 대해서는 使用料以外의 工事費, 施設費, 器具購入費 등을 同時に 支拂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使用料金과 그 以外의 代金을 區別하여 領收證(口座對替通知票)의 明細에 의해 記入합니다. 이때 使用料金은 「1」 ~ 「10」의 所定欄에, 또한 使用料金以外의 代金에 대해서는 「11」 以下の 自由記入欄에 각각 區別하여 記入합니다.

保險拂入金, 地方稅, 學校授業料 등은 「長男 ○○의 授業料 ○月分」과 같이 口座自動對替의 支拂內譯(種類·品名等)을 記入하고 「今月의 支拂分」欄에는 當月의 支拂額을 記入합니다.

口座自動對替란 公共料金등의 支拂者인 家口·受領者인 企業·仲介者인 銀行등의 金融機關 三者間의 契約에 의해 그때마다 現金이나 對替등에 의해 支拂하지 않더라도 定期的으로 그 家口의 預金口座에서 企業側에 自動的으로 支拂되는

制度입니다. 또한 이 制度를 利用하면 手中에 現金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家計簿 記入을 누락하기가 쉽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月賦에 의한 購入分
의 支拂

物品을 月賦購入한 경우 品名과 함께 月賦(○回分)과 같이 記入합니다. 또한 物品을 入手했을때 每日 記入하는 페이지의 「Ⅱ 외상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받은物品,自家生產,商店의 商品)欄은 87 페이지에서 서술한 「(7) 物品을 「外上購入」 또는 「月賦購入」으로 買入했을 경우」의 要領에 따라 記入 합니다.

크레디트 카드에 의
한 購入分의 支拂

物品을 크레디트 카드에 의해 購入했을 경우 品名과 함께 「○ ○크레디트 카드 ○月分」과 같이 크레디트 카드의 名稱과 支拂한 月을 記入합니다.

또 여러가지 品目을 함께 購入했을 경우는 될 수 있는한 購入品目마다 區分하여 記入합니다.

(注意) 씨비스나 物品의 購入代金등은 銀行對替나 郵遞局對替등에 의해 送金했을 경우는 現金支出이 됨으로 이 페이지에는 記入하지 않습니다.

또한 調査員은 家計簿를 審查할 경우 이 페이지에 記入하는 것 이 누락되거나 每日 記入하는 페이지에 重複하여 記入하고 있는 가를 確認하고 만약 記入이 누락되었거나 重複記入이 있으면 家口에 確認한 뒤에 訂正하도록 합니다.

〈家計簿記入例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

支拂內譯(種類, 品名等)	今月의 支拂分		※ 符號欄
	數量	金額	
1. 電氣料金 (1月分)	211 kw	5,937 円	430
2. 都市ガス料金 (1月分)	83 m³	6,527	431
3. 프로판가스料金 (1月分)	m³		432
4. 水道料金 (12月~1月分)		3,800	440
5. 電話料金 (12月~1月分)		4,350	762
6. TV受信料金 (12月~1月分)		1,930	880
7. 學校給食費 (12月~1月分)		3,200	39X
8. 家賃 (12月~1月分)			
9. 住宅賃付金의返済 (12月~1月分)		48,750	088
10. 가소린	60	7,800	750
11. 가스器月賦代 2回目		4,000	
12. 스테레오月賦代 2回目		20,000	
13. 洋服家口主 1回拂		47,000	
14. ○○크래디트 12月分		13,400	
15. PTA會費(次男 中學校) 1月分		200	
16. 生命保險料 家口主 12月分		6,830	
17.			
18.			
19.			
20.			
合 計		173,724	040

3. 每日의 收入·支出을 記入하는 페이지를 쓰는 方法

毎日, 日字 및 曜日을 記入하고 그날의 收入과 支出을 記入합니다.

- 支出이 없는 날은 1페이지를 사용하여, 日字 및 曜日을 記入하고, 「支出 없음」이라고 씁니다.
- 그날의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이 그 페이지의 「1 現金收入 및 現金支出」欄에 다 살 수 없을 때는 다음 페이지의 「1 現金收入 및 現金支出」欄에 記入합니다. 또 외상購入·月賦購入 또는 現物이 1페이지에 다 쓸 수 없을 때는 다음 페이지를 利用합니다. 이때 다음 페이지에도 반드시 日字 및 曜日을 記入합니다.
- 1行을 2行으로 나누어 記入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1行에 1項目씩 記入합니다.

ㄱ. 「前期 移越金」

勤勞者家口 및 無職家口에는 各期의 記入開始의 第1日째(1日 또는 16日)는 반드시 前日(月末 또는 15日)에서 移越한 現金을 記入합니다.
특히 記入開始 1個月째의 家口에 대해서는 잊지 않도록 指導합니다.

ㄴ. 「1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欄

現金이 지출되거나 수입되는 경우는 그 하나하나를 「1 現金收入 및 現金支出」欄에 記入합니다. 단, 一般家口(無職家口除外)에는 收入을 記入할 必要가 없습니다.

(1) 收入이 있을 경우

家口主의 收入뿐만 아니라 그 家口의 모든 收入에 대하여 그 種類와 金額을 記入합니다.

毎日記入하는 理由	問 45. 商店 경영으로 분망한 家口는 「家計簿」에 그날그날의 支出을 當日에 記入하지 않고 2~3日 묶어서 한꺼번에 記入해도 좋습니까? (答) 數日分을 한꺼번에 기입하면 그날의 支出을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錯誤가 발행됨으로 記入이 누락되거나 記入이 틀리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될 수 있는한 그날의 支出은 그 날중에 「家計簿」에 記入하도록 指導해야 합니다. 만약 부
-----------	---

득히 할 경우는 메모를 해 두거나, 그 이외의 記入누락이나
記入錯誤가 없도록 하는 方法을 취하도록 指導합니다.

① 給料나 賃金을
受領했을 때

給料나 賃金을 受領했을 때는, 이 欄에 다음의 것을 분명히 記
入하도록 합니다.

- 어떤 種類의 給料인가 (本給, 家族手當, 殘業手當, 奨勵手當,
賞與金 등)
- 누구의 給料인가 (家口主, 長男, 次女 등)
- 哪月分의 給料인가 (4月分, 12月分 4/4分期分 등)

〔参考〕 收入의 内容을 詳細히 記入하는 理由

集計時에 收入을 家口主, 妻, 其他의 家口員別로 또는 定期收入, 臨時收入, 償
與別로 分類하기 위하여 記入누락이나, 重複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記入하는 金額은 領收額이 아니고 所得稅, 健康保險料
또는 여려가 種類의 積立金 등을 控除하기 전에 給料明細를 記
入합니다.

給料나 賃金에서 控除된 所得稅, 住民稅, 健康保險料나 여려
가지 積立金 등은 하나하나를 「現金支出」로 하여 그 種類와
金額을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欄 및 「(4)
現金支出」欄에 각각 記入합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符號欄
家口主 ○月分 本給	347,500 円		円	
" 役付手當	13,000			
" 家族手當	17,000			
" 所得稅			18,850	
" 住民稅			15,450	
" 健康保險料			13,230	
" 厚生年金			19,800	
" 雇用保險料			2,880	
妻 ○月分 本給	176,500			
" 超勤手當	15,300			
" 所得稅			12,350	
" 住民稅			8,450	
" 共濟組合掛金(長期)			13,414	
" " (短期)			8,325	

給料의 種類別 区分
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給料의 區分을 적어도 定期的인 收入(定期收入)인지, 臨時의
인 收入(臨時收入)인지 알 수 있도록 區別하여 記入합니다. 이 경
우도, 所得稅, 健康保險料나 여러가지 積立金 등을 控除하기前의
給料에 관해서 記入합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符號欄
家口主 ○月分 定期收入	248,700 円		円	
臨時收入	20,000			
所得稅			14,920	
健康保險料			8,200	
住民稅			12,830	

- 定期收入이란 - 基本給以外에 家族手當
 - 住宅手當 · 通勤手當 · 超過勤務手當 · 特殊勤務手當 等을 포함시킵니다. (支給額은 每月 一定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 臨時收入이란 - 報答金 · 獎慮手當등의 獎慮의 의미에서 受領된 收入 및 一時的으로 받는 特別手當 등을 말하며 가령 增產手當 · 生產手當 · 創立記念祝金 基本給引上額 등을 말합니다.
- 償與란 - 6月(夏期), 12月(冬期) 등에 每日의 紙料와 別途로 支給되는 特別手當으로 말하자면 보너스를 말합니다.

給料나 賃金이 勤務處로부터 家口의 預金口座에 直接拂入될 경우

給料支給日에 紙料明細書에 의해 「(2) 現金收入」 및 「(4) 現金支出」欄에 前記와 同一한 方法으로 記入하는 것과 동시에 預金口座에 入金된 金額을 「(4) 現金支出」欄에 「給料口座自動入金分」이라고 記入합니다. 즉, 이 額數(所得稅나 健康保險料등을 控除한 受領額)은 現金을 받고 즉시 預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후에 預金을 引出하여 生活費에 充當한 경우는 「預金引出」로서 「(2) 現金收入」에 記入합니다.

家族의 收入이나 支出內容이 不明한 경우

問 46 家族의 紙料나 支出內容도 家口主와 같이 누락하지 않고 「家計簿」에 記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家族의 紙料를 家計에 넣지 않고 支出內容도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答)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는 적어도 收入總額(稅金포함)를 가령 「長男 7日分給料」이라 하고 「(2) 現金收入」欄에 記入하는 동시에 「長男雜費」로 취급하여 同額을 「(4) 現金支出」欄에 記入합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符 號 欄
家口主 ○月分 本 紿	209,000 円		円	
" 家族手當	28,000			
" 残業手當	52,200			
" 所 得 稅			8,290	
" 住 民 稅			15,720	
" 健康保險料			8,540	
給料口座 自動入金分			256,650	
預金引出	50,000			

給料나 賃金을 2
個所 以上에서 받
을 경우

어느 勤務處에서의 收入인가를 區別하여 記入합니다.

給與의 一部가 口
座自動對替된 경우

問 47 給與의 一部를 口座自動入金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記入합니
까?

(答) 口座自動入金額은 現金을 받고 즉시 入金한 것으로 간주함으
로 給料의 明細를 「(2) 現金收入」欄에 (控除額도 잊지 않고
「(4) 現金支出」欄에 記入하고 아울러 口座에 入金된 金額은
給料口座自動對替분으로서 「(4) 現金支出」欄에 記入합니다.
또한 入金된 것을 引出할 경우에는 預金引出로서 「現金收入」
欄에 記入합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 符號欄
家口主 ○月分 本 紿	261,200円			円	
〃 家族手當	28,000				
〃 健康保險料				8,540	
〃 所得稅				8,290	
家口主 夜間高校					
〃 ○月分 講師料	48,000				
〃 所得稅				4,800	

給料의 一部를 假拂

「給料 一部假拂」이라고 記入합니다.

한 경우

假拂分이 뒤에 給料에서 控除되는 경우는 그 控除된 額數의 假拂分은 「假拂金의 返濟」로서 「(4) 現金支出」에 記入합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 符號欄
家口主 ○月分 給料 一部假拂	25,000円			円	
家口主 ○月分 本 紿	214,500				
〃 所 得 稅				12,870	
〃 一部假拂의 返濟				25,000	

給料가 一部만 支給
되었을 때나, 전혀
支給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령 「家口主 10月分 給料 一部만 支給되었음」
「家口主 10月分 給料 支給되지 못함」과 같이 支給豫定日의
페이지의 「備考」欄에 記入합니다. 또한 어떤 달에는 그달의
給料와 함께 前月分의 未拂金을 받았을 경우는」 각각 區別하여
記入합니다.

給料나 賃金의 一部
를 現物로 支給
받은 境遇.

이 경우는 「I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欄에 記入하지 않고
「II 外土購入·月賦購入 또는 現物(받은것, 自家產, 商店의 商品)」欄에 記入합니다. 또한 現物로 支給된 物品을 記入하는 경
우는 「III 받은物品」에 ○표를 하고 金額은 時價로 見積된 額數
를 記入합니다.

② 給料나 賃金以外 에 現金이 들어온 경우

給料나 賃金以外에 現金이 들어온 경우는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欄에, 例를 들면 「9月分」 家屋賃
貸料의 領收」·「長男의 間病金을 받음」「貯金引出」「出張旅
費의 残金入金」등을 記入하고 「(2) 現金收入」欄에 그 金額을
記入합니다.

「原稿料」 등의 收入이 있을 경우는 「(2) 現金收入」欄에 그
所得稅는 「(4) 現金支出」欄에 각각 記入합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 符號欄
○月分 貸家家賃의 受領	75,000 円		円	
母의 病間安金을 받음	10,000			
親友부터 貸金의 返済를 받음	3,000			
出張旅費의 残金 入金	3,500			
原稿料	34,000			
所得稅			3,400	

給料支給日이 月末
인 경우

問 48 給料支給日이 月末인 경우 家計簿의 記入이 다음달의 1日
에 記入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答) 重複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음으로 月末에 記入을 하도록
指道해 주십시오.

制服, 事務服類의
取扱

問 49 會社·工場등의 職場에서 支給받는 制服·事務服等은 「家計
簿」에 어떻게 記入합니까?

(答) 制服, 事務服 등은 그의 支給形態에 관계없이 現物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家計簿에 記入할 必要는 없습니다.

內職收入, 事業收入
등이 있을 경우

내職收入은 누가 그 내職을 했는가를記入하고 그 金額은 所要된 經費를 控除한 金額을 記入합니다.
事業收入은 그중 家計에 入金된 分만 記入하게 됩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4) 現金支出	※ 符號欄
		單位		
母의 内職 韓服봉재代金의	円			
純益金	9,000			
담배 小賣上이				
家計에 入金	12,000			

自動對替로 年金收入
이 들어온 경우

家口主나 家口員의 年金이 들어온 경우에는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欄에 例를 들면 「家口主의 厚生年金(自動對替分)」이라고 記入하고 「(2) 現金收入」欄에 그 金額을 記入합니다. 또 自動對替의 경우는 現金을 받아 즉시 預金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4) 現金支出」欄에도 같은 金額을 記入합니다.

[參照 參考 1 年金의 種類(105페이지)]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4) 現金支出	※ 符號欄
		單位		
家口主(厚生年金) 受領	567,900円		円	
// 自動對替			567,900	
貯金引出	200,000			

百貨店의 商品券 또는 手票를 받았을 때

百貨店의 商品券이나 手票를 받았을 때 現金으로 간주하므로 받았을 때는 「現金收入」으로 記入합니다. 또 받은 商品券이나 手票로 物品을 購入하거나 받은 手票를 貯金할 경우는 「現金支出」에 記入합니다.

麥酒券을 받았을 경우

麥酒券, 電話카드, 圖書券 등의 用途가 明示되어 있는 商品券은 現金으로 취급하지 않고 現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

에는 記入하지 않습니다. [參照 98 페이지]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 符號欄
知人부터 商品券을 받음	5,000円		円	
賃貸店舗代 ○月分 手票로 받	20,000			
음				
小兒服(商品券)		1 着	5,000	
받은 手票를 賽金			200,000	

(L) 現金을 支出한 경우

物品을 購入하거나 外上購入한 物品代金을 支拂하거나 賽金하여 家計에서 現金이 支出된 경우는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欄 「(3) 數量 · 單位」欄 및 「(4) 現金支出」欄에 記入합니다.

①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欄

다음의 사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記入합니다.

- 品名…「쌀」「野菜」「生鮮」「菓子」「外食」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白米」「큰파」「염장삼치」「소금간한 전병」「김밥」「된장라면」등과 같이
 個個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記入합니다.
- 用途…家族의 누가 사용하는지 손님의接待를 하는 것인지 선물할 것인지 멀리 있는家族에게 부칠 것인지 등의 그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記入합니다. 단, family이 消費하는 食料品이나 日用品은 누가 使用하는지 記入할 必要가 없습니다.

〔参考〕 品名 및 用途를 記入하는 理由

品名…家計가 購入하는 商品을 品目마다 支出金額 및 購入數量을 集計하기 위해서입니다.

用途…使用目的에 따라 支出金額을 集計하기 위해서입니다.

例를 들면 衣服類를 紳士用, 婦人用 또는 小兒用으로 分類하거나 손님의接待나 寄贈한 것은 각각 商品으로 分類하는 동시에 「交際費」로 分類한
 다던지 멀리 있는家族에게 부친 것은 「送金」에 分類합니다.

이 品名 및 用途의 記入時는 다음點을 注意합니다.

米	쌀은 「白米」 「찹쌀」 또는 「其他의 쌀」로 구분하여 記入합니다.
家屋賃貸料, 電氣料, 會費等	家屋賃貸料, 房貢, 電氣料, 가스料, 水道料, PTA 會費, 洞會費保険料, 其他會費 및 外上拂入등은 例를 들어 3月分, 第 1 期分과 같이 반드시 支拂의 時期를 付記해야 합니다.
會費・積立金	會費나 積立金은 그 性質 또는 目的을 알 수 있도록 例를 들면 「家口主○○會費(會社의 旅行費) 9月分」·「家口主 十五日 會費(會社의 時調會) 10月分」·「有隣會(町內會) 10月分」 등 등의 說明을 붙여 記入합니다.

〔参考〕 會費・積立金의 目的을 記入하는 理由

町內會費 및 勞組費는 「負擔費」에 時調會・茶道會등의 同好會費인 경우는 「教養娛樂서비스」에 分類하는 것과 같이 分類項目이 相異하기 때문이다.

友人會의 積立金	問 50 百貨店등의 友人會(一定額을 積立하여 어느 정도의 金額에 달하면 購入券을 받음)의 積立金・購入券 및 購入券을 使用할 경우 家計簿의 記入은 어떻게 합니까? (答) 友人會의 每月 積立金은 現金支出欄에 現金支拂이라고 記入하고 購入券으로 物品을入手할 때는 「Ⅱ 外上購入・月賦購入 또는 現物」欄의 「2月賦購入」에 記入합니다. 또한, 百貨店에서 購入券이 送付되어 왔을 時點에는 家計簿에 記入할 必要가 없습니다.
保 險 料	保險料는 保險의 種類를 알 수 있도록 記入합니다. 保險에는 生命保險과 損害保險이 있고 둘다 積立型과 一定額拂入型이 있으므로 區別할 수 있도록 記入합니다. [參照 參考 2 損害保險의 種類 106페이지)]

〔参考〕 保險의 種類를 記入하는 理由

生命保險料 등의 支拂은 賯蓄으로 간주하고, 火災保險 등의 拂入保險料는 消費로
간주하고 集計하기 때문입니다.

書籍代, 定期代등

書籍代, 定期代, 구락부費 등은 「家口主週刊誌」, 「次男學習參考書」 「만화(아동)', 「次男通學定期」 「長女學敎구락부費」 등과
같이 教育費인지 誤樂費인지 使用者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記入합니다.

用 途 變 更

問 51 家口에서 使用할 目的으로 구입한 物品을 뒤에 答禮用으로
사용된 경우(用途變更)는 앞서 記入한 것을 訂正합니까?
(答) 앞서 記入한 것을 訂正할 必要가 없읍니다.

雜費에서 購入한 경 우

問 52 가령「家口主의 雜費」로서 이미「家計簿」에 記入한 후에
家口主가 雜費에서 선물등을 購入했을 경우는 어떻게 記入 합
니까?
(答) 이런 경우는 가령「菓子, 家口主의 雜費에서 삼」이라고
記入하고 그 數量과 金額을 「現金支出」로서 記入합니다.(…
統計局에서는 家口主의 雜費에서 그 額數만을 控除하여 集計합
니다.)

家口主의 雜費에서
支拂된 경 우

問 53 燃料費가 「家口主의 雜費」에 들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
까?
(答) 雜費의 內譯도 모두 記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이
것도 記入하도록 指導해 주십시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家計
簿의 通信欄에 每月 대개 使用하는 金額 및 「가소린 代金의
雜費에서」라고 記入합니다.

旅行 登山 費用	旅行이나 登山등에 所要된 費用은 一括하여 記入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交通費(電鐵代, 버스代, 船代)등, 宿泊料, 休憩料, 食事代(도시락, 짜장면, 오랜지쥬스등) 入場料(兒童動物園)등과 같이 記入합니다.			
病院에 支拂한 費用	病院에 支拂한 費用은 診察料. 入院費(食事代, 入院室代)의 區別이 되도록 記入합니다.			
自動車 購入費用	自動車 購入費用은 車體價格以外 自動車重量稅, 自動車損害賠償, 債任保險의 諸經費의 内容을 알 수 있도록 記入합니다.			
手票로서 物品을 購入한 경우	手票로서 物品을 구입한 境遇는 「(4) 現金支出」欄에 記入함과 동시에 「預金引出」로서 「(2) 現金收入」欄에도 記入합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現金收入	(3)數量 單位	(4)現金支出	※ 符號欄
家口主 革靴(手票)	圓	1 足	11,000 圓	
妻 핸드백(〃)		1 個	10,000	
預金引出	21,000			

併用住宅의 경우의 家屋賃貸金과 電氣 料의 記入	營業하고 있는 家口의 家屋賃貸金, 地代, 電氣料等은 家計分만 記入합니다. 店舗分과 家口分이 區別되어 支拂되지 않는 경우는 業務部分과 居住用部分과의 面積이나 電燈數의 比率에 따라 家 計分만을 推定하여 記入합니다.
---------------------------------	--

家庭內의 貯金	問54 家庭內에서 貯蓄函에 每日 얼마씩 貯金하고 있는 경우 그 貯蓄金은 每日 「現金支拂」로서 記入합니까? (答) 手中에 있는 現金이므로 「家計簿에 記入할 必要是 없읍니다. 그러나 貯蓄을 郵便局이나 銀行등의 金融機關에 預金할 때는 그 預金한 額을 「家計簿」에 「現金支出」로서 記入합니다.
---------	---

月賦나 外上購入金
을 支拂할 경우

分割拂이냐, 1回拂이냐를 区別할 수 있도록 記入합니다. 즉 月賦나 티켓, 쿠폰등으로 分割支拂의 경우는 例를 들면 「家口主洋服月賦 3個月分」과 같이 또 1回拂의 경우는 가령 「家口主구두代金 1回拂」과 같이 記入합니다.

外上購入金을 支拂할 경우는 支拂處의 店舗種類를 알 수 있도록 가령 「酒店外上支拂 3月分」과 같이 記入합니다.

貯蓄函에서 支拂된
경우

問 55 物品代金 등을 貯金函에서 支拂한 경우는 家計簿에 記入
합니까?

(答) 貯蓄函에서라도 「現金支出」로서 記入합니다.

月賦나 外上購入 을
한 경우의 集計方法

問 56 月賦나 外上購入을 했을때 그 代金의 金額을 「月賦購入(外上
購入)」으로 記入하며, 다시 그 月中에 代金을 現金으로 支拂
했을 경우에는 「(4) 現金支出」欄에 또한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欄에 각각 記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支出
이 重複되어 記入되기 쉽기 때문에 集計上 過大集計 되지 않겠
습니까?

(答) 月賦나 外上 購入을 하고 그 支拂을 한 경우는 集計上의
取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月賦 또는 外上購入을 한 경우는
그 分을 借用하여 購入한 것으로 보고 集計上에는 收入部門(實收入 以外의 收入) 및 支出部門(消費支出의 該當項目)에
分類합니다. 그리고 그 支拂을 한 경우는 借用金返済(月賦支拂
또는 外上支拂)로서 「實支出 以外의 支出」에 分類 하므로
收入部門, 支出部門이 過大하게 되지 않습니다.

[例] 12,000 円의 라디오를 5回拂로 月賦購入 했을 경우

- ① 家計簿에는 「Ⅱ 外上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欄에 「라
디오 5回拂 月賦購入 - 1台 - 12,000円」이라고 記入하게 됩니다만 集計上으로는 12,000円의 借用金이 발생한 것으로
하고 「實收入 以外의 收入」에 12,000円을 計上함과 동시에
「消費支出의 라디오」의 項目에 12,000円을 計上합니다.

② 第1回(또는 첫회분)의 支拂을 2,400円을 支出했을때는 家計簿에는 「라디오 月簿購入 제1회」 첫회분 支拂 - 2,400円」이라고 記入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口座自動對替로서 支拂했을 경우에는 家計簿에는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 欄에 前記와 같이 支拂합니다. 集計上에서는 貯金을 引出하여 借用金을 支拂한 것으로 하고 「實收入 以外의 收入」과 「實支出 以外의 支出」에 記入합니다.

口座自動對替 制度
를 利用하고 있는
경우

公共料金이나 크레디트카드로 購入한 物品의 代金이나 學校給食費 등의 口座對替制度를 利用한 支拂은 「口座對替에 의한 支拂」 페이지에 記入합니다.

또한 PTA會費, 修學旅行費등은 學校給食費에 포함 시키지 않고 하나하나 別途로 記入합니다.

時價보다 싸게
購入했을 경우

時價에 比해 싸게 購入했을 경우는 「(1)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欄에 例를 들면 「知人에서 時價의 4割引」「會社의 製品으로 半價」「會社 알선에 의해 一部만 負擔」등과 같이 付記합니다.

또한, 會社가 一部 支拂했기 때문에 物品 價格이 싸게 되었을 경우는 「I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欄에는 自己가 支拂한 분만을 記入하고 그 나머지 負擔해준분은 「II 外上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받은物品,自家產, 商店의 商品)」欄에 記入합니다.

이것은 金額 또는 數量의 記入에 錯誤가 없는지를 確認하기 위한 것입니다.

立替支拂의 경우

內職材料를 購入하거나 出張旅費나 店舗에 支出을 立替한 경우는 現金支出로 하지 않고 그날의 「備考」欄에 「內職의 材料를 사는 500円」「家計에 一時立替 5,000円」등과 같이 記入합니다.

또한 出張旅費나 商店에의 立替金을 受領한 경우도 現金收入이라 하지 않고 그날의 「備考」欄에 「出張旅費의 立替金受領

6,000 圓」 「家計에의 立替金 受領 5,000 圓」 같이 記入합니다.

② 「(3) 數量・單位」欄

「(3) 數量」欄에 購入한 物品의 數量을 原則으로 하고 미터法으로 記入합니다.

點線의 左側欄에는 그 物品의 數量을 記入하고, 點線의 右側欄에는 그 物品의 數量 表示를 「單位」로 記入합니다. 例를 들면 食料品 등은 「200 g」, 「10 kg」, 「1.8 ℥」, プロ판가스는 「4 m³」 가소린은 「60 ℥」 등으로 記入합니다.

이 경우의 單位는 g, kg, m³, ℥ 등의 記號로 記入해도 무방합니다. 食料品은 한뭉치, 한접시, 한푼대, 한마리 등의 單位로 구입했을 경우는 「저울」에 달아 g, 또는 kg으로 記入합니다.

또한 …… 統計局에서 數量을 集計할 때는 統一하여 使用하는 單位를 品名마다 「別表 7 消費支出의 品目項目 및 數量單位一覽表」(120페이지)에 表示되어 있으므로 記入指導에 參考해 주십시오.

出張旅費의 立替

問 57 出張旅費를 立替한 경우, 家計簿의 記入은 어떻게 합니까?

(答) 立替金에 대해서는 家計簿의 「備考」欄에 立替理由와 金額을 記入합니다. 後日 會社 등으로부터 出張旅費로서 受領한 金額과 立替한 金額과의 差가 있을 경우 그 差額分을 現金收入(남는 余分이 있는 경우) 또는 現金支出(부족한 경우)로서 그 理由와 金額을 記入합니다.

數量을 集計하지
않는 品目과 數
量記入에 관하여

問 58 數量・單位 記入의 參考로서 「別表 7」이 있읍니다만 單位
欄이 ※표의 品目에 대해서는 數量과 單位를 記入하지 않도록
指導해도 좋습니까?

(答) 家計調査에는 家口가 家計簿에 記入할 때 購入한 것을 單純히 記錄하는 方法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記入의 努力은 약간 더 듭니다만 特別한 判斷이 必要 없으므로 相對的으로 記入의 負擔은 덜게 됩니다. 記入內容도 正確性을 保障할 수 있는 理由도 있읍니다. 따라서 家口에 대해서는 있는 그 대로 單純히 記入하도록 指導해 주십시오. 또한 調査票의 段階에서는 數量集計를 行하는 品目에 대해서는 數量單位도 정해져 있는 單位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체크합니다. 數量의 集計를 하지 않는 品目에 대해서는 支出金額과 數量과를 比較하여 支出金額의 記入이 適正하면 數量의 補完등은 必要 없읍니다.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 符號 欄
食 料 品	白米	円	10 kg	3,785	
	찹쌀		2 kg	1,740	
	食鹽		375 g	170	
	양파		780 g	172	
	염장삼치		200 g	580	
	두부		1 J	100	
	豚肉		235 g	564	
外 食	白砂糖		1 kg	295	
	牛乳代 ○月分 200cc 30本		6,000 ℥	1,800	
	晝食(韓定食)家口主		1 人分	650	
住居	가락국수(妻, 子供)		2 잔	900	
	給食費 次男 ○月分			3,200	
	家屋賃貸料 ○月分			45,000	
光 熱 ・ 水 道	水道料 ○月分～○月分			5,960	
	電氣代 ○月分		211 kw	5,937	
	都市ガス ○月分		83 m³	6,527	
	프로판가스 ○月分		17 m³	7,750	
被 服	灯油		20 ℥	1,500	
	兒童用 잠바 次男		1 着	14,000	
	원피스 妻		1 着	36,000	
保健醫療	팬티스타킹		5 足	1,100	
	비타민劑		1 箱	1,200	
	診療代 妻			3,400	
交通通信	入院代 母			12,000	
	버스代		1 往復	320	
	염서代		10 枚	400	
	通學定期代 長女 ○月分		1 個月	3,220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 符號欄
教 育	PTA會費 次男 ○月分	円		円 200	
	高校授業料 長女 ○月分			6,200	
	修學旅行積立金 長女○月分			5,000	
	萬年筆 長女		1 本	3,000	
文 房 具	鉛筆 次男		5 本	150	
	化粧비단		2 個	300	
理 美容	목욕비		大人 2 人分	.520	
	능금(知人 病氣問安用)		2 kg	2,000	
文 際 ・ 仕 送	乳兒服(出產祝)		1 着	5,000	
	코-피(喫茶店)		2 잔	700	
	(乘客接待psilon)		4 잔	3,400	
	長男에 送金(大學在學)			50,000	
稅 金	벽시계(知人新築祝)		1 個	20,000	
	洞會費 ○月分			200	
	五月會費(俳句會)家口主 ○月分			1,000	
	固定資產稅 第○期分			14,300	
財 金 ・ 投 資	生命保險料 家口主 ○月分			6,830	
	住宅火災保險料 1年分			18,000	
	株券購入			550,000	
	宅地購入 初回支拂			1,500,000	
月 賦 ・ 掛 買	定期郵便貯金 ○月分			10,000	
	住宅金融公庫支拂 ○月分			39,535	
	겨울洋服 家口主 月賦拂 ○月分			7,000	
	카라TV 月賦購入 初回金拂入			30,000	
	酒店外士支拂 ○月分			8,600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 符號欄
食 料 品	白米	円	10 kg	3,785	
	찹쌀		2 kg	1,740	
	食鹽		375 g	170	
	양파		780 g	172	
	염장삼치		200 g	580	
	두부		1 J	100	
	豚肉		235 g	564	
外 食	白砂糖		1 kg	295	
	牛乳代 ○月分 200cc 30本		6,000 ℥	1,800	
	晝食(韓定食)家口主		1 人分	650	
住居	가락국수(妻, 子供)		2 잔	900	
	給食費 次男 ○月分			3,200	
光 熱 ・ 水 道	家屋賃貸料 ○月分			45,000	
	水道料 ○月分～○月分			5,960	
	電氣代 ○月分		211 kw	5,937	
	都市ガス ○月分		83 m³	6,527	
被 服	프로판가스 ○月分		17 m³	7,750	
	灯油		20 ℥	1,500	
	兒童用 잠바 次男		1 着	14,000	
保健醫療	원피스 妻		1 着	36,000	
	팬티스타킹		5 足	1,100	
	비타민剤		1 箱	1,200	
交通通信	診療代 妻			3,400	
	入院代 母			12,000	
	버스代		1 往復	320	
	염서代		10 枚	400	
	通學定期代 長女○月分		1 個月	3,220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 및 用途	(2) 現金收入	(3) 數量 單位	(4) 現金支出	※ 符號欄
教育文房具理美容	PTA會費 次男 ○月分	円		円 200	
	高校授業料 長女 ○月分			6,200	
	修學旅行積立金 長女○月分			5,000	
	萬年筆 長女		1 本	3,000	
	鉛筆 次男		5 本	150	
	化粧비누		2 個	300	
	목욕비		大人 2 人分	520	
	능금(知人 病氣問安用)		2 kg	2,000	
	乳兒服(出產祝)		1 着	5,000	
	豆-豆(喫茶店)		2 잔	700	
文際・仕送	(乘客接待Deposit)		4 잔	3,400	
	長男에 送金(大學在學)			50,000	
	벽시계(知人新築祝)		1 個	20,000	
	洞會費 ○月分			200	
	五月會費(排句會)家口主 ○月分			1,000	
稅金	固定資產稅 第○期分			14,300	
	生命保險料 家口主 ○月分			6,830	
	住宅火災保險料 1年分			18,000	
	株券購入			550,000	
貯金・投資	宅地購入 첫회支拂			1,500,000	
	定期郵便貯金 ○月分			10,000	
	住宅金融公庫支拂 ○月分			39,535	
	겨울洋服 家口主 月賦拂 ○月分			7,000	
月賦・掛買	카라TV 月賦購入 初回金拂入			30,000	
	酒店外土支拂 ○月分			8,600	

(c) 「今日의 現金殘高」欄

이欄은 勤勞者家口 및 無職家口에는 매일 다음날移越하는 現金 手中金額을 記入합니다. 이 額數는 前日의 現金殘高에 當日의 現金收入을 더하여 當日의 現金支出를 控除한 額과 一致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一致하지 않는 경우는 記入누락이나 記入錯誤가 없는지 確認합니다. 다만 店舗쪽에 돈을 돌리거나, 出張旅費를 立替하거나 出張旅費의 立替金을 受領하거나, 內職材料를 구입하거나 하여 家計以外로 現金을 支拂하거나 受領한 경우는 이미 家計簿에 記入한 후 이므로 「雜費」에 선물등을 구입한 경우는 「現金收入」이나 「現金支出」로서 記入하지 않기 때문에 一致하지 않게 됩니다.

(d) 「Ⅱ 外上購入 月賦購入 및 現物(받은物品, 自家生産, 商店의 商品)」欄.

物品을 外上購入 또는 月賦購入 했을 때 (크레디트 카드에 의해 購入했을 경우도 包含됨) 또는 物品을 받거나 勤務處에서 會社의 製品이나 通勤定期券을 支給 받거나, 自家菜園의 野菜를 採取한 경우는 그때마다 일일히 「Ⅱ 外上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받은物品, 自家產, 商店의 商品)」欄에 記入합니다.

數量이나 重量을 알 수 없는 境遇	問 59 病問安에 가는 도중에 問安用으로 과일등을 샀을 경우 途 中에서 무게를 달 수 없음으로 數量은 記入하지 아니해도 좋습니까? (答) 重量을 다는 것이 무리한 경우는 個數등 아는 범위에서 記入하도록 指導해 주십시오.
放送受信料를 일괄 支拂한 경우	問 60 放送受信料金을 1年分 또는 半年分을 일괄하여 支拂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答) 支拂時에 「0月～0月分」이라고 記入하고 그 후에도 支拂했을 때 記入합니다.
電氣使用量을 알 수 없을 경우	問 61 電氣料金에 대해서는 그 支拂分의 使用量도 記入하게 되어 있으나 使用量을 도저히 알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答) 使用量을 確認하여 記入합니다만 도저히 알 수 없을 때는 通信欄등에 「契約電流(암페어)를 家口主에게 들어 記入합니다.

(一) 物品을 「외상」 또는 「月賦」로 샀을 경우

① 「(1) 品名 및 購入方法」欄 다음의 것을確實히 알 수 있도록記入합니다.

◦ 品名 간장, 장, 칼라TV, 겨울양복(家口主)등과 같이個個의 이름을 구체적으로記入합니다.

◦ 購入方法 外上의 경우는 「1」를, 月賦購入의 경우에는 「2」에 ○표를 합니다.

또한 크레디트카드에 의해 購入했을 경우는, 1回拂은 外上購入, 分割拂의 경우는 月賦購入으로 하고 該當番號에 ○표를 하고 「○○크레디트」라고 明記합니다.

◦ 支拂方法 月賦購入에 대해서는 몇회拂인지 또는 몇個月拂인지를記入합니다.

② 「(2) 數量·單位」欄 數量과 單位를 「現金支出」의 경우와 同一하게記入합니다.

③ 「(3) 金額」欄 物品의 大略金額을記入합니다.

記入할 때는 다음 點을 주의합니다.

月單位로 支拂할 때의 取扱方法

牛乳 乳酸菌飲料, 新聞代 또는 크리닝代등을 月單位로 支拂할 경우는 每日 外上이라고 記入하지 않고, 그 代金을 支拂할 때 一括하여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欄에 記入합니다.

普通의 月賦購入과 다른 경우

專門店이나 百貨店등의 友人會 또는 最近의 消費者信用制度를 利用하여 物品을 구입할 때는 月賦購入으로 取扱하고 그 總額과 數量을 여기에 記入합니다만 그 取扱方法이 普通의 分割拂과 相異하다면 그 사실을 「備考」欄에 記入합니다.

크레디트·카드에 의해 物品을 購入한 경우

크레디트 카드로 物品을 購入했을 경우는 物品을入手했을 때 品各, 購入方法, 支拂方法 및 代金의 金額을 「II 外上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받은物品, 自家產, 商店의 商品)」欄에 記入하여 1回拂 또는 分割拂의 代金을 口座自動對替에 의해 支拂했을 때는 「口

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 페이지에 記入합니다.

{ TV를 月賦로 購入했을 경우 }

「家計簿」의 「II 外上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 (받은物品, 自家生產, 商店의 商品)」欄에는 例를 들면 「칼라TV 10回拂 1台 180,000 円」이라고 記入하고 初回拂入金 및 月別支拂의 경우는 「家計簿」의 「1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欄에 例를 들면 「칼라TV 月賦購入初回拂入金 30,000 円」과 같이 記入합니다.

總務廳統計局에서는 月賦로서 구입한 경우는 集計上을 借用金으로 算다고 간주하고 初回拂入金 및 月別 支拂은 負債返濟 (實支出以外의 支出)로서 處理합니다.
또한 外上인 경우도 同一한 方法으로 處理됩니다.

(1) 品名 및 購入方法 右측有에 해당하는 것에 ○표를 하십시오.	1 2 3 4 5 外月 받自商上賦은 店의 購購物商入品產品	※ 符號欄	(2) 數量	單位	金額 (3)(받은物品自家生產 또는 商店의 商品은 見積金額)	※ 符號欄
간장	① 2 3 4 5		2,000	mℓ	570	
장	① 2 3 4 5		2	kg	840	
위스키 1級	① 2 3 4 5		720	mℓ	2,750	
칼라TV 10回拂	1 ② 3 4 5		1	台	180,000	
겨울洋服 家口主 크레디트 5回拂	1 ② 3 4 5		1	着	60,000	
文化預金購入	1 ② 3 4 5		1	台	720,000	
	1 2 3 4 5					
	1 2 3 4 5					

備考 文化預金으로서 每月 30,000 円을 積立하여 4回積立하면 피아노가 들어온다. 그후 20回積立한다.

(n) 이웃으로부터 物品을 받거나, 自家生產의 것을 家計에 취하거나, 商店의 商品을 家計에서 消費할 경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記入합니다.

받은物品 ○ 이웃으로부터 물건을 얻었을 경우 단 物物交換은 記入하지 않음
니다.

○ 이웃으로부터 선물로서 받은 경우 단 茶菓子정도의 것은 記入
하지 않습니다.

○ 勤務處에서 物品이나 定期券등을 支給받았을 경우

○ 會社가 一部를 支拂했기 때문에 싸게 구입한 경우 (그 負擔해
준 部分에 대하여)

다만 特賣등으로 싸게 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麥酒券, 圖書券등의 引換券 또는 電話카드 등을 받았을 경우

自家生產 ○ 自家菜園, 養鷄등에서 生產物를 取得했을 경우 (自家生產은 消費했
을 때가 아니라 들여 놓았을 때 一括하여 記入합니다. 또 계란,
野菜등을 自家產物로서 매일 들여놓는 경우는 그때마다 記入하지
않고 1個月分을 묶어서 記入해도 무방합니다.)

○ 山海・林野・湖水등에서의 收獲物을 얻는 경우

○ 自家生產의 野菜등을 自宅에서 담그어서 消費한 경우는 自家에서
野菜를 들여놓았을 때 「Ⅱ 外上購入, 月賦購入 및 現物 (받은 物
件, 自家生產, 商店의 商品) 欄에 時價로 見積해서 記入하고, 그때
買入된 소금등은 「1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欄에 「(4) 現金支
出」欄에 記入합니다. 따라서 消費할 때마다 記入할 必要는 없읍
니다.

商店의商品 ○ 商店의 物品을 家計로 돌려 쓴 경우

받은物件의 用途 變更	問 62 받은 物件를 다시 贈與物로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記入 합니까?
----------------	---

(答) 받았을 때 「Ⅱ 外上購入, 月賦購入 및 現物」 (받은物件,
自家生產, 商店의 商品) 欄에 받은 物件으로 記入합니다. 贈與
한 것은 쓸 必要가 없읍니다.

① 「(1) 品名 및 購入方法」欄……다음의 것을 반드시 記入합니다.

○品名……JR定期券, 보자기, 고구마 등과 같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구체적으
記入합니다.

○入手方法……받은 物件, 自家生產 商店의 商品 중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합니다. 또한 얻은 물건의 경우는 「勤務處」「友人」등과
같이 누구에게서 받은지를 記入합니다.

② 「(2) 數量」欄……그 數量과 單位를 「現金支拂」의 경우와 同一하게 記入
합니다.

③ 「(3) 金額」欄……그 物品의 價格을 時價로 見積하여 記入합니다. 또한 會社
가一部 支拂했기 때문에 싸게 購入한 경우는 그 支拂해
받은 分만을 여기에 記入하고 自己가 支拂한 分은 「現金
收入 및 現金支出」欄에 記入합니다.

(1) 品名 및 購入方法 法有에 해당하는 것에 ○표를 합 니다.	1 2 3 4 5 外月 받은自商店 賦은家의 購 물 生商品 上入 건產品	※符號欄	(2) 數量 單位	金額 (3) (받은物件 自家生產 商店 의商品의 見積 金額)	※符號欄
버스定期券 妻 勤務處	1 2 ③ 4 5		1個月	4,300 圓	
보자기 友人으로부터	1 2 ③ 4 5		1枚	3,000	
麥酒券 親	1 2 ③ 4 5		12本 (633 ml)	3,720	
감자	1 2 3 ④ 5		4kg	900	
오이 (知人)	1 2 3 ④ 5		2kg	770	
鷄卵 ○月分	1 2 3 ④ 5		1,500g	565	
화장비누	1 2 3 4 ⑤		2個	300	
담배	1 2 3 4 ⑤		5個	1,100	

4. 通信欄을 쓰는 법

이 欄에는 家計簿 記入上 또는 內容審查上 특히 說明을 要하는 事項이나 家口로
부터의 連絡事項등을 記入합니다. 또한 訂正家口票의 作成을 省略한 경우는 家口票
의 變更事項을 調査員 記入欄에 반드시 記入합니다.

第8 年間收入 調査票 記入方法

年間收入調査는 勤務者家口, 一般家口를 불문하고 모든 調査家口에 대해서 調査하게 되어 있으므로 指導員의 指導에 따라 「年間收入調査票」를 「年間收入調査에 관한 依賴狀」 및 「年間收入調査票用 봉투」와 함께 配付하여 調査家口에 記入하게 합니다.

또한 記入이 完了된 「年間收入調査票」는 調査家口에서 密封하여 提出되기 때문에 調査員은 그 内容의 審査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年間收入調査票」를 配付할 때는 記入의 方法에 대해서 調査家口에 충분히 說明합니다. (參照 [參考] 年間收入調査를 하는 理由 31 페이지)

下部欄外 事項

調査票 下部欄外의 事項에 관해서는 調査票를 配付하기 전에 調査員이 미리 記入해 둡니다.

「市町村番號」, 「單位區符號」, 「調査家口番號」, 「一連家口番號」 및 「記入開始의 달」의 各欄에는 當該調査家口의 「家口票」에 使用되고 있는 것과 같은 番號, 年月을 記入합니다. 또 그때 「年間收入調査票用 봉투」에도 該當事項을 記入합니다.

「問」의 各 欄

年間收入의 各欄의 記入에 임하여 다음點에 대한 調査家口에 특히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家計簿記入 開始月을 포함한 過去 1年間의 收入의 合計를 記入합니다. 例를 들면 7月에 定期交替에 의해서 調査家口가 된 경우는 8月초에 年間收入을 調査합니다만 이 경우에 過去 1年間의 收入이라는 것은 前年の 8月초부터 今年의 7月末 까지 얻은 收入을 가르킵니다.

(2) 年間收入額을 記入하는 欄은 千 百 十 一 萬円이 되어 있으므로 單位 자리를 틀리지 않도록 萬円單位로 記入합니다.

收入區分

(3) 年間收入은 그 種類에 따라 「勤務處 年間收入」 「營業年間利益」 「內職年間收入」 또는 「其他年間收入」에 勤務處 年間收入은 「定期收入」과 「賞與・其他의 臨時收入」으로 나누어 다시 각각의 敎入은 「家口主」의 收入인지 그 以外의「家族」의 收入인지 나누어 記入합니다.

또한 「家口主」인지 그 以外의 「家族」收入인지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는 「家口主」 쪽에 記入합니다.

(1) **勤務處 年間收入** ……稅金 포함된 收入을 말합니다. 事業經營과勤務處에서 勤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勤務處의 收入도 記入합니다.

ㄱ. **定期收入** ……本給, 家族手當, 職務手當, 超過勤務手當 등등 每月 定해져 支給되는 것을 말합니다.

ㄴ. **賞與・其他의 臨時收入** ……每月 支給되는 給料以外 夏期, 年末, 年度末등에 特別히 支給되는 賞與 및 獎勵金등과 같이 그달에 限해서 支給되는 手當 등을 말합니다. 또한 給與 베이스 改定差額, 昇給差額, 寒冷地手當 등도 여기에 포함 됩니다. 收入의 內譯이 확실 하지 않는 경우는 總額을 「定期收入」欄에 記入합니다.

(2) **營業年間利益** ……賣上高에서 任入高, 原資材費, 人件費, 消耗品費, 事業稅, 固定資產稅등의 營業上의 經費를 控除한 年間純利益을 말합니다.

(3) **內職 年間收入** ……內職收入에서 그 기에 所要된 材料費등을控除한 年間純益을 말합니다.

(4) **其他의 年間收入** ……株式配當金, 預貯金利子, 恩給, 送金家屋賃貸料 收入 등의 年間所得을 말합니다.

또한 退職金이나 土地, 家屋등의 財產賣却에 의해 얻어진 一時的인 收入은 日日 家計簿에는 記入합니다만 年間收入에는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또 年期收入에는 自家生產物이나 現物의 받

은 物件, 現物給與등은 포함시키지 않으나 받은手票, 商品券은
現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年間收入에 포함시킵니다.

年間收入에 一時의
인 收入을 포함시
키지 않는 理由

問 63 年間收入에 一時의 收入을 포함시키지 않는 理由는 무엇입니
까?

(答) 一時의인 收入을 年間收入에 포함시키면 家口의 年間收入 階
層區分을 決定할때 그 家口의 通常收入 階層보다 높아지기 때
문입니다.

有價證券을 賣渡
한 경우

問 64 退職金이나 土地등의 財產을 賣却한 경우는 年間收入에 포
함 시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株券등의 有價證券을 賣渡했
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答) 退職金이나 土地, 家屋등의 賣却에 의해 얻은 收入과同一하
게 年間收入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단 有價證券의 配當金은
포함시킵니다.

〈年間收入調査表記入例〉

- 이 調査表에 答辯하여 주신 内容은 統計以外의 目的 가령 徵稅의 資料 등에는 絶對로 使用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記入해 주시기 바랍니다.

~~~~~  
記入이 끝난 調  
査表는 別途로 配  
付한 봉투에 넣  
어 密封하여 調査  
員에 넘겨 주십  
시요.  
~~~~~

(秘)

家計調査

年間收入調査票

統計局

貴下의 家口에서는 過去 1 年間의 收入은 稅金을 포함하여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家口主의 봇인지, 家族의 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는 家口主의 欄에 記入해 주십시오.

(家口主)

(家族)

	千百十一	千百十一
(1) 勤務處 定期收入	4 5 3	萬圓 1 8 7 萬圓
年間收入 賞與・其他의臨時收入	1 8 2	萬圓 7 0 萬圓
(2) 營業年間收益		萬圓 萬圓
(3) 內職年間收入		萬圓 1 3 萬圓
(4) 其他의年間收入	3 1	萬圓 萬圓

(1) 勤務處의 年間收入

定期收入 …… 每月支給되는 本給, 扶養手當, 職責手當以外의 超過勤務手當등을 포함
시킨 總額

賞與・其他의 臨時收入 …… 夏期, 年末등에 特別히 支給되는 것과 또한 어떤 달에 限
해서 臨時支給 되는것

○ 事業經營의 한편 勤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勤務處의 收入도 記入합니다.

○ 收入의 內譯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總額을 「定期收入」의 欄에 記入합니다.

(2) 營業年間收入 …… 賣上高에서 買入高, 原資材料費, 人件費, 消耗品費, 事業稅, 固定資產稅등의 經營上의 諸經費를 控除한 純益。

(3) 內職年間收入 …… 內職에 要한 材料費등을 控除한 純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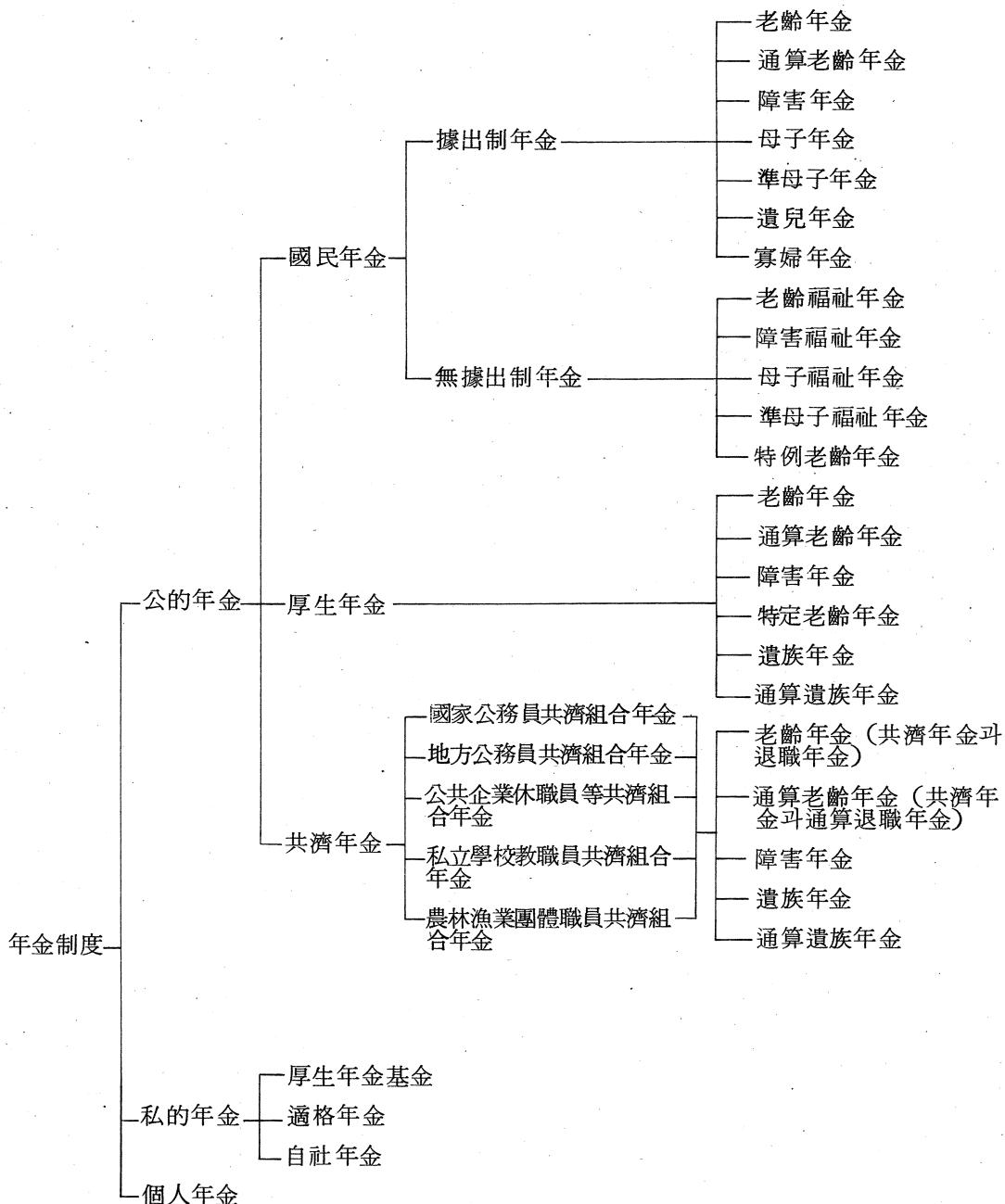
(4) 其他의 年間收入 …… 株式配當金, 預金利子, 年金, 恩給, 送金, 家屋賃貸金 收入 등의 所得。

退職金이나 土地, 家屋등의 財產賣却에 의해 얻은 收入은 上記의 어느 것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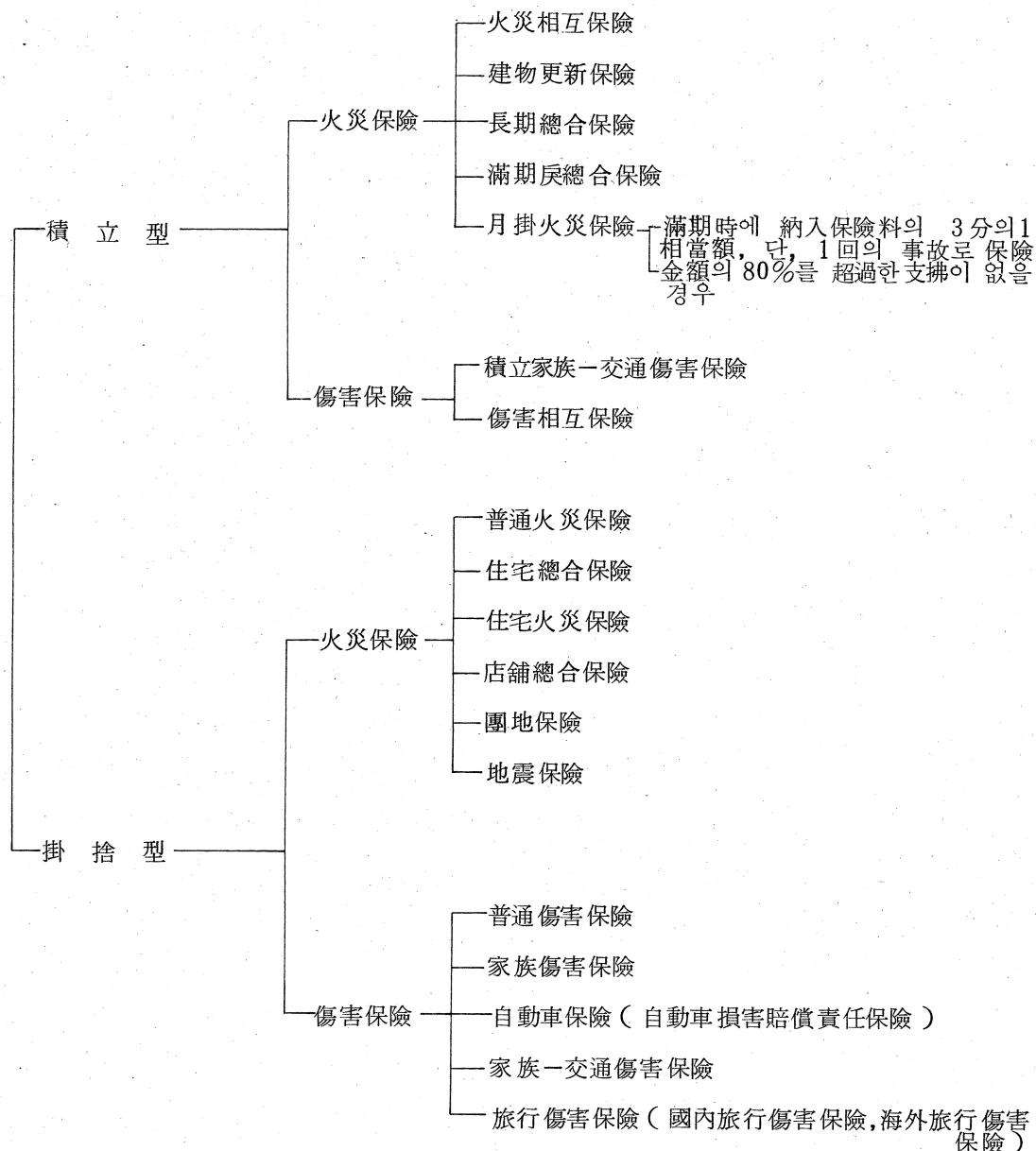
市町村番號	単位區符號	調査家口番號	一連家口番號	記入開始月
○○○○○	011	01	15	○○年 1月

(크기 B5判)

參考 1 年金의 種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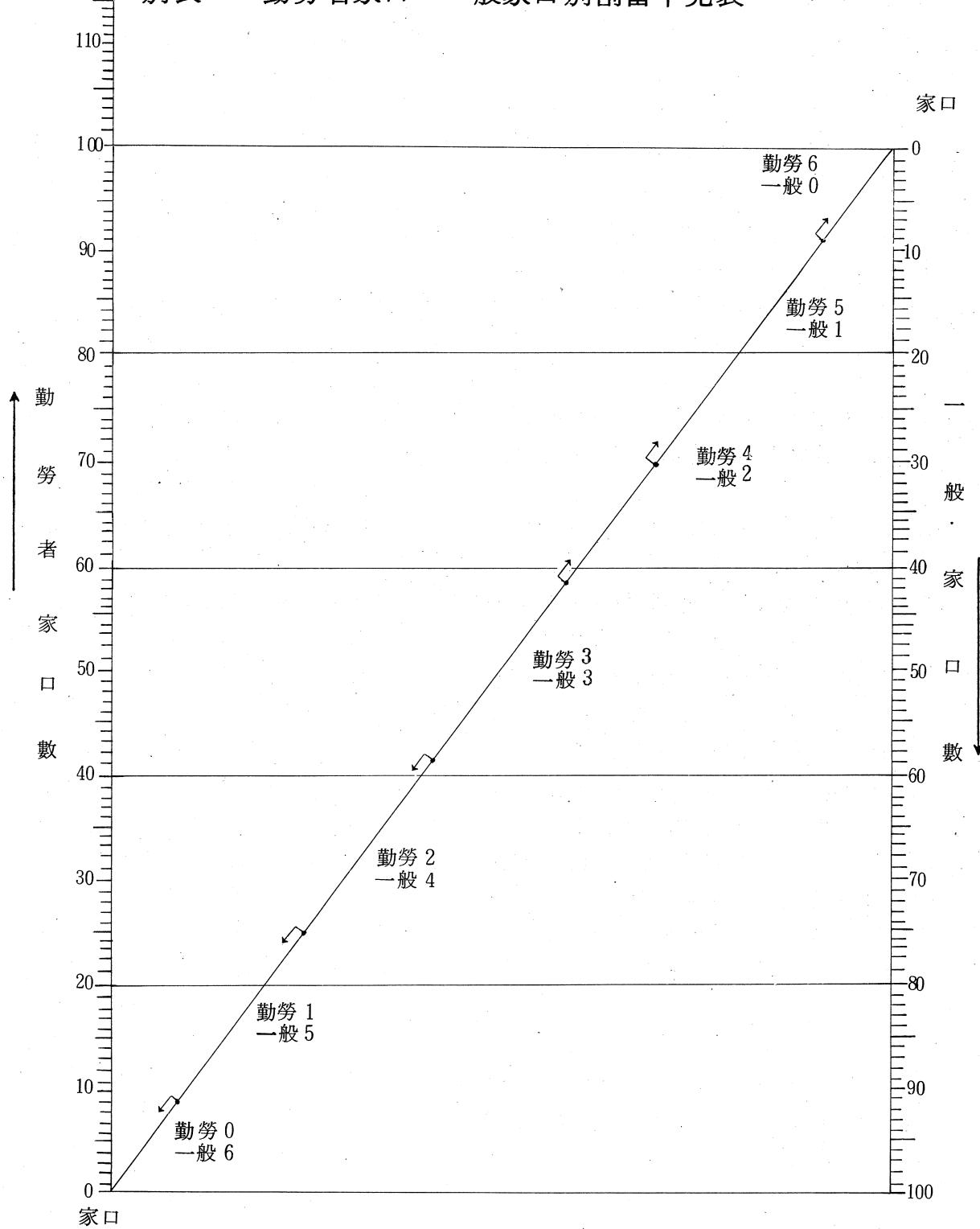


參考 2 損害保險의 種類



~~~ 別 表 ・ 附 錄 ~~~

別表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割當早見表



## 別表 2 家計簿 内容

調査員을 家計簿를 收集할 때는, 다음 點에 注意하여 記入不備나 記入착오가 있으면

### 1. 收入

| 要                                                           | 點 |
|-------------------------------------------------------------|---|
| (1) 收入이 記入 되고 있는가.                                          |   |
| (2) 收入의 種類가, 勤務處의 收入인지, 內職收入인지 또는 貯金引出인지를 알 수 있도록 記入되어 있는가. |   |
| (3) 勤務處의 收入이, 누구의 몇 月分의 收入인지 알 수 있도록 記入되어 있는지.              |   |
| (4) 家口主 以外에 일하고 있는 사람의 收入이 누락되지 않고 記入되고 있는가.                |   |
| (5) 勤務處의 收入이, 紙料 등과 일괄하여 記入되고 있거나 않는가.                      |   |
| (6) 勤務處의 收入이, 稅金 등을 공제한 受領額이 記入되고 있는지 않는가.                  |   |
| (7) 勤務處가 2 個處以上 있을 경우는 本業인지 副業인지 알 수 있도록 收入을 記入하고 있는가       |   |
| (8) 特히 記入開始家口에 대하여 第1日째에 前期에서의 移越金이 記入되고 있는가.               |   |

### 2. 支出 및 外上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 받은 物件, 自家產, 商店의 商品)에 관하여

| 要                                                                                   | 點 |
|-------------------------------------------------------------------------------------|---|
| (1) 記入하지 않는 날이 있는가                                                                  |   |
| (2)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이 重複하여 記入되고 있지는 않는가.                                               |   |
| (3) 「I.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欄과 「II. 外上購入, 月賦購入 또는 現物( 받은 物件, 自家產, 商店의 商品)」欄과의 欄이 틀리지는 않는가. |   |
| (4) 數品目을 일괄하여 記入되고 있지는 않는가.                                                         |   |
| (5) 品名을 包括的인 名稱( 魚, 野菜등 )으로 記入되고 있는지 않는가.                                           |   |
| (6) 方言, 혼돈하기 쉬운 品名, 內容을 알 수 없는 商標名으로 記入되고 있지는 않는가.                                  |   |
| (7) 數量의 記入누락은 없는가                                                                   |   |
| (8) 外上支拂의 경우는 그기에 따른 外上購入의 記入이 되어 있는가.                                              |   |
| (9) 紙料에서 공제된 稅金, 健康保險料나 積立金이 記入되고 있는가.                                              |   |
| (10) 月賦購入의 記入 누락은 없는가                                                               |   |
| (11) 每月定期으로 支拂되는 電氣料, 가스料, 水道料등이 記入되고 있는가.                                          |   |
| (12) 家口主의 交際費, 雜費가 記入되고 있는가.                                                        |   |

## 審査의 要點과 그 處理

즉시 家口를 訪問하여 訂正합니다.

| 記入누락이나 記入錯誤의 處理                                    |                                                              |
|----------------------------------------------------|--------------------------------------------------------------|
| (1) 調査하게 함. (그달에 收入이 없을 경우는 理由를 家計簿의 「通信欄」에 記入한다.) | (2) 種類를 記入하게 함.                                              |
| (3) 누구의 月分인가를 記入하게 함.                              | (4) 調査하게 함. (그 달에 收入이 없을 경우에는 理由를 家計簿의 「通信欄」에 記入한다.)         |
| (5) 本給, 家族手當, 殘業手當 등을 區別하여 記入 訂正하게 함.              | (6) 「(2)現金收入」欄에 紙料의 總額을 記入하고 公제한 分을 하나하나 「(4)現金支出」欄에 記入하게 함. |
| (7) 區別하여 記入하게 함.                                   |                                                              |
| (8) 調査하게 함                                         |                                                              |

| 記入누락이나 記入錯誤의 處理                            |          |
|--------------------------------------------|----------|
| (1) 調査하게 함. 만약에 支出이 없는 날이면 「支出없음」을 記入하게 함. | (2) 訂正함. |
| (3) 訂正함.                                   |          |
| (4) 따로 따로 記入 訂正하게 함.                       |          |
| (5) 品名을 「삼치」, 「양파」 등의 個個의 名稱을 記入하게 함.      |          |
| (6) 補筆함.                                   |          |
| (7) 推定하여 記入하게 함.                           |          |
| (8) 調査하게 함                                 |          |
| (9) 調査하게 함                                 |          |
| (10) 調査하게 함                                |          |
| (11) 調査하게 함                                |          |
| (12) 記入하게 함                                |          |

別表3 調査用品類의 受領(配付) 및 提出

|                    | 都道府縣                                                                                                                                                                                                                                                                                                                                                                                                                                                                                                                                                                       | 指導員                                                                                                                                                                                                                                                                                                                                                                                                                                              | 調査員                                                                                                                                                                                                                                                                                                                                                                                   | 調査世帶                                                                                                                                                                                                                                                   |
|--------------------|----------------------------------------------------------------------------------------------------------------------------------------------------------------------------------------------------------------------------------------------------------------------------------------------------------------------------------------------------------------------------------------------------------------------------------------------------------------------------------------------------------------------------------------------------------------------------|--------------------------------------------------------------------------------------------------------------------------------------------------------------------------------------------------------------------------------------------------------------------------------------------------------------------------------------------------------------------------------------------------------------------------------------------------|---------------------------------------------------------------------------------------------------------------------------------------------------------------------------------------------------------------------------------------------------------------------------------------------------------------------------------------------------------------------------------------|--------------------------------------------------------------------------------------------------------------------------------------------------------------------------------------------------------------------------------------------------------|
| 受<br>領<br>(配<br>布) | 1 家計簿(家口數×2)<br>2 年間收入調查票 및 封套(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3)<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5 家計調查에 協力하여 주십시오(家口數)<br>6 依賴狀 및 봉투(家口數)<br>7 年間收入調查에 관한 依賴(家口數)<br>8 謝禮狀 및 봉투(家口數)<br>9 再訪問에 관한 依賴(家口數)<br>10 家計調查 指針(家口數)<br>11 家計調查通信(家口數)<br>12 家計簿保管袋(家口數)<br>13 家計예모帳(家口數×3冊)<br>14 저울(家口數)<br>15 電子式卓上計算機(家口數)<br>16 샤프펜(家口數)<br>17 實施要領(指導員數)<br>18 調査 참고서(指導員數+調査員數)<br>19 單位區家口名簿(單位區數×4枚)<br>20 調査家口抽出番號表(指導員數+調査員數)<br>2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割當早見表( <sup>持導員數+調査員數</sup> )<br>22 單位區通知表(指導員數)<br>23 指導員任命報告(指導員數)<br>24 調査員證 任命報告(持導員數)<br>25 指導員證(指導員數)<br>26 調査員證(調査員數)<br>27 家計簿等提出明細書(2通) | 1 家計簿(家口數×2)<br>2 年間收入調查票 및 봉투(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3)<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5 家計調查에 協力依賴(家口數)<br>6 依賴狀 및 봉투(家口數)<br>7 年間收入調查 依賴(家口數)<br>8 禮狀及 봉투(家口數)<br>9 再訪問 依賴(家口數)<br>10 家計調查指針(家口數)<br>11 家計調查通信(家口數)<br>12 家計簿保管袋(家口數)<br>13 家計예모帳(家口數×3冊)<br>14 저울(家口數)<br>15 電子式卓上計算機(家口數)<br>16 샤프펜(家口數)<br>17 實施要領(1部)<br>18 調査 참고서(1部+調査員數)<br>19 單位區家口名簿(單位區數×4枚)<br>20 調査家口抽出番號表(1部+調査員數)<br>2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割當早見表( <sup>1枚+調査員數</sup> )<br>22 單位區通知表(1部) | 1 家計簿(家口數×2)<br>2 年間收入調查票 및 封箇(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3)<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5 家計調查 協力依賴(家口數)<br>6 依賴狀 및 封箇(家口數)<br>7 年間收入調查 依賴(家口數)<br>8 謝禮狀 및 封箇(家口數)<br>9 再訪問 依賴(家口數)<br>10 家計調查指針(家口數)<br>11 家計調查通信(家口數)<br>12 家計簿保管袋(家口數)<br>13 家計예모帳(家口數×3冊)<br>14 저울(家口數)<br>15 電子式卓上計算機(家口數)<br>16 샤프펜(家口數)<br>18 調査 참고서(1部)<br>19 單位區家口名簿(單位區數×4枚)<br>20 調査家口抽出番號表(1部)<br>2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割當早見表(1枚) | 1 家計簿(1個月에 2冊)<br>2 年間收入調查票 및 封箇(各 1枚)<br>5 家計調查 協力依賴(1通)<br>6 依賴狀 및 封箇(1通)<br>7 年間收入調查 依賴(1通)<br>8 謝禮狀 및 封箇(1通)<br>9 再訪問 依賴(1通)<br>10 家計調查指針(1部)<br>11 家計調查通信(1部)<br>12 家計簿保管袋(1枚)<br>13 家計예모帳(2個月에 1冊)<br>14 저울(1臺)<br>15 電子式卓上計算機(1臺)<br>16 샤프펜(1本) |
|                    | 27 家計簿等提出明細書(2通)                                                                                                                                                                                                                                                                                                                                                                                                                                                                                                                                                           | 25 指導員證(1枚)<br>26 調査員證(調査員數)                                                                                                                                                                                                                                                                                                                                                                                                                     | → 26 調査員證(1枚)                                                                                                                                                                                                                                                                                                                                                                         |                                                                                                                                                                                                                                                        |
|                    | 提<br>出                                                                                                                                                                                                                                                                                                                                                                                                                                                                                                                                                                     | 1 家計簿(家口數)<br>2 年間收入調查票(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br>4 準調查世帶票(家口數)<br>19 單位區家口名簿(更新時 1部, 補完時 1部)<br>23 指導員任命報告(指導員數)<br>24 調査員任命報告(調査員數)<br>27 家計簿等提出明細書(1通)                                                                                                                                                                                                                                                                                            | 1 家計簿(家口數)<br>2 年間收入調查票(世口數)<br>3 家口票(家口數)<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19 單位區家口名簿(更新時 1部, 補完時 1部)                                                                                                                                                                                                                                                                                             | 1 家計簿(家口數)<br>2 年間收入調查票(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2)<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19 單位區家口名簿(更新時 1部, 補完時 1部)                                                                                                                                                            |
|                    |                                                                                                                                                                                                                                                                                                                                                                                                                                                                                                                                                                            | ← 27 家計簿等提出明細書(1通)                                                                                                                                                                                                                                                                                                                                                                                                                               |                                                                                                                                                                                                                                                                                                                                                                                       | 1 家計簿(1期)<br>2 年間收入調查票<br>(記入開始後 2個月 前半에 調査)                                                                                                                                                                                                           |

別表 4 產 業 分 類 表

| 產業<br>符號 | 種 類                      | 基 準                                                                                                                                          | 內 容 例 示                                                                                                                                           |
|----------|--------------------------|----------------------------------------------------------------------------------------------------------------------------------------------|---------------------------------------------------------------------------------------------------------------------------------------------------|
| 1        | 鑛 業                      | 金屬, 石炭, 原油, 天然가스, 非<br>金屬 등을 採掘하는 事業所                                                                                                        | 金屬鑛業, 石炭鑛業, 石油鑛業,<br>採石業, 자갈採取業, 鑛山內運<br>搬請負業 등                                                                                                   |
| 2        | 建 設 業                    | 土木工事業, 建築業 및 그것에<br>附帶하는 工事を 하는 事業所.                                                                                                         | 土木工事業, 道路鋪裝工事業, 建<br>築工事業, 建賣業(自己施工),<br>屋根工事業, 建物塗裝業, 解體<br>工事業, 電氣工事業, 配管工事<br>業, 冷暖房設備工事業, 大工·<br>骨組工事業, 미생이業 등                                |
| 3        | 製 造 業                    | 食品工業, 纖維工業, 木工業, 印<br>刷出版製本業, 化學工業, 製練 및<br>金屬製造業, 機械器具 및 輸送用機<br>器製造業 其他 또는 物品을 製造<br>하여 都賣하는 事業所.<br><br>製造 小賣業의 경우는 小賣가<br>主가되면 「6」에 分類함. | 食料品製造業, 調味料製造業,<br>製粉業, 담배製造業, 製絲業,<br>紡績業, 衣服呂장식品製造業,<br>製材業, 新聞社, 出版社, 비누<br>合成洗劑製造業, 自動車製造業,<br>鑄物工業, 機械製造業, 船舶製<br>造業, 玩具製造業, プラス틱<br>製品製造業 등 |
| 4        | 電氣· 가스<br>熱 供 納<br>水 道 業 | 電氣, 가스, 熱 및 水(관개 用<br>水는 除外)를 供給하는 事業所나<br>또는 汚水處理를 하는 事業所.                                                                                  | 電力會社(서비스스테이션을 포<br>함), 가스會社, 水道局(部課<br>付), 下水道局, 下水處理場,<br>地域冷暖房業 등                                                                               |
| 5        | 運 輸 ·<br>通 信 業           | 鐵道, 自動車, 商船, 航空機등에<br>의한 運輸業, 倉庫業, 郵便, 電信,<br>電話 및 이에 附帶하는 サービス 事<br>業所.                                                                     | 私鐵, 乘合버스業, 택시一業,<br>自動車運送業, 運送業, 水運業,<br>倉庫業, 交通公社, 仲仕業, 電<br>話局, 郵便局 등                                                                           |
| 6        | 都 賣 ·<br>小 賣 業<br>飲 食 店  | 都賣業(買入都賣), 小賣業, 製<br>造小賣業등 物品을 賣買하는 事業<br>所.                                                                                                 | 貿易商, 材木問屋, 仲買商, 百<br>貨店, 酒店, 飲食店, 藥局, 書<br>店, 行商, 담배店, 가소린 스텐드 등                                                                                  |

| 產業<br>符號 | 種類         | 基準                                                                            | 內容例示                                                                                                                                                                                                               |
|----------|------------|-------------------------------------------------------------------------------|--------------------------------------------------------------------------------------------------------------------------------------------------------------------------------------------------------------------|
| 7        | 金融・<br>保險業 | 銀行, 信託業, 證券業, 投資業, 商品取引業등의 金融業 및 保險業                                          | 銀行, 信託業, 地方貯金局, 金融公庫, 信用農業協同組合, 質屋, 無畫業, 證券會社, 生命保險業, 郵政省地方簡易保險局, 損害保險業, 크리디트業 등                                                                                                                                   |
| 8        | 不動產業       | 不動產의 所有運用管理, 貸貸分讓<br>不動產의 仲介業, 電話의 權利의 賣買・仲介業.                                | 貸事務所業, 貸家業, 貸間業, 建賣業(他人施工), 土地會社不動產仲介業 등                                                                                                                                                                           |
| 9        | 서비스業       | 個人 또는 事業所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事業所.<br>또는 放送業, 醫療, 法務, 宗教, 教育, 試驗所, 非營利團體 등의 事業所도 포함됨. | 旅館, 洗濯業, 理容業, 浴場, 寫眞業, 被服裁縫業(材料個人所有), 物品貯貸業, 映畫館, 劇場, 競馬場, 遊戲場, 放送局自動車修理業, 計算센터, 廣告業, 興信所, 法律事務所, 病院保健所, 福祉事業所, 保育所, 協同組合(各種事業), 清掃事務所, 產業廢棄物處理業, 宗教團體, 學校, 美術館, 圖書館, 社會事業團體, 研究所, 經濟團體, 學術團體, 高層氣象臺, 氣象通信所, 獸醫業 등 |
| 10       | 公務         | 國, 都道府縣廳 및 市區町村役場에서, 司法, 行政 또는 立法事務을 하는 官公署.<br>또한 각각의 出張機關도 포함됨.             | 國家事務, 國會, 稅務署, 裁判所, 刑務所, 公共職業安定所, 地方事務, 都道府縣廳, 都道府縣地方事務所, 區廳, 洞會, 警察署, 消防署, 氣象廳, 地方氣象臺, 測候所 등                                                                                                                      |
| 11       | 其他         | 以上의 各產業에 分類되지 않는것과 所屬產業이 없는것.                                                 | 種蓄場, 植木業, 營林局, 獵獵業, 漁業會社, 勤務處가 一定하지 않는 內職, 낱품살이, 所屬產業이 없는것(無職等)                                                                                                                                                    |

註 1. 日本標準產業分類에 의함.

2. 官公署라도, 他 產業 基準欄 표시된 業務를 행하는 現業官廳은 「10 公務」以外에 該當하는 產業에 分類함.

別表 5 家計調査 職業分類表

| 家口<br>區分    | 職業<br>符號 | 種類            | 基準                                                                                                       | 内容例示                                                                                                                                                                                                                                                                                                                                                                                                 | 포함되지 않는 것                                                                                               |
|-------------|----------|---------------|----------------------------------------------------------------------------------------------------------|------------------------------------------------------------------------------------------------------------------------------------------------------------------------------------------------------------------------------------------------------------------------------------------------------------------------------------------------------------------------------------------------------|---------------------------------------------------------------------------------------------------------|
| 勤<br>勞<br>者 | 1        | 常用勞務者         | 官公署 또는 民間に 長期間 雇用되어 主로 肉體의 労動에 從事하는 者.                                                                   | 採礦員, 採炭員, 仕上工, 編物工, 金屬溶接工, 檢查工, 製圖工, 分析工, 見習工, 工事人, 印刷工, 板金工, 鎏金工, 一般機械器具組立工, 電氣機械器具組立工, 自動車組立工, 時計組立工, 染色工, 家具·建具製造工, 製製品製造工, 整備工, 塗裝工, 裁斷工, 縫製工, 文選工, 製本工, 製版工, 植字工, 洋裁師, 仕立工, 크리닝職, 職, 石工, 乘務員, 버스안내원, 보일러맨, 据付機械運轉士, 電車運轉士, 自動車運轉手, 甲板員, 航海士, 車掌, 配達員, 集金人, 警備員, 守衛, 用務員, 清掃員, 雜役作業者, 新聞販賣人, 디서, 웨이터, 빠덴더, 木工, 미쟁이, 配管工, 骨組職, 理容師, 美容師, 애래베터員, 一係, 驛貨物係員, 販賣店員, 收金人, 映寫技師, 調理士, 給食婦, 심부름하는 사람 등. | • 自營業主→5 또는 6에<br>• 自衛官·警察官·消防員등의 身分이 있는 사람→4에<br>• 技師(映寫技師除外)→3 또는 4에                                  |
|             |          |               |                                                                                                          |                                                                                                                                                                                                                                                                                                                                                                                                      |                                                                                                         |
|             | 2        | 臨時 및<br>日雇勞務者 | 官公書 또는 民間に 30日未滿의 期間 또는 日日의 契約으로 雇用되어 主로 肉體의 労動에 從事하는 者                                                  | 合計事務員, 一般事務員, 經理事務員, 庶務書記, 仕入主任, 人事係長, 課長, 所長, 檢事, 判事, 船長, 高級船員, 驛長, 學校長, 教員, 警察官, 消防士, 保線區長, 現場監督, 新聞記者, 醫師, 藥劑師, 工場長, 研究者, 機械技術者, 船舶技術者, 電氣技術者, 建築土, 測量土, 大學助手, 타이피스트, 電話交換手, 鐵道專務車掌, 驛出禮掛, 通信土, 寫眞土, 看護婦, 工場職長, 寫眞師, 外交員, 디자이너, 保健婦, 荣養土, 講師, 라디오, TV, 아나운서, 프로듀서, 通譯, 圖書館司書, 檢量員, 農業改良普及員, 電子計算機等操作員, 速記者 등                                                                                      | • 民間·官公署團體等에서, 程度가 높은企劃管理, 行政事務 또는 監督事務에從事하는 者→7에<br>• 自營業主→5 또는 6에<br>• 學校長, 工場長이 役員을兼하고 있는 경우→6 또는 7에 |
|             | 3        | 民間職員          | 民間의 鎳山, 工場, 會社商店, 痘院, 學校등에 勤務하고 主로 書記의, 技術의 또는 管理의인 일에 從事하는 者.<br>在日外國政府施設關係을 포함함.<br>또한 「7」에 分類되는 者는 除外 |                                                                                                                                                                                                                                                                                                                                                                                                      |                                                                                                         |
|             | 4        | 官公職員          | 官公書 또는 官公立의 痘院, 學校등에 勤務하고 主로 書記의, 技術의 또는 管理의인 일에 從事하는 者.<br>在日外國政府施設關係는 民間으로함.<br>또한, 「7」에 分類하는 者 除外.    |                                                                                                                                                                                                                                                                                                                                                                                                      |                                                                                                         |

| 家口區分        | 職業符號 | 種類        | 基準                                                                                                                               | 內容例示                                                                                                                                  | 포함되지 않는 것                                                          |
|-------------|------|-----------|----------------------------------------------------------------------------------------------------------------------------------|---------------------------------------------------------------------------------------------------------------------------------------|--------------------------------------------------------------------|
| 一<br>家<br>口 | 個人營業 | 5 商人 및 職人 | 獨立하여 小規模(家族이 아닌 使用人 4人以下)에 商品의 製造, 加工, 販賣 또는 サービス를 提供하는 業主.<br>또, 「6」에 分類하는 者除外.                                                 | 洋靴店主, 담배, 店主, 葉子店主, 魚店主, 洋品店主, 寫眞店主, 染物店主, 自轉車店主, 정당포業主, 理髮店主, 表具店主, 行商, 브로카, 木工, 骨組職, 植木職, 미생이美容院店主, 크리닝店主, 仲買人, 아파트經營者, 個人택시 一運轉手 등 | • 家族이 아닌 使用人이 5人以上의 경우 → 6 또 7에                                    |
|             | 個人   | 6 個人經營者   | 獨立하여 個人組織은 大規模(家族이 아닌 使用人 5人以上)의 商業, 工業, サービス業 등을 經營하고 그企劃管理에 從事하는 者.                                                            | 大商店主, 大工場主, 私立病院經營者, 私立學校經營者, 빠진코店經營者, 不動產業經營者, 食堂經營者 등                                                                               | • 家族이 아닌 使用人 4人以下의 경우 → 5에                                         |
|             | 般其   | 7 法人經營者   | 法人組織의 會社(合名, 合資, 有限, 株式會社等)로 家族이 아닌 使用人 5人以上을 履用하는 會社, 團體 등의 役員.<br>또 「3」, 「4」에 分類되는 者라도 程度가 높은 企劃管理, 行政事務 또는 監督事務에 從事하는 者는 포함함. | 社長, 會長, 取締役, 監查役, 理事, 銀行頭取, 相談役, 大臣, 政務次官, 事務次官, 局長, 總裁, 知事, 副知事, 市長, 區長, 洞長, 班長, 助役出納長, 收入長, 教育委員長 등.                                | • 法人組織의 會社(合名, 合資, 有限, 株式會社等)로서 家族이 아닌 使用人이 4人以下의 경우 → 5에          |
|             | 他家   | 8 自由業者    | 個人이 自分의 專門的 技能이나 知識을 內容으로 하는 일에 從事하는 者.<br>단, 勤勞者 家口(1~4)에 分類되는 者는 除外.                                                           | 辯護士, 稅理士, 公認會計士, 開業醫, 助產婦, 師, 僧侶, 神職, 畫家, 圖案家, 彫刻家, 工藝美術家, 著述家, 作曲家, 作詞家, 代書人, 生花教授, 評論家, 相談役, 個人教授, 디자이너 등                           | • 醫師, 公認會計士, 稅理士 등이라도 家族이 아닌 使用人이 5人以上의 경우 → 6에<br>• 法人經營의 경우 → 7에 |
|             | 口口   | 9 其他      | 「1」~「8」의 分類에 적용되지 않는 者.                                                                                                          | 議員, 藝能人(歌手, 俳優, 漫談家等) 모델, 職業스포츠家(野球選手, 競輪選手, 씨름선수, 騎手等), 內職者 등                                                                        |                                                                    |
|             |      | 10 無職     | 職業이 없는 者.                                                                                                                        | 年金生活者, 失業者, 入住하는 家事使用人(침부름, 書生等), 入住하는 營業上의 使用人, 主婦, 學生, 幼兒 등                                                                         |                                                                    |
|             |      | 11 家族從業者  | 家業에 從事하고 있는 家族.                                                                                                                  |                                                                                                                                       |                                                                    |

註 1. 國勢調查에 使用되는 職業分類와는 다름.

2. 家口員에 대해서도 家口區分에 關係없이 1~11의 職業區分에 分類함.

別表 6 家計收支 項目分類 總括表

別表 7 消費支出品目의 項目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消費支出     |    | 1.1.4 其他의 穀類 |    | 낙지 g        |    |
| 1 食料     |    | 小麥粉 g        | "  | 새우 "        |    |
| 1.1 穀類   |    | 麵 "          |    | 계 "         |    |
| 1.1.1 米類 |    | 其他 ※         |    | 其他의 鮮魚 "    |    |
| 白米 kg    |    | 1.2 魚介類      |    | (同)사시미 모듬 ※ |    |
| 찹쌀 "     |    | 1.2.1 生鮮魚介   |    | 分類不能의 鮮魚 ※  |    |
| 其他의 쌀 ※  |    | 貝類           |    |             |    |
| 1.1.2 빵  |    | 鮮魚 g         | "  | g           |    |
| 食 빵 g    |    | 青魚 "         | "  | "           |    |
| 其他의 빵 ※  |    | 其他의 貝 "      |    | "           |    |
| 1.1.3 면類 |    | 삼치 "         | "  | 1.2.2 鹽干魚介  |    |
| 두부국수 g   |    | 도미 "         | "  | "           |    |
| 메밀국수 "   |    | "            | "  | "           |    |
| 가락국수 "   |    | "            | "  | "           |    |
| 메밀국수 "   |    | "            | "  | "           |    |
| 即席라면 "   |    | "            | "  | "           |    |
| 中華면 "    |    | "            | "  | "           |    |
| 其他의 면 ※  |    | 오징어 "        | "  | 其他의 鹽干魚介 "  |    |

및 數量單位 一覽表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1.2.3 魚肉練製品    | ※  | 其他生鮮肉     |    | 1.5 野菜·海草  |    |
| 魚肉소세이지         | g  | 1.3.2 加工肉 | g  | 1.5.1 生鮮野菜 |    |
| 其他의魚肉練製品       | ※  | 햄         | "  | 葉莖菜        | g  |
| 1.2.4 其他의魚介加工品 | g  | 소세이지      | "  | 양배추        | "  |
| 魚介의훈제          | ※  | 베어콘       | "  | 시금치        | "  |
| 魚介저린것          | ※  | 其他의加工肉    | ※  | 배추         | "  |
| 魚介鹽辛           | g  | 1.4 乳卵類   |    | 파          | "  |
| 魚介             | ※  | 1.4.1 牛乳  | ℓ  | 콩나물        | "  |
| 魚介통조림          | ※  | 牛乳        |    | 其他의葉莖菜     | "  |
| 其他의魚介加工品과其他    | ※  | 1.4.2 乳製品 | g  | 根菜         |    |
| 1.3 肉類         |    | 乳         | ※  | 감자         | g  |
| 1.3.1 生鮮肉      |    | 요크루트      | ※  |            | "  |
| 牛肉             | g  | 버터        | g  |            | "  |
| 豚肉             | "  | 치즈        | "  | 고구마        | "  |
| 鷄肉             | "  | 其他의乳製品    | ※  | 무우         | "  |
| 合肉             | "  | 1.4.3 卵   | g  | 당무우        | "  |
|                |    | 卵         | g  | 우봉         | "  |
|                |    |           |    | 양파         | "  |
|                |    |           |    | 시래기        | "  |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연 근             | g  | 1.5.3 大 豆 加 工 品         |    | 포 도             | g  |
| 송 이 벼 셋         | "  | 豆 腐 丁                   |    | 오 랜 지           | "  |
| 其 他 의 根 菜       | "  | 油 腐 ※                   |    | 其 他 의 과 일       | "  |
|                 |    | 매 주 콩 ※                 |    | 배               | "  |
| 其 他 의 野 菜       |    | 其他의大豆製品 ※               |    | 포 도             | "  |
| 완 두 콩           | g  |                         |    | 감               | "  |
| 호 박             | "  | 1.5.4 其他의野菜·海草<br>加 工 品 |    | 복 송 아           | "  |
| 오 이             | "  | 곤 약 ※                   |    | 수 박             | "  |
| 가 지             | "  | 우 메 보 시 g               |    | 매 룬             | "  |
| 도 마 도           | "  | 다 꾸 만 "                 |    | 딸 기             | "  |
| 피 만             | "  | 白 菜 濟                   | "  | 바 나 나           | "  |
| 생 양 송 이         | "  | 其他의野菜의濟物                | ※  | 其 他 의 果 物       | "  |
| 其 他 의 송 이       | "  | 곤 부 g                   |    | 分類不能의果物         | ※  |
| 其 他 의 野 菜       | ※  | 其他의野菜 海草                | ※  |                 |    |
|                 |    | 其他의野菜·海草<br>加工品의其他      | ※  | 1.6.2 果 物 加 工 品 |    |
| 1.5.2 乾 物 · 海 草 |    |                         |    | 果 物 의 통조림       | ※  |
| 풀               | g  | 1.6 果 物                 |    | 其他의果物加工品        | ※  |
| 其 他 의 콩         | ※  |                         |    |                 |    |
| 건 양 송 이         | g  | 1.6.1 生 鮮 果 物           |    | 1.7 油 脂 · 調 味 料 |    |
|                 | ※  | 능 금 g                   |    |                 |    |
|                 | g  | 꿀 "                     |    | 1.7.1 油 脂       |    |
| 미 역             | "  | 밀 감 "                   |    | 食 用 油 g         |    |
| 其 他 의 乾 物 · 海 草 | ※  | 래 몬 "                   |    | 마 가 린 "         |    |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1.7.2 調味料 |    | 케 케 키            | ※  |                   | ※  |
| 食 鹽       | g  | 其他의 洋生菓子         | ※  | 텐 푸 라후라이          | ※  |
| 간 장       | kg | 센 배 이            | ※  |                   | ※  |
| 장         | g  | 비 스 캣 트          | ※  | 교 자               | ※  |
| 砂 糖       | "  | 스 나 크            | ※  | 참 새 구 이           | ※  |
| 醋(醡)      | kg | 엿                | ※  | 햄 버 그             | ※  |
| 소 스       | "  | 초 크 래 트          | ※  | 調理食品의 缺話          | ※  |
| 케 차 프     | g  | 落 花 生            | ※  | 冷凍調理食品            | ※  |
| 마 요 네 즈   | "  | 아 이 스크림          | ※  |                   | ※  |
| 翟         | "  | 其他의 菓子           | ※  | 其他의 調理食品<br>과 其 他 | ※  |
| 化學調味料     | "  | 分類不能의菓子          | ※  | 加 工 貨             | ※  |
| 카 래 의 素   | "  |                  |    |                   |    |
| 스 프 의 素   | ※  | 1.9 調理食品         |    | 1.10 飲 料          |    |
| 風味調味料     | ※  |                  |    |                   |    |
| 맛 소 금     | ※  | 1.9.1 主食的調理食品    |    | 1.10.1 茶 類        |    |
| 其他의 液體調味料 | ※  | 도 시 락 類          | ※  | 綠 茶               | g  |
| 其他의 調味料   | ※  | 調理 빵             | ※  | 紅 茶               | "  |
|           |    | 其他의 主食的<br>調理 食品 | ※  |                   |    |
| 1.8 菓 子 類 |    |                  |    | 1.10.2 코피 · 코코아   |    |
| 요 간       | ※  | 1.9.2 其他의 調理食品   | ※  | 코피 · 코코아          | ※  |
| 만 두       | ※  | 멥 장 어 구 이        | ※  |                   |    |
| 其他의 韓菓子   | ※  | 사 라 다            | ※  | 1.10.3 其 他 의 飲 料  |    |
| 카 스 태 라   | ※  | 고 로 케            | ※  | 쥬 스               | ※  |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炭酸飲料          | ※  | 김밥            | ※  | 設備器具           | ※   |
| 乳酸飲料          | ※  | 中華食·其他의<br>韓食 | ※  | 修繕材料           | ※   |
| 其他의飲料         | ※  | 洋食            | ※  |                |     |
|               |    | 其他의主食의外食      | ※  | 2.2.2 工事其他의씨비스 |     |
| 1.11 酒類       |    | 分類不能의外食       | ※  | 장파지교체          | 量   |
| 特級清酒          | kg | 契茶代           | ※  | 板유리가라끼우기       | ※   |
| 1級清酒          | "  | 飲酒代           | ※  | 手工作費           | ※   |
| 2級清酒          | "  |               |    | 設備工事費          | ※   |
| 소주            | "  | 1.12.2 學校給食   |    | 火災保險料          | ※   |
| 맥주            | g  | 學校給食          | ※  |                |     |
| 特級위스키<br>(輸入) | kg |               |    | 3.光熱·水道        |     |
| 特級위스키<br>(國產) | "  | 2住居           |    | 3.1電氣代         |     |
| 1級위스키         | "  |               |    | 電氣代            | kwh |
| 2級위스키         | "  | 2.1家賃地代       |    |                |     |
| 포도酒           | "  | 民營家屋賃貸料       | 月  |                |     |
| 其他의술          | ※  | 公營家屋賃貸料       | "  | 3.2ガス代         |     |
|               |    | 給與住宅家屋<br>賃貸料 | "  | 都市ガス           | m³  |
| 1.12 外食       |    | 地代            | ※  | 프로판가스          | "   |
|               |    | 其他의家屋賃貸料      | ※  |                |     |
| 1.12.1 一般外食   |    |               |    | 3.3其他의光熱       |     |
| 日本포밀국수        | ※  | 2.2設備修繕·維持    |    | 灯油             | ℓ   |
| 中華국수          | ※  |               |    | 石炭             | kg  |
| 其他의면류外食       | ※  | 2.2.1設備材料     |    | 其他의光熱          | ※   |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3.4 水道料<br>水道料          | ※      | 電氣 난로<br>其他의 冷暖房用器    | 臺<br>※ | 其他의 寢具類                  | ※      |
| 4 家具·家事用品               |        | 4.1.3 一般家具<br>옷장      | 個      | 4.4 家事雜貨<br>茶잔·접시<br>사바리 | 個<br>" |
| 4.1 家庭用耐久財              |        | 食卓의자                  | ※      | 스푼·나이프                   | ※      |
| 4.1.1 家事用耐久財<br>炊事用電氣器具 | 臺      | 應接 셋트                 | ※      | 其他의 食卓用品                 | ※      |
| 電子랜지<br>가스器具            | "<br>※ | 食器 선반                 | 個      | 냄비·주전자                   | ※      |
| 電氣冷藏庫                   | 臺      | 其他의 家具                | ※      | 其他의 臺所用品                 | ※      |
| 調理臺                     | ※      | 4.2 室內裝備品<br>벽시계·札上시계 | ※      | 電球·螢光灯                   | ※      |
| 電氣掃除機                   | 臺      | 照明器具                  | ※      | 타올                       | ※      |
| 電氣洗濯機                   | "      | 室內裝飾品                 | ※      | 裁縫用具                     | ※      |
| 미싱<br>其他의 家事用耐久財        | "<br>※ | 바닥자리                  | ※      | 家庭用工具                    | ※      |
| 4.1.2 冷暖房用器具            |        | 방석                    | ※      | 其他의 家事雜貨                 | ※      |
| 에어콘디ショ나<br>扇風機          | 臺<br>" | 其他의 室內裝備品             | ※      | 4.5 家事用消耗品<br>포리백랍       | ※      |
| 溫風히터                    | "      | 4.3 寢具類<br>瞓          | 臺      | 휴지                       | ※      |
| 스토브                     | "      | 이                     | 枚      | 토리랫트페퍼<br>부엌·住居用洗劑       | ※      |
|                         |        | 毛布                    | 布      | 洗濯用洗劑                    | ※      |
|                         |        | 敷布                    | 布      | 殺蟲·防蟲劑                   | ※      |
|                         |        |                       |        | 其他의 家事用消耗品               | ※      |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4.6 家事 씨비스  |      | 男子 코트           | 着  | 5.3.2 婦人 샤쓰·세터類 |    |
| 家事使用人給料     | ※    | 男子 學生服          | "  | 브라우스            | 枚  |
| 清掃代         | ※    | 其他의 男子洋服        | ※  | 其他의 婦人 샤쓰       | "  |
| 家具·家事用品修理代  | ※    |                 |    | 婦人 세터           | "  |
|             |      | 5.2.2 婦人 洋服     |    |                 |    |
| 5 被服        | 哭 신발 | 婦人 服            | 着  | 5.3.3 兒童 샤쓰·세터類 |    |
|             |      | 스케트             | 枚  | 兒童 샤쓰           | 枚  |
| 5.1 韓服      |      | 婦人 스팩스          | 本  | 兒童 세터           | "  |
| 男子 韓服       | ※    | 婦人 코트           | 着  |                 |    |
|             |      | 女子 學生服          | "  | 5.4 속옷類         |    |
| 婦人 옷        | 枚    | 其他의 婦人洋服        | ※  |                 |    |
| 婦人 띠        | 本    |                 |    | 5.4.1 男子 속옷類    |    |
| 婦人韓服用코트     | 枚    | 5.2.3 兒童 洋服     | 着  | 男子 속옷           | ※  |
| 婦人韓服用속옷     | ※    | 兒童 服            | 着  | 男子 잠옷           | ※  |
| 其他의 婦人韓服    | ※    | 乳兒 服            | "  |                 |    |
| 兒童用韓服       | ※    |                 |    | 5.4.2 婦人 속옷類    |    |
|             |      | 5.3 샤쓰·세터類      |    | 婦人 판데이션         | ※  |
| 5.2 洋服      |      | 5.3.1 男子 샤쓰·세터類 |    | 其他의 婦人 속옷       | ※  |
| 5.2.1 男子 洋服 |      | 男子 와이 샤쓰        | 枚  | 婦人 잠옷           | ※  |
| 神士服         | 着    | 其他의 男子 샤쓰       | "  |                 |    |
| 男子上着        | "    | 男子 세터           | "  | 5.4.3 兒童 속옷類    |    |
| 男子 바지       | 本    |                 |    | 兒童 속옷           | ※  |
|             |      |                 |    | 兒童 잠옷           | ※  |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5.5 生 地 · 絲 類 |    | 5.8 被 服 關 連 씨 비 스     |    | 6.3 保 健 醫 療 씨 비 스   |    |
| 生 地           | ※  |                       |    | 診 療 代               | ※  |
| 毛 絲           | ※  |                       |    | 入 院 料               | ※  |
| 其他의 生 地 · 絲 類 | ※  |                       |    | 其 他 의 保 健 醫 療 씨 비 스 | ※  |
| 5.6 其 他 의 被 服 |    | 6.1 醫 藥 品             |    | 7 交 通 通 信           |    |
| 모 자           | 個  | 6.2 保 健 醫 療 用 品 · 器 具 |    | 7.1 交 通             |    |
| 넥 타 이         | 本  |                       |    | 電 車 汽 車 貨 物         | ※  |
| 웃깃 카바 · 其 他   | ※  | 6. 保 健 醫 療            |    | 通 學 定 期 料           | ※  |
| 장 감           | 組  |                       |    | 其 他 의 定 期 料         | ※  |
| 男 子 양 말       | 足  | 7.2 自 動 車 等 關 係 費     |    | 버 스 料 金             | ※  |
| 婦 人 긴 양 말     | "  |                       |    | 버 스 通 學 定 期 料 金     | ※  |
| 婦 人 속 크 스     | "  | 8. 衛 生 材 料 品          |    | 其 他 의 버 스 定 期 料 金   | ※  |
| 兒 童 양 말       | "  |                       |    | 택 시 料 金             | ※  |
| 其 他 의 被 服     | ※  |                       |    | 航 空 運 貨             | ※  |
| 5.7 신 발 類     |    |                       |    | 其 他 의 交 通           | ※  |
| 男 子 靴         | 足  |                       |    |                     |    |
| 婦 人 靴         | "  |                       |    |                     |    |
| 大 人 雨 靴       | "  |                       |    |                     |    |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애노그·크래용<br>노 트 북<br>其他의 紙製品<br>其他의 學習用消耗品<br>其他의 學習用文房具<br>其他의 文房具                                                                      | ※<br>冊<br>※<br>※<br>※<br>※                                                   | 9.3 書籍其他의印刷物<br>新 聞<br>雜 誌<br>週 刊 誌<br>其他의 書籍<br>其他의 印刷物                 | ※<br>※<br>※<br>※<br>※<br>※           | 9.4.4 其他의 教養 娛樂<br>써 스 비<br>受 信 料<br>入 場 · 觀 覽 · 代<br>입 映 畫 · 演 劇 料<br>等 入 場<br>스포츠觀覽代<br>文化施設入場料<br>其他의入場代 | ※<br>※<br>※<br>※<br>※<br>※         |
| 運動用具類<br>공<br>골프用具<br>其他의運動用具<br>스포츠用品                                                                                                  | ※<br>※<br>※<br>※                                                             | 9.4 教養 娛樂 써비스<br>9.4.1宿 泊 料<br>宿 泊 料<br>9.4.2往復旅行費<br>往復旅行費              | ※<br>※<br>※<br>※                     | 現像燒付代<br>諸會費<br>複寫機使用料<br>教養娛樂賃借料<br>其他의教養娛樂<br>써비스의其他                                                      | ※<br>※<br>※<br>※<br>※              |
| 玩 具<br>필 림<br>레 코 드<br>테프(수록되어<br>있지않는것)<br>테프(수록되어<br>있 는 것)<br>꽃<br>애 완 物<br>園 藝 用 品<br>手 藝 在 料<br>其他의教養娛樂<br>用 品<br>教養娛樂用 品<br>修 理 代 | ※<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9.4.3月 謝 禮 類<br>教育的月謝禮<br>教養的月謝禮<br>스포츠月謝禮<br>自動車敎習料<br>家事月謝禮<br>其他의月謝禮類 | ※<br>※<br>※<br>※<br>※<br>※<br>※<br>※ | 10.1 諸 雜 費<br>10.1.1理美容 써비스<br>沐 浴 料<br>理 髮 料<br>파마낸트代<br>셋 트 代                                             | 1人<br>1回<br>" "<br>" "<br>1人<br>1回 |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項目名              | 單位 |
|--------------|----------|---------------|----|------------------|----|
| 갓 트          | 1人<br>1個 | 파 토 셀         | 個  | 10.3 交際費         |    |
| 其他의 理美容代     | ※        | 旅行가방          | "  |                  |    |
|              |          | 其他의 백         | ※  | 10.3.1 食料        |    |
| 10.1.2 理美容用品 |          |               |    | 10.3.2 家具·家事用品   |    |
| 電氣理容器具       | ※        | 裝身具           | ※  | 10.3.3 被服 및 신발   |    |
| 치 솔          | ※        | 팔목시계          | ※  | 10.3.4 教養娛樂      |    |
| 其他의 理容品      | ※        | 其他의 신변用品      | ※  | 10.3.5 其他의 物品서비스 |    |
| 化粧비누         | 個        | 身邊用品修理代       | ※  |                  |    |
| 샴 프          | ※        |               |    |                  |    |
| 치 약          | ※        | 10.1.4 담배     |    | 10.3.6 贈與金       |    |
| 整髮養毛劑        | ※        | 담배            | ※  | 贈與金              | ※  |
| 化粧크림         | ※        |               |    |                  |    |
| 化粧水          | ※        | 10.1.5 其他     |    | 10.3.7 其他의 交際費   |    |
| 편데이션         | ※        | 信仰費           | ※  | 交際費              | ※  |
| 루즈           | ※        | 冠婚葬祭費         | ※  | 負擔費              | ※  |
| 其他의 化粧品      | ※        | 損害保險料         | ※  |                  |    |
|              |          | 寄付金           | ※  | 10.4 仕送金         |    |
| 10.1.3 身邊用品  |          | 保育所費用         | ※  | 遊學送金             | ※  |
| 우산           | 本        | 其 他           | ※  | 其他의 送金           | ※  |
| 가방類          |          | 10.2 雜費(使途不明) |    |                  |    |
| 손가방          | 個        | 家口主雜費         | ※  |                  |    |
| 핸드백          | "        | 其他의 雜費        | ※  |                  |    |

## 附錄 家口와 面接時의 參考

### 1. 머 리 말

家計調查는 標本調查方法에 의하여 全國에서 約 8,000 家口의 家計簿을 收集하여 全國의 全家口의 家計實態를 把握하기 위한 調查입니다. 그러므로 所定의 方法에 의하여 選定된 家口 특히 最初에 抽出된 家口에서 協力を 얻는것이 꼭 必要합니다. 家口에서 協力を 얻기 위해서는 家口와의 面接時의 注意點 및 面接例를 종합한 것임으로 面接時에 參考 利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調査豫定家口와의 接觸

單位區 家口名儀를 作成할 때는 이미 調査豫定 家口와는 接促이 이루어져 있고, 또한 앞서 依賴狀이 郵送되어 집니다.(市區町村을 통해서 市報나 町村報 등으로 「家計調查」가 實施되는 사실이 傳達될 경우도 있음.) 따라서 訪問을 받는 調査豫定 家口에서도 例를 들면 「전번에 뵙던 분이군요.」「편지 열락을 받았습니다.」「市報에 보도된 家口調査 말씀이지요.」 등의 응답을 하는 家庭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야기의 서두를 간단히 줄이고 바로 本論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읍니다만 調査員의 訪問을 意外로 생각하거나 도데체 무슨 用務로 왔는지 가령 세일즈맨이나 寄付金 募金者는 아닌가 집식구의 친구나 혹시 稅務署에서 ..... 등등의 疑心 받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勿論 疑心을 품는 家口가 意外로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서두를 잘 끄집어 내어 스무스하게 調査의 稅明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誠心誠意를 갖고 稅明에 임하는 것이 요긴 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要領을 參考해 주십시오.

自己自身의 身分을 밝히고 訪問의 趣指를 說明합니다.

例를 들면 「나는 郡廳의 일로 家計調查의 依賴를 하러온 調査員 ○○○ 라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家計調查員證을 提示합니다.

調査豫定家口의 記憶을 환기시키게 합니다.

가령 「나는 전번에도 調査때문에 訪問한 적이 있는 調査員 ○○○입니다.」「○○○ 統計局에서 依賴狀이 도착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라던지,

「〇〇日의 市報를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등과 같이 서두를 끄냅니다.

### 相對에 따라 形便이 좋은 訪問時間은 물어 봅시다.

商店等에서는 흔히 「지금 바쁘니 다음에 해달라」 등의 말을 할때도 있읍니다. 그런경우는例를 들면「나는 公務를 왔습니다……」라고 無理하게 强要하지 말고, 「바쁘시겠지만 잠간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만」……등 만약에 아무리해도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러면 3時경에 다시 찾아뵈으면 어떻겠습니까」라든지하여 訪問時間은 打診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여 約束時間은 꼭 지키는 것이 信賴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 政治的 論儀는 피해야 합니다.

흔히 官廳에서 행하는 調査에 대해서 政治的인 論議를 끄집어 내는 사람들이 있읍니다만 만약에 그런경우에는 깊이介入하지 말고 例를 들면 「정말 그런일도 있겠습니까만 그런일을 위해서도 이 調査는 國家政策을 세우기 위한 基礎資料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話題를 바꾸어 이야기를 본래의 목적으로 유도해 가야 합니다.

### **3. 調査趣旨 및 内容의 說明**

記入依賴時には 調査의 趣旨 内容의 說明을 너무 너절하게 길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逆效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는 說明하도록 銘心하십시오.

### 家計調查는 무엇을 調査하는가

가령 「이 調査는 여러분이 每月의 收入 및 支出을 (家計簿를 내보이면서) 이 家計簿에 記錄하게 하여 國民여러분의 生活實態를 파악하기 위한 資料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說明합니다. 또는 「이 調査는 家計調查라는 이름 그대로 여러분에게 家計簿의 記入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맥에서는 家計簿를 쓰고 있읍니까」라고 話題를 바꾸어 다음과 같이 面談합니다.

## [家計簿을 쓰고 있는 경우]

「그것 참 잘되었군요. 조금 쓰는 방법이 다를는지 모르겠으니 잠간 댁의 家計簿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家計調査의 家計簿를 보이면서) 이 家計簿에 轉記해 주시도록 하면 되겠군요. 그것을 提出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說明하여 納得케 하고, 調査說明에 들어갑니다.

## [쓰고 있지 않는 경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주머니께서 家計簿를 쓰는 것을 꺼이나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物件을 購入한 日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일단 家計簿의 記入을 納得시킨 뒤에 「그런데……」하고 調査說明에 들어갑니다.

## 어째서 調査家口로 選擇되었는가

「이미 이야기했다 시피 全國的으로, 여러분의 生活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標準的인 家庭이나 어떤 特定職業쪽만을 調査하는 것은 統計로서 충분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各層의 無作為抽出法이라는 科學的인 方法으로 全國에서 約 170의 市町村를 選定하여, 다시 그 市町村에서 約 1,300의 地域을 選定하고 여기에 居住하는 家口中 約 8,000家口를 抽出하여 調査를 依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道에서는 A市 B市 그리고 C市가 該當되어, A市에서는 이 地域에서 댁이 選定된 것입니다」(또한 標本調查法에 대한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 家計簿의 内容은 절대로 秘密이 보장된다는 것

「記入해주신 家計簿는 그대로 道에서 總務廳 統計局으로 보내지며 그 内容은 밖으로 絶對로 새로나올 수 없게 되어 있으며, 統計를 作成하는 目的以外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統計法이라는 法律에 의해서 굳게 嚴守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道廳의 담당직원이나 統計局의 職員도 만약에 그 内容을 밖으로 누설시킬 경우는 嚴重한 處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家計調査를 始作한 以後로 지금까지 秘密保護를 둘러싼 事件은 한번도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 4. 調査結果利用의 說明

調査家口의 協力を 얻기 위해서는 調査員 여러분의 热誠的인 說明도 충분한 効果가 있읍니다만 調査의 結果가 널리 利用되고 있고 自己의 努力이 社會를 위해 또한 自身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協力의 度도 加一層 높아지게 됩니다.

統計調查는 각각 여러가지의 목적을 위해 實施되고 있음으로 調査結果가 利用되어지고 있고, 抽象的으로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의 各種施設의 基礎資料로서 利用되고 있읍니다.」라고 말해도 調査對象의 協力を 충분히 얻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家計調查의 結果가 어떻게 많이 利用되어 지고 있는 가를 新聞記事나 各種報告書의 統計數字 등을 提示하거나 하여, 이 調査의 主體가 되는 調査票인 家計簿의 記入을 實際로 하게 되어 主婦들에게 調査의 結果가 어떻게 利用되어지고 있는 가를 充分히 理解시키는 것이 必要합니다.

그러나 調査員인 여러분이 實際로 調査豫定家口에 調査의 协力を 依頼했을 때 처음부터 細密하게 「이와같이 이렇게 利用되고 있는 重要的 調査임으로 꼭 調査에 協力해 주십시오.」라고 길게 自己 宣傳的인 說明을 하게 되면, 역으로 反感을 품게 할 우려도 있음으로 처음에는 다음에 列舉하는趣旨가 담긴 간단한 說明이 좋습니다. 또한 具體的으로 利用 例의 說明을 구하거나, 이야기의 사이에 간혹 「家計調查의 구성과 보는 방법」 등에서 利用 例의 하나 둘을 說明하게 되면 記入依頼가 보다 圓滿하게 進行될 줄 생각합니다.

#### { 처음의 說明에 담아 주어야 할 事項 }

- (1) 國民生活의 實態를 알기 위한 貴重한 資料를 얻게 된다.
- (2) 調査結果의 利用이 대단히 많다.
- (3) 直接으로는 調査家口의 利益은 되지 못하나 間接的으로 自己들의 生活을 더욱더 잘 되게 하기 위한 有用한 調査

#### 5. 記入 承諾 및 最初의 記入指導

以上과 같이 調査의 趣旨나 内容을 說明하고 調査豫定 家口에 記入을 맡도록 하게 합니다면 갑작이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야기의 요량을 몇가지 들어 보자.

보통은 家口 쪽에서 무슨 무슨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것을 극복하고 記入 승낙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記入을 거절할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의 「 6 」을 參照해 주십시오. )

### 理論보다는 實例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調査의 趣旨나 必要性을 충분히지는 않지만 대략 說明했음으로, 調査豫定家口쪽에서도 극히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統計調查에 協力해야 한다는 것은 알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理論的인 이야기는 必要가 없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요는 誠意를 갖고 說明하여 相對의 感情을 움직이게 하는것, 「써 보기로 할까」, 「써도 좋겠지」라는 기분이 일어나도록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家計簿를 記入하는 것은 統計調查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家計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질적인 例를 들어 說明해야 합니다. 例를들면 「지금까지 家計簿를 쓰지 아니하였으나 이 調査를 계기로 쓰기 시작했다」 듯지, 「때로는 酒店에서 한번 支拂한 記憶이 있는請求가 왔다. 그래서 家計簿를 調査해 보니 이미 支拂했다는 것이 확실해 졌음으로 그 것을 기초로 해서 店員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쪽의 잘못이라는 것이 판명 되었지요. 처음에는 귀찮은 調査라고 생각했으나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고맙게 생각될 뿐이었습니다.」와 같은 實例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實例는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됨으로 指導員이나 經驗이 있는 調査員에게 물어서 話題를 豊富하게 해두는 것도 必要합니다.

### 最初의 記入指導는 要點만으로

처음부터 너무 세밀한 점까지 說明하게 되면 간신히 記入 승낙을 한 家口도 귀찮하게 생각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第2 調査員의 할일」의 「4 調査家口에 대한 記入指導」( 28 페이지 )의 要領에 의거하여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쓰는 方法의 상세한 것은 巡回時 마다 차례로 指導해 가도록 합니다.

## 6. 記入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의 面接例

그러면 지금까지는 調査豫定家口와의 最初의 接觸에서 調査의 趣旨·內容의 說明方法 등을 研究해 보았읍니다만 이것을 토대로 하여 가령 話題의 導入이나 調査의 說明을 잘 進行시켰다고 하더라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당장 포기하는 것은 최초에 抽出된 家口를 調査家口로서 調査한다는 標本調查의 意味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승낙하지 않는가를 제빨리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臨機應變의 處置를 취할 수 있도록 平素에 研究해들 必要가 있읍니다. 記入을 승낙하지 않는 理由의 類型에 따른 面談例를 아래에 提示하고 있으니 參考해주시기 바랍니다.

### 時間的 諸裕가 없으므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쫓기기 때문에 부부함께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집에 병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 어느 경우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記入을 거절할 때는 相對의 立場에서 理解를 표시하고 說得합니다. 例를들면 다음과 같은 說明方法도 있읍니다.

「참 사정이 어렵겠군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럴경우에 오히려 家計가 산만하게 되고 쓸데없는 支出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매일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기 쉽습니다. 매일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家計簿를 記入하는 것은 힘든일이 겠지만 의외로 도움이 되지 않겠읍니까」

「같이 별이하면 꼭 고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자기집을 짓는 다던지, 여러 가지 生活設計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生活設計의 基本은 무엇이라고 해도 生活費가 얼마 드느냐 하는 것임으로 이 기회에 家計簿를 記入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支出도 알게 되고 그런것을 改善하여 賖金에 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家計簿을 記入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이러한 家口에서는 家計簿를 써본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그런말을 합니다만 뒤에 家計簿를 記入해 보고 참으로 잘했다고들 모두가 말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앞으로도 계속 家計簿를 記入하겠다

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번에도 이런일이 있었읍니다」(라고 實例를 들어 말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럴는지는 모르겠지만 帳簿上의 残高와 지갑속의 돈과 꼭 맞지 않는 다든지 무엇인가 記入을 잊어 버리는 것은 바쁜日常生活에서는 당연한 일이니 하는 수 없겠읍니다만 그것이 생각날 때 家計簿에 써두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글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보통 읽을 수 있을 정도로 記入해 주시면 됩니다.

### 數量을 쓰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數量을 記入하는 것을 記入하는 것 중에서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으로 이야기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만 實은 그것때문에 「저울」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날에 購入한 것을 저울에 달아보면 計量이正確한 가게와 그렇지 않는 가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값이 비싼 가게와 값이 싼 가게의 判別이 되고, 여러가지 生活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저울에 달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포장되어 팔고 있는 物品 중에는 重量이 표시되어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생각하기 보다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 半年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도 6個月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지나갑니다. 계속할 수 있을 는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바쁘거나 무슨 급한 일로 쓰지 못할때는 메모해 두어 도 좋습니다. 計算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秘密이 누설되기 때문에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가는 法律에 의해 處罰를 받습니다. 統計局에서도 절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徵稅등의 資料가 되거나, 그 以外 맥의 家計簿가 統計를 作成하는 目的 以外에 사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家計調查를 시작한지 ○○년이 지났읍니다만 秘密保護에 관한 物議가 한번도 없었읍니다. 그點은 안심해 주십시오.」

「家計調査를 시작하여 모든 統計調査는 調査하는 우리들과 調査를 하게 해주시는 여러분과의 信賴關係에 의해 成立되고 있습니다. 調査한 結果로 統計를 作成하는 目的 以外는 使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約束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今後의 調査에 누가 協力해 주시겠습니까. 」

### 家計의 内容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 말씀하신대로 그렇겠습니다. 만약에 나라도 銘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調査員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銘의 사정을 누설하는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또 法律로서도 秘密을 누설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家計簿에는 銘의 이름도 없고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地域의 家口에서 記入해 주시는 家計簿는 銘의 것을 합쳐 1年間에 300券이나 됨으로 그 内容을 일일히 기억할 수도 없읍니다. 아무쪼록 安心해 주십시오. 」

### 家計가 赤字이므로

「우리는 標準的인 家計가 아니고 赤字이고 또 빚이 있다고 합니다만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는 그만큼 信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째 든 家計調査는 앞서 말한 것 처럼 全國 全家庭의 縮圖가 되도록 計劃되어지고 있음으로, 그달의 收入으로 그달의 生活을 꾸려가고 있는 家口나 또는 銘과같이 信用으로 家計를 꾸려가는 家庭도 調査가 되어야 합니다. 」

「 實은 그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國民중에는 赤字家庭도 있다는 國民生活의 實相이 統計에 나타나지 않으면 政府로서도 政策을 수립할 길이 없읍니다. 標準的인 家計만을 調査해서는 國民生活의 實態가 감추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 統計調查員에는 協力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例는 极히 特殊한 경우(例를 들면 政治的 偏見 등)를 除外하고, 大部分은 調査에 대한 莫然한 不安이나 誤解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째서 協力할 수 없는지 그 理由를 물어보시고 指導員과 相談하

여 明確한 對策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 조금더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십시오.

以上 여러가지 종류의 「거절」에 對應하는 處理方法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만, 「조금더 생각해볼 기회를 주십시오」 라든지, 「主人과 相議하여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당장에 곧 승낙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때는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 뵈옵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調査는 여러분이 힘써 주지 않으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또 무슨 미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고나서 다시 방문하도록 합니다.

## 7. 標本調查方法이란

標本調查를 簡單히 말하면 어떤 事項을 調査할 때 그 全部를 調査하는 代身에 그一部(標本이라고 함)를 選拔하여 調査하고 그 結果에서 全體의 性質을 推定할려고 하는 方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選定된 標本이 全體의 正確한 縮圖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 標本의 選定이 標本調查의 可否間의 成功을 決定하는 要因이 되는 것입니다.

標本調查法으로 標本이 選定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客觀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選定하는 사람의 意志나 感情 등의 介入이 없도록 하기 위해 家計調查에서는 亂數表를 使用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調査는 標本調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標本調查法에는 다음과 같은 特色있는 長點이 있습니다.

- (1) 標本 뿐만이 아니라 全部를 調査하는 方法에 比해 調査하거나 結果를 整理하는 데 쓰이는 費用이나 勞力 및 結果를 綜合하는데 所要되는 日數가 적게 된다는 것.
- (2) 標本調查法으로 調査하면 調査結果의 正確度가 어느 程度인가를 計數的으로 測定할 수 있다는 것.

標本調查法은 이러한 長點을 갖고 있음으로 總務廳 統計局을 비롯하여 各官廳에서 實施되고 있는 主要 統計는勿論, 民間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市場調查등

에도 이 標本調查法을 使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家計調查의 沿革

우리나라에서 家計調查가 처음에 全國的으로 實施된 것은 1926年으로 그당시 内閣統計局(現在의 總務廳 統計局)에 의한 家計調查입니다. 이 調查는 全國에서 家計簿 記入者를 應募하여 約 7,000 家口에 대해서 實施되었습니다. 그 뒤에 1931年 9月부터 約 2,000 家口에 대해서 家計調查가 再開되어 1943년까지 繼續되었읍니다.

戰後는 1946年 여름부터 消費者價格調查라는 名稱으로 家計上의 支出面만을 調査해 왔읍니다만 1950年부터 그 體裁를 改革하여 家計調查라 하고 全國 28都市 約 5,600 家口에 대해서 實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例를들면 職業別 또는 地域別에 의한 生活의 差異 등으로 1962年 7月부터는 從來의 調査하지 아니한 人口 5萬 未滿의 都市나 邑面까지 範圍를 확대하여 全國平均이 나올 수 있도록 또 都市階級別이나 地域別의 統計도 利用할 수 있도록 擴大 改正하여 調査對象은 全國 約 170市町村 約 8,000 家口가 되고 現在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 今回的主要한改定點

1. 「參考」「說明」 및 「問」文을正確하게하여, 「強調」할곳은 2色으로印刷하는 등體系的인表現을하였음.

2. 單位區抽出方法의變更에따라說明文을바꿨음.

第2의2의(1)의問2單位區의抽出方法

註) 1調查區에 1單位區의 경우도 있음(通常은 2調查區에 1單位區)

3. 調查票樣式의變更에따라說明을바꿨음

第2, 第5, 第6 및 第7

및關連의記入例를新調查票로바꿨음

第5, 第6 및 第7

4. 單位區家口名簿의樣式變更에따른說明文의變更

(1) 「2職業」欄의配置變更 및調查趣旨를밝힌說明文으로바뀜

第3의1의「4家口主의職業」

(2) 下欄「最初에抽出한一連番號」欄을勤勞者家口나一般家口로區分함.

第3의2 및 第4의1

(3) 副本의作成方法의變更에따라說明文을바뀜

第2의1, 2, 3, 10, 11 및 第3의9

5. 「家計簿收納袋」의呼稱을「家計簿保管袋」로變更함.

第2, 3, (6) 및 別表 3

6. 船員保險을厚生年金에編入시켰음으로「參考1年金의種類」에서船員保險을削除하였음.

7. 品目分類改正에따라「別表7消費支出의品目 및 算量單位一覽表」를改正함.

調査員登記

|              |       |       |   |
|--------------|-------|-------|---|
| 擔當市町村番號      |       |       |   |
| 擔當単位區符號      |       |       |   |
| 単位區更新月       | 月     | 月     | 月 |
| 名簿補完月        | 月     | 月     | 月 |
| 年間收入調査       | 月     | 月     | 月 |
| 擔當指導員姓名      |       |       |   |
| 統計主管課<br>連絡處 | 住 所   |       |   |
|              | 擔當係名  |       |   |
|              | 電話( ) | 番(内線) | 番 |
| 備 考          |       |       |   |

## II. 家計調査実施要領

## 目 次

|                                    |       |     |
|------------------------------------|-------|-----|
| <b>第1. 調査概要</b>                    | ..... | 149 |
| 1. 調査目的                            | ..... | 149 |
| 2. 調査沿革                            | ..... | 149 |
| 3. 調査対象                            | ..... | 149 |
| 4. 調査範囲                            | ..... | 150 |
| 5. 調査期間                            | ..... | 153 |
| 6. 調査事項 및 調査方法                     | ..... | 153 |
| 7. 調査의 系統                          | ..... | 154 |
| 8. 集    計                          | ..... | 154 |
| 9. 結果公表 및 期日                       | ..... | 155 |
| 10. 調査의 法的根據                       | ..... | 155 |
| 11. 秘密의 保護                         | ..... | 155 |
| <b>第2. 都道府縣의 事務</b>                | ..... | 156 |
| 〈都道府懸의 事務一覽〉                       | ..... | 156 |
| 〔一般事務〕                             | ..... | 157 |
| 1. 指導員 및 調査員의 選任                   | ..... | 157 |
| 2. 任命報告書의 提出                       | ..... | 157 |
| 3. 指導員證 및 調査員證의 交付                 | ..... | 157 |
| 4. 指導員에의 擔當調査員 指示 및 調査員에의 擔當單位區 指定 | ..... | 157 |
| 5. 單位區地域의 變更, 擴張, 分割               | ..... | 158 |
| 6. 市町村長에게 調査市町村의 交替通知              | ..... | 158 |
| 7. 調査用品類의 受領 및 配付                  | ..... | 158 |
| 8. 調査豫定家口로의 依賴狀 配付                 | ..... | 158 |
| 9. 調査票類의 內容檢討 및 提出                 | ..... | 159 |
| 10. 調査票(寫) 等의 處理                   | ..... | 159 |
| 〔指導監査〕                             | ..... | 160 |
| 1. 指導員에 對해서                        | ..... | 160 |
| 2. 調査員 指導會의 開催                     | ..... | 160 |

|                                        |     |
|----------------------------------------|-----|
| 3. 指導監査報告書의 提出                         | 160 |
| <b>第3. 指導員의 事務</b>                     | 161 |
| 〈指導員의 할일 과 그 要領〉                       | 161 |
| 〔一般事務〕                                 | 162 |
| 1. 調査員 指導會에의 出席                        | 162 |
| 2. 調査用品類의 受領 및 配付                      | 162 |
| 3. 單位區 家口名簿 作成指示와 內容檢討                 | 163 |
| 4. 單位區 家口名簿의 補完과 內容檢討                  | 163 |
| 5. 調査豫定家口의 抽出                          | 164 |
| (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調査家口數의 割當              | 164 |
| (2) 調査豫定家口의 抽出方法                       | 167 |
| (3) 調査豫定家口의 指示                         | 169 |
| 6. 調査區 更新과 調査家口의 定期交替                  | 170 |
| 7. 調査家口의 臨時交替에 對한 處理                   | 170 |
| 8. 調査家口의 區分(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의 變更에 對한 處理    | 170 |
| 9. 調査票類의 內容檢討와 提出                      | 171 |
| 10. 年間 收入調查                            | 171 |
| 11. 調査町村의 交替가 있는 경우                    | 171 |
| 〈町村交替의 單位區符號別 交替月一覽〉                   | 172 |
| 〔指導監査〕                                 | 173 |
| 1. 調査員 新任時의 指導                         | 173 |
| 2. 調査員 指導會                             | 173 |
| 3. 實查指導                                | 174 |
| <b>第4. 單位區地域의 變更, 擴張, 分割等에 關한 事務處理</b> | 175 |
| 1. 單位區의 變更에 對하여                        | 175 |
| 2. 單位區의 擴張에 對하여                        | 175 |
| 3. 單位區의 分割에 對하여                        | 177 |

|                            |     |
|----------------------------|-----|
| [設問]                       | 178 |
| (別表・附録)                    | 185 |
| 1. 勤労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早見表       | 187 |
| 2. 家計簿의 内容檢討 要領과 그 處理      | 188 |
| 3. 調査用品類의 受領(配付) 및 提出      | 191 |
| 4. 調査票類를 總務廳 統計센타에 提出하는 期限 | 193 |
| 5. 産業分類表                   | 194 |
| 6. 家計調査 職業分類表              | 196 |
| 7. 年金의 種類                  | 198 |
| 8. 都道府懸別 基本數一覽             | 199 |
| 9. 調査市町村別 基本數一覽            | 200 |
| 10. 都道府懸別・月別 年間 收入調査 家口數一覽 | 207 |
| (附錄)                       |     |
| 1. 家計調査要綱                  | 208 |
| 2. 家計調査規則                  | 214 |
| (附 調査票類의 様式)               | 219 |
| 3. 統計法(抄)                  | 226 |
| 4. 家計調査의 沿革                | 228 |

# 第1 調査概要

## 1. 調査目的

家計調査는 全國의 農林漁家 및 單身者以外의 家口를 對象으로 家計의 實態를 調査하고, 國民生活에서의 家計收支分布와 構造 및 그 地域別 差異를 明確히 하고, 各種 經濟施策의 評價와 立案의 基礎資料를 얻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2. 調査沿革

家計調査는 1946年 7月에 始作한 消費者價格調查(C P S)에서 發展한 것이다.

消費者價格調查는 원래 消費者物價指數의 作成에 必要한 價格과 웨이트의 資料를 얻기 위해 28都市에서 約5,600家口를 對象으로 해서 都市家口의 家計支出面을 調査하고 있다.

1950年 6月에 小賣物價統計調查가 別途로 始作되고, 消費者物價指數의 價格資料는 그 調査에서 얻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機會에 消費者價格調查를 改正해서 1950年 9月부터 家計의 收入・支出의 兩面을 調査하는 것으로 해서 1951年 11月부터는 名稱을 「消費實態調查」로 고쳤다.

그 後 1953年 1月에서 消費支出分類를 그것까지의 品目分類를 보지 않고, 用途分類와 品目分類의 2 가지의 方法으로 行하는 것으로 하고, 1953年 4月에서 名稱을 現在의 「家計調查」로 고쳤다.

또한 1962年 7月부터 調査地域을 都市뿐 아니라, 郡部도 包含하여 全國으로 擴大하였고 同時に 調査의 規模를 지금까지의 28都市, 4,134家口에서 170市町村 8,028家口로 擴大하였다.

또 1972年 7月부터는 沖繩懸도 包含하여 176市町村, 8,196家口로 되었으나, 1978年 1月에는 1975年 國勢調查의 結果에 基礎해서, 또 1983年 1月에는 1980年 國勢調查 結果에 基礎하여 標本設計를 改正하고, 168市町村, 8,076家口로 되어 있다.

## 3. 調査對象

家計調査의 調査對象은 全國의 家口로 한다. 단, 다음에 열거하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해서 調査對象에서 除外한다.

- (1) 耕地 10 아르以上 (北海道에는 30 아르以上) 을 耕作하고 農業을 經營하는 家口. 다만, 耕地面積이 10 아르 (北海道 30 아르) 未滿의 家口 및 耕地를 耕作하지 않는 家口라도, 農業粗收益이 前記 規模에서 얻어지는 것과 同等以上の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한다. (年間 10 萬円 以上)
- (2) 林業을 經營하는 家口
- (3) 漁船을 使用해서 海面 또는 內水面에 있어서 漁業을 經營하는 家口. 다만, 漁船을 使用하지 않더라도 定置網漁業・水面養殖業 및 海面養殖業을 經營하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한다.
- (4) 單身者家口
- (5) 外國人家口
- (6) 料理飲食店, 旅館 또는 下宿屋 (寄宿舎를 包含) 을 經營하는 併用住宅의 家口
- (7) 食事률 提供받는 同居人이 있는 家口 (素人下宿)
- (8) 宿食을 提供하는 營業上의 使用人이 4人以上 있는 家口
- (9) 家口主가 長期間 不在하는 家口
- (10) 그밖에 都道府懸知事が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家口

#### 4. 調查範圍

##### (1) 調査市町村

1980年 10月1日 現在의 市町村을 懸廳所在都市 및 10大都市는 각각을 1層으로 해서 調査都市로 한다. 그 以外의 市町村은 地理的 位置, 人口, 非農林漁家比率, 人口增加率, 人口集中地區 人口比率, 產業的 特色에 따라 119層으로 나누어 각層에서 推定非農林漁家數에 比例한 確率을 使用한 確率比例抽出法에 따라 1市町村씩 總務廳統計局에서 抽出한다.

調査市町村數는 合計 168 이다.

(別表8 「都道府懸別 基本數一覽」 및 別表9 「調査市町村別 基本數一覽」 參照)

##### (2) 調査家口數

調査市町村에서 選定되는 8,076 家口로 한다.

##### (3) 調査市町村別 單位區數 및 調査家口數

調査市町村別 單位區 및 調査家口의 割當數는 다음의 表와 같다.

다시 말해서 懸廳所在都市는 그 都市別 集計結果의 精度를 維持하기 위해 調査家口數가 最低 96 家口가 되도록 定했다.

| 區 分          | 單位區數 | 調査家口數 |
|--------------|------|-------|
| 東京都部         | 68   | 408   |
| 横浜市          | 24   | 144   |
| 名古屋市         | 22   | 132   |
| 大阪市          | 32   | 192   |
| 川崎市          | 16   | 96    |
| 北九州市         | 16   | 96    |
| 那霸市          | 28   | 168   |
| 上記以外의 懸廳所在都市 | 16   | 96    |
| 中都           | 6    | 36    |
| 小都市 A        | 6    | 36    |
| 小都市 B        | 4    | 24    |
| 町村           | 2    | 12    |

(但, 小都市A 가운데 沖繩市의 調査家口數는 24, 小都市B 가운데 平良市, 石垣市 및 名護市는 각각 12로 한다)

#### (4) 調査家口의 選定

調査市町村에 있어서 調査家口의 選定方法은 우선, 그 市町村에 設定되어 있는 1980年 國勢調査調査區를 基本으로 하여 設定한 單位區를 抽出하고, 다음에 그 單位區에서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로 調査家口를 選定한다. 또 記入期間을 終了한 調査家口 및 單位區는 一定의 方法에 따라 交替한다.

即, 1 調査員이 2 單位區를 擔當하고, 1 單位區 6 家口씩 合計 12 家口를 擔當한다.

##### ① 單位區의 設定 및 選定

單位區는 1980年 國勢調査의 「標本調查 基礎資料」 및 「調査區地圖」를 使用하고, 1980年 國勢調査 一般調査區에 隣接하는 2 調査區를 一括해서 1 單位區로 하고 總務廳 統計局에서 選定한다.

單位區는 「單位區通知表」에 의해 1年分을 一括해서 都市府縣知事에게 指示한다.

##### ② 調査家口의 選定

調査家口의 選定은 都道府懸에 指示된 單位區에서 다음의 方法에 따라 行한다.

가. 各 單位區마다 單位區內에 居住하는 모든 家口의 名簿(「單位區 家口名簿」)를 作成한다.

나. 調査家口는 1 單位區에서 6 家口씩 選定한다.

6 家口의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 內譯은 그 單位區內의 通格 勤勞者家口와 一般家口數에 比例해서 配分한다.(p.164第3 指導員의 事務 5. 調査豫定家口의 抽出 參照)

다. 이 配分된 數의 家口를 「單位區 家口名簿」의 通格家口 中에서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로 調査家口 抽出番號表(亂數表)」에 따라 抽出하고, 이것을 調査豫定家口로 한다.

라. 다음에 이 調査豫定家口에 對해서 調査에 協力を 依賴하고, 「家計簿」의 記入을 承諾한 家口를 調査家口로 選定하고, 6 個月間 調査한다.

#### [参考] 單位區에 對해서

原則的으로 國勢調查區에 隣接한 2 調査區를 1 單位區로 한다. 단, 그 地域의 特殊事情에 따라 單位區를 擴張 또는 分割하는 경우도 있다.

#### 勤勞者家口, 無職家口 및 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에 대해서

勤勞者家口란 家口主(家計上에 主된 收入을 얻고 있는 사람)가 會社, 官公署, 學校, 工場, 商店 等에 勤務하고 있는 家口를 말한다.

即, 家口主가 社長, 理事 等의 會社(合資, 合名, 有限을 包含), 團體重役인 家口는 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로 한다.

無職家口란 家口主가 無職인 家口를 말한다. 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란 勤勞者家口 및 無職家口 以外의 家口를 말한다. 例를 들면 家口主가 商人, 事業經營者(個人 및 法人), 및 自由業者 等의 家口를 말한다.(別表6 「家計調查職業分類表」 參照)

#### 定期交替와 臨時交替에 대해서

定期交替란 1 年마다의 單位區 更新의 경우에 行하는 家口交替와 그 單位區에 대해서는 6 個月이 經過한 後에 名簿補完에 의한 家口交替를 말한다.

臨時交替란 調査家口가 定期交替前에 부득이한 理由로 다른 家口와 交替하는 것을 말한다.

마. 調査豫定家口 가운데 부득이한 理由로서 「家計簿를 記入하지 않는 家口가 있을 경우는 이것을 除外하고, 다른 家口를 抽出해서 調査家口로 選定한다. 이 除外된 家口를 準調查家口로 한다.

바. 6個月中에 부득이한 理由에 의거 記入을 繼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單位區에서 다시 選定한 家口와 臨時交替한다.

### ③ 單位區 更新 및 調查家口의 定期交替

單位區는 1年마다 總務廳 統計局長이 指定하는 單位區를 更新하고 그 單位區에 대해서는 「單位區 家口名簿」를 새로 作成하여 여기에 따라 調査家口를 選定하고, 舊單位區 調査家口와 定期交替한다.

各 單位區에서 最初 6個月의 記入期間을 終了된 調査家口는 單位區更新時에 作成된 「單位區家口名簿」를 補完하고, 이것에 따라 다시 選定한 家口와 定期交替한다.

## 5. 調査期間

調査는 每月 行하고 同一家口를 6個月間 調査한다.

## 6. 調査事項 및 調査方法

- (1) 每月의 收入 및 支出에 對해서는 「家計簿」에 1期(1日~15日), 2期(16日~末日)別로 調査家口가 記入한다. 단, 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는 支出만을 記入한다.
- (2) 年間收入에 대해서 記入開始後 2個月째의 前半에 勤勞者家口, 無職家口 및 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를 不問하고 「年間 收入調查票」에 調査家口가 記入한다.
- (3) 家口員 및 住居에 關한 事項에 對해서 「家口票」에 따라 調査員이 面接 調査한다.
- (4) 準調查家口에 對해서는 家口에 關한 事項을 「準調查家口票」에 의거 調査員이 面接 調査한다. 即, 調査事項과 調査方法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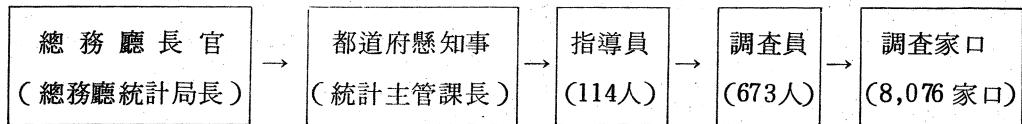
| 調查表의 種類 | 調査事項                                        | 調査時期              | 記入者  |
|---------|---------------------------------------------|-------------------|------|
| 家計簿     | 收入과 支出(勤勞者家口 및 無職家口)<br>支 出(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 | 每 月               | 調查家口 |
| 年間收入調查票 | 年 間 收 入                                     | 記入開始後<br>2個月째의 前半 | 調查家口 |
| 家 口 票   | 家口, 家口員 및 住居에 關한 事項                         | 記入開始時             | 調查員  |

準調查家口에 對하여

|        |           |       |     |
|--------|-----------|-------|-----|
| 準調查家口票 | 家口에 關한 事項 | 記入依頼時 | 調查員 |
|--------|-----------|-------|-----|

## 7. 調査의 系統

調査市町村에는 調査에 從事하는 家計調査員을 두고, 또한 都道府懸에는 家計調査員을 指導하는 家計調査指導員을 두고 다음의 系統에 따라 調査를 實施한다.



## 8. 集計

다음 事項은 總務廳 統計센타에서 集計한다.

(全國・人口 5萬名 以上의 都市에 關하여)

- (1) 所得階層別 收入과 支出
- (2) 家口員數別 收入과 支出
- (3) 家口主의 年齡階級別 收入과 支出
- (4) 家口主의 職業別 收入과 支出
- (5) 家口主의 產業別 收入과 支出(全國만)
- (6) 家口主 勤務處 企業規模別 收入과 支出(全國만)
- (7) 家口類型別 收入과 支出(全國만)
- (8) 住居의 所有關係別 收入과 支出
- (9) 品目別 購入數量, 支出金額 및 平均價格

(地方別에 關하여)

- (1) 所得階層別 收入과 支出
- (2) 家口主의 職業別 收入과 支出
- (3) 住居의 所有關係別 收入과 支出
- (4) 品目別 購入數量, 支出金額 및 平均價格

(市町村別에 關하여)

- (1) 市町村別 收入과 支出
- (2) 懸廳所在 都市別 品目別 支出金額

## (其他)

- (1) 標準誤差에 關한 事項
- (2) 其他

## 9. 結果公表 및 期日

調查結果는 調查月 翌翌月 下旬에 「速報」로서 公表하고, 그 後에 刊行物로서는 「家計調查報告(月報)」로 따라 公表한다. 또한 年平均 結果를 收錄한 「家計調查年報」를 發刊하고 있다.

## 10. 調査의 法的根據

家計調查는 統計法의 規定을 基本으로 한 指定統計調查(指定統計 第56號)로 하고, 家計調查規則(1975年 總理府令 第71號)\*의 規定에 의거 實施된다.

(\* 現行 家計調查規則은 1952年에 規定된 것을 1975年에 全面 改正한 것이다)

## 11. 秘密의 保護

指定統計인 家計調查는 個別家口의 家計上 收入, 支出, 年間收入 및 家口에 關한 事項을 調査하고 있으나, 調査關係者는 調査家口의 秘密을 남에게 누설하거나 調査票를 統計的인 目的以外에 使用하는 것은 統計法 第14條 및 第15條에 따라 엄격히 禁止되어 있다.(附錄3 統計法(抄) 參照)

## 第2 都道府懸의 事務

都道府懸의 事務를 概略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都道府懸의 事務一覽

| 할 일 의 種 類                         | 時 期                 |
|-----------------------------------|---------------------|
| 〈指導員・調査員〉                         |                     |
| 1. 指導員 및 調査員의 選任                  | 調査市町村交替時, 缺員이 생겼을 때 |
| 2. 總務廳 統計局에의 任命報告書 提出             | 任命時마다               |
| 3. 指導員證, 調査員證의 交付                 | 毎年 4月1日 및 任命時마다     |
| 4. 指導員에의 擔當調查員의 指示 및 總務廳 統計局에의 報告 | 變更된 時點              |
| 5. 調査員에의 擔當單位區의 指示 및 總務廳 統計局에의 報告 | 變更된 時點              |
| 〈調 査〉                             |                     |
| 6. 調査用品類의 受領 및 指導員에의 配付           | 年1回 또는 2回           |
| 7. 調査豫定家口에 對한 依頼狀 送付              | 每 月                 |
| 8. 調査票類의 內容檢討 및 整理                | 毎月(家計簿는 月2回)        |
| 9. 總務廳 統計센타에의 調査票類 提出             | 毎月(家計簿는 月2回)        |
| 〈指 導〉                             |                     |
| 10. 指導員 및 調査員의 指導・監査              | 隨 時                 |
| 11. 調査員指導會의 開催                    | 年2回 以上              |
| 12. 總務廳 統計局에의 指導監査報告              | 局에서 指示된 경우          |
| 〈其 他〉                             |                     |
| 13. 市町村長에의 調査市町村 交替通報             | 交替時마다               |
| 14. 調査票(寫) 等의 廃棄                  | 調査終了後 1年            |

## [一般事務]

### 1. 指導員 및 調査員의 選任

都道府懸知事(以下「知事」라 함)는 總務廳 統計局長이 提示한 定數(別表8 「都道府懸別 基本數一覽」 參照)를 基準으로 하여 指導員 및 調査員을 選任 한다. 또 缺員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後任者를 選任한다.

調査員은 다음의 基準에 따라 選任한다.

- (1) 調査의 內容을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者
- (2) 實查活動에 從事할 수 있고, 또한 調査에 热意가 있는 者
- (3) 稅務, 警察 等에 直接 關係가 없는 者

### 2. 任命報告書의 提出

知事은 指導員 또는 調査員을 任命한 경우 다음 事項(이 報告事項에 變動이 생긴 경우에는 그 變動事項)을 「家計調查指導員 任命報告」 또는 「家計調查員 任命報告」에 記入한 후 總務廳 統計局長에게 提出한다. 即, 指導員 또는 調査員을 解任한 경우에는 姓名, 解任年月日, 解任理由 및 擔當市町村名을 報告한다.

#### (1) 指導員을 任命한 경우

姓名, 性別, 生年月日, 現住所, 職名, 任命年月日, 擔當調查員姓名과 그 擔當市町村名, 前任者 姓名

#### (2) 調査員을 任命한 경우

姓名, 性別, 生年月日, 現住所, 職業, 任命年月日, 調査市町村名, 擔當單位區番號, 前任者姓名, 兼任調查名, 指導員姓名

### 3. 指導員證 및 調査員證의 交付

知事은 指導員證 및 調査員證을 原則적으로 年度마다 更新하는 것으로 하고, 각各 所定事項을 記入하여 交付한다. 即, 舊 指導員證 및 調査員證은 回收한 後에 燒却 處分한다. 또 年度中에 選任 또는 解任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앞의 記述內容에 準해서 處理한다.

### 4. 指導員에의 擔當調查員 指示 및 調査員에의 擔當單位區 指定

- (1) 知事은 指導員에 대해서 그가 擔當하는 調査員을 指示한다.

또 總務廳 統計局에서 「單位區 通知表」에 依해 指定된 單位區에 대해 擔當 調查員을 指定한다.

- (2) 知事는 各 調查員에게 2 單位區의, 單位區番號의 앞 2 자리數가 「01, 04」, 「02·05」, 「03·06」, 「07·10」, 「08·11」, 「09·12」가 되도록 組合시켜 擔當시킨다.
- (3) 知事는 指導員이 擔當하는 調査員 및 調査員이 擔當하는 單位區를 變更할 경우 變更後 10 日以內에 任命報告書에 따라 總務廳 統計局長에게 報告한다.

#### 5. 單位區地域의 變更 · 擴張 · 分割

知事는 總務廳 統計局長이 指定한 單位區에 對해서 調査員에게 單位區內를 實地 踏査토록 指示하고 그 單位區內의 狀況에 따라 單位區의 變更, 擴張, 分割 等을 行할 必要가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속히 總務廳 統計局長에게 申請한다.

#### 6. 市町村長에게 調査市町村의 交替通知

調查市町村에 交替가 있었을 경우 知事는 調査가 끝난 市(區)町村 및 새로운 調査市町村으로 指定된 市(區)町村의 長에게 그 취지를 通報한다.

即, 새로운 調査市(區)町村에 對해서는 調査員이 「單位區 家口名簿」 作成時 單位區의 區域을 確認하기 위해 市(區)町村에 보관하고 있는 1980年 國勢調査 「調查區一覽表」, 「調查區地圖」, 「調查區要圖」 및 「家口名簿」를 利用 할 수 있도록 協力を 依頼한다.

#### 7. 調査用品類의 受領 및 配付

知事는 總務廳 統計局長으로부터 受領한 調査用品類를 別表3 「調查用品類의 受領(配付)과 提出」을 基礎로 하여 指導員이 配付한다.

#### 8. 調査豫定家口로의 依賴狀 配付

知事는 指導員으로부터의 報告內容을 基本으로 하여 每月 새로이 發生된 調査豫定家口에 대해서 신속하게 依賴狀을 配付한다.

## 9. 調査票類의 内容檢討 및 提出

知事は 調査票類(家計簿, 家口票, 準調査家口票 및 單位區家口名簿)에 대해서 調査員 및 指導員의 内容檢討가 定해진 데로 行해지고 있는가를 確認한다.

年間 收入調查票는 都道府懸에서 開封하여 内容檢討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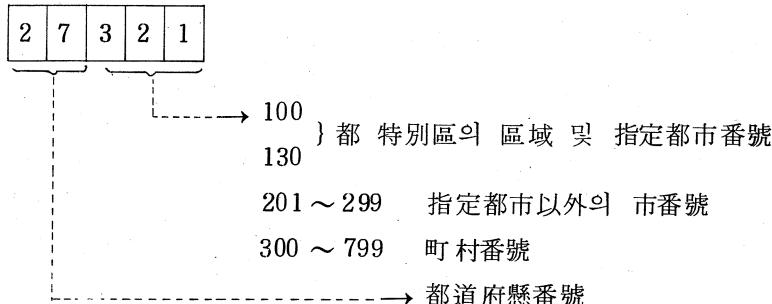
即, 内容檢討는 記入與否의 確認에 重點을 두고, 記入하지 않은 경우에는 可能한限 再調査를 한다.

内容檢討가 끝난 調査票類는 別表4 「調査票類의 總務廳 統計센타에의 提出期限」에 表示된 期限까지 「提出明細書」를添附하여 總務廳 統計센타 所長에게 提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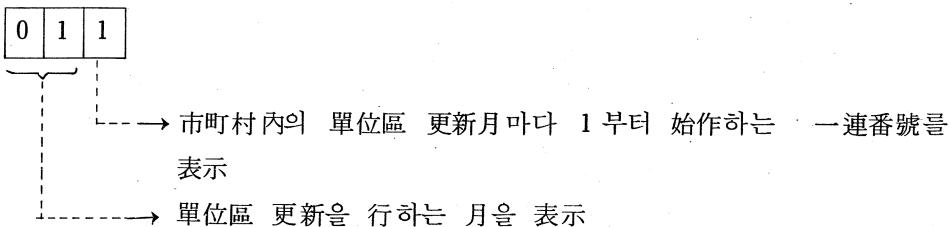
## 10. 調査票(寫) 等의 處理

知事は 指導員 및 調査員이 참고용으로 갖고 있는 「家口票」, 「單位區 家口名簿」等의 사본을 調査終了後 1年間 保管한 다음 신속히 燃却處分한다.

〔参考〕 市町村番號는 自治省에서 告示한 「都道府懸・市町村코드」를 使用하고 있는데 그 構成內容은 다음과 같다.



單位區番號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 [指導監査]

### 1. 指導員에 대해서

知事は 指導員에 대해서 調査員의 指導方法 및 實查方法에 관해서 指導함과 더 불어 調査結果를 보는 方法이나 使用方法에 대해서도 關心을 갖도록 指導한다.

### 2. 調査員 指導會의 開催

知事は 調査員 指導會를 적어도 年 2 回 開催하고, 指導員을 通해서 調査員에 대한 指導를 行한다.

即, 그 以外 隨時로 調査員에 대한 指導를 한다.

### 3. 指導監査報告書의 提出

知事は 指導員 및 調査員의 實查狀況에 관해서 「指導監査報告書」를 作成하여 總務廳 統計局長에게 提出한다.

이 報告의 時期 및 方法 等에 대해서는 別途 指示에 따른다.

### 第3 指導員의 事務

指導員은 現地에서 調査業務를 處理하는 重要한 立場에 있으므로 調査全般에 精通하여야 함과 아울러 調査員을 잘 指導監督하여 正確한 調査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指導員의 事務處理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指導員의 할일과 그 要領

| 할 일의 種類                    | 할 일의 要領                                                                                                                      | 時期               |
|----------------------------|------------------------------------------------------------------------------------------------------------------------------|------------------|
| (1) 調査用品의 受領               | 受領한 調査用品의 種類와 數量을 確認한다.                                                                                                      | 年 1回 또는 2回       |
| (2) 調査員에의 調査用品의 配付         | 調查事務에 支障이 없도록 調査員에게 配付한다.                                                                                                    | 每月               |
| (3) 調査員에게 單位區의 指示          | 調查員이 擔當하는 單位區는 國勢調查區 關係資料에 따라 指示한다.                                                                                          | 單位區 更新時          |
| (4) 單位區 家口名簿의 內容檢討         | 定해진 대로 記入되고 있는가를 檢討한다.<br>특히 內容檢討에 關한 「注意」事項에 留意하여 行한다.                                                                      | 單位區 更新時 및 名簿補完時  |
| (5) 調査豫定家口의 抽出             | 內容檢討가 끝나면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해서, 單位區 家口名簿를 3部 作成해서 調査員에게 指示한다.<br>名簿補完時에는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別로 配分, 調査家口抽出番號表를 使用한 것(特히 名簿補完時)이 適正한 가를 檢討한다. | 單位區 更新時 또는 名簿補完時 |
| (6) 家口票의 內容檢討와 產業・職業符號의 記入 | 記入內容의 審查와 職業 및 產業符號를 記入한다.                                                                                                   | 家口票 作成時          |
| (7) 家計簿의 內容審查              | 記入內容을 審查하고 의문점이나 틀린 것이 發見된 경우 調査員에게 確認한다.                                                                                    | 月 2回             |
| (8) 調査員에 年間收入調查의 指示        | 記入開始 2個月째의 家口에 대해서는 年間收入調查를 實施하도록 調査員에게 指示한다.                                                                                | 記入開始 2個月째        |

| 할 일의 種類                                  | 할 일의 要領                                                                                | 時期      |
|------------------------------------------|----------------------------------------------------------------------------------------|---------|
| (9) 實查指導                                 | 調査員과 함께 現地를 순회하고, 不備한 點이 있는 경우에는 調査員 및 家口에 對하여 指導한다.                                   | 2個月에 1回 |
| (10) 新任調査員의 指導                           | 調査全般에 對한 指導와 實地訓練과 區分하여 指導한다.                                                          | 調査員 新任時 |
| (11) 調査員指導會에 있어서의 指導                     | 實查方法 等에 대해서는 調査員相互間의 意見交換을 통해 調査技術의 向上을 도모한다.<br>指示 또는 注意事項 等은 印刷物로서 配付하여 철저히 익히도록 한다. | 開催時     |
| (12) 調査家口의 臨時交替時의 措置                     | 調查員의 措置가 適切한 가를 審査한다.<br>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實際로 確認한다.                                         | 臨時交替時   |
| (13) 調査家口의 區分(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br>變更된 경우의 措置 | 調查家口의 區分이 變更된 事情을 審査하고<br>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實際로 確認한다.                                        | 家口區分變更時 |

### [一般事務]

#### 1. 調査員 指導會에의 出席

指導員은 調査員 指導會에 出席하여 調査員에 對해서 調査內容을 說明하거나 調査實施上의 指示를 한다.

#### 2. 調査用品類의 受領 및 配付

調査用品類는 別表3 「調査用品類의 受領(配付)와 提出」에 指示된 대로 調査員에게 配付한다.

### 3. 單位區 家口名簿 作成指示와 内容檢討

單位區는 1년마다 새로운 單位區로 更新된다. 指導員은 그때 각 調查員에게 1980年 國勢調查 調查區 關係資料(調査區一覽表, 調査區地圖 및 調査區要圖)에 따라 새로이 擔當할 單位區를 指示하고, 擔當單位區內를 實地로 踏查시켜 地理的順序에 따라 單位區內에 居住하는 全 家口를 記入한 「單位區 家口名簿」를 作成하여 提出토록 한다.

提出된 「單位區 家口名簿」에 대하여 内容을 檢討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調査員에게 確認시켜 訂正한다.

### 4. 單位區 家口名簿의 補完과 内容檢討

單位區內의 調査家口를 6個月間 調査하고 7個月 째에는 그 單位區內에 있는 別途의 家口와 交替한다.

이때 指導員은 각 調査員에 單位區內를 다시 實地 踏查시켜 「單位區 家口名簿」의 記入內容을 追加記入하거나 刪除시켜 名簿補完을 行하게 한다. 補完된 「單位區 家口名簿」에 대해서 内容을 檢討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調査員에게 確認하여 訂正한다.

#### [注 意]

單位區 更新時의 名簿作成 및 名簿補完指示와 檢討는 特히 다음 點에 注意해서 行한다.

- (1) 單位區 更新때에는 1980年 國勢調查 調査區 關係資料(調査區一覽表, 調査區地圖, 調査區要圖)를 보이고, 單位區의 區域을 調査員에게 잘 確認시킨다.
- (2) 實地踏査에 따라 「單位區 家口名簿」의 作成 또는 補完을 하게 한다.
- (3) 不適格家口의 判定, 勤勞者家口·一般家口의 區分 및 一連家口番號 부치는 方法에 잘못이 없는지에 注意하여야 한다.

即, 不適格家口의 判定에 해당해서는 「第1 調査概要, 3. 調査對象」에 記述한 不適格의 條件을 參照함과 더불어 [設問] (178~179 페이지)에 게재한 具體的인 例도 參照해서 調査員을 指導한다.

- (4) 名簿補完을 할 때에는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調査家口數의 割當에 잘못이 없는지 注意하여야 한다.

## [参考] 單位區 更新과 名簿補完에 대해서

1 單位區를 1 年間 使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 年이 經過하면 그 單位區를 總務廳 統計局에서 指定한 別途의 單位區로 更新한다. 이것을 單位區 更新이라 한다.

單位區 更新時부터 6 個月이 經過하면 그 單位區內에서 調查家口를 交替하는 構造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家口와 交替하기 前의 單位區 更新時에 作成한 「單位區 家口名簿」의 記入內容을 追加記入하거나 削除하여 訂正한다. 이것을 名簿補完이라 한다.

## 5. 調査豫定家口의 抽出

指導員은 單位區 更新때 調査員으로부터 提出된 「單位區 家口名簿」에 基礎하여 單位區마다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로 調査家口數를 割當하고 다음에 總務廳 統計局에서 提示된 整理番號에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따라 家口를 抽出한다.

이와같이 하여 抽出된 家口를, 調査豫定家口로서 單位區 家口名簿(3 部 作成한 것)에 따라 調査員에 指示한다.

名簿補完때에는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調査家口數의 割當과 家口의 抽出은 單位區 更新때와 같은 方法에 따라 調査員이 行하게 한다.

### (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調査家口 数의 割當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家口數割當은 그 單位區內에 있는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適格家口數에 比例해서 割當한다. 이 割當은 다음과 같은 計算方法에 따라 行하지만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早見表」를 使用해서 行해도 지장이 없다.

### 1. 計算方法에 따라 割當하는 方法

當該 單位區의 勤勞者家口와 一般家口의 適格家口數를 比較해서 多은 쪽의 家口區分의 適格家口數에 6 을 곱하고 그것을 合計한 適格家口數로 나누어(나눗셈) 小數點 첫자리를 四捨五入해서 多은 便의 家口區分의 割當家口數로 한다. 또 다른 한편의 家口區分의 割當家口數는 6에서 위에서 計算된 數를 뺀 것으로 한다.

例를 들면 「單位區 家口名簿」에 記入된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適格家口

數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면

|       |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 | 合計  |
|-------|-------|------|-----|
| 適格家口數 | 60    | 47   | 107 |

(算式)

調査家口數

適格家口數 ↓ 合計適格家口數

↓ ↓

$$\text{勤勞者家口 } 60 \times 6 \div 107 = 3.3 \rightarrow 3$$

(小數點以下 第1位 4捨5入)

調査家口數 勤勞者家口數

$$\text{一般家口 } 6 - 3 = 3$$

上記 計算에 따라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家口數는 勤勞者家口 3, 一般家口 3 으로 된다.

۷.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早見表」를 利用하여 割當하는 方法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早見表」(別表 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早見表」参照)는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調査家口數의 割當을 簡便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使用方法을 보면 다음과 같다.

割當方法은 早見表 左側 勤勞者家口數를 나타내는 눈금(아래에서 위로)에 單位區間의 勤勞者家口數를 취하고 右側 一般家口數를 나타내는 눈금(위에서 아래로)에 單位區內의 一般家口數를 취하여 이것을 이은 直線과 勤勞者家口·一般家口의 割當을 나타낸 斜線과의 交點이 勤勞者家口 및 一般家口의 割當數가 된다.

即, 勤勞者家口 및 一般家口 각각의 家口數를 이은 線 또는 눈금의 延長線이 正確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交點이 「・」上 또는 그周邊에 온 경우 등에는 「그計算에 따라 割當하는 方法」에 따라 確認한다.

[例 1] .....一般的인 경우

勤勞者家口數가 60 이고, 一般家口數가 47 인 경우의 割當數

(説明)

- ① 左側 勤勞者家口數의 눈금을 60에 취하고, 右側 一般家口數의 눈금을 47에 취한다.
- ② 이것을 이은 線과 斜線의 交點(○表된 곳)을 求한다.
- ③ 이 交點은 勤勞者家口가 3, 一般家口 3의 눈금 가운데에 있으므로 割當數는 勤勞者家口 3, 一般家口 3이 된다.

[例 2] ..... 交點이 「・」위에 있는 경우

勤勞者家口數가 63이고, 一般家口數가 45인 경우의 割當數

(説明)

例 1과 同一한 方法에 따라 交點을 求했을 때 그 交點(○表된 곳)이 「・」表 위에 온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의 割當數를 취한다. 따라서 勤勞者家口 4, 一般家口 2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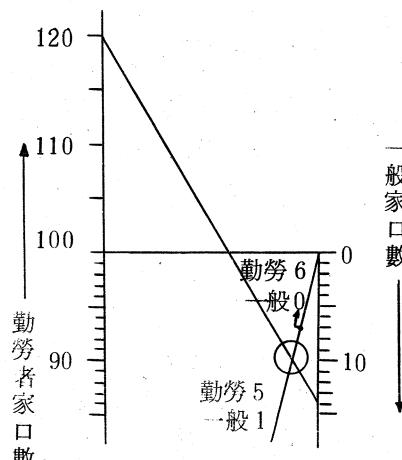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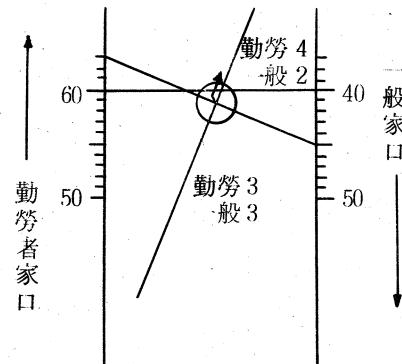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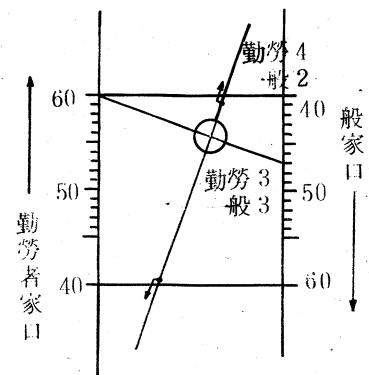
[例 3] ..... 勤勞者家口數, 一般家口數가

早見表에 印刷된 눈금보다 많은 경우

勤勞者家口數가 120이고, 一般家口數가 14인 경우의 割當數

(説明)

勤勞者家口數의 눈금을 그대로 直線의 위쪽 方向으로 延長(家口數를 나타낸 눈금의 幅은 印刷된 幅과 同一하게 한다)하고 例 1과 같은 方法으로 交點(○表된 곳)을 求한다. 따라서 勤勞者家口數 5, 一般家口 1로 된다.



## (2) 調査豫定家口의 抽出方法

### 單位區 更新의 경우

單位區 更新의 경우는 指導員이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를 利用해서 個個의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한다.

例를 들면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適格家口數 및 割當家口數가 165 페이지의 表와 같다고 하고, 또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가 다음과 같다고 보면, 우선 勤勞者家口에는 適格家口數가 60, 割當家口數가 3 이므로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중 (勤勞)라고 한 곳에서 첫번째 列左에서 右側으로 60 以下의 數字인 27, 12, 41 3 個를 취하고 그 數字에 ○表를 한다. 그리고 「單位區家口名簿」에 있는 이 數字와 同一한 一連家口番號를 가진 家口를 調査豫定家口로 한다.

| (勤 勞) |     |    |     |     |     |     |     |     |     |
|-------|-----|----|-----|-----|-----|-----|-----|-----|-----|
| → 27  | 141 | 90 | 12  | 41  | 37  | 121 | 102 | 63  | 64  |
| 20    | 120 | 48 | 61  | 81  | 1   | 119 | 44  | 62  | 29  |
| 79    | 153 | 74 | 77  | 140 | 28  | 158 | 113 | 157 | 143 |
| (一 般) |     |    |     |     |     |     |     |     |     |
| → 53  | 44  | 95 | 130 | 9   | 59  | 143 | 5   | 129 | 72  |
| 34    | 120 | 69 | 10  | 112 | 26  | 135 | 157 | 71  | 61  |
| 134   | 67  | 77 | 138 | 146 | 124 | 52  | 54  | 63  | 82  |

다음 一般家口는 適格家口數가 47, 割當家口數가 3 이므로 같은 方法으로(一般)이라고 한 곳에서 47 以下인 數字 44, 9, 5, 3 個를 취하고 이를 數字에 ○으로 表示한다.

다음 「單位區家口名簿」에서 이들 數字와 같은 一連家口番號를 가진 家口를 調査豫定家口로 한다.

以上의 調査豫定家口에 대해서 「單位區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를 ○으로 表示한다.

## 名簿補完의 경우

名簿補完의 경우에도 上記와 같은 方法에 따라 調査員에게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調査家口數를 割當하고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토록 한다.

이 경우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는 單位區 更新時와 같은 것을 使用하고, 抽出番號는 이미 使用한 番號는 使用하지 않고 나머지를 使用한다.

例를 들면 「單位區家口名簿」를 補完한 後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                         |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        | 合計  |
|-------------------------|-------------------------------------------------|-------------|-----|
| 適格家口數                   | 60                                              | 47          | 107 |
| 名簿의 「※8名簿補完」欄의 最終一連家口番號 | 63                                              | 48          | -   |
| 計算方法                    | $\frac{6 \times 60}{107} = 3.3\cdots$<br>(4捨5入) | $6 - 3 = 3$ | -   |
| 割當家口數                   | 3                                               | 3           | 6   |

勤勞者家口를 例에서와 같다고 하고, 單位區 更新時에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있는 數字中 27, 141, 90, 12, 41 까지 使用하였기 때문에 使用된番號 다음의 37, 121, 102, 63, 64, 20 ……의 數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그런데 最終一連番號가 63 이므로 63 以下의 數字인 37, 63, 20, 3個를 抽出하고 이 數字에 ◎으로 表示한다.

이들의 數字와 같은 一連家口番號의 家口를 調査豫定家口로 한다.

| (勤勞)        |     |    |    |     |    |     |     |     |     |
|-------------|-----|----|----|-----|----|-----|-----|-----|-----|
| → 여기에서부터 使用 |     |    |    |     |    |     |     |     |     |
| 27          | 141 | 90 | 12 | 41  | 37 | 121 | 102 | 63  | 64  |
| 20          | 120 | 48 | 61 | 81  | 1  | 119 | 44  | 62  | 29  |
| 79          | 153 | 74 | 77 | 140 | 28 | 158 | 113 | 157 | 143 |

一般家口에 대해서도 같은 方法에 따라 抽出한다.

| (一 般) |      |     |     |      |     |      |     | → 여기에서부터 使用 |    |
|-------|------|-----|-----|------|-----|------|-----|-------------|----|
| 53    | (44) | 95  | 130 | (9)  | 59  | 143  | (5) | 129         | 72 |
| (34)  |      | 120 | 69  | (10) | 112 | (26) | 135 | 157         | 71 |
| 134   |      | 67  | 77  | 138  | 146 | 121  | 52  | 54          | 63 |
|       |      |     |     |      |     |      |     |             | 82 |

### (3) 調査豫定家口의 指示

單位區更新의 경우는 調査豫定家口의 一連家口番號에 ○으로 表示된 「單位區 家口名簿」를 각 調査員에게 配付하여 調査豫定家口를 指示하고 記入依賴 토록 하므로서 調査家口를 最終的으로 決定시킨다.

이때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로서 抽出한 數字를 「單位區 家口名簿」下段 「最初에 抽出한 一連家口番號」欄에 記入한 後 調査員에게 指示하여 調査員이 갖고 있는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該當數字에 ○으로 表示한다.

準調查家口가 發生하였을 경우, 不適格家口인 것이 判明되었거나 家口區分이 잘못된 경우에는 調査員이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따라 代替 調査豫定家口를 抽出시켜 記入依賴를 行하게 한다. 即, 名簿補完의 경우에는 調査員이 直接 調査豫定家口를 抽出하게 되므로 定해진 方法에 따라서 正確히 抽出되고 있는가를 檢討한다.

---

[參 考] 準調查家口란 調査豫定家口 가운데 調査할 수 없는 어떤 理由로 調査家口로 採擇할 수 없었던 家口를 말한다.

即, 調査豫定家口가 不適格家口이었거나, 家口區分에 잘못이 있던 것이 判明되었을 경우에는 準調查家口라 하지 않는다.

調査家口番號를 부여하는 方法과 變更시키는 方法에 대하여 單位區마다 「單位區 家口名簿」에 記入된 順序에 따라 記入承諾을 한 勤勞者家口에는 01 부터 番號를 부여하고, 一般家口는 11 부터 番號를 붙혀 調査家口番號로 한다.

同一家口로서 調査期間中에 家口區分이 變更되었을 경우에는 그 調

查家口番號에 50을 더하여 새로운 調査家口番號로 한다. 또 家口區分의 變更이 2回以上에 걸친 경우에는 定期交替時 調査家口番號에 50을 順次 加減한다.

臨時交替의 경우 새로운 調査家口의 調査家口番號는 定期交替時에 부여한 원래의 調査家口番號를 使用한다.(「調査指針書」의 「第2調査員의 할 일」 3 및 8의 該當部分 參照)

## 6. 單位區更新과 調査家口의 定期交替

單位區는 1年마다 更新하고, 調査家口는 單位區更新 및 名簿補完을 基本으로 6個月마다 定期交替한다.

單位區更新 및 家口의 定期交替는 각 單位區를 同時に 行하지 않고, 單位區를 12個의 組로 나누어 1個月씩 時期를 變更시키면서 行하는 構造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 單位區는 單位區 更新 및 家口의 定期交替를 나타내는 單位區番號를 갖고 있다.

例를 들면 單位區番號가 04(앞의 두 단위)의 單位區는 4月에 單位區更新에 따른 家口의 定期交替를 行하고 10月에 名簿補完에 따라 家口의 定期交替를 行한다. 따라서 1調査員이 擔當하는 2單位區를 通해서 1年間 單位區更新을 2回, 家口의 定期交替를 4回 行하는 것으로 된다.

## 7. 調査家口의 臨時交替에 대한 處理

調査家口의 臨時交替는 ① 調査家口가 調査員이 擔當하는 單位區外로 轉出한 경우, ② 不適格家口로 된 경우, ③ 其他 交替를 必要로 하는 경우에 行한다.

指導員은 調査員으로부터 이러한 報告를 받은 경우는 그 處理가 適切한가를 審查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現地 確認을 通해 適切한 措置를 취한다.

即, 調査家口가 그 調査員이 擔當하는 單位區外로 轉出한 경우(단, 同一한 市町村內에 限한다)는 調査員의 行動範圍, 남아있는 記入期間 等을 考慮해서 指導員의 判斷에 따라 調査에 支障이 없는 限 그 轉出地에서 調査를 繼續한다.

## 8. 調査家口의 區分(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의 變更에 대한 處理

調査家口가 勤勞者家口 또는 無職家口에서 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로 變

更된 경우는 「家計簿」에 收入에 대한 調査를 中止하고, 또 無職家口를 除外한一般家口가 勤勞者家口나 無職家口로 變更된 경우는 「家計簿」에 收入에 關한調査를 追加시켜서 그 家口에 對해 調査한다. 따라서 調査員에 對해서는 調査事項 및 調査家口番號의 變更에 대해 잘못이 없도록 充分히 注意시킴과 동시에 그 報告를 받았을 경우에는 變更事由를 審査하고 의문이 發生된 때에는 現地確認을 通해 신속하고 適切한 措置를 취한다.

## 9. 調査票類의 内容檢討와 提出

- (1) 「家計簿」의 記入內容은 別表2 「家計簿 内容檢討要領과 그 處理」를 參考하여 審査한다.
- (2) 「家口票」의 記入內容을 審査하고 同時에 產業, 職業에 關한 記入內容에 따라 別表5 「產業分類表」 및 別表6 「家計調查 職業分類表」에 提示된 分類基準에 따라 家口全員의 「產業符號」欄 및 「職業符號」欄에 該當符號를 符與한다.
- (3) 調査票類는 定해진 期日까지 「提出明細書」를 添附하여 知事에게 提出한다.

## 10. 年間 收入調查

調查家口에 대해서 家計簿 記入開始後 2個月째 前半에 勤勞者家口·無職家口 및 無職家口를 除外한 一般家口인 가를 불문하고 調査開始月을 包含한 過去 1年間의 收入을 「年間 收入調查票」에 따라 調査한다.

(別表10 「都道府県別・月別 年間 收入調查家口數一覽」 參照)

調查票는 調査家口가 봉투에 넣어 密封한 것을 2個月째의 1期 家計簿와 함께 調査員이 回收하게 한다. 調査員으로부터 提出된 年間 收入調查票는 都道府県에서 開封하여 内容檢討를 한다.

## 11. 調査町村의 交替가 있는 경우

每年 1月에서 3月에 걸쳐서 一部 調査町村을 交替하고 있지만, 交替時期는 그 調査町村의 單位區番號에 따라 다음과 같이 實施한다.

單位區番號(앞의 2單位)가 「01・04」, 「07・10」인 町村은 1月부터 調査하고, 「02・05」, 「08・11」인 町村은 2月부터 調査하며, 「03・06」,

「09・12」인町村은 3月분부터 각각 새로운 調査町村으로 交替하고 舊調查町村은 直前月분의 調査로 終了된다.

따라서 「04」, 「05」, 「06」, 「10」, 「11」, 「12」인 單位區는 舊調查町村의 마지막과 새로운 調査町村에서 처음 調査되는 家口의 調査期間은 3個月間으로 하고, 以後부터는 所定의 定期 交替方法에 따라 實施한다.(圖 參照)

町村交替의 單位區番號別交替月一覽

| 單位<br>區符<br>號位<br>2段 | 當 年 |    |    |     |     |     | 翌 年 |    |    |    |    |    |    |    |    |     |     |     |   |
|----------------------|-----|----|----|-----|-----|-----|-----|----|----|----|----|----|----|----|----|-----|-----|-----|---|
|                      | 7月  | 8月 | 9月 | 10月 | 11月 | 12月 | 1月  | 2月 | 3月 | 4月 | 5月 | 6月 | 7月 | 8月 | 9月 | 10月 | 11月 | 12月 |   |
| 01                   | ×   | ▲  |    |     |     |     | 交   |    |    |    |    |    | ●  |    |    |     |     |     | ● |
| 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交 印 ..... 町村의 交替用

● 印 ..... 單位區更新에 따른 定期交替月

\* 印 ..... 名簿補完에 따른 定期交替月

▲ 印 ..... 年間收入調査月

## [指導監査]

調査員에 對한 指導監査는 以下에서 記述하는 調査員 新任時의 指導, 調査員指導會 및 現地에서의 實查指導에 따라 實施한다.

### 1. 調査員 新任時의 指導

新任調査員에 對한 指導는 (1) 調査全般에 대한 指導, (2) 現地에서의 實地訓練 으로 크게 大別해서 實施한다.

#### (1) 調査全般에 대한 指導

「調查指針」에 의거 그 順序에 따라 說明한다.

그 內容은 調査全般에 걸쳐서, 特히 調査家口의 選定 및 記入依賴方法, 家計簿 記入方法을 充分히 說明한다.

調查票類의 記入方法에 대해서는 「調查指針」의 「第5 家口票 作成方法」, 「第6 準調查家口票 作成方法」 및 「第7 家計簿 作成方法」에 따라 說明한다. 이때 口頭로 說明할 뿐 아니라 調査員에게 「家計簿」나 「家口票」를 直接 記入시키는 等 實地로 指導한다.

#### (2) 現地에서의 實地訓練

調查全般에 대한 指導를 마치고 나서는 指導員 自身이 스스로 調査方法에 模範을 보이거나 先任調査員의 調査方法을 見學시키는 等 新任調査員에게는 實地로 調査를 하도록 하여 不充分한 點이나 잘못된 點이 發見되면 助言이나 注意를 환기시켜 調査가 正確히 이루어져 調査業務에 支障이 없도록 訓練시킨다.

### 2. 調査員 指導會

調査員 指導會는 적어도 年2回 開催하여야 하는 바 다음 要領에 따라 實施한다.

- (1) 새로운 指導事項 以外에도 過去의 習得한 事例 等에 대해서도 指導한다.
- (2) 指導事項이나 指示 및 注意事項은 調査員의 理解를 돋기 위해서나 또한 知識 을 整理하는 意味에서도 반드시 印刷物을 配付하여 徹底를 其한다.
- (3) 實查方法 等(例를 들면 單位區 家口名簿의 作成)

調查豫定家口의 抽出, 記入依賴, 內容檢討 等)에 대해서 調査員의 意見이나

느낀점, 體驗 等을 交換하므로서 調査員의 調査業務에 관한 知識 및 調査技術 을 높힐 수 있도록 한다.

- (4) 調査員指導會에 出席하지 못한 調査員에 대해서는 반드시 別途訓練을 實施하여 指導에 徹底를 기한다.

### 3. 實查指導

- (1) 指導員은 단순한 書類上의 監査뿐만이 아니라 2個月에 1回는 調査員과 함께 現地를 순회하여 調査員을 實查指導한다.
- (2) 이때 또는 指導員이 單獨으로 調査家口를 訪問하여 調査에 對한 協助를 구하거나, 調査員의 記入指導狀況을 監査한다.
- (3) 調査方法上에 잘못을 發見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場所에서 是正도록 한다.
- (4) 다른 調査員도 同一한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신속히 다른 調査員에게도 注意를 시킴과 同時に 다른 指導員이나 都道府懸에도 連絡한다.

## 第4 單位區地域의 變更·擴張·分割 等에 關한 事務處理

### 1. 單位區 變更에 대하여

#### (1) 單位區를 變更하는 경우의 條件

總務廳 統計局이 調查地域으로서 指定하고 都道府縣에 通知한 單位區에 대해서는 原則적으로 變更시킬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理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當初에 設定한 單位區에서의 調査가 현저히 困難한 경우에 限해서 單位區를 變更시킬 수 있다.

- (ㄱ) 調査員의 活動에 현저한 阻害가 發生할 우려가 있는 單位區
- (ㄴ) 그 單位區間의 距離가 2km 以上이거나 또는 物理的 障害物에 따라 調査員의 調査活動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경우
- (ㄷ) 單位區內의 適格家口數가 極히 적은 경우
- (ㄹ) 其他

#### (2)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使用에 대해서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整理番號는 變更前과 같은 整理番號를 使用한다.

### 2. 單位區의 擴張에 대하여

#### (1) 單位區를 擴張하는 경우의 條件

調查를 始作했으나 準調查家口가 많이 發生했기 때문에 適格家口가 없어진 경우 또는 適格家口가 적고

單位區家口名簿 補完에 따라 調査家口의 抽出이 不可能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限하여 單位區의 擴張(國勢調查 調査區 1調查區를 追加)을 行한다.

#### (2) 單位區家口名簿 作成에 대하여

##### (ㄱ) 一連家口番號에 대하여

追加한 調査區의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一連家口番號는 現在 使用中인 單位區 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 最終番號에 繼續해서 番號를 使用한다.

##### (ㄴ)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

該當 單位區에 있어서 調査開始以後 調査區 追加의 경우는 單位區 更新時 및 單位區 家口名簿 補完時에 있어서의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 割當을 踏襲하고 再割當은 하지 않는다.

#### (3)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使用에 대하여

調査區追加後에 있어서는 勤勞者家口·一般家口와 함께 追加前에 사용하였던 整理番號의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서 使用하지 않은 抽出番號가 있더라도 이를 使用하지 않고 調査區의 追加에 따라 새로 指示된 整理番號의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를 使用한다.

#### (4) 調査家口의 抽出方法

(ㄱ) 適格家口가 한 家口도 없게 되어 調査區를 追加하는 경우

새로 指示된 整理番號의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따라 擴張하게 되므로 追加된 一連家口番號의 範圍內에서 抽出한다.

〈例〉

- 現在 使用中인 單位區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 1 ~ 34
- 追加한 單位區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 35 ~ 58
- 追加한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 整理番號 16 인 勤勞者家口의 경우

|     |     |     |     |       |    |     |
|-----|-----|-----|-----|-------|----|-----|
| 56  | 50  | 31  | 73  | 94    | 84 | 145 |
| 139 | 79  | 20  | 113 | 17    | 60 | 160 |
| 97  | 107 | 154 | 5   | 71    | 45 | 82  |
| 133 | 78  | 99  | 25  | 18    | 32 | 2   |
| 80  | 15  | 142 | 86  | ..... |    |     |

整理番號 16 인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따라 單位區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 35 ~ 58 範圍內에서 抽出하면 위 그림에서 ○으로 表示된 番號 56, 50, 45 가 抽出된다.

(ㄴ) 適格家口가 남아있고 調査區를 追加한 경우

새로 指示된 整理番號의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따라 順次의 으로 抽出하지만 追加前에 使用中이던 整理番號의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서 이미 抽出된 家口는 다시 抽出하지 않도록 한다.

이 때문에 追加前에 使用하였던 整理番號의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該當된 番號(拒否家口도 包含)를 새로 指示한 整理番號의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서 미리 지워(×表)둔다.

〈例〉

- 現在 使用中인 單位區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 1 ~ 34
- 그 가운데 아직 該當되지 않는 一連家口番號 5, 20
- 追加한 單位區家口名簿의 一連家口番號 35 ~ 58
- 追加한 「調查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 整理番號 16 인 勤勞者家口의 경우

|   |     |     |      |     |    |      |     |   |
|---|-----|-----|------|-----|----|------|-----|---|
| { | 56  | 50  | 凶    | 73  | 94 | 84   | 145 | } |
| { | 139 | 79  | (20) | 113 | 17 | 60   | 160 | } |
| { | 97  | 107 | 154  | (5) | 71 | (45) | 82  | } |
| { | 133 | 78  | 99   | 25  | 18 | 32   | 2   | } |
| { | 80  | 凶   | 142  | 86  |    |      |     | } |
| { |     |     |      |     |    |      |     | } |

우선 追加前에 使用中이던 整理番號의 「調查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에 該當되었던 番號 (5, 20 以外의 1 ~ 34) 를 整理番號 16 인 「調查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上에서 지우고 (X 表示하고), 남아있는 番號 가운데 58 番以下를 抽出하면 위 그림에서 ○ 표된 番號 56, 50, 20, 5, 45 가 抽出된다.

- (ㄷ) (4)의 (ㄱ)의 경우에도 勤勞者家口 · 一般家口 중 어디에도 適格家口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適格家口가 남아 있는 편의 勤勞者家口 또는 一般家口에 대해서는 (4)의 (ㄴ)의 抽出方法에 따라 抽出한다.
- (ㄹ) 單位區를 擴張한 경우에는 追加한 調查區의 單位區家口名簿를 作成해서 調查家口를 決定한 후 신속히 總務廳 統計센타에 提出한다.

#### 4. 單位區의 分割에 대하여

- (1) 單位區를 分割하는 경우의 條件

總務廳 統計局이 指定한 單位區內의 家口數가 매우 많은 경우이거나 또는 單位區의 地域이 넓어서 調查活動이 困難한 경우에 限하여 單位區의 分割을 行한다.

- (2) 「調查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의 使用에 대해서 「調查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 整理番號는 分割前과 같은 番號를 使用한다.

[設問]

〈適格・不適格〉

兼業農家等

1. 不適格家口의 條件이며 「耕地面積 10 아르 未滿인 家口 및 耕地를 耕作하지 않는 家口라도 農業粗收益이 前記規模에서 얻은 것과 同等以上의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한다」로 하지만 이 경우 同等以上의 基準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答) 이 調査에는 年間의 農業粗收益이 10 萬円 以上的 家口를 不適格家口로 한다.

農業粗收益이란?

2. 農業粗收益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答) 이 調査에는 農產物의 賣上高(現物去來도 包含)에 家計에서 消費한 것을 評價한 金額을 加算한 것을 말한다.

漁船을 使用하지 않는  
家口

3. 漁船을 使用하지 않고 미역, 조개等을 採取해서 生計를 維持하는 家口는 適格家口로 하는가?

(答) 漁業을 經營하는 家口에 準하는 家口로 보아 不適格家口로 한다.

漁船을 빌리고 있는  
家口

4. 他人의 船舶을 빌려서 漁業을 經營하고 있는 家口는 適格家口로 하는지요.

(答) 이러한 경우에는 漁業에 準하는 것으로서 不適格家口로 한다. 卽, 水產會社等에 雇傭되어 있는 家口는 適格家口(勤勞者家口)로 한다.

併用住宅의 家口

5. 料理飲食店, 旅館 또는 下宿을 經營하는 家口 가운데 併用住宅의 家口만을 「不適格家口」로 하는 것은 왜 그런가?

(答) 家計費 가운데 가장 重要的 項目인 食料品費가 營業上의 經費와 分離하기 어렵다는 事情에 基礎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營業場所가 住居와 떨어져 있는 家口에는 通常, 食料品費의 支出이 營業上의 經費와 分離되어 있다고 보고, 併用住宅의 家口만을 不適格家口로 한다.

獨身인 弟兄의 家口

6. 獨身兄弟의 家口는 適格家口로 하는가?

(答) 家計를 함께 하고 있으면 適格家口로 한다.

食事を 함께하는 同居人이 있는 家口

7. 食사를 함께 하는 同居人이 있는 家口(素人下宿)는 不適格家口로 하고 있지만 食사를 한끼만이라도 함께하면 不適格家口로 하는가?

(答) 不適格家口로 한다.

獨身의 雇傭主와 寢食을 함께하는 營業上 使用人만으로 이루어진 家口

8. 雇傭主의 집에서 寝食을 하는 營業上 使用人이 3名以下의 家口는 適格家口로 되지만 이 경우 獨身인 雇傭主와 寝食을 함께하는 營業上 使用人이 3名以下の 家口도 適格家口로 하는가?

(答) 雇傭主가 獨身인 경우에는 不適格家口로 한다.

寢食을 함께하는 營業上 使用人과 家事使用人이 있는 家口

9. 寢食을 함께하는 營業上 使用人 3人과 寝食을 함께하는 家事使用人이 있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하는가?

(答) 適格家口로 한다. 家事使用人은 營業上 使用人에 包含하지 않는다.

長期間不在의 基準

10. 不適格家口의 條件이 「家口主가 長期不在인 家口」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長期間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程度의 期間을 말하는 것인가?

(答) 이 調査에는 6個月의 大部分(3個月以上)이 繼續해서 不在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家口主가 週末만 歸家하는 家口

11. 家口主가 每週 土曜日, 日曜일에 걸쳐서 歸家하는 것과 같은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하는가?

(答) 이러한 家口는 適格家口로 한다.

歸化한 家口

12. 「外國人家口」는 不適格家口로 되어 있지만 이경우 日本에 歸化한 사람의 家口는 適格家口로 하는가?

(答) 日本에 歸化한 사람의 家口는 適格家口로 하지만 「家計簿」의 記入能力이 없는 家口는 不適格家口로 取扱한다.

知事が 不適格하다고  
認定하는 경우

13. 不適格家口의 條件인 「其他 都道府縣知事が 不適當하  
다고 認定한 家口」로 되어 있지만 不適當하다고 하는 것  
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答) 눈이 不自由스럽다는 等과 같이 「家計簿」 記入을 할  
수 없는 경우나 地震, 火災 等의 災害에 따라 調査가 되  
지 않는 경우 等이고 現地의 狀況을 適格으로 把握되도록  
知事의 判斷에 委任한 것이다.

#### 〈單位區에 對하여〉

單位區의 地域

14. 交通이 不便한 地域에 單位區地域이 指定된다면 交通費  
의 不足이나 家口와의 連絡困難等 여러가지 問題가 發生  
하므로 될 수 있는限 그都市의 中心部를 指定하는 것이 아  
닌지?

(答) 單位區地域은 어떤 一定한 方法에 의해 無作爲로 推出選  
定하여 이것을 指定하고 있으므로 交通이 便利하고 調査  
하기 쉬운 中心部가 指定되는 것은 認定되지 않는다.  
또 故意로 中心部를 選定하면 調査結果에 不均衡이 생기  
고 침된 國民生活의 實態가 反映되지 않게 된다. 交通의  
不便等과 같은 경우도 調査에서 除外하는 것은 아니다.

家口數가 過大하게  
된 경우

15. 家口의 抽出에 使用하는 「調査家口抽出番號表(亂數表)」  
에는 160 番까지밖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新設住宅地域  
等에서 適格家口數가 161 以上되는 單位區의 경우는 160  
을 넘는 番號의 家口는 抽出되지 않는데 그것은 팬참은 것  
인지?

(答) 이러한 경우에는 單位區를 分割하므로 그趣旨를 總務廳  
統計局에 申請(報告)하여야 한다.

## 〈勤勞者家口, 一般家口의 區分에 對하여〉

休職中의 경우

16. 家口主가 勤勞者이며 休職中인 경우, 家口區分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答) 休職中에 있어서도 勤務處에서 給料를 받고 있으면 勤勞者家口로 하고 勤務處에서 給料가 전혀 없고 別個의 機關 (健康保險等)에서 病院療養給付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一般家口로 한다.

家口區分이 틀리기 쉬운 職業

17. 家口主의 職業이 다음과 같은 家口는 勤勞者家口, 一般家口의 어느쪽으로 區分하는가?

- ㄱ. 特定郵便局長
- ㄴ. 工場長
- ㄷ. 乳酸菌飲料販賣人
- ㄹ. 化粧品세일즈맨
- ㅁ. 家庭婦

(答) 勤勞者家口, 一般家口의 區分은 다음과 같다.

- ㄱ. 特定郵便局長 → 勤勞者家口
- ㄴ. 工場長 (專務, 常務等 會社의 重役을 兼하고 있는 경우) → 一般家口 (會社重役을 兼하지 않은 경우) → 勤勞者家口
- ㄷ. 乳酸菌飲料販賣人 (營業所와 直接 雇傭關係는 아니고 商品을 營業所에서 사다가 파는 경우) → 一般家口
- ㄹ. 化粧品세일즈맨 (雇傭되어 있는 경우) → 勤勞者家口 (營業所와 直接의 雇傭關係는 아니고 商品을 營業所에서 사들여 販賣하는 경우) → 一般家口
- ㅁ. 家庭婦 → 一般家口

家口主가 勤務하는  
以外에 다른 事業을  
하고 있는 경우

家口主가 無職이고  
家口員이 勤務하고  
있는 경우

절의 주지의 경우

택시運轉士가 免許  
停止中の 경우

〈調査家口〉

再調査家口

18. 家口主가 勤務處 隣近에서 學院을 經營하는 경우 學院  
에서의 利益이 勤務處의 收入보다 많고 生活費의 相當部分  
이 그 利益에 의해 使用되는 경우는 勤勞者家口로 하는지  
一般家口로 하는지?

(答) 家口主가 主로 會社, 官公署 等에 勤務하고 있는 경우는  
勤勞者家口로 한다.

다만, 勤務處가 臨時的인 경우에는 一般家口로 한다.

19. 家口主가 無職者이고 家口員이 勤務하고 있는 경우는  
無職家口인지?

(答) 家口員의 收入으로 生計를 營爲하고 있으면 그 家口員을  
家口主로 하고 勤勞者家口로 한다.

20. 절의 주지가 給料制에 의해 給與를 받고 있는 경우는  
勤務者家口인지?

(答) 절의 寄賦金品, 사주금, 經料等의 管轄이 절에 있고 거  
기에서 給與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家口로 한다.

21. 택시運轉士가 交通事故로 免許停止中에 있고, 그 勤務  
處에서 運轉以外의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경우는 勤勞者家  
口로 處理해도 좋은가?

(答) 給料를 받고 있으면 勤勞者家口로 處理해도 좋다. 卽,  
單純히 勞動組合, 相助會 等에서 生活費가 支給되고 있는  
경우에는 一般家口로 한다.

22. 以前에 調査했던 家口를 다시 調査家口로 選定해도 좋  
은지?

(答) 以前에 調査했던 家口라도 調査家口로 選定해도 좋다.

|                    |                                                                                                                                                                                                                            |
|--------------------|----------------------------------------------------------------------------------------------------------------------------------------------------------------------------------------------------------------------------|
| 準調查家口가 調查家口로 된 경우  | <p>23. 單位區 更新時에 準調查家口로 된 家口가 名簿補完時에 調查家口로 選定되어 있는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p>                                                                                                                                                 |
|                    | <p>(答) 이런 경우는 原則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結果의 程度를 틀리게 하는 根本도 되므로 즉시 調查家口로 臨時交替를 한다.</p>                                                                                                                                                |
| 調查家口의 配分이 틀리게 된 경우 | <p>24. 名簿補完時 調査員으로부터 提出된 調查家口를 調査할 때에 勤勞者家口, 一般家口의 配分이 틀려있는 것이 判明되었다. 이 경우 어떻게 處理하는가?</p>                                                                                                                                  |
|                    | <p>(答) 즉시 바른 配分이 되도록 指示한다.<br/>例를 들면 바른 配分이 勤勞者家口 4, 一般家口 2인데, 이를 勤勞者家口 3, 一般家口 3으로 끝낸 경우는 一般家口의 調査家口番號 13인 家口를 그만두고 勤勞者家口를 推出하여 調査家口番號를 04로 追加한다.</p>                                                                     |
| 臨時交替家口의 年間收入 調査時期  | <p>25. 月의 途中에 臨時交替로 因해서 새로운 調査家口로 된 家口의 年間收入調査의 調査時期는 언제 行하는지?</p>                                                                                                                                                         |
|                    | <p>(答) 家計簿의 表紙 「記入開始에서의 月數」欄에 「2」로 記入한 月의 前半에 調査한다. 다만, 記入開始 1個月째에 臨時交替한 경우에는 調査하지 않는다.</p>                                                                                                                                |
| 醫師 · 辯護士의 職業分類     | <p>26. 醫師나 辯護士等은 家計調查 職業分類表에 2個 以上的項目에 該當하는데 어떻게 取扱하여야 하는가?</p>                                                                                                                                                            |
|                    | <p>(答) 職業分類의 「基準」에 따라 分類한다.<br/>例를 들면 民間 또는 官公署의 病院에 勤務하고 있는 醫師는 「3. 民間職員」 또는 「4. 官公職員」으로 하고,個人組織의 開業醫로 大規模(家族이 아닌 使用人이 5人以上 있음)의 경우는 「8. 自由業者」, 醫療法人의 病院을 하고 있는 경우는 「7. 法人經營者」로 分類한다.<br/>辯護士의 경우에도 醫師의 경우에 準해서 區分한다.</p> |

日雇의 產業分類

27. 日雇等으로 그날그날의 勤務處가 變更되는 경우 「家口票」의 「產業分類符號」欄에 어떻게 記入하는가?

(答) 產業分類符號는 「11. 其他」로 한다.

營業上 使用人の 產業分類

28. 家口員과 함께 寢食을 같이하는 营業上 使用人은 「職業分類符號」欄에 어떻게 記入하는가?

(答) 家計調查에는 非就業者로 取扱하므로 職業分類符號는 「10. 無職」으로 한다.

內職者の 產業分類

29. 家事를 主로 하면서 틈틈이 副業을 하는 사람은 「產業分類符號」欄에 어떻게 記入하는가?

(答) 「產業分類符號」는 「11. 其他」로 한다.

豫想屋의 產業 및 職業分類

30. 自轉車競技, 競馬等의豫想屋을 하고 있는 사람의 產業 및 職業符號는 어떻게 記入하는가?

(答) 產業符號는 「9. 서비스業」, 職業符號는 「9. 其他」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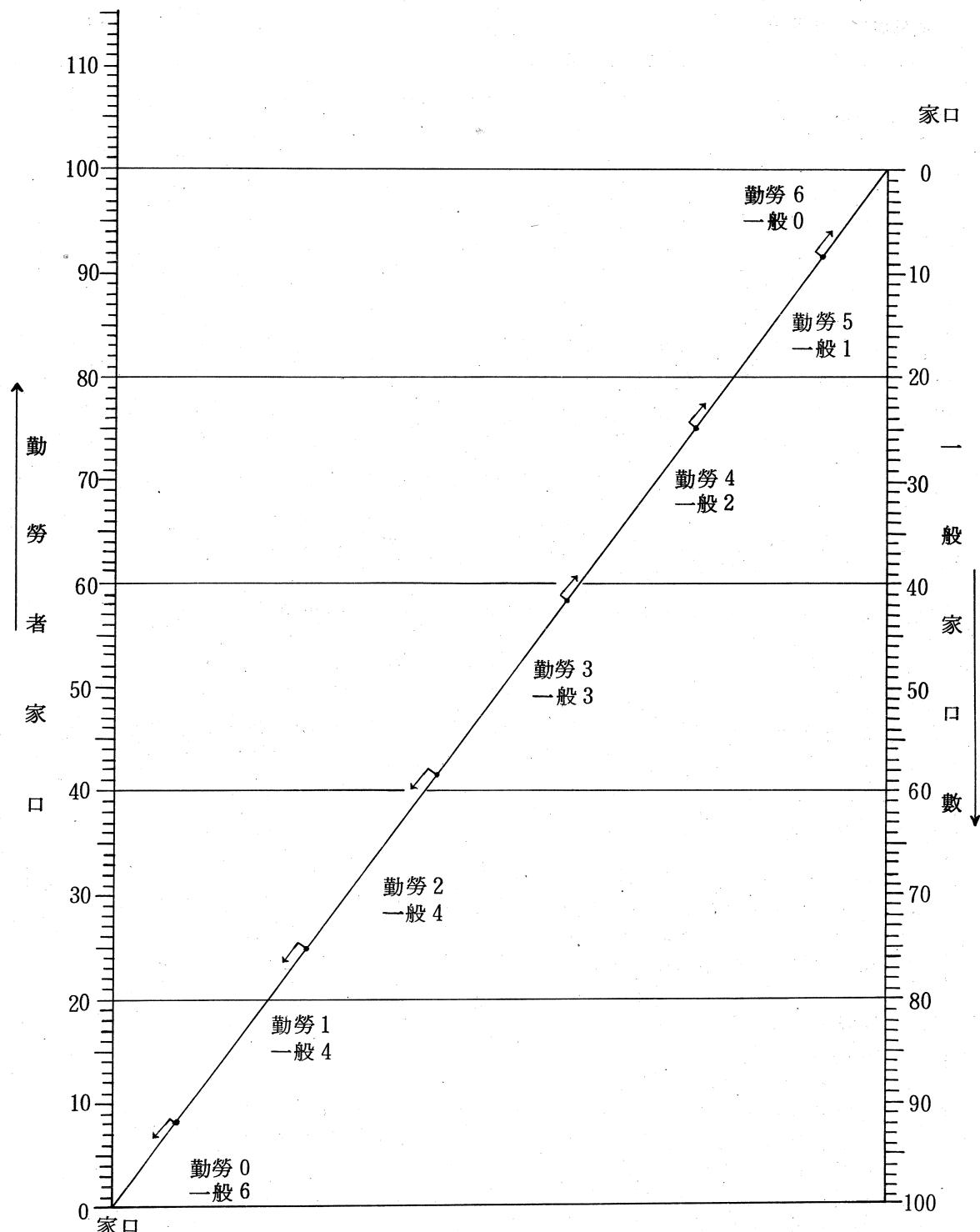
調查를 繼續하는 것  
이 不可能한 家口

31. 記入依賴時に 他市町村에 轉出이 豫定되어 있고, 6個月間의 記入이 困難한 것을 알고 있는 家口에 대해서도 記入을 依賴하는지. 또는 別途의 家口에 記入을 依賴하는지?

(答) 轉出이 1個月以上 남았으면 그 家口에 記入을 依賴한다.  
그러나 1個月以内에 轉出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準調查家口로 한다.

~~ 別 表・附 錄 ~~

別表 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割當早見表



(注) 實際로는 別途로 配付한 것을 使用할 것.

## 別表 2 家計簿 内容審査 要領과 그 處理

조사원이 가계부를 수집할 때 그 현장에서 다음점에 주의하여 기입불비나 기입착점을 참고로 하여 가계부를 내용심사 한다.

### 1. 수입에 대하여

| 要                                                                   | 領 |
|---------------------------------------------------------------------|---|
| (1) 수입이 기입되어 있는가.                                                   |   |
| (2) 수입의 종류가 근무처에서 받은 수입인가, 내직수입인가 혹은 저금에서 인출한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기입돼 있는가. |   |
| (3) 근무처에서 받은 수입이 누구의 어느 달 수입이라는 것이 기입돼 있는가.                         |   |
| (4) 근무처에서 받은 수입이 급여등과 함께 기입돼 있는지.                                   |   |
| (5) 근무처에서 받은 수입이 세금등 원천공제분을 빼고난 순수 손에 쥔 금액만 기입돼 있는 것이 아닌가.          |   |
| (6) 근무처가 두곳 이상 있을 경우에 본업인가 부업인가 알 수 있도록 기입돼 있는가.                    |   |
| (7) 가구주 이외의 사람이 일하여 얻은 수입이 누락됨이 없이 기입돼 있는가.                         |   |
| (8) 특히 처음 기입 시작한 가구에 대해서는 첫째날에 前期에서의 移越金이 기입돼 있는가.                  |   |

### 2. 지출 및 외상구입, 월부구입 또는 현물(증여품, 자가생산품, 점포의 상품)에

| 要                                                                                    | 領 |
|--------------------------------------------------------------------------------------|---|
| (1) 지출이 없는 날이 있는가.                                                                   |   |
| (2) 구좌 자동불입에 의해 지불이 중복되어 기입돼 있지 않는가.                                                 |   |
| (3) 「I. 현금수입 또는 현금지출」란과 「II. 외상구입, 월부구입 또는 현물(증여품, 자가생산품, 점포의 상품)」란과의 기입란 착오가 있지 않다. |   |
| (4) 여러가지 품목을 합해서 기입하고 있지 않는가.                                                        |   |
| (5) 품명을 포괄적인 명칭(생선, 야채등)으로 기입하고 있지 않는가.                                              |   |
| (6) 사투리, 혼돈하기 쉬운 품명, 내용이 알 수 없는 상표명으로 기입하고 있지 않는가.                                   |   |
| (7) 수량의 기입누락이 없는가.                                                                   |   |
| (8) 외상구입에 대한 지불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외상구입이 있었던가.                                        |   |
| (9) 급료에서 원천공제된 세금, 건강보험료나 적립금이 기입돼 있는가                                               |   |
| (10) 월부구입의 누락이 없는가.                                                                  |   |
| (11)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이 기입되고 있는가.                                        |   |
| (12) 가구주의 교제비, 용돈이 기입돼 있는가.                                                          |   |

오가 있으면 반드시 가구에 문의하여 정정시킨다. 또 지도원, 都道府縣에서도 이 요

### 기 입 불 비 나 기 입 착 오 의 처 리

- (1) 확인해 주도록 한다(그달에 수입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가계부의 「통신란」에 기입한다.
- (2) 종류를 기입해 주도록 한다.
- (3) 누구의 어느 달 분인가를 기입해 주도록 한다.
- (4) 債給, 가족수당, 임금수당 등으로 구별하여 다시 기입해 주도록 한다.
- (5) 총액을 기입하고 원천공제된 분을 하나하나 「(4) 현금지출」란에 기입해 주도록 한다.
- (6) 구별하여 기입해 주도록 한다.
- (7) 확인해 주도록 한다(그달에 수입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가계부의 「통신란」에 기입한다)
- (8) 확인해 주도록 한다.

### 대하여

### 기 입 불 비 나 기 입 착 오 의 처 리

- (1) 확인해 주도록 한다. 만일 지출이 없는 날이라면 「지출 없음」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 (2) 정정한다.
- (3) 정정한다.
- (4) 따로따로 다시 기입하도록 한다.
- (5) 품명을 「꽁치」, 「양파」 등으로 개개의 명칭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 (6) 보충기입을 한다.
- (7) 추정하여 기입도록 한다.
- (8) 확인해 주도록 한다.
- (9) 확인해 주도록 한다.
- (10) 확인해 주도록 한다.
- (11) 확인해 주도록 한다.
- (12) 기입해 주도록 한다.

別表3 調査用品類의受領(配付)과提出

| 都道府縣                       | 指導員                                                                                                                                                                                                                                                                                                                                                                                                                                                                                                                                                                                    | 調査員                                                                                                                                                                                                                                                                                                                                                                                                                                                                       | 調査家口                                                                                                                                                                                                                                                                                |
|----------------------------|----------------------------------------------------------------------------------------------------------------------------------------------------------------------------------------------------------------------------------------------------------------------------------------------------------------------------------------------------------------------------------------------------------------------------------------------------------------------------------------------------------------------------------------------------------------------------------------|---------------------------------------------------------------------------------------------------------------------------------------------------------------------------------------------------------------------------------------------------------------------------------------------------------------------------------------------------------------------------------------------------------------------------------------------------------------------------|-------------------------------------------------------------------------------------------------------------------------------------------------------------------------------------------------------------------------------------------------------------------------------------|
| 受<br>領<br>配<br>布<br>提<br>出 | 1. 家計簿(家口數×2)<br>2. 年間收入調查票 및 봉투(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3)<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5. 家計調查에協力해 주십시오(家口數)<br>6. 依賴狀 및 봉투(家口數)<br>7. 年間收入調查에 대한 부탁말씀(家口數)<br>8. 인사장 및 봉투(家口數)<br>9. 再訪問에 대한 부탁말씀(家口數)<br>10. 家計調査案내(家口數)<br>11. 家計調査通信(家口數)<br>12. 家計簿收納袋(家口數)<br>13. 家計用豆紙(家口數×3冊)<br>14. 저울(家口數)<br>15. 電子式卓上計算機(家口數)<br>16. 샤프펜(家口數)<br>17. 實施要領(指導員數)<br>18. 調査要領書(指導員數+調査員數)<br>19. 單位區家口名簿(單位區數×4枚)<br>20. 調査家口抽出番號表(指導員數+調査員數)<br>2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割當早見表(指導員數+調査員數)<br>22. 單位區通知表(指導員數)<br>23. 指導員任命報告(指導員數)<br>24. 調査員任命報告(調査員數)<br>25. 指導員證(指導員數)<br>26. 調査員證(調査員數)<br>27. 家計簿等提出明細書(2通) | 1. 家計簿(家口數×2)<br>2. 年間收入調查票 및 봉투(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3)<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5. 家計調查에協力해 주십시오(家口數)<br>6. 依賴狀 및 봉투(家口數)<br>7. 年間收入調查에 대한 부탁말씀(家口數)<br>8. 인사장 및 봉투(家口數)<br>9. 再訪問에 대한 부탁말씀(家口數)<br>10. 家計調査案내(家口數)<br>11. 家計調査通信(家口數)<br>12. 家計簿收納袋(家口數)<br>13. 家計用豆紙(家口數×3冊)<br>14. 저울(家口數)<br>15. 電子式卓上計算機(家口數)<br>16. 샤프펜(家口數)<br>17. 實施要領(1部)<br>18. 調査要領書(1部+調査員數)<br>19. 單位區家口名簿(單位區數×4枚)<br>20. 調査家口抽出番號表(1部+調査員數)<br>21. 勤勞者家口·一般家口別割當早見表(1枚+調査員數)<br>22. 單位區通知表(1部) | 1. 家計簿(1個月에 2冊)<br>2. 年間收入調查票 및 봉투(各1枚)<br>5. 家計調查에協力해 주십시오(1通)<br>6. 依賴狀 및 봉투(1通)<br>7. 年間收入調查에 대한 부탁말씀(1通)<br>8. 인사장 및 봉투(1通)<br>9. 再訪問에 대한 부탁말씀(1通)<br>10. 家計調査案내(1部)<br>11. 家計調査通信(1部)<br>12. 家計簿收納袋(1枚)<br>13. 家計用豆紙(2個月에 1冊)<br>14. 저울(1台)<br>15. 電子式卓上計算機(1台)<br>16. 샤프펜(1本) |
|                            | 25. 指導員證(1部)<br>26. 調査員證(調査員數)<br>27. 家計簿等提出明細書(2通)                                                                                                                                                                                                                                                                                                                                                                                                                                                                                                                                    | → 26. 調査員證(1枚)                                                                                                                                                                                                                                                                                                                                                                                                                                                            |                                                                                                                                                                                                                                                                                     |
|                            | 1. 家計簿(家口數)<br>2. 年間收入調查票(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19. 單位區家口名簿(更新時1部, 補完時1部)                                                                                                                                                                                                                                                                                                                                                                                                                                                                                           | 1. 家計簿(家口數)<br>2. 年間收入調查票(家口數)<br>3. 家口票(家口數×2)<br>4. 準調查家口票(家口數)<br>19. 單位區家口名簿(更新時1部, 補完時1部)                                                                                                                                                                                                                                                                                                                                                                            | 1. 家計簿(1期마다 1冊)<br>2. 年間收入調查票<br>(記入開始後 2個月째 前半에 調査)                                                                                                                                                                                                                                |
|                            | 23. 指導員任命報告(指導員數)<br>24. 調査員任命報告(調査員數)<br>27. 家計簿等提出明細書(1通)                                                                                                                                                                                                                                                                                                                                                                                                                                                                                                                            | ← 27. 家計簿等提出明細書(1通)                                                                                                                                                                                                                                                                                                                                                                                                                                                       |                                                                                                                                                                                                                                                                                     |

別表4 調査票類를 總務廳統計센터에 提出하는 期限

| 都府<br>道名           | 1期의 家計簿 및<br>年間收入調査票 | 2期의 家計簿 | 家口票, 準調査家<br>口票 및 單位區家<br>口名簿 | 提出處          |
|--------------------|----------------------|---------|-------------------------------|--------------|
| 茨城群崎千東神山靜<br>奈     | 城木馬玉葉京川梨岡            | 25日     | (翌月)<br>10日                   | (交替月)<br>10日 |
| 岩宮秋山福新富石福長岐愛滋      | 手城田形島潟山川井野阜知賀        | 26日     | (翌月)<br>11日                   | (交替月)<br>11日 |
| 青三京大兵奈和鳥島岡廣<br>歌   | 森重都阪庫良山取根山島          | 27日     | (翌月)<br>12日                   | (交替月)<br>12日 |
| 北山德香愛高福佐長熊大宮鹿<br>兒 | 道口島川媛知岡賀阪本分崎島        | 28日     | (翌月)<br>13日                   | (交替月)<br>13日 |
| 沖繩                 |                      | 30日     | (翌月)<br>15日                   | (交替月)<br>15日 |

總務廳統計  
セン  
經濟製表部  
經濟製表  
第二課長

別表5 産業分類表

| 産業<br>符號 | 種類            | 基準                                                                                                                             | 内容例示                                                                                                                      |
|----------|---------------|--------------------------------------------------------------------------------------------------------------------------------|---------------------------------------------------------------------------------------------------------------------------|
| 1        | 鑛業            | 金屬, 石炭, 原油, 天然ガス, 非金屬등을 採掘하는 事業所.                                                                                              | 金屬鑛業, 石炭鑛業, 石油鑛業, 採石業, 砂利採取業, 鑛山內運搬請負業等                                                                                   |
| 2        | 建設業           | 土木工事業, 建築業 및 그들에附帶되는 工事を 行하는 事業所.                                                                                              | 土木工事業, 道路鋪裝工事業, 建築工事業, 建賣業(自己施工), 屋上工事業, 建物塗裝業, 解體工事業, 電氣工事業, 配管工事業, 冷暖房設備工事業, 大工, 变慨工事業, 左官業等                            |
| 3        | 製造業           | 食品工業, 纖維工業, 木工業, 印刷出版製本業, 化學工業, 製練 및 金屬製造業, 機械器具 및 輸送用機器製造業, 其他 모든 物品을 製造하여 都賣하는 事業所.<br>製造都小賣業의 경우는 小賣하는 편이 主가 되면 「6」으로 分類한다. | 食料品製造業, 調味料製造業, 製粉業, 丹叫製造業, 製糸業, 紡績業, 衣服裝飾品製造業, 製材業, 新聞社, 出版社, 비누·合成洗劑製造業, 自動車製造業, 鑄物工業, 機械製造業, 船舶製造業, 玩具製造業, プラスティ製品製造業等 |
| 4        | 電氣·ガス·水道·熱供給業 | 電氣, 가스, 水道 및 热을 供給하는 事業所 또는 汚水處理를 하는 事業所.                                                                                      | 電力會社(서비스 스테이션을 包含함), 가스會社, 水道局(部課付), 下水道局, 下水處理場, 地域冷暖房業, 國鐵給電區·發電區等                                                      |
| 5        | 運輸·通信業        | 鐵道, 自動車, 商船, 航空機등에 의한 運輸業, 倉庫業, 郵便, 電信電話 및 이에 附帶되는 서비스를 行하는 事業所.                                                               | 日本國有鐵道, 私鐵, 乘合버스業, 택시業, 自動車運送業, 運送業, 水運業, 倉庫業, 交通公社, 짐꾼, 電話局, 郵遞局等                                                        |
| 6        | 都賣業·小賣業, 飲食店  | 都賣業(購入都賣), 小賣業, 製造小賣業등 物品을 賣買하는 事業所.                                                                                           | 貿易商, 材木都賣商, 仲買商, 百貨店, 酒店, 飲食店, 藥局, 書店, 行商, 丹叫店, 注油所等                                                                      |

| 產業<br>符號 | 種類     | 基準                                                                          | 內容例示                                                                                                                                                                                                                   |
|----------|--------|-----------------------------------------------------------------------------|------------------------------------------------------------------------------------------------------------------------------------------------------------------------------------------------------------------------|
| 7        | 金融・保險業 | 銀行, 信託業, 證券業, 投資業, 商品去來業등의 金融業 및 保險業.                                       | 銀行, 信託業, 地方貯金局, 金融公庫, 信用農業協同組合, 전당포, 無層業, 證券會社, 生命保險業, 郵政省地方簡福保險局, 損害保險業, 크레디트業等                                                                                                                                       |
| 8        | 不動產業   | 不動產의 所有運用管理, 賃貸分讓不動產의 仲介業, 電話權利의 買賣・仲介業.                                    | 貸事務所業, 貸家業, 貸房業, 建賣業(他人施工), 土地會社, 不動產仲介業等                                                                                                                                                                              |
| 9        | 서비스業   | 個人 및 事業所에 對한 서비스를 行하는 事業所.<br>또한 放送業, 醫療, 法務, 宗教, 教育, 試驗所, 非營利團體등의 事業所도 包含. | 旅館, 洗濯業, 理容業, 浴場, 寫眞業, 被服裁縫業(材料個人所有), 物品賃貸業, 映畫館, 劇場, 競馬場, 遊戲場, 放送局, 自動車修理業, 計算센터, 廣告局, 興信所, 法律事務所, 病院, 保健所, 福祉事業所, 保育所, 協同組合, (各種事業), 清掃事業所, 產業廢棄物處理業, 宗教團體, 學校, 美術館, 圖書館, 社會事業團體, 研究所, 經濟團體, 學術團體, 高層氣象臺, 氣象通信所, 醫業等 |
| 10       | 公務     | 國家, 都道府縣廳 및 市區町村役場, 司法, 行政을 하거나 立法事務를 行하는 官公署.<br>또한 이와 같은데서 出損機關도 包含함.     | 國家事務, 國會, 稅務署, 裁判所, 刑務所, 公共職業安定所, 地方事務, 都道府縣廳, 都道府縣地方事務所, 區役所, 町役場, 警察署, 消防署, 氣象廳, 地方氣象臺, 測候所等                                                                                                                         |
| 11       | 其他     | 以上의 各產業에 分類되지 않는 것 및 所屬產業이 없는 것.                                            | 種畜場, 植木業, 營林局, 獵獵業, 漁業會社, 勤務先이 一定하지 않은 職等 및 所屬產業이 없는 것(無職等)                                                                                                                                                            |

- (注) 1. 日本標準產業分類에 따름.  
 2. 官公廳일지라도 他產業의 基準欄에 提示한 業務를 行하는 現業廳은, 「10. 公務」以外의 該當하는 產業에 分類한다.

別表 6 家計調査職業分類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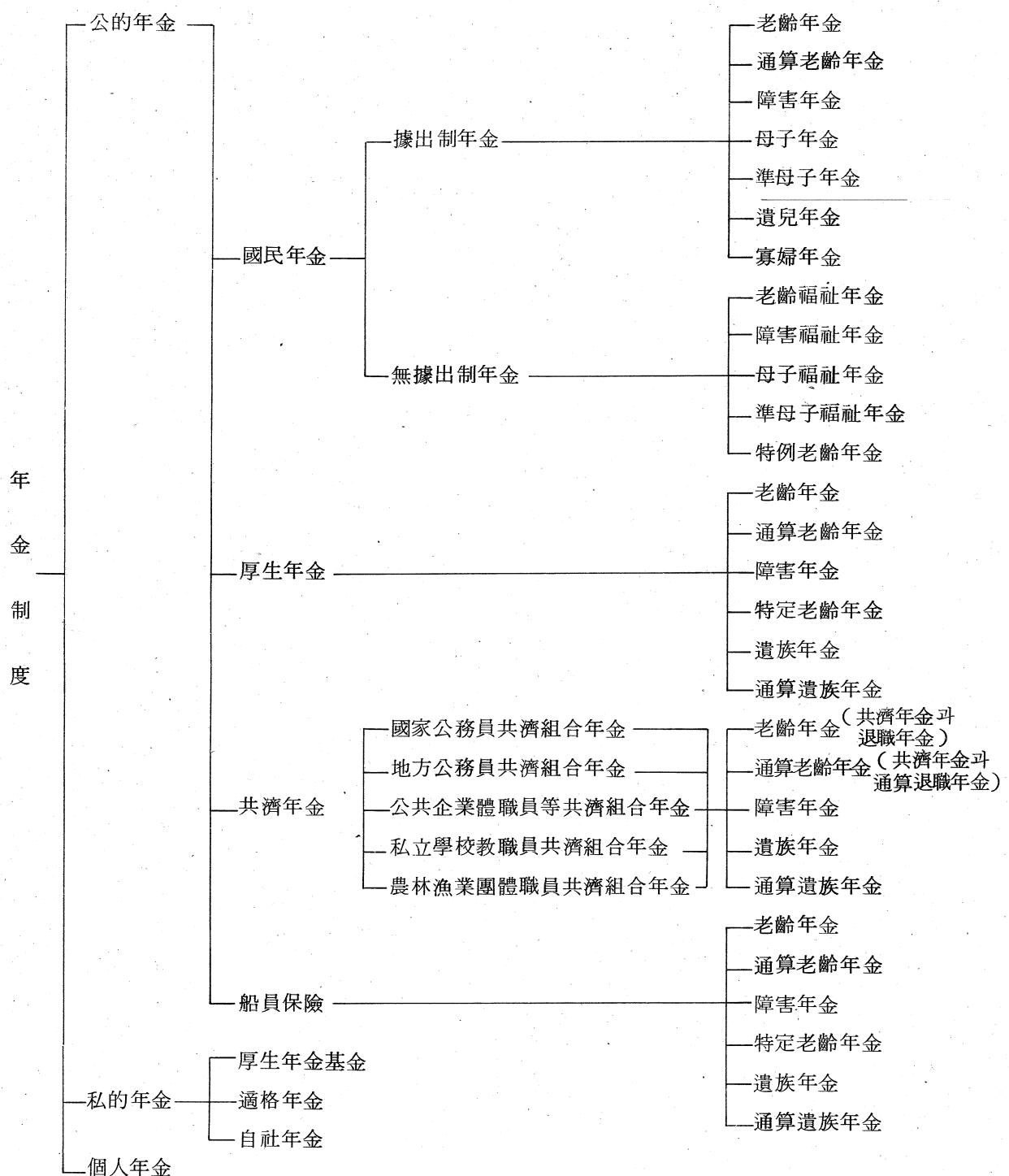
| 家口<br>區分              | 職業<br>符號 | 種類            | 基準                                                                                                                    | 内 容 例 示                                                                                                                                                                                                                                                                                                                                                                                             | 包含되지 않<br>는 것                                                                                                    |
|-----------------------|----------|---------------|-----------------------------------------------------------------------------------------------------------------------|-----------------------------------------------------------------------------------------------------------------------------------------------------------------------------------------------------------------------------------------------------------------------------------------------------------------------------------------------------------------------------------------------------|------------------------------------------------------------------------------------------------------------------|
| 勤<br>勞<br>者<br>家<br>口 | 1        | 常用勞務者         | 官公廳 또는 民間에서 長期間 雇傭되어, 主로 肉體的勞動에 從事하고 있는者.                                                                             | 採礦員, 採炭員, 仕上工, 鑄物工, 金屬溶接工, 檢查工, 製圖工, 分析工, 見習工, 工事人, 印刷工, 析金工, 五金工, 一般機械器具組立工, 電氣機械慣具組立工, 自動車組立工, 時計組立工, 染色工, 家具·建具製造工, 紙製品製造工, 整備工, 塗裝工, 裁斷工, 縫製工, 交選工, 製本工, 製版工, 植字工, 洋裁師, 仕立工, 크리닝職, 타일職, 石工, 乘務員, 버스가이드, 보이라工, 据付機械運轉士, 電車運轉士, 自動車運轉手, 甲板員, 航海士, 車掌, 配達員, 集金人, 警備員, 가드맨, 守衛, 用務員, 清掃員, 雜役作業者, 新聞販賣人, 랜서, 웨이터, 바텐더, 木工, 미장工, 配管工, 비계공職, 理容師, 美容師, 에레베타手, 驛貨物係, 販賣店員, 收金人, 映寫技師, 調理士, 給食婦, 通勤하는 조수 | • 自營業主 → 5 또는 6 으로<br>• 自衛官·警察官<br>• 消防員 등 身分에 있는자 → 4로<br>• 技師(映寫技師除外) → 3 또는 4에                                |
|                       | 2        | 臨時 및<br>日雇勞務者 | 官公廳 또는 民間に 30日 未滿의 期間 또는 매일매일 契約으로 雇傭되어, 主로 肉體的勞動에 從事하고 있는者.                                                          | 會計事務員, 一般事務員, 經理事務員, 庶務書記, 仕入主任, 人事係長, 課長, 所長, 檢事, 判事, 船長, 高級船員, 驛長, 學校長, 教員, 警察官, 消防士, 保線區長, 現場監督, 新聞記者, 醫師, 藥劑師, 工場長, 研究者, 機械技術者, 造船技術者, 電氣技術者, 建築土, 測量土, 大學助手, 타이피스트, 電話交換手, 鐵道專務車掌, 驛出札, 通信士, 카메라맨, 看護婦, 工場職長, 寫眞師, 交換員, 디자이너, 保健婦, 荒養士, 講師, 라디오·TV아나운서, 프로듀서, 通譯, 圖書館司書, 檢量員, 農業改良普及員, 電子計算機等操作員, 速記者等                                                                                         | • 民間·官公廳·團體등에서 程度높은 企劃管理, 行政事務 또는 監督事務에 從事하는 者 → 7로<br>• 自營業主 → 5 또는 6에<br>• 學校長, 工場長으로서 役員을 兼하고 있는 경우 → 6 또는 7로 |
|                       | 3        | 民間職員          | 民間의 鐳山, 工場, 會社, 商店, 痘院, 學校등에서 勤務. 主로 事務的, 技術的 또는 管理的인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者.<br>日本國有鐵道 및 在日外國政府施設關係 包含.<br>특히 「7」로 分類되는 者는 除外. |                                                                                                                                                                                                                                                                                                                                                                                                     |                                                                                                                  |
|                       | 4        | 育公職員          | 官公廳 또는 公立病院, 學校等에 勤務, 主로 事務的, 技術的 또는 管理的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者.<br>日本國有鐵道 및 在日外國政府施設關係는 民間으로 한다. 特히 「7」로 分類되는 者는 除外.           |                                                                                                                                                                                                                                                                                                                                                                                                     |                                                                                                                  |

| 家口<br>區分     | 職員<br>符號   | 種類      | 基準                                                                                                                                  | 內容例示                                                                                                                          | 包含되지 않<br>는 것                                                      |
|--------------|------------|---------|-------------------------------------------------------------------------------------------------------------------------------------|-------------------------------------------------------------------------------------------------------------------------------|--------------------------------------------------------------------|
| 一般<br>家<br>口 | 個人營業<br>家口 | 5 商人및職人 | 獨立하여 小規模(家族이 아닌 使用人 4人以下)로 商品製造, 加工, 販賣 또는 서비스를 提供하는 業主. 특히 「6」으로 分類되는 者는 除外.                                                       | 靴店主, 居主, 菓子店主, 魚店主, 洋品店主, 寫眞店主, 染物店主, 自轉車店主, 質店主, 理髮店主, 表具店主, 行商, 브로커, 木工, 비계공, 植木職, 미장공, 美容院店主, 크리닝店主, 仲買人, 아파트經營者, 個人택시運轉手等 | • 家族이 아닌 使用人이 5人以上의 경우 → 6 또는 7에                                   |
|              |            |         |                                                                                                                                     | 大商店主, 大工場主, 私立病院經營者, 私立學校經營者, 啤酒<br>及店經營者, 不動產業經營者, 飯堂經營者等                                                                    | • 家族이 아닌 使用人이 4人以下의 경우 → 5에                                        |
|              | 其<br>他     | 7 法人經營者 | 法人組織의 會社(合名, 合資, 有限, 株式會社等)로서 家族이 아닌 使用人 5人以上을 雇傭하는 會社, 團體등 役員.<br>특히 「3」, 「4」로 分類되어야 할 者라도 程度 높은 企劃管理, 行政事務 또는 監督事務에 從事하는 者는 包含한다. | 社長, 會長, 取締役, 監查役, 理事, 銀行頭取, 相談役, 大臣, 政務次官, 總裁, 知事, 副知事, 市長, 區長, 町長, 村長, 助役, 出納長, 收入役, 教育委員長 등                                 | • 法人組織의 會社(合名, 合資, 有限, 株式會社等)로서 家族이 아닌 使用人이 4人以下의 경우 → 5로          |
|              |            |         |                                                                                                                                     | 辯護士, 稅理士, 公認會計士, 開業醫, 助產婦, 安마師, 僧侶, 神職, 畫家, 圖家家, 彫刻家, 工藝美術家, 著述家, 作曲家, 作詞家, 代書人, 生花教授, 評論家, 建築師, 個人教授, 디자이너等                  | • 醫師, 公認會計士, 稅理士等이라도 家族이 아닌 使用人이 5人以上의 경우 → 6으로<br>• 法人經營의 경우 → 7에 |
|              |            |         |                                                                                                                                     | 議員, 藝能人(歌手, 俳優, 落語家), 모델, 職業스포츠<br>家(野球選手, 競輪選手, 力士, 騎手等), 內職者等                                                               |                                                                    |
|              | 其<br>他     | 8 自由業者  | 個人으로 自己의 專務技能이나 知識을 內容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br>단, 勤勞者家口(1~4)로 分類되는 者는 除外.                                                               | 失業者, 同居家事使用人(助手, 書生等), 同居營業上 使用人, 主婦, 學生, 幼兒等                                                                                 |                                                                    |
|              |            |         |                                                                                                                                     | 家業에 從事하고 있는 家族.                                                                                                               |                                                                    |

(注) 國勢調查에서 使用하는 職業分類와는 다르다.

家口에 대해서도 家口區分에 關係없이 1~11의 職業區分으로 分類한다.

別表 7 年 金 の 種 類



別表8 都道府縣別基本數一覽

| 都道府<br>縣名 | 調査市<br>町村數 | 調<br>查<br>家口數 | 指<br>員<br>導<br>數 | 調<br>員<br>數 | 都道府<br>縣名 | 調査市<br>町村數 | 調<br>查<br>家口數 | 指<br>員<br>導<br>數 | 調<br>員<br>數 |
|-----------|------------|---------------|------------------|-------------|-----------|------------|---------------|------------------|-------------|
| 北海道       | 10         | 300           | 4                | 25          | 滋賀        | 2          | 108           | 2                | 9           |
| 青森        | 3          | 132           | 2                | 11          | 京都        | 3          | 144           | 2                | 12          |
| 岩手        | 3          | 132           | 2                | 11          | 大阪        | 6          | 372           | 5                | 31          |
| 宮城        | 3          | 144           | 2                | 12          | 兵庫        | 6          | 240           | 3                | 20          |
| 秋田        | 2          | 120           | 2                | 10          | 奈良        | 2          | 108           | 2                | 9           |
| 山形        | 3          | 144           | 2                | 12          | 和歌山       | 3          | 132           | 2                | 11          |
| 福島        | 3          | 144           | 2                | 12          | 鳥取        | 2          | 108           | 2                | 9           |
| 茨城        | 3          | 144           | 2                | 12          | 島根        | 2          | 108           | 2                | 9           |
| 栃木        | 3          | 144           | 2                | 12          | 岡山        | 3          | 132           | 2                | 11          |
| 群馬        | 3          | 132           | 2                | 11          | 廣島        | 4          | 180           | 2                | 15          |
| 埼玉        | 6          | 252           | 3                | 21          | 山口        | 3          | 156           | 2                | 13          |
| 千葉        | 5          | 204           | 3                | 17          | 德島        | 2          | 108           | 2                | 9           |
| 東京        | 4          | 516           | 7                | 43          | 香川        | 2          | 120           | 2                | 10          |
| 神奈川       | 7          | 372           | 4                | 31          | 愛媛        | 3          | 144           | 2                | 12          |
| 新潟        | 4          | 168           | 2                | 14          | 高知        | 2          | 108           | 2                | 9           |
| 富山        | 3          | 132           | 2                | 11          | 福岡        | 6          | 276           | 4                | 23          |
| 石川        | 2          | 108           | 2                | 9           | 佐賀        | 2          | 108           | 2                | 9           |
| 福井        | 2          | 132           | 2                | 11          | 長崎        | 3          | 144           | 2                | 12          |
| 山梨        | 2          | 108           | 2                | 9           | 熊本        | 3          | 132           | 2                | 11          |
| 長野        | 4          | 168           | 2                | 14          | 大分        | 3          | 144           | 2                | 12          |
| 岐阜        | 3          | 132           | 2                | 11          | 宮崎        | 3          | 144           | 2                | 12          |
| 静岡        | 5          | 192           | 2                | 16          | 鹿兒島       | 3          | 132           | 2                | 11          |
| 愛知        | 6          | 288           | 3                | 24          | 沖繩        | 8          | 288           | 4                | 24          |
| 三重        | 3          | 132           | 2                | 11          | 全國計       | 168        | 8,076         | 114              | 673         |

別表9 調査市町村別基本數一覽

| 調査市町村名     | 市町村番號  | 調査家口數 | 単位區數 | 單位區符號                                                                    |
|------------|--------|-------|------|--------------------------------------------------------------------------|
| 北海道<br>札幌市 | 01 100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 01 202 | 36    | 6    | 011·041, 031·061, 071·101                                                |
|            | 01 206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 01 208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 01 216 | 24    | 4    | 071·101, 081·111                                                         |
|            | 01 221 | 24    | 4    | 081·111, 091·121                                                         |
|            | 01 301 | 12    | 2    | 021·051                                                                  |
|            | 01 331 | 12    | 2    | 071·101                                                                  |
|            | 01 543 | 12    | 2    | 011·041                                                                  |
|            | 01 631 | 12    | 2    | 081·111                                                                  |
| 青森縣<br>青森市 | 02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 02 208 | 24    | 4    | 011·041, 021·051                                                         |
|            | 02 361 | 12    | 2    | 011·041                                                                  |
|            |        |       |      |                                                                          |
| 岩手縣<br>盛岡市 | 03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 03 203 | 24    | 4    | 031·061, 071·101                                                         |
|            | 03 423 | 12    | 2    | 021·051                                                                  |
|            |        |       |      |                                                                          |
| 宮城縣<br>仙臺市 | 04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 04 202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 04 541 | 12    | 2    | 031·061                                                                  |
|            |        |       |      |                                                                          |
| 秋田縣<br>秋田市 | 05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010<br>081·111, 082·112, 091·121, 091·122 |
|            | 05 207 | 24    | 4    | 011·041, 021·051                                                         |
| 山形縣<br>山形市 | 06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 06 203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 06 461 | 12    | 2    | 081·111                                                                  |
|            |        |       |      |                                                                          |

| 調査市町村名      | 市町村番號  | 調査家口數 | 単位區數 | 單位區符號                              |
|-------------|--------|-------|------|------------------------------------|
| 福島縣<br>福島市  | 07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 |
|             | 07 203 | 36    | 6    | 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 07 305 | 12    | 2    | 071·101, 081·111, 091·121          |
| 茨城縣<br>水戸市  | 08 201 | 96    | 16   | 091·121                            |
|             | 08 204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 08 523 | 12    | 2    | 011·041,                           |
| 栃木縣<br>宇都宮市 | 09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 |
|             | 09 208 | 36    | 6    | 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 09 362 | 12    | 2    | 071·101, 081·111, 091·121          |
| 群馬縣<br>前橋市  | 10 201 | 96    | 16   | 021·051                            |
|             | 10 211 | 24    | 4    | 011·041, 021·051, 031·061, 071·101 |
|             | 10 384 | 12    | 2    | 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埼玉縣<br>浦和市  | 11 204 | 96    | 16   | 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 11 203 | 36    | 6    | 021·051, 031·061, 071·101          |
|             | 11 208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所澤市         | 11 211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 11 227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 11 343 | 12    | 2    | 031·061                            |
| 千葉縣<br>千葉市  | 12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 |
|             | 12 210 | 36    | 6    | 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 12 212 | 36    | 6    | 031·061, 071·101, 091·121          |
| 佐倉市         | 12 218 | 24    | 4    | 071·101, 081·111, 091·121          |
|             | 12 424 | 12    | 2    | 071·101, 081·111                   |
| 勝浦市         | 12 218 | 24    | 4    | 091·121                            |
|             | 12 424 | 12    | 2    | 011·041, 012·042, 013·043, 014·044 |
| 白子町         | 12 218 | 24    | 4    | 015·045, 016·046, 021·051, 022·052 |
|             | 12 424 | 12    | 2    | 023·053, 024·054, 025·055, 026·056 |
| 東京都<br>區部   | 13 100 | 408   | 68   |                                    |

| 調査市町村名      | 市町村番號  | 調査家口數 | 単位區數 | 單位區符號                                                                                                                                                                                                                                        |
|-------------|--------|-------|------|----------------------------------------------------------------------------------------------------------------------------------------------------------------------------------------------------------------------------------------------|
| 富 部         |        |       |      | 031·061, 032·062, 033·063, 034·064<br>035·065, 036·066, 071·101, 072·102<br>073·103, 074·104, 075·105, 081·111<br>082·112, 083·113, 084·114, 085·115<br>086·116, 091·121, 092·122, 093·123<br>094·124, 095·125,<br>071·101, 081·111, 091·121 |
| 立 川 市       | 13 202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府 中 市       | 13 206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東 村 山 市     | 13 213 | 36    | 6    | 021·051, 031·061, 071·101                                                                                                                                                                                                                    |
| 神奈川縣<br>横濱市 | 14 100 | 144   | 24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32·062, 071·101, 072·102<br>081·111, 082·112, 091·121, 092·122<br>011·041, 021·051, 022·052, 031·061<br>032·062, 071·101, 081·111, 091·121                                                   |
| 川 崎 市       | 14 130 | 96    | 16   | 011·041, 021·051, 022·052, 031·061<br>032·062, 071·101, 081·111, 091·121                                                                                                                                                                     |
| 横須賀市        | 14 201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鎌倉市         | 14 204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厚木市         | 14 212 | 36    | 6    | 011·041, 021·051, 071·101                                                                                                                                                                                                                    |
| 大磯町         | 14 341 | 12    | 2    | 091·121                                                                                                                                                                                                                                      |
| 津久井町        | 14 422 | 12    | 2    | 031·061                                                                                                                                                                                                                                      |
| 新潟縣<br>新潟市  | 15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長岡市         | 15 202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豊榮市         | 15 221 | 24    | 4    | 011·041, 021·051,                                                                                                                                                                                                                            |
| 吉田町         | 15 344 | 12    | 2    | 011·041,                                                                                                                                                                                                                                     |
| 富山縣<br>富山市  | 16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新湊市         | 16 203 | 24    | 4    | 081·111, 091·121,                                                                                                                                                                                                                            |
| 福岡町         | 16 422 | 12    | 2    | 021·051,                                                                                                                                                                                                                                     |
| 石川縣<br>金澤市  | 17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br>031·061                                                                                                                                                          |
| 鹿島市         | 17 404 | 12    | 2    |                                                                                                                                                                                                                                              |
| 福井縣<br>福井市  | 18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敦賀市         | 18 202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山梨縣<br>甲府市  | 19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南部町         | 19 366 | 12    | 2    | 031·061                                                                                                                                                                                                                                      |

| 調査市町村名      | 市町村番號  | 調査家口數 | 単位區數 | 單位區符號                                                                                                 |
|-------------|--------|-------|------|-------------------------------------------------------------------------------------------------------|
| 長野縣<br>長野市  | 20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松本市         | 20 202 | 96    | 6    | 011·041, 021·051, 031·061,                                                                            |
| 小諸市         | 20 208 | 24    | 4    | 081·111, 091·121,                                                                                     |
| 坂城町         | 20 521 | 12    | 2    | 081·111                                                                                               |
| 岐阜縣<br>岐阜市  | 21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美濃市         | 21 207 | 24    | 4    | 031·061, 071·101                                                                                      |
| 揖斐川町        | 21 401 | 12    | 2    | 011·041                                                                                               |
| 静岡縣<br>静岡市  | 22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濱松市         | 22 202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掛川市         | 22 214 | 36    | 6    | 011·041, 021·051, 091·121                                                                             |
| 大東町         | 22 447 | 12    | 2    | 021·051                                                                                               |
| 春野町         | 22 462 | 12    | 2    | 031·061                                                                                               |
| 愛知縣<br>名古屋市 | 23 100 | 132   | 22   | 011·041, 012·042, 021·051, 031·061<br>032·062, 071·101, 072·102, 081·111<br>082·112, 091·121, 092·122 |
| 春日井市        | 23 206 | 36    | 6    | 011·041, 081·111, 091·121                                                                             |
| 豊川市         | 23 207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碧南市         | 23 209 | 36    | 6    | 021·051, 031·061, 091·121                                                                             |
| 江南市         | 23 217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阿久比町        | 23 441 | 12    | 2    | 071·101,                                                                                              |
| 三重縣<br>津市   | 24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名張市         | 24 208 | 24    | 4    | 011·041, 021·051                                                                                      |
| 御濱町         | 24 561 | 12    | 2    | 091·121,                                                                                              |
| 滋賀縣<br>大津市  | 25 202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栗東町         | 25 321 | 12    | 2    | 071·101                                                                                               |
| 京都府<br>京都市  | 26 100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舞鶴市         | 26 202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園部町         | 26 401 | 12    | 2    | 011·041                                                                                               |

| 調査市町村名          | 市町村番號  | 調査家口數 | 単位區數 | 單位區符號                                                                                                                                                |
|-----------------|--------|-------|------|------------------------------------------------------------------------------------------------------------------------------------------------------|
| 大阪府<br>大 阪 市    | 27 100 | 192   | 32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23·053, 031·061, 032·062, 071·101<br>072·102, 073·103, 081·111, 082·112<br>083·113, 091·121, 092·122, 093·123 |
|                 | 27 208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 27 209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 27 214 | 36    | 6    | 011·041, 021·051, 091·121                                                                                                                            |
|                 | 27 220 | 36    | 6    | 021·051, 031·061, 081·111                                                                                                                            |
|                 | 27 227 | 36    | 6    | 021·051, 031·061, 071·101                                                                                                                            |
|                 |        |       |      |                                                                                                                                                      |
| 兵庫縣<br>神 戸 市    | 28 100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72·102, 081·111, 082·112, 091·121                                                                             |
|                 | 28 201 | 36    | 6    | 011·041, 081·111, 091·121                                                                                                                            |
|                 | 28 204 | 36    | 6    | 031·061, 071·101, 081·111                                                                                                                            |
|                 | 28 207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 28 211 | 24    | 4    | 081·111, 091·121,                                                                                                                                    |
|                 | 28 463 | 12    | 2    | 091·121                                                                                                                                              |
|                 |        |       |      |                                                                                                                                                      |
| 奈良縣<br>奈 良 市    | 29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 29 363 | 12    | 2    | 081·111                                                                                                                                              |
| 和歌山縣<br>和 歌 山 市 | 30 201 | 96    | 16   | 011·041·012·042, 021·051, 022·052<br>031·061·071·101, 091·111, 091·121                                                                               |
|                 | 30 204 | 24    | 4    | 081·111·091·121                                                                                                                                      |
|                 | 30 361 | 12    | 2    | 091·121                                                                                                                                              |
|                 |        |       |      |                                                                                                                                                      |
| 鳥取縣<br>鳥 取 市    | 31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2·061, 071·101, 081·111, 091·121                                                                             |
|                 | 32 364 | 12    | 2    | 021·051                                                                                                                                              |
| 島根縣<br>松 江 市    | 32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 32 405 | 12    | 2    | 091·121                                                                                                                                              |
|                 |        |       |      |                                                                                                                                                      |
| 岡山縣<br>岡 山 市    | 33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 33 208 | 24    | 4    | 071·101, 081·111                                                                                                                                     |
|                 | 33 322 | 12    | 2    | 031·061                                                                                                                                              |

| 調査市町村名     | 市町村番號  | 調査家口數 | 単位區數 | 単位區符號                                                                    |
|------------|--------|-------|------|--------------------------------------------------------------------------|
| 廣島縣<br>廣島市 | 34 100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吳市         | 34 202 | 36    | 6    | 011·041, 081·111, 091·121                                                |
| 三原市        | 34 204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大野町        | 34 323 | 12    | 2    | 071·101,                                                                 |
| 山口縣<br>山口市 | 35 203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防府市        | 35 206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小野田市       | 35 209 | 24    | 4    | 011·041, 021·051                                                         |
| 徳島縣<br>徳島市 | 36 201 | 96    | 16   | 011·041, 021·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北島町        | 36 402 | 12    | 2    | 011·041                                                                  |
| 香川縣<br>高松市 | 37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觀音寺市       | 37 205 | 24    | 4    | 031·061, 071·101                                                         |
| 愛媛縣<br>松山市 | 38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今治市        | 38 202 | 36    | 6    | 011·041, 021·051, 031·061                                                |
| 砥部町        | 38 402 | 12    | 2    | 081·111                                                                  |
| 高知縣<br>高知市 | 39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土佐町        | 39 363 | 12    | 2    | 091·121                                                                  |
| 福岡縣<br>福岡市 | 40 130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北九州市       | 40 100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柳川市        | 40 207 | 24    | 4    | 011·041, 021·051                                                         |
| 大野城市       | 40 219 | 36    | 6    | 071·101, 081·111, 091·121                                                |
| 津屋崎町       | 40 363 | 12    | 2    | 031·061                                                                  |
| 川崎町        | 40 605 | 12    | 2    | 011·041                                                                  |
| 佐賀縣<br>佐賀市 | 41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092·122 |

| 調査市町村名                                          | 市町村番號                                                              | 調査家口數                                  | 単位區數                            | 單位區符號                                                                                                                              |
|-------------------------------------------------|--------------------------------------------------------------------|----------------------------------------|---------------------------------|------------------------------------------------------------------------------------------------------------------------------------|
| 基山町                                             | 41 341                                                             | 12                                     | 2                               | 071·101                                                                                                                            |
| 長崎縣<br>長崎市                                      | 42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佐世保市<br>高來町                                     | 42 202<br>42 343                                                   | 36<br>12                               | 6<br>2                          | 031·061, 071·101, 081·111<br>081·111                                                                                               |
| 熊本縣<br>熊本市                                      | 43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人吉市<br>大矢野町                                     | 43 203<br>43 521                                                   | 24<br>12                               | 4<br>2                          | 011·041, 021·051<br>071·101                                                                                                        |
| 大分縣<br>大分市                                      | 44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32·062<br>071·101, 072·102, 081·111, 091·121                                                           |
| 日田市<br>野津町                                      | 44 204<br>44 421                                                   | 36<br>12                               | 6<br>2                          | 011·041, 021·051, 031·061<br>091·121                                                                                               |
| 宮崎縣<br>宮崎市                                      | 45 201                                                             | 96                                     | 16                              | 011·041, 012·042, 021·051, 022·052<br>031·061, 071·101, 081·111, 091·121                                                           |
| 都城市<br>高岡町                                      | 45 202<br>45 381                                                   | 36<br>12                               | 6<br>2                          | 071·101, 081·111, 091·121<br>081·111                                                                                               |
| 鹿兒島縣<br>鹿兒島市                                    | 46 201                                                             | 96                                     | 16                              | 011·041, 021·051, 031·061, 071·101<br>081·111, 082·112, 091·121, 192·122                                                           |
| 出水市<br>松元町                                      | 46 208<br>46 364                                                   | 24<br>12                               | 4<br>2                          | 031·061, 071·101<br>091·121                                                                                                        |
| 沖繩縣<br>那霸市                                      | 47 201                                                             | 168                                    | 28                              | 011·041, 012·042, 071·051, 022·052<br>031·061, 032·062, 071·101, 072·102<br>073·103, 081·111, 082·112, 083·113<br>091·121, 092·122 |
| 宜野灣市<br>平良市<br>石垣市<br>名護市<br>沖繩市<br>本部町<br>東風平町 | 47 205<br>47 206<br>47 207<br>47 209<br>47 211<br>47 308<br>47 343 | 36<br>12<br>12<br>12<br>24<br>12<br>12 | 6<br>2<br>2<br>2<br>4<br>2<br>2 | 071·101, 081·111, 091·121<br>021·051<br>011·041<br>091·121<br>031·061, 071·101<br>091·121<br>021·051                               |
| 全國計 120市                                        | 48 町村                                                              | 8076                                   | 1346                            |                                                                                                                                    |

別表 10 都道府縣別・月別年間收入調査家口數一覽

| 単位區符號<br>( 앞 2 単位) | 06·<br>12 | 01·<br>07 | 02·<br>08 | 03·<br>09 | 04·<br>10 | 05·<br>11 | 単位區符號<br>( 앞 2 単位) | 06·<br>12 | 01·<br>07 | 02·<br>08 | 03·<br>09 | 04·<br>10 | 05·<br>11 |
|--------------------|-----------|-----------|-----------|-----------|-----------|-----------|--------------------|-----------|-----------|-----------|-----------|-----------|-----------|
| 調査月                | 1·7<br>月  | 2·8<br>月  | 3·9<br>月  | 4·10<br>月 | 5·11<br>月 | 6·12<br>月 | 調査月                | 1·7<br>月  | 2·8<br>月  | 3·9<br>月  | 4·10<br>月 | 5·11<br>月 | 6·12<br>月 |
| 北海道                | 42        | 54        | 54        | 42        | 54        | 54        | 滋賀縣                | 18        | 24        | 12        | 18        | 24        | 12        |
| 青森縣                | 12        | 30        | 24        | 12        | 30        | 24        | 京都府                | 24        | 24        | 24        | 24        | 24        | 24        |
| 岩手縣                | 24        | 24        | 18        | 24        | 24        | 18        | 大阪府                | 60        | 54        | 72        | 60        | 54        | 72        |
| 宮城縣                | 30        | 24        | 18        | 30        | 24        | 18        | 兵庫縣                | 42        | 36        | 42        | 42        | 36        | 42        |
| 秋田縣                | 18        | 18        | 24        | 18        | 18        | 24        | 奈良縣                | 12        | 18        | 24        | 12        | 18        | 24        |
| 山形縣                | 24        | 24        | 24        | 24        | 24        | 24        | 和歌山縣               | 24        | 18        | 24        | 24        | 18        | 24        |
| 福島縣                | 24        | 24        | 24        | 24        | 24        | 24        | 鳥取縣                | 12        | 18        | 24        | 12        | 18        | 24        |
| 茨城縣                | 24        | 24        | 24        | 24        | 24        | 24        | 島根縣                | 18        | 18        | 18        | 18        | 18        | 18        |
| 栃木縣                | 18        | 24        | 30        | 18        | 24        | 30        | 岡山縣                | 24        | 24        | 18        | 24        | 24        | 18        |
| 群馬縣                | 24        | 24        | 18        | 24        | 24        | 18        | 廣島縣                | 30        | 30        | 30        | 30        | 30        | 30        |
| 埼玉縣                | 42        | 42        | 42        | 42        | 42        | 42        | 山口縣                | 24        | 30        | 24        | 24        | 30        | 24        |
| 千葉縣                | 42        | 30        | 30        | 42        | 30        | 30        | 德島縣                | 12        | 24        | 18        | 12        | 24        | 18        |
| 東京都                | 84        | 84        | 90        | 84        | 84        | 90        | 香川縣                | 24        | 18        | 18        | 24        | 18        | 18        |
| 神奈川縣               | 66        | 60        | 60        | 66        | 60        | 60        | 愛媛縣                | 18        | 24        | 30        | 18        | 24        | 30        |
| 新潟縣                | 24        | 36        | 24        | 24        | 36        | 24        | 高知縣                | 24        | 12        | 18        | 24        | 12        | 18        |
| 富山縣                | 24        | 12        | 30        | 24        | 12        | 30        | 福岡縣                | 42        | 54        | 42        | 42        | 54        | 42        |
| 石川縣                | 18        | 18        | 18        | 18        | 18        | 18        | 佐賀縣                | 18        | 18        | 18        | 18        | 18        | 18        |
| 福井縣                | 24        | 24        | 18        | 24        | 24        | 18        | 長崎縣                | 18        | 24        | 30        | 18        | 24        | 30        |
| 山梨縣                | 24        | 18        | 12        | 24        | 18        | 12        | 熊本縣                | 18        | 30        | 18        | 18        | 30        | 18        |
| 長野縣                | 30        | 18        | 36        | 30        | 18        | 36        | 大分縣                | 30        | 24        | 18        | 30        | 24        | 18        |
| 岐阜縣                | 24        | 30        | 12        | 24        | 30        | 12        | 宮崎縣                | 18        | 24        | 30        | 18        | 24        | 30        |
| 靜岡縣                | 36        | 30        | 30        | 36        | 30        | 30        | 鹿兒島縣               | 30        | 18        | 18        | 30        | 18        | 18        |
| 愛知縣                | 54        | 48        | 42        | 54        | 48        | 42        | 沖繩縣                | 48        | 48        | 48        | 48        | 48        | 48        |
| 三重縣                | 24        | 18        | 24        | 24        | 18        | 24        | 計                  | 1344      | 1350      | 1344      | 1344      | 1350      | 1344      |

(注) 이 표는 臨時交替가 없었던 경우의 年間收入調査家口數를 提示함.

## 附錄 1 家計調查要綱

### 1. 調査의 目的

이 調査는 國民生活에서 家計收支의 實態를 把握하여 여러 가지 경제 및 社會 問題等에 대처하는 施策立案의 기초資料를 提供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2. 調査事項

調査家口에 대해 調査票(別紙 1「家計簿」, 別紙 2「년간 수입조사표」 및 別紙 3「家口票」)에 의해 아래 事項을 調査한다.

특히 3의(2)의 方法에 따라 추출된 家口로서 부득이한 이유에 따라 제외된 家口(이것을 「準調査家口」라고 함.)에 대해서는 調査票(別紙 4 「準調査家口票」)에 의해 (3)의 事項에 대하여 調査한다.

- (1) 매월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단 勤勞者家口 및 無職家口 어느편에도 해당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출에 관한 사항만을 調査한다.
- (2) 연간수입에 관한 사항
- (3)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 3. 調査의 範圍

#### (1) 調査시정촌(市町村)

총무청장관이 지정하는 약 200 시정촌(都道府縣廳소재 도시를 포함.)으로 한다.

#### (2) 調査客體

농가, 임가(林家) 및 어가 이외의 가구 가운데에서 총무청장관이 정하는 방법(시정촌, 단위구, 가구의 총화 3단 추출법)에 따라 선정하는 약 8,000 가구로 한다.

단위구는 국세조사의 조사구에 根據하여 선정한다.

#### (3) 調査客體의 교체

調査家口는 매월 6 분의 1씩, 調査單位口는 매월 12 분의 1씩 교체한다.

### 4. 調査期間

조사시정촌에 대하여 매월 실시한다.

### 5. 調査의 方法 및 機關

#### (1) 調査의 方法

調査事項(1)을 「家計簿」에, (2)를 「년간수입조사표」에 조사가구가 기입하고,

調査事項(3)을 「家口票」 또는 「準調査家口票」에 調査員이 質問하여 記入한다.

「家計簿」, 「家口票」 및 「準調査家口票」는 調査員이 聚合하고 (모으고), 「年間收入調査票」는 調査家口가 密封하여 調査員이 聚合한다.

## (2) 調査機關

가. 調査實施는 總務廳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나. 都道府縣知事은 總務廳長官의 指揮監督을 받아 管轄市町村에서의 調査를 執行한다.

다. 都道府縣知事은 調査에 관한 事務를 行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調査地域의 市町村長에게 協力を 求할 수가 있다.

라. 都道府縣知事은 調査市町村에 調査事務에 從事하는 統計調查員 (以下「家計調查員」이라고 함)을 둔다.

마. 都道府縣知事은 都道府縣에 調査員을 指導하는 統計指導員 (以下「家計調查指導員」이라 함)을 둔다.

## 6. 集計事項 및 集計方法

다음 事項에 대하여 總務廳統計센터에서 集計한다.

(全國, 都市階級別 및 地域別에 대하여)

- (1) 收入階級別 收入과 支出
- (2) 家口人員數別 收入과 支出
- (3) 家口主의 年齡階級別 收入과 支出
- (4) 家口主의 職業別 收入과 支出
- (5) 家口主의 勤務處 企業規模別 收入과 支出
- (6) 家口主의 產業別 收入과 支出
- (7) 家口 類型別 收入과 支出
- (8) 住居의 種類別 收入과 支出
- (9) 家口의 特性, 品目別 購入數量, 支出金額等
- (10) 家口의 特性別 家口分布

(市町村別에 대하여)

- (1) 市町村別 收入과 支出
- (2) 市町村 品目別 購入數量, 支出金額

## 7. 結果의 公表方法 및 期日

調査의 結果는 集計完了때마다 所定의 刊行物 또는 閱覽할 수 있는 方法으로 公表한다. 公表方法 및 公表에 關係되는 集計事項等 詳細한 것에 대해서는 別表에서 提示하는 바와 같다.

## 8. 關係書類 保存期間과 保存責任者

| 書類名                             | 保存期間 | 保存責任者     |
|---------------------------------|------|-----------|
| 調査票                             | 2年   | 總務廳統計센터所長 |
| 結果原票 또는 結果原票가<br>轉寫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 | 永久   | 總務廳統計局長   |

## 9. 調査票의 使用

이 調査票는 統計法 第 15 條의 規定에 따라 統計以外의 目的에는 使用하지 않는다.

(別表)

## 結果公表方法 및 期日一覽表

(令 第 7 條 1 項 本文關係)

| 公表의 方法            | 公表에 關係되는 集計事項                                                                                                                                                                                                                                | 公 表 期 日             | 備 考                                                  |
|-------------------|----------------------------------------------------------------------------------------------------------------------------------------------------------------------------------------------------------------------------------------------|---------------------|------------------------------------------------------|
| 家計調査報告<br>(年月分速報) | (全國, 都市階級別에 대하여)<br>• 收入과 支出                                                                                                                                                                                                                 | 調査月의 翌翌<br>月        | 暫定結果의<br>公表(年平均<br>暫定結果는<br>調査年の 翌<br>年 3月頃에<br>公表함) |
| 家計調査報告<br>(年月分)   | (全國, 都市階級, 地域, 都<br>道府 縣廳 所在都市別에<br>대하여)<br>• 收入과 支出<br><br>(全國, 都市階級別에 대하여)<br>• 收入階級別 收入과 支出<br>• 家口主의 職業別 收入과<br>支出<br>• 住居의 種類別 收入과 支出<br><br>(全國에 대하여)<br>• 家口人員別 收入과 支出<br>• 品目別 購入數量, 支出金額<br>等<br><br>(都市階級, 地域別에 대하여)<br>• 品目別 支出金額 | 暫定結果公表<br>時의 翌月     | 確定結果의<br>公表                                          |
| 家計調査年報<br>(年)     | (地域別에 대하여)<br>• 收入階級別 收入과 支出<br><br>(市町村別에 대하여)<br>• 收入과 支出                                                                                                                                                                                  | 調査年の 翌年<br>10月頃에 豫定 | 確定結果의公表                                              |

## (令 第 7 條第 1 項 但書關係)

| 公表의 方法                                                   | 公表에 關係되는 集計事項                                                                                                                                                                                                                                                                                                                                                                                                                                                                                                  | 公表期日等                                                                                                                             | 閱覽의 場所                                                                         | 該當 理由                                                                                                                                                  |
|----------------------------------------------------------|----------------------------------------------------------------------------------------------------------------------------------------------------------------------------------------------------------------------------------------------------------------------------------------------------------------------------------------------------------------------------------------------------------------------------------------------------------------------------------------------------------------|-----------------------------------------------------------------------------------------------------------------------------------|--------------------------------------------------------------------------------|--------------------------------------------------------------------------------------------------------------------------------------------------------|
| 閱 覧<br>(電子計算<br>機用磁氣<br>테이프에<br>記錄한 것<br>을 出力用<br>紙에 表示) | [暫定結果]<br>(全國, 都市階級, 地域, 都道<br>府縣廳所在 都市別에 대하여)<br>• 收入과 支出<br>• 品目別 購入數量, 支出金額<br>等<br>• 家口特性別 家口分布<br><br>(全國, 都市階級別에 대하여)<br>• 收入階級別 收入과 支出<br>• 家口主의 職業別 收入과 支出<br>• 住居의 種類別 收入과 支出<br><br>(全國에 대하여)<br>• 家口人員別 收入과 支出<br>• 家口主의 年齡階級別 收入<br>과 支出<br>• 家口主의 產業別 收入과<br>支出<br>• 家口主의 勤務處 企業規模<br>別 收入과 支出<br>• 家口類型別 收入과 支出<br>• 家口特性, 品目別 購入數量<br>支出金額等<br><br>(市町村別에 대하여)<br>• 收入과 支出<br><br>(地域別에 대하여)<br>• 收入階級別 收入과 支出<br>• 家口主의 職業別 收入과 支出<br>• 住居의 種類別 收入과 支出<br><br>(都市階級別에 대하여)<br>• 家口의 類型別 收入과 支出 | 月分의 速報<br>公表日以後<br>月分報告書<br>刊行日까지<br><br>"<br><br>"<br><br>"<br><br>調査年의 翌<br>年 3 月頃부<br>터 年報刊行<br>日까지<br><br>"<br><br>"<br><br>" | 總務廳統計局<br>統計調查部<br>消費統計課<br><br>"<br><br>"<br><br>"<br><br>"<br><br>"<br><br>" | • 各省廳, 地<br>方公共團體<br>研究所, 民<br>間企業等이<br>早期公表를<br>要望하고<br>있고 同時<br>에 集計結<br>果表의 量<br>이 방대하<br>여 全部를<br>刊行物에<br>記載하는<br>것은 困難<br>하기 때문<br>(第 1 號에<br>該當) |

| 公表의 方法                                               | 公表에 關係되는 集計事項                                                                                                                                                                                                                                                                                                                                                                                                                                                                                                                                                                                                                                                                                                                           | 公表期日 等                       | 閱覽 場所                    | 該當理由                                                                                                                               |
|------------------------------------------------------|-----------------------------------------------------------------------------------------------------------------------------------------------------------------------------------------------------------------------------------------------------------------------------------------------------------------------------------------------------------------------------------------------------------------------------------------------------------------------------------------------------------------------------------------------------------------------------------------------------------------------------------------------------------------------------------------------------------------------------------------|------------------------------|--------------------------|------------------------------------------------------------------------------------------------------------------------------------|
| 閱覽<br>(電子計算機<br>用 磁氣테이<br>프에 記錄한<br>것을 出力用<br>紙에 表示) | <p>[確定結果]</p> <p>(全國, 都市階級, 地域, 都道府縣廳 所在都市別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收入과 支出</li> <li>品目別 構入數量, 支出<br/>金額等</li> <li>家口特性別 家口分布</li> </ul> <p>(全國, 都市階級別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收入階級別 收入과 支出</li> <li>家口主의 職業別 收入과 支出</li> <li>住居의 種類別 收入과 支出</li> </ul> <p>(全國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家口人員別 收入과 支出</li> <li>家口主의 年齡階級別 收入과 支出</li> <li>家口主의 產業別 收入과 支出</li> <li>家口主의 勤務處 企業規模別 別 收入과 支出</li> <li>家口類型別 收入과 支出</li> <li>家口特性, 品目別 購入數量<br/>數量, 支出金額等</li> </ul> <p>(都市階級別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家口類型別 收入과 支出</li> </ul> <p>(地域別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家口主의 職業別 收入과 支出</li> <li>住居 種類別 收入과 支出</li> </ul> | 月分의 報告書 刊行日以<br>後 翌年年末<br>까지 | 總務廳統計局<br>統計調查部<br>消費統計課 | • 各省廳, 地方公共團體研究所, 民間企業等이<br>早期公表等<br>要望하고<br>있고 同時<br>에, 集計結果表의 量<br>이 방대하여, 全部를<br>刊行物에<br>記載하는<br>것은 困難<br>하기 때문<br>(第1號에<br>該當) |

## 附錄 2 家計調查規則

1975 年總理部令第 71 號  
最終改正 1985 年總理部令第 36 號

統計法(1947 年 法律第 18 號) 第 3 條第 2 項, 第 12 條第 2 項 및 第 18 條의 規定에 따  
라 家計調查規則(1952 年 總理部令第 81 號)의 全部를 改正하는 總理部令을 다음과 같  
이 定한다.

### 家計調查規則

#### (趣旨)

第 1 條 統計法(以下「法」이라 함) 第 2 條에 規定하는 指定統計로써 家計調查(指定統  
計 第 56 號)의 實施에 關해서는 이 府令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調查의 目的)

第 2 條 家計調查는 國民生活에서 家計收支의 實態를 每月 明確히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定義)

第 3 條 이 府令에서 「家口」라 함은 주거 및 生計를 같이 하는 者의 集團 또는 獨立  
하여 生計를 維持하고 或은 獨立하며 生計를 營爲하는 獨身者를 말함.

2. 이 府令에서 「家口員」이라 함은 家口를 構成하는 各人을 말함.
3. 이 府令에서 「家口主」라 함은 當解 家口를 主宰하는 家口員을 말함.
4. 이 府令에서 「勤勞者家口」라 함은 家口主가 勤勞者인 家口를 말함.
5. 이 府令에서 「無職家口」라 함은 家口主가 無職인 家口를 말한다.

#### (調查의 對象)

第 4 條 家計調查는 總務廳長官이 定하는 方法에 따라 都道府縣知事が 選定한 家口(以  
下 「調查家口」라고 함)에 대하여 實施한다.

2. 總務廳長官은 前項의 調查地域을 定하였을 때에는 告示한다.

#### (調查事項 等)

第 5 條 家計調查는 調查表에 의해 調查家口에 關係되는 다음에 揭示하는 事項을 調査  
한다.

- 一. 每月 收入 및 支出에 關한 事項, 但 勤勞者家口 및 無職家口의 어느 편에도 該

當되지 않는 家口에 대해서는 支出에 관한 事項만을 調査한다.

二. 年間收入에 관한 事項

三. 家口 및 家口員에 관한 事項

四. 住居에 관한 事項

2. 前項의 調査票 樣式은 別途樣式 第 1 號부터 別途樣式 第 4 號까지의 것과 같게 한다.

(調査의 機關 및 執行)

第 6 條 都道府縣知事は 總務廳長官의 指揮監督을 받아 當該 都道府縣의 區域 内에서 家計調查實施에 관하여 家計調查指導員 및 家計調查員에 대한 指揮監督, 調査票의 審查 其他事務를 行한다.

(指導員 및 調査員)

第 7 條 家計調查의 事務에 從事시키기 위하여 法第 12 條第 1 項에 規定하는 統計調查員으로서 家計調查指導員(이하「指導員」이라 함) 및 家計調查員(以下「調査員」이라 함)을 둔다.

2. 指導員 및 調査員은 都道府縣知事が 任命한다.

3. 都道府縣知事は 指導員 및 調査員을 任命했을 때는 當該 指導員 및 調査員의 姓名, 住所, 擔當地域, 其他 總務廳長官이 定하는 事項을 總務廳長官에게 報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4. 指導員은 都道府縣知事의 指揮監督을 받아 調査員에 대한 指導, 調査票, 其他 調査關係書類의 檢查 및 이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한다.

5. 調査員은 都道府縣知事의 指揮監督 및 指導員의 指導를 받아, 그 擔當地域內에 있는 調査家口에 關係되는 調査票, 其他 調査關係書類의 作成, 其他 이에 附帶되는 業務를 行한다.

(家計調查指導員證 및 家計調查員證)

第 8 條 都道府縣知事は 指導員 및 調査員에 대하여 각기 家計調查員證을 發行하여 交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指導員 및 調査員은 그 業務를 行할 때에는 前項의 家計調查員證을 携帶하여 必要에 따라 이를 提示하지 않으면 안된다.

(調査方法)

第 9 條 家計調査는 調査員이 調査票를 調査家口마다 配付하고, 聚合하고 또 質問하므로써 行한다.

(申告의 義務 및 方法)

第 10 條 家計調査에 任하여서는 第 5 條第 1 項 各號에 揭示되는 事項에 대하여 調査家口의 家口主가 申告하지 않으면 안된다.

2. 調査家口의 家口主에 準하는 者는 當該 家口主를 대신하여 當該申告를 行할 수가 있다.
3. 前 2 項의 申告는 調査票에 記入하고 當該調查票의 聚合에 따라 또는 調査員의 質問에 對答함으로써 行하는 것으로 한다.

(調査票等의 提出)

第 11 條 調査員 및 指導員은 都道府縣知事에 대하여 그 정해진 期限까지에, 都道府縣知事는 總務廳長官에 대하여 그 정해진 期限까지에, 各各 調査票, 其他關係書類를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結果의 公表等)

第 12 條 總務廳長官은 調査票의 審查 및 集計를 행하고 그 結果를 속히 公表하는 것으로 한다.

(調査票等의 保存)

第 13 條 總務廳統計센터 所長은 調査를 2 年間, 總務廳 統計局長은 結果原表 또는 結果原表가 轉寫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을 永久保存하는 것으로 한다.

附 則

1. 이 府令은 1976 年 1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2. 이 府令 施行時 改正前의 家計調査規則에 따라 實施되고 있는 家計調査에 대한 調査票의 提出期日 및 結果 公表期日은 特히 從前의 例에 따른다.

附 則(1984 年 總理府令第 35 號)

이 府令은 1984 年 7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 附 則

1. 이 府令은 1985 年 8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2. 이 府令의 施行前에 改正前의 家計調查規則에 따라 이미 家計調查의 對象으로 되어 있는 調查家口에 關係되는 調査에 대해서는 특히 從前의 例에 따른다.

# 別記様式第1号

(秘)

指定統計第56号

家計調査

# 家計簿

総務庁統計局

- 이 家計簿의 내용은 統計以外의 目的, 例컨대 徵稅의 資料등에는 絶對로 使用하지 않습니다.

年      月      期分

(1期 1日～15日)  
2期 16日～月末)

| 勤労・一般別 | 市町村番號 | 単位區符號 | 調査家口番號 | 記入開始至<br>부터의月數 | 家口人員數 | 就業人員數 |
|--------|-------|-------|--------|----------------|-------|-------|
| 勤一     |       |       |        | 個月 別           | 人     | 人     |

## 口座自動對替에 의한 支拂

| 支拂內譯(種類, 品名等)     | 今日의 支拂分 |    | ※ 符號欄 |
|-------------------|---------|----|-------|
|                   | 數量      | 金額 |       |
| 1 電氣料金(月分)        | 키로와트    | 円  | 430   |
| 2 都市ガス料金(月分)      | m       |    | 431   |
| 3 水道料金(月~月分)      |         |    | 440   |
| 4 電話料金(月分)        |         |    | 762   |
| 5 NHK放送受信料金(月~月分) |         |    | 880   |
| 6 學校給食費(月分)       |         |    | 39X   |
| 7 房 費(月分)         |         |    |       |
| 8 住宅貸付金償還(月分)     |         |    | 088   |
| 9 汇 발 유           | l       |    | 7.50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合 計               |         |    | 040   |

日

前期로부터의 移越金(소지현금) 円

## I. 現金收入 또는 現金支出

| (1) 收入의 種類 또는 支出의 品名及 用途 | (2) 現金收入 | (3) 數量<br>單位 | (4) 現金支出 | * 符號欄 |
|--------------------------|----------|--------------|----------|-------|
|                          | 円        |              | 円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合 計                      |          |              |          |       |
|                          |          |              | 今日의 現金殘高 | 円     |

## II. 外上購入, 月賦購入 現物(받은 物品, 自家生產, 점포의 商品)

\* 물품을 입수했을때 반드시 기입합니다.

| (1) 品名 및 購入 方法<br>右側의 해당하는 것에 ○을 쳐주십시오. | 1 2 3 4 5<br>외월받자점<br>상부은가포<br>구구물생의<br>입입품산상<br>품 | * 符號欄 | (2) 數量<br>單位 | (3) 金額(선<br>물받은 물품,<br>자가생산품<br>점포상품은<br>견적금액) | * 符號欄 |
|-----------------------------------------|----------------------------------------------------|-------|--------------|------------------------------------------------|-------|
|                                         | 1 2 3 4 5                                          |       |              | 円                                              |       |
|                                         | 1 2 3 4 5                                          |       |              |                                                |       |
|                                         | 1 2 3 4 5                                          |       |              |                                                |       |
|                                         | 1 2 3 4 5                                          |       |              |                                                |       |
|                                         | 1 2 3 4 5                                          |       |              |                                                |       |
|                                         | 1 2 3 4 5                                          |       |              |                                                |       |
|                                         | 1 2 3 4 5                                          |       |              |                                                |       |
|                                         | 1 2 3 4 5                                          |       |              |                                                |       |

備考

別記様式 第2號

(秘)

指定統計第56號

이 조사표에서 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이외의 목적,  
예컨대 정세의 자료등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있는 그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완료된 조사표는 별도로 배부한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조사원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家計調査  
年間収入調査票

당신의 가구에서 과거 1년간의 수입은 세금 다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가구주 분인지 가족의 분인지 분명치 않을 때에는 가구주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가구주)

(가족)

千百十一

千百十一

|                                |                                                          |                                                          |
|--------------------------------|----------------------------------------------------------|----------------------------------------------------------|
| (1) 근무처 정기 수입 .....<br>년간수입    | <input type="text"/> 万円 .....<br><input type="text"/> 万円 | <input type="text"/> 万円 .....<br><input type="text"/> 万円 |
| (2) 영업년간이익 .....<br>상여·기타 임시수입 | <input type="text"/> 万円 .....<br><input type="text"/> 万円 | <input type="text"/> 万円 .....<br><input type="text"/> 万円 |
| (3) 내직년간수입 .....<br>직장수입       | <input type="text"/> 万円 .....<br><input type="text"/> 万円 | <input type="text"/> 万円 .....<br><input type="text"/> 万円 |
| (4) 기타년간수입 .....<br>기타수입       | <input type="text"/> 万円 .....<br><input type="text"/> 万円 | <input type="text"/> 万円 .....<br><input type="text"/> 万円 |

|                      |                      |                      |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1) 근무처 년간수입

정기수입 ..... 매월 지급되는 본급, 부양수당, 직무수당의 초과근무수당, 이익배당금등을 포함한 총액

상여금, 기타 임시수입 ..... 하기, 년말 등에 특별히 지급되는 것 및 어떤 달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

• 사업경영을 하는 한편 다른 곳에 일 나가는 사람의 경우 그 근무처에서 받는 수입도 여기에 기입합니다.

• 수입내역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총액을 「정기수입」란에 기입합니다.

(2) 영업년간이익 ..... 매상고에서 구입액, 원재료비, 인건비, 소모품비, 사업세, 고정자산세등 경영상의 제경비를 공제한 순익

(3) 내직년간수입 ..... 내직에 소요된 재료비 등을 빼고난 순익

(4) 기타년간수입 ..... 주식배당금, 저금이자, 년금, 은급(보상금), 송금받은 것, 집세수입등의 소득

퇴직금이나 토지, 가옥등 재산매각에 의해 얻은 수입은 상기한 어느것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市町村番號 | 単位區符號 | 調査家口番號 | 一連家口番號 | 記入開始月 |
|-------|-------|--------|--------|-------|
|       |       |        |        | 年 月   |

別記様式 第3號



指定概  
第 56 號

家計調査

家口票

統務廳統計局

|   |   |
|---|---|
| 動 | ・ |
| 一 |   |

|       |       |        |        |                                      |
|-------|-------|--------|--------|--------------------------------------|
| 市町村番號 | 單位區符號 | 調查家口番號 | 一通家口番號 | 抽出區分                                 |
| 住所    | 市 郡   | 町 村    | 番地     | (1) 2<br>最初<br>其他<br>家 口<br>抽 口<br>出 |
| 家口住姓名 |       | 電話     | )      |                                      |

| 姓名<br>及<br>家口主의<br>關係 | (01)     | (02)         | (03) | (04)          | 本業의 動務處 |         | (06) | (05)         | (07)                  | (08)           | (09) | (10)     | (11)          | 副業의 動務處    | (13) | (14)           | (15)     | (16) |         |
|-----------------------|----------|--------------|------|---------------|---------|---------|------|--------------|-----------------------|----------------|------|----------|---------------|------------|------|----------------|----------|------|---------|
|                       |          |              |      |               | 性別      | 年齡      | 事業內容 | 事業內容         | 本人이<br>하고<br>있는<br>내용 | 雇用者數           | 正亡   | 符號       | 給與<br>支給<br>額 | 產業         | 職業   | 業種             | 副業<br>業種 | 就業   | 非<br>就業 |
| 1 家口主                 | 本人       | 1 男          | 2 女  |               |         |         |      |              |                       |                |      |          |               |            |      |                |          |      |         |
| 2                     |          | 1 男          | 2 女  |               |         |         |      |              |                       |                |      |          |               |            |      |                |          |      |         |
| 3                     |          | 1 男          | 2 女  |               |         |         |      |              |                       |                |      |          |               |            |      |                |          |      |         |
| 4                     |          | 1 男          | 2 女  |               |         |         |      |              |                       |                |      |          |               |            |      |                |          |      |         |
| 5                     |          | 1 男          | 2 女  |               |         |         |      |              |                       |                |      |          |               |            |      |                |          |      |         |
| 6                     |          | 1 男          | 2 女  |               |         |         |      |              |                       |                |      |          |               |            |      |                |          |      |         |
| 7                     |          | 1 男          | 2 女  |               |         |         |      |              |                       |                |      |          |               |            |      |                |          |      |         |
| 8                     |          | 1 男          | 2 女  |               |         |         |      |              |                       |                |      |          |               |            |      |                |          |      |         |
| 家口人員                  |          | 男            | 女    | 人             | 人       | 人       | 人    | 人            | 計                     | 人              | 人    | 人        | 人             | 人          | 人    | 人              | 人        | 人    | 人       |
|                       |          |              |      |               |         |         |      |              |                       |                |      |          |               |            |      |                |          |      |         |
| (17) 住居形態             |          | (18) 住居構造    |      | (19) 住居의 所有關係 |         | (20) 面積 |      | (21) 居住房數·坪數 |                       | (22) 建築時期(自家宅) |      | (23) 設備等 |               | (24) 침세·地代 |      | (25) 口座自動對替·輸入 |          |      |         |
| 1 獨立家屋                | 1 木造     | 1 自家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2 聯立住宅                | 2 防火木造   | 2 民營借家(設備專用)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3 共同住宅                | 3 旦早     | 3 公營借家(設備共用)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 4 其他                  | 4 鐵筋·鐵骨造 | 5 公團·公社等借家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4       |
|                       | 5 其他     | 6 純興住宅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5       |
|                       |          | 7 黃房         | 7    |               |         |         |      |              |                       |                |      |          |               |            |      |                |          |      |         |

|               |             |                    |      |                |
|---------------|-------------|--------------------|------|----------------|
| (1) 居住房數      | 1 1925以前    | (1) 都市가스.....1.2   | 1個月當 | (25) 口座自動對替·輸入 |
| (2) 居住房坪數     | 2 1926-1945 | (2) (령크공급).....1.2 | 有    | 口座拂入 有·無       |
| (3) 計地面積(自家宅) | 3 1946年以後   | (3) 水道.....1.2     | 無    | 口座拂入 有·無       |
|               |             | (4) 通氣.....1.2     | 有    | 料金             |
|               |             | (5) 電話.....1.2     | 無    | 電氣             |
|               |             | (6) 自動車.....1.2    | 無    | 其他             |
|               |             |                    |      | (NHK)          |
|               |             |                    |      | 크레디트카드 有·無     |

備考 特히 説明을 要하는 事項, 例컨대 遊學中의 家族有無 無償집세 事情 등을 記入합니다.

|                             |        |
|-----------------------------|--------|
| 臨時交替의 경우에 前調査家口에 대하여 記入합니다. | 符號欄    |
| 調査家口番號                      | 一連家口番號 |
| 家口主姓名                       | 交替理由   |
| 記入終止月日                      | (26)   |
|                             | (27)   |

(注)坪을  $m^2$ 로 標算할 경우는 3.3倍 한다.

別記様式 第4號

|        |  |
|--------|--|
| 都道府縣名  |  |
| 市町村番號  |  |
| 單位區符號  |  |
| 一連家口番號 |  |

家計調査  
秘 準 調 査 家 口 票  
指定統計  
第 56 號 (年 月 期)

總務廳統計局

|      |  |
|------|--|
| 指導員印 |  |
| 調査員印 |  |

| (1) 家口区分   |           | (2) 交替種類  |           | (3) 抽出区分      |           |
|------------|-----------|-----------|-----------|---------------|-----------|
| 1<br>勤勞者家口 | 2<br>一般家口 | 1<br>定期交替 | 2<br>臨時交替 | 1<br>最初에抽出된가구 | 2<br>其他家口 |
|            |           |           |           |               |           |

家口에 대하여

|             |        |            |        |                  |        |                  |        |
|-------------|--------|------------|--------|------------------|--------|------------------|--------|
| 家<br>口<br>主 | 姓名     | (4)<br>満年齢 | 住<br>所 | 市<br>(區)<br>郡    | 町<br>村 | 番地               |        |
|             |        |            |        |                  |        | (7)<br>就業<br>非就業 |        |
|             |        |            |        |                  |        | 1<br>就           | 2<br>非 |
| 家口人員        | (8) 總數 |            | 人      | (9) 그중 일하고 있는 사람 |        | 人                |        |

(住居에 대하여)

|           |         |           |           |           |               |             |                   |
|-----------|---------|-----------|-----------|-----------|---------------|-------------|-------------------|
| (10) 所有關係 | 1<br>自家 | 2<br>民營借家 | 3<br>民營借家 | 4<br>公營借家 | 5<br>公園・公社等借家 | 6<br>給與住宅貰房 | 7<br>(設備專用)(設備共用) |
|-----------|---------|-----------|-----------|-----------|---------------|-------------|-------------------|

(家計費에 대하여)

|                                                |   |  |  |  |  |  |  |
|------------------------------------------------|---|--|--|--|--|--|--|
| (11) 1개월의 家計費總額 (稅金, 貯金, 빌린돈, 갚은돈, 等을 除外한 生活費) | 約 |  |  |  |  |  |  |
|------------------------------------------------|---|--|--|--|--|--|--|

(不採用 理由에 대하여)

|                             |  |  |  |  |  |  |  |
|-----------------------------|--|--|--|--|--|--|--|
| 具體的으로<br>(12) 상세하게<br>써주십시오 |  |  |  |  |  |  |  |
| 符號欄                         |  |  |  |  |  |  |  |
| 符號欄                         |  |  |  |  |  |  |  |

〔参考〕 單位區家口名簿

| 市町村名 | 市町村番號 | 単位區符號 | 年 | 國勢調査<br>調査區番號 | 抽出番號表<br>整理番號 |
|------|-------|-------|---|---------------|---------------|
|      |       |       | 年 |               |               |

## 家計調査

第六章

### 總務處統計局

單位區更新

※名簿補正 次中板

| 原<br>位<br>區<br>更<br>所 | 合<br>計<br>世<br>帶<br>數 | 通<br>格<br>家<br>口<br>數 |                       |                  | 最初<br>豆<br>抽<br>出<br>引<br>連<br>家<br>口<br>番<br>號 |
|-----------------------|-----------------------|-----------------------|-----------------------|------------------|-------------------------------------------------|
|                       |                       | 數                     | 勞<br>動<br>者<br>世<br>帶 | 一<br>般<br>世<br>帶 |                                                 |
| 配當調查家口數               |                       | 6                     |                       |                  |                                                 |
| 名簿補充                  |                       |                       |                       |                  |                                                 |
| 配當調查家口數               |                       | 6                     |                       |                  |                                                 |

6. 生成成功。名稱是「關係圖(Relation Graph)」，請點選右側的「關聯」，然後點擊下方的「完成」。

- [作成方法] ……名簿은 記位別으로 張列해 成함합니다. 또한 諸氏사진은 記位別으로 使用합니다.

  1. 5欄은 適格家口가 不通過格家口로 別判되거나, 適格家口에 대하여 勤勞者家口인가, 一般家口인가를 確認하여, 该當하는 것에 ○其를 한다.
  2. 不通過格家口에 대해서는 7欄(記位區更新의 週期)에 斜線을 친다.
  3. 6欄에는 不通過의 理由 및 不採用의 理由와 摘出·轉入等에 관해서 記入한다.
  4. 最下段의 家口數欄은 段後의 1枚에 대해서만 記入한다.

5. 記位區更新의 適格家口의 勤勞者, 特別히 某の 家口數」는 각각 一連家口番號의 終終番號를 기입하고, 名簿首尾의 增減은 각각 番號番號에서 純數를 기입한다.

|     | 指道員 | 調查員 | 作成月日 |
|-----|-----|-----|------|
| 更新  | 物   | 物   | 月 日  |
| ※補完 | 物   | 物   | 月 日  |

### 附錄 3 統 計 法(抄)

(1987년 3월 26일 법률 제 18 호)

#### (指定統計)

제 2 조 이 법률에서 지정통계라 함은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총무청장관이 지정하여 그 취지를 공시한 통계를 말한다.

#### (指定統計調査)

제 3 조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이하「지정통계조사」라고 함)는 이 법률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하고 타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지정통계조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지방공공단체의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포함)으로 이것을 정한다 「이하 생략」.

#### (申告義務)

제 5 조 정부,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는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사람(人)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신고를 명할수가 있다 「이하생략」.

#### (統計調査)

제 12 조 정부,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는 그 행하는 지정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통계조사원을 둘 수가 있다.  
통계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명령(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정하는 규칙을 포함)으로 이를 정한다.

#### (秘密의 保護)

제 14 조 지정통계조사의 결과로 않려진 사람,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비밀은 보호되지 않으면 안된다 「

제 15 조 누구라도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조사표를 통계상의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하생략」.

#### (罰則)

제 19 조 좌(左)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禁錮 또는 5,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명받았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신고를 하자 「이하생략」.

## 附錄 4 家計調查의 沿革

(1945년 3월 26일 법률 제 18호)

현재의 가계조사는 1946년 7월에 시작된 소비자가격조사 (CPU: Consumer Price Survey의 略字)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35년 이상이 經過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4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 |                    |                      |
|--------------------|----------------------|
| (1) 소비자 가격조사 (CPS) | 1946년 7월 ~ 1950년 8월  |
| (2) 소비실태조사         | 1950년 9월 ~ 1952년 12월 |
| (3) 확대개정이전         | 1953년 1월 ~ 1962년 6월  |
| (4) 확대개정이후         | 1962년 7월 ~           |

### 1. 消費者 價格調查의 時期 (1946년 7월 ~ 1950년 8월)

이 조사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조사로서 시작하였으나, 보통 가격조사와 달리 상품가격을 소매점포측에서가 아니고 소비자측에서 조사하는, 오히려 가계조사에 가까운 것이었다. 전국의 도시소비자家口를 대상으로 하고 28개 도시에서 약 5,600家口를 선정하고 그날그날의 산 물건에 대해 그 가격, 구입수량, 지출금액을 기입해 받으며 거기에서 실효가격(實效價格)을 계산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였다. 동시에 소비자의 지출에 관해서도 가계조사와 거의 같은 성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소득)의 자료는 이 조사에서 얻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격조사는 1946년 7월 이후부터 실시된 것이다. 이 조사는 지리적위치, 인구, 공업화의 정도 및 인구이동의 제조건을 고려한 층별부차추출법(層別副次抽出法)에 따라 선정된 전국도시 가운데에서 그것을 대표하는 28개 도시를, 또한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家口중에서 이를 대표하는 약 5,000의 소비자家口(농가를 제외)를 층별임의 추출법(層別任意抽出法)에 따라 선정하여 그 가계의 현금지출분에 대해 상세한 품목(용도를 포함)별의 구입수량과 그 현금지출액의 보고를 정기적(월 4회)으로 구하였다.

조사도시의 선정은 전국의 도시(1946년초 현재)를 (가)지리적 위치, (나)인구의 대소, (다)공업화율(1940년 國勢調査에 의한 제조공업인구와 전인구와의비), (라)인구밀도, (마)인구이동률(1945년 12월 1일의 여자인구와 1944년 2월 22일의 그것과의 비)등의 기준에 따라 22개층으로 나누고 그중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北海道에서는 전시)의 16개층에서는 각층에서 1개도시,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

6개층에서는 전쟁피해정도가 큰 시와 적은 시, 인구이동률이 큰 시와 적은 시와 같이 특색이 다른 2개 도시 또는 지리적 위치가 떨어진 2개 도시를 조합하여 추출단위로 하여 각층에서 조합되어 있는 2개도시씩 확률비례추출법(確率比例抽出法)에 의해 추출하였다. 또 조사家口의 선정은 당시의 정내회(町內會, 반상회 비슷한 것)를 사용하여 인접한 정내회를 두개씩을 합쳐서 추출하고, 추출된 지역에서 정내회의 家口명부를 사용하여 조사家口를 추출하였다. 기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로서 반달(半月)마다 8분의 1의 家口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였다.

한편 「소비자가격조사」에서는 수입자료는 얻을 수 없었으므로 가계수지의 분석이라는 면에서는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1948년 7월부터 「근로자家口수입조사(FIS:Family Income Surey의 약)」를 별도로 시작하였다. 「근로자家口수입조사」는 「소비자가격조사」와는 별개의 표본을 선정하여 수입만을 別途로 調査하였다. 1950년 8월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두개의 조사가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2. 消費實態調査의 時期 ( 1950년 9월 ~ 1952년 12월 )

조사개시 당초의 인플레도 1949년 후반부터 차차 소퇴해가고 1950년에 들어와서 물가는 상당한 템포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전반에 걸쳐 약간 회복의 징후가 보였다. 이와 함께 식량사정도 호전되고 국민경제생활은 점차 안정화 되어갔다. 상품가격에 있어서도 배급통제에 의한 것은 주식과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정되고 자유로히 구입할 수 있는 자유가격품이 현저하게 불어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경제정세의 추이에 따라 1950년 6월에 소매물가통계조사를 시작하고 본래의 물가조사방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1950년 9월부터 종래의 소비자가격 조사에 근로자家口 수입조사를 흡수하여 동일가구에 대하여 수지양면의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을 「소비실태조사」로 개정하였다. 또한 표본설계를 개선하여 전국의 시제시행지(市制施行地) 232개시(1949년 4월 현재) 가운데 6대도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각을 1개층으로 하고, 他 종소도시는 (가) 지리적 위치, (나) 1949년 5월의 특별조사에 의한 소비자물가지역차지수, (다) 인구등의 기준에 따라 층인구의 크기를 가능한한 같게 되도록 22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층에서 1개씩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22개시를 추출하고 대도시를 포함한 28개시를 선정하여 조사家口수를 약 4,000家口로 하였다.

### 3. 擴大改正以前의 時期( 1953 年 1 월 ~ 1962 年 6 월 )

1952년 11월부터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제 56호로서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회로 가계조사로서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약간의 개정을 행하였다. 즉 종래 이조사는 현금면만을 취급하여 현물면의 조사가 결여되었는데 이점을 보완하여 현물면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카드기입방식을 가계부로 개선하였다. 다음에 소비지출의 분류방법에 대해서도 품목분류외에 용도분류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1953년 1월부터 「가계조사」라고 개정하고 또한 1953년 4월 이래로는 가계부의 기입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나 표본설계는 거의 소비실태조사와 같게 하였다. 조사家口는 근로자家口와 일반家口를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므로 양자의 비율이 매월 변동하고 있었으나 1954년 10월에 충내의 근로자家口, 일반家口의 비율(1950년 국세조사 1% 추출결과에 의함)에 따라 도시별로 근로자家口, 일반家口별 조사家口수를 결정하고, 이후 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1955년 12월부터는

- (1) 단위구의 추출수를 종래의 3배로 증대하고, 각 단위구에서의 추출家口를 3분의 1로 감소시켰다.
- (2) 6개월째에 1회만 동일단위구내에서 家口를 교체하고 1년째에는 단위구 자체를 인접 단위구로 옮기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4. 擴大改正以後( 1962 年 7 月 ~ )

1962년 7월부터 표본설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그때까지 모집단지역은 1949년 4월 1일 현재의 市制施行地에 한정되었으나, 그것을 1949년 4월 이래 시제가 실시된 시 및 정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약간의 개정을 행하였다. 그 개략은 다음과 같다.

- ① 모집단지역을, 종래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새운시(新市)(1949년 4월 이래의 시제시행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에 걸맞는 市) 및 町村에까지 확대하였다.
- ② 調査市町村數, 調査單位區數, 調査家口數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 항 목    | 확 대 개 정 전 | 확 대 개 정 후 |
|--------|-----------|-----------|
| 調査市町村數 | 28 시      | 170 시정촌   |
| 調査單位區數 | 954 단위구   | 1,344 단위구 |
| 調査家口數  | 4,134 가구  | 8,064 가구  |

- ③ 縣廳소재도시를 전부조사하기로 했다.
- ④ 모든 조사家口에 대하여 년간수입을 조사표에 의해 자계조사(自計調查) 하기로 하였다.

표본家口는 시정촌을 제1차 추출단위, 단위구(인접한 국세조사 조사구 2개를 합친 구역)를 제2차 추출단위, 家口를 제3차 추출단위로 한 총별 3단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 調査市町村의 抽出

전국의 시정촌에 대하여 우선 현청소재도시는 각각을 1개층으로 하였다. 다음에 기타 시정촌에 대해서는 지리적 위치, 인구, 비농립어가비율(비농립어가수 / 보통家口數), 人口증가율(1960년 / 1955년), 산업적특색(광업도시, 상업도시등의 별) 등을 총별기준으로 하여 124개층으로 나누고 각층에서 1개 시정촌씩 비농립어가家口數에 비례한 확률을 사용한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추출하고, 현청소재도시 46개시와 합쳐서 170개시정촌을 조사시정촌으로 하였다.

### 單位區의 抽出

각 조사시정촌을 「1960년 국세조사조사구」를 기초로 할당된 조사원의 수만큼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내의 비농립어가수가 거의 같게 되도록 하였다. 다시 각지역내에서 조사구를 2개조사구씩 합쳐서 단위구를 만들어 2개단위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 家口의 抽出

조사원 한 사람이 2개단위구씩 담당하고 각각의 단위구내 전거주家口의 명부를 작성하고 각단위에서 6세대, 2개단위구를 합쳐서 12가구를 무작위 추출한다. 그때, 근로·일반 家口數의 상대비는 해당 단위구의 그것에 맞도록 하였다.

1962년의 확대개정이래 기본적으로는 커다란 개정을 행하고 있지 않으나 확대개정이래의 인구변동 및 시정촌의 폐지, 분할, 통합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본의 일부개정을 행하고 있다.

#### (1) 1968년 1월의 변경

1968년 1월부터 1965년 국세조사결과에 따라 모집단자료를 수정하여 조사시정촌의 일부를 변경함과 동시에 단위구설정은 「1965년 국세조사조사구」에 따를 것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표본수는 다음과 같이 확대개정당시와 거의 동일하다.

|        |             |
|--------|-------------|
| 조사시정총수 | 170 개시정총    |
| 조사단위구수 | 1,338 개 단위구 |
| 조사가구수  | 8,028 가구    |

#### (2) 1972년 1월의 변경

1972년 1월부터 1970년 국제조사 결과에 따라 표본설계를 개정하여 조사시정총 및 조사家口數의 변경을 행함과 동시에 단위구도 「1970년 국제조사조사구」를 기초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표본수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        |           |
|--------|-----------|
| 조사시정총수 | 162 시정총   |
| 조사단위구수 | 1,366 단위구 |
| 조사가구수  | 7,788 가구  |

#### (3) 1972년 7월의 변경

오끼나오(沖繩)의 본토복귀(復歸)에 따라 1972년 7월부터 沖繩 에서도 10개시 4개 정총 408 家口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으므로 표본수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        |           |
|--------|-----------|
| 조사시정총수 | 176 시정총   |
| 조사단위구수 | 1,366 단위구 |
| 조사가구수  | 8,196 가구  |

#### (4) 1978년 1월의 변경

1978년 국제조사결과를 기초로 표본설계를 개정하여 조사시정총 조사가구수의 변경을 행함과 동시에 단위구도 「1975년 국제조사조사구」를 기초로 설정하였다.

1978년 1월이래의 표본수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        |           |
|--------|-----------|
| 조사시정총수 | 168 시정총   |
| 조사단위구수 | 1,316 단위구 |
| 조사가구수  | 8,076 가구  |

#### (5) 1983년 1월의 변경

1980년 국제조사결과에 따라 표본설계를 개정하고 조사시정총의 변경을 행함과 동시에 단위구도 「1980년 국제조사조사구」를 기초로 설정했다.

1980년 1월이래 표본수는 종래와 같다.